

Territory and Seas

# 영토해양연구

Vol. 5 Summer 201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특별기고

정재정 |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4

## 특집주제\_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이석우 |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40

최영호 |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56

와다하루키 |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86

## 연구논문

김현수 | 한국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문건에 관한 법적 고찰 112

최덕규 | 러일의 내몽골 분할협약 연구(1912) 138

허은실·남상준 |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170

유미림 |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200

## 현장에세이

김재한 | 인접국 갈등과 협력의 기승전결(상)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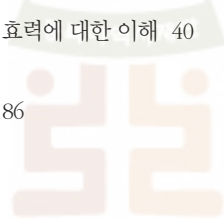
## 기획분석

김수희 |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그 문제점 264

## 영토·해양 일지

이원택 | 영토·해양 일지 278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294



#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I. '냉전'의 위기에 처한 한일관계

정치·외교 면에서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 서먹서먹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현했는데도 우호협력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데면데면한 관계는 요즈음 시민 사회로까지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벌인다고 선언했고,<sup>1</sup> 일본에서는 '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 등의 우익단체가 '과거사'를 시비하는 한국에 맞서 제일 한국인을 추방하라는 데모를 벌이고 있다.<sup>2</sup>

최근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교토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해 현격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그 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친황에 대한 사죄 요구 발언이 이어지고, 노다 정부가 이에

1 <http://blog.daum.net/kdadong/259>, 2013. 3. 1.

2 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 メールマガジン, 2013. 4. 8.

맹렬히 반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국민의 갈등과 원망(怨望)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사태의 과장은 깊고 넓어서 한일관계의 악화에 불을 지른 양국의 수뇌가 퇴진하고, 일본에서 2012년 12월 26일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에서 2013년 2월 25일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한일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번 위기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한일 양국 중 한쪽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나빠졌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르다. 양국에서 거의 동시기에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이나 건설적인 의견이 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출범한 지 몇 달이 안 된 동안에 벌써 두 차례나 부딪쳤다.

2013년 3월 27일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켰다고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엄중한 항의문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또 열흘만인 4월 6일 일본 정부가 교과서보다도 더 자세하고 명백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그런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sup>3</sup>

독도에 관한 일본 외교청서의 기술은 분량이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 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곧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정에 맡기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기술했다. 그 밖에도 이 대통령이 지적한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를 뒤집어 보면 한일관계의 경색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도발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sup>4</sup>

3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http://www.mofa.go.kr)), 국가 및 지역 정보 참조, 2013. 4. 8.

4 일본이 각의에서 결정한 2013년판 일본 외교청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외교문제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2009년에는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독도 영유권)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한다"

역사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래 한국은 좌우(左右) 또는 보혁(保革)을 막론하고 일본의 '식민사관'이나 '제국사관'에 대항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해방 후 세대로서 역사의 무게를 덜 느낄 법도 한 박근혜 대통령조차 역사문제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겠는가! 그는 대통령 취임 후 5일 만에 거행된 제9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일의 역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 내용과 억양은 지금의 한일관계를 응축하여 보여준다고 여겨지므로 약간 장황하지만 관련된 부분을 적기(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는 내용을 추가했고, 2012년에는 “한국 각료,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2013년 외교청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 8)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기 위해 독도 기술 분량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까지 10줄 남짓이던 독도 관련 문장이 올해는 각주를 포함해 23줄로 2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13줄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표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정에 맡기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기술했다.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이 밖에 한반도 출신의 유골 문제, 사할린 주재 한국인 지원 문제, 한국 내 원폭 피폭자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주장도 명시했다(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sup>5</sup>

한일의 역사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역대 어느 대통령의 연설보다도 자세하고 단호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지(主旨)와 문맥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일본의 대표단을 접견했을 때 언급한 '역사의 직시'와 '화해의 미래'를 부연한 셈이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냉정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인해 더 꼬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일본의 여론은 새 정부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년'은 과장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역사에서 가해와 피해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는데 역사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안타깝다. 역사문제에 관한 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신호다. 전 정권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본의 정계와 언론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아래서도 한일관계가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을 내놓았다.<sup>6</sup>

회고하건대, 1990년대 이래 한일관계는 우호·협력(온탕)과 대립·갈등(냉탕)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한일관계의 온탕·냉탕'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곧 정권 초기에는 미래지행적인 대일 협력관계 수립을 내세우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일본에서 과거사 또는 독도 관련 도발이 일어나고, 한국은 이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맞섬으로써 한일관계는 악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다가 양국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는 냉탕의 한일관계를 온탕

5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제 94주년 3·1절 기념사 참조; 한일협력위원회, 2013년 夏, 「한일협력」, 107~108쪽 참조.

6 社説 “日韓新政權 交流深めて懸案解決を”, 《東京新聞》, 2013. 3. 4.

으로 복원하려는 길을 모색한다. 이른바 온탕·냉탕의 사이클이 되풀이되는 셈이다.<sup>7</sup>

그런데 새로 등장한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이러한 냉탕·온탕의 사이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물을 끓일 의사조차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보일러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기가 한일관계를 고도로 관리해야 할 정상들이 온탕을 급속히 냉탕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보일러가 성할 리 없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 정부는 일단 고장 난 보일러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온탕으로 돌아가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물론 새로 출범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심스럽게나마 뒤뜰어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배려하여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일로 지정하지 않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뒤로 미루고,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서도 아베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억제했다.<sup>8</sup> 일본은 은연중에 한국이 이런 성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그 진의를 탐색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줄속으로 관계개선을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 한국은 과거에 일본의 행동을 신뢰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한국을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외교청서,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각료의 망언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이어졌다. 아베 수상은 그런 행동의 중심인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필자가 앞의 시론에서 우려한 바대로, 아베 신조 수상

7 이원덕, 2013, 「박근혜 정부-한일과거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동북아시아 재단뉴스』 76, 3월호

8 정재정, 2013, 3. 28, "아베 정권과 교과서 검정", 《조선일보》. 아베 정부는 이번에 교과서 검정에 깊게 관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정권이 출범했을 때 검정의 실질적 절차는 거의 끝나 있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교과서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쓴 것도 있다. 다만 독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쓴 교과서도 더러 있다.

9 아베 수상과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4월 10일 국회에서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애국심과 향토애를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교과서 검정에서 아시아 근린제국과 관련된 역사를 다룰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의 역사 기억 상실증", 《중앙일보》, 2013. 4. 11.; 2013. 4. 12.

10 "教科書「近隣諸国条項」見直しなど検討へ……自民党の文部科学部会などの合同部会は18日、党本部で会合を開き、同党が衆院選公約で掲げていた「教科書検定制の見直し」について、党教育再生実行本部の中に特別部会を設置し、検討していくことを決めた。特別部会の会長には萩生田光一副幹事が就く。検定基準に盛り込まれている、近現代史の記述で中国や韓国などに配慮する「近隣諸国条項」の見直しや、検定・採択過程の透明化などを話し合う。今後、週1回程度で会合を開き、今夏の参院選までに提言をまとめ、政府に提出する。"《読売新聞》, 2013. 4. 18, 18시 39분

11 《중앙일보》, 2013. 4. 22.

12 강병철·정아란 기자, 2013. 4. 22, "범추지 않는 日도발, 한일관계 계속 '빠각'", 《연합뉴스》(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추진하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번 주 일본 방문 계획이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무산됐다. 새 정부 고위당국자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기 어렵고 원칙 있는 외교를 한다는 차원에서 방일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 정부의 각료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과거 인근 국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총리가 공물을 보

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앞으로 교과서 검정에서 소위 '근린제국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sup>9</sup> 집권 자민당도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정을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sup>10</sup> 아베 신조 내각의 두 번째 서열인 아소 타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 명이 4월 20~21일 태평양전쟁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도 참배는 안 했지만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供物)을 보냈다.<sup>11</sup>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요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뜻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sup>12</sup>

이런 판국에 한일 양국에서 아무리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두 나라 관계가 쉽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아베 수상의 자민당이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고노 담화의 재검토, 교과서의 개편,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sup>13</sup> 야스쿠니신사의 참배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언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관계개선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제3자의 처지에 있는 미국의 한일관계 전문가는 한일 간의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사연을 꿰뚫어 보고 요즘의 한일관계가 불통과 불신으로 가득 찬 것으로 평가한다. 그전에 한일 양국은 한쪽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쪽이 음색이나 음조의 높이를 맞추려고 서로 노력했다. 그런데 저간의 한일관계는 마치 부서진 악기처럼 이런 튜닝 작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두 나라 사이에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다.<sup>14</sup>

한일관계가 더욱 밀접해져야 하는데도 한국과 일본의 새 정권이 상대방을 의심하며 노려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과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好感度)는 최저 상태로 떨어졌다. 독도 영유권 다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현안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방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 또한 후퇴했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월 하순 공동으로 실시한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sup>15</sup> 한일관계가 좋다는 평가는 양국 모두에서 10% 대로 떨어졌다. 양국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아졌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다'는 답변은 한국 국민은 18.2%, 일본 국민은 17.2%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각각 37%, 72.3%였고, 2010년에는 24.2%, 57%였다.

이번에 일본 국민 중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31.6%,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40.9%였다. 반면 한국 국민 중 일본에 신뢰감을 보인 비율은 19%, 친밀감을 느낀 비율은 17.3%로 일본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 국민의 82.1%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지금도 한일관계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답했지만, 일본 국민은 64.7%만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국민은 84.7%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일본 국민은 65.2%가 '적절하다'고

내고 부총리를 비롯한 현직 각료들이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근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3 아베 총리는 실제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손질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4월 22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후 50년(1995)에는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2005)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나왔다. 전후 70년(2015)을 맞이한 단계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선 전에는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 등 과거사 반성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고 했다가 집권 후에는 2015년에 미래지향적인 '아베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22일 발언은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내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은 '일본이 과거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아시아 각국에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가 2006년 10월 6일 국회에서 A급 전범에 대해 "국내법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일본이 전쟁에 휘말렸을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 각국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책임은 최대한 모호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연합뉴스》, 2013. 4. 22).

14 빅터 차, 2013. 3. 27, "지금 한국과 일본은 냉전 중", 《중앙일보》

15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양국 관계, 《한국일보》, 2013. 4. 5. 이번 조사는 3월 22~24일 한국 성인 1,000명, 일본 성인 2,12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답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67%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일본국민은 85.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오늘날의 객관적 현실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1년여 전에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은 올 1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3~4월에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퍼붓겠다고 호언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3월 시진핑 정권이 새로 출범하여 중화민족의 영광을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선명히 내걸고 대국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압박 받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한일의 공조(共助)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양국에서 새로 출범한 두 정부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한일 두 나라의 새 정부가 역대 정부의 외교적 실패, 곧 출범 당시에 우호관계를 표방했다가 정권말기에 이르러 대립관계로 선회하는 온탕·냉탕의 한일관계 사이클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려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비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을 서로 썰어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의 한일관계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 한국은 ±3.1%포인트, 일본은 ±2.1%포인트이다.

16 필자는 지난 연말에 이런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바 있다. 정재정, 2012, 「위기에 선 한일관계: 현황 진단과 타개 방안」,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공간』12. 지금부터 전개하는 필자의 논지는 이 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원래의 글은 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시론의 성격에 띠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글에 1장을 더 첨가하고 각주 등을 붙여 대폭 보완하였다.

두 나라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이렇게 심화된 저간의 사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일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생공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의 사태를 차분하게 되짚어 보며 궁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sup>16</sup>

## II. 위기의 요인과 그 특징

한일관계는 원래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2천 년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인간, 물자, 문화, 정보 등을 주고받으면서 부대껴 온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는가? 더구나 오늘날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근대 70여 년 동안(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했다. 그 피해자가 아직도 생존해 있지 않은가? 그들의 쓰라린 기억은 국민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되고 전수되어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한일관계가 때때로 이렇게 악화되는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차이, 전후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죄와 반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만성적 대립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역사인식과 교류협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대응하는 기지(機智)를 발휘해 왔다.<sup>17</sup>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한일 양국의 새 정부는 아직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이 그 전과는 다른 데서 연유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구태의연한 해법을 써 가지고는 한일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서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번에 한일관계에서 발생한 위기의 직접적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2012. 8. 11), 천황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2012. 8. 13), 일본의 국제적 지위 하락에 대한 언급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돌출된 행동과 언설에 대해 강경하게 항의하고 반격했다. 그리고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종래와는 다른 원색적인 반응이었다.<sup>18</sup> 일본의 매스컴도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며 이 대통령의 처사를 비난했다. 한일

17 2천여 년 역사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의 특성과 그로 인한 역사인식의 형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정재정, 2011, 「역사 속에서 본 한일의 문명교류」, 『지식의 지평』 제11호, 한국학술협회를 참조할 것.

18 김영희, 2012. 9. 14, "한·일 갈등, MB와 노다가 문제다", 《중앙일보》

양국은 서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결정적인 대립은 피해왔는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의 협력관계는 완전히 허물어져버리는 상황을 맞았다는 게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일치된 견해이다.<sup>19</sup>

물론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잘못된 것은 없다. 그리고 일본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사안도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지방 순시의 일환이었다. 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일본 천황에게 있다.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이 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 1968년 이래 누려 왔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GDP) 지위를 2010년에 중국에게 물려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위상이 그전만 못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sup>20</sup>

그렇지만 일본에게 독도는 한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또 천황은 국가시스템과 내셔널리즘의 상징이다. 비록 일본이 최근 20여 년 동안 경제가 담보상태인데다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진재 특히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으로 인해 원기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경제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등의 여러 면에서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 국가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위와 같이 여긴다.

일본의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매스컴을 통해 돌연히 전해진 이 대통령의 행동과 언설은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일본은 한 달여 전에 한국과 군사기밀 등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서명 한 시간을 앞두고 한국 측의 일방적 요청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체험을 했다. 그리하여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불쾌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일본 국민의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여 노다 수상은 8월 17일 이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한 친서를 송부했다. 또 21일에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부탁하지는 제안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 친서를 반환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문 앞에서 쫓아 보냈다. 노다

19 社説 “大統領竹島訪問 日韓の未来志向壊した”, 《東京新聞》, 2012. 8. 12.

20 《조선일보》, 2012. 8. 11; 8. 13

수상은 23일 국회에서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사죄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24일 우편으로 친서를 반환하고, 30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부탁하지는 제안을 거부했다. 불과 보름 동안에 숨 가쁘게 전개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공방은 우호를 자랑하던 두 나라 관계를 반목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sup>21</sup>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종래와는 너무 달랐다. 과격하다 못해 감정적이었고 신경질적인 언동조차 나타났다.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격렬한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은 정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 레벨에서도 대결 국면이 형성되었다. 그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교섭 채널이 작동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시스템이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정상(頂上)과 외교 당사자가 정면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일관계는 복원의 전망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도발과 응징의 주체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도발을 하면 한국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패턴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일본을 발끈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 등은 마치 한국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각 반격을 개시했다. 일본의 언론과 여론도 정부와 대열을 같이하며 한국에 대해 비난의 포탄을 퍼부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의 초강수 대응에 어리둥절했다. 일본의 표변한 반응에 한국인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종래와 같이 원론적인 대응을 이어갔지만 일본은 이제 그것을 받아 줄 의향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 서로 오해와 불신은

쌓여 가고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sup>22</sup>

이 대통령의 돌출 언동과 그에 대한 일본의 강경 대

21 社説 “首相親書返還 対話の道は閉じるな”, 《東京新聞》, 2012. 8. 24.

22 김영희, 2012. 9. 14, “한·일 갈등, MB와 노다가 문제다”, 《중앙일보》

응만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아니다. 그럴 만한 요인은 2011년부터 이미 다른 쪽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인이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전후보상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한국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에 대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부의 사안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두 문제에 대한 처리는 이미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sup>23</sup> 반면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무언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 그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내연(內燃)하고 있던 이런 갈등이 결국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충돌을 가져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과 일본의 맹렬한 반격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이번 한일관계의 위기가 동아시아의 파워 폴리틱스와 맞물려 전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곧 중일관계와 러일관계의 변동과 연계되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 나라와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 나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 쉬운 정세가 형성된다.

최근 2, 3년 사이에 러시아의 유력 정치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대통령과 총리의 신분으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남쿠릴열도를 두 번이나 전격 방문한 적이 있다. 올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앞서 이루어진 러시아의 과감한 영토주권 시위였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에 영

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시간상으로는 시사를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중국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총리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듯하다.

23 정재정 발표문, 2013. 6. 18,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참조.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몇 년 동안 중국의 어선들은 끊임없이 센카쿠열도에 진입하여 일본의 실효지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연출하고 있었다.<sup>24</sup>

정치·외교 특히 국민의 내셔널리즘과 직결되어 있는 ‘영토문제’로 비화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당연히 국민 상호 간의 교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12년 말 현재,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反感)과 미움은 그전보다 특별히 심해진 것 같지는 않았다. 반면에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대단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문은 일본의 엔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2월 초 현재 일본인의 한국 관광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확실히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2012년 4분기에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의 수는 74만 6천 440명으로 2011년 동일본대진재 이후 가장 적었다. 이것은 같은 해 3분기에 비해 21% 가량 줄어든 숫자이다. 전체 관광객 수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분기에 27.6%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은 관광객 비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던 국가였다.

2012년 11월 말, 일본 내각부는 9월 27일~10월 7일에 전국 성인 남녀 1,8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은 39.2%로, 작년(62.2%)보다 23.0%나 하락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친하다고 느낀다’는 답변 비율을 웃돌았다. 한일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는 응답이 78.8%로, 지난해보다 42.8%나 급증했다. 이처럼 일본의 여론을 보건대, 한일관계는 한류 붐이 불기 이전인 10여 년 전의 불편한 상태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훨씬 깊어진 셈이다.<sup>25</sup>

한류 붐을 타고 호황을 구가하던 도쿄 신오쿠보 등의 한국인 상권은 일본인들의 발길이 뜸해져서 뒤러리를 맞고 있다. 한국인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본인 젊은이들이 올해 8월 이후 어느 시점부터인가

24 東郷和彦·保阪正康, 2012 『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 竹島, 尖閣諸島』, 角川書店, 3~19쪽

25 内閣府홈페이지(www.cao.go.jp) 참조.

하나 둘 자취를 감추더니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베 수상의 부인은 2012년 8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렬한 한류 팬이었다. 그런데 그 후 한일관계가 경색되자 지금은 한국 드라마의 시청을 끊었다고 공언했다. 심지어 도쿄와 오사카의 한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반한(反韓) 시위대가 한국인의 추방을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현상이 거의 매주 일어나고 있다.<sup>26</sup>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1978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은 작년보다 8.3% 감소한 18.0%였다. ‘중·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답변도 16.5%나 증가한 92.8%였다. 반면 미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낀다’는 일본인은 작년보다 2.5% 증가한 84.5%였다. 중일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진 직접적 원인으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무력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격렬한 대립, 이에 촉발되어 중국에서 발생한 난동에 가까운 반일 시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난 8월 이후 급격히 현안으로 부상한 독도와 센카쿠열도 문제는 미묘한 범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규정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서로 연동하면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III. ‘영토문제’의 현황과 내력(來歷)

최근 1~2년 동안 한국·일본, 일본·중국, 일본·러시아는 동아시아의 바다 위에 솟아 있는 몇 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정치, 외교, 언론, 시위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은 두 나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악

26 《동아일보》, 2013. 4. 1; 4. 2

화되었다.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일본은 한국이 현재 영유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의 4개 섬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독도가 역사의 경위나 국제법 해석 등에 비춰서 명백히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영토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도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꾸로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듯한 주의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처지에서 보면 세 가지 '영토문제'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이중 삼중의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대국은 당연히 일본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를 둘러싼 한·중·일·러의 갈등과 대립은 이처럼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엉뚱한 오해를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글에서 '영토문제' 또는 '영토분쟁'에 일부러 따옴표를 친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그러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단 존중하고자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 때문이다. 최근 일부 언론과 논객 등은 '영토분쟁'이라는 말을 남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영토문제'에 대한 언동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한·중·일·러의 '영토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지게 된 직·간접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소략함을 무릅쓰고 간단하게 몇 가지 요인만을 지적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을 것이다.<sup>27</sup>

첫째, 일본의 전후처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

<sup>27</sup>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2012, 『일본의 영토분쟁』, 메디치미디어; 東郷和彦·保阪正康, 2012, 앞의 책;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카이로선언(1943), 포츠담선언(1945)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카이로선언은 대일본제국이 침략과 탐욕으로 획득한 영토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후의 일본은 러일전쟁 때 차지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역사의 경위를 따지지 않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2)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만들어진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지령(1946)은 독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할 섬으로 명기했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맹렬한 로비를 벌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의 귀속을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둘째, 한·일, 일·중, 일·러의 국교재개 과정에서 논의된 각 섬들에 대한 영유권 논쟁을 관련 당사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한국은 한일회담의 막바지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했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논의를 덮어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중수교 회담을 할 때 중국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문제를 당대보다 지혜로운 후세에 맡기자고 제안한 반면에, 일본은 중국이 일본의 실효지배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남쿠릴열도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국은 몇 차례의 회담을 거쳐 외교교섭을 통해 '영토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외 정세 변화와 맞물려 논의 자체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일본은 세 나라와의 국교 수립을 중시하고 우선하여,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하고 덮어두는 듯한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셋째, 한·중·일·러의 국력과 위상이 100년 전과는 판판으로 변했다. 반식민지였던 중국은 세계 제2의 강국으로 부상하여,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성장하였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최선진이었던 일본의 기세는 한풀 꺾이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조금 약화되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35년 만에 해방된 한국도 100여 년 전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나라를 빼앗겼던 신세에서 벗어났다. 지금 한국은 돌고래

정도의 국력을 확보하여 고래와 같은 열강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대일본제국의 팽창과 침략에 얽혀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한 셈이다. 러시아는 최근 일본보다도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리하여 남쿠릴열도를 굳이 일본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이제 현실의 국제관계 곧 파워 폴리틱스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넷째, 내셔널리즘이 유난히 강한 한·중·일·러는 '영토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한·중·일·러는 경제와 문화 등에서 상호 의존과 교류를 강화했지만, 유럽공동체와 비슷한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러의 정치환경을 보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을 추동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정치가는 '영토문제'를 꺼내들어 내셔널리즘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각국의 정상이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원색적인 언어로 공방을 벌이고, 상대국의 상품 불매운동이나 드라마 방영중지를 감행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어느 일방이 양보하기에는 국내정치에서 짊어질 부담이 너무 커진 괴물로 변해버렸다.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각 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경위에 따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 글에서는 공통점을 몇 가지 제시했지만 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차이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경위가 다르면 해결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영토문제'를 언급할 때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당사국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국가 사이의 내셔널리즘과 파워 폴리틱스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이 서로 연동되어 폭발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불리 다른 나라의 '영토문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연대하는 등의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 IV. 역사문제의 재연(再燃)과 심화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는 연원이 깊은 난제(難題)이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근본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같은 나라 안의 같은 국민 사이에서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빚거늘, 국가와 민족이 다른 사람 사이에 공통의 역사인식을 갖거나 역사화해를 이룩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일본과 한국처럼 가까운 과거에 지배와 피지배의 불행한 역사와 적대관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역대의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문제가 악화되어 우호협력의 현실관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다양해지고 세력화되어 양

국 정부가 이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 특히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한 내셔널리즘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재발한 역사 문제는 한국의 사법부까지 관련되어 특수한 형태로 폭발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위(이른바 不作爲)가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011. 8. 30.).<sup>28</sup>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은 양국 정부 레벨에서 이미 소멸되었다고 여겨지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민사사건의 레벨에서

28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및 원폭피해 문제에 대해 한일간에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그 법적으로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있음에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분쟁 해결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1965년 체제 속에서 일제피해자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여 왔던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65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라는 헌법적 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위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최봉태, 2012. 6. 2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개헌배상권의 인정 이후의 과제」, 『한일협정 47년 특별기자회견과 국민보고 자료집』).

살아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 5. 24.).<sup>29</sup>

한국의 사법부가 국제관계와 정치외교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시비를 판결하고 보완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사안은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이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불법인 것 등을 명시한 점에서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법치국가이다. 형식논리로만 따진다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곧 부작위를 해소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차원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2011. 12. 17~18)에서 노다 총리에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은 물론 이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종래 인정하는 듯했던 개인의 청구권을 2000년 이후 한일협정으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논리를 전면적으로 전개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에 구속될 일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인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2007년 4월 동 재판소는 한국·타이완·중국의 피해

<sup>29</sup>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서 가) 한일청구권협정의 본질론, 나)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의 자금과 제2조의 법적 인과관계론, 다) 협상 과정 해석론, 라) 국가 및 개인의 독자적 법 주체론에 기초한 청구권협정 조문론, 마) 청구권협정과 국내법 분리론 등 크게 5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나)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는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피해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여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 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라) 국가가 조약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고, 마)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 직후 일본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 시행한 조치는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최봉태, 위의 글 참조).

자가 제소한 90여 건의 전후보상 재판에 대해 사법구제의 길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위를 배경으로 노다 수상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逆)으로 한국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때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한일 사이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sup>30</sup>

2012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정부, 학자 또는 시민들은 각자의 레벨에서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보는 양국의 시각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한국 측은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한다. 반면, 일본은 국가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사죄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양측은 기초 사실에 해당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한다.<sup>31</sup>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정부, 학자, 언론, 시민 등이 의견 차이를 좁혀 가지 않는 한, 피해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을 모두 납득시킬 만한 해결방법을 도출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본 측이 역사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종래의 견해를 유연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한일 사이의 간격은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현안으로 내걸고 직접 마주 대했던 이명박 정부와 노다 정부가 퇴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고 논의할 만한 당사자들이 사라진 셈이다. 이 문제는 결국 양국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이관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양국 정부가 언제

<sup>30</sup> 양국 정상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회담(1시간)의 절반을 위안부 문제에 소비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부담이 된다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노다 수상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소녀상이 설 것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역사 문제의 폭발을 상징하는 회담이었다(朝日新聞, 2011. 12. 18: 12. 19).

<sup>31</sup>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志水紀代子·山下英愛, 2012, 『シンポジウム記録, 「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て-開かれた議論のために.』, 白澤社

어떻게 이 문제에 손을 댈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지만, '새 부대'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일 양국에서 국내문제 또는 북한문제 등에 묻혀 침묵한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지원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고무되어 양국 정부에 해결을 압박하거나 일본의 해당 기업을 상대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새 정부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두 문제를 제쳐놓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의 사법부 판결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 한국에 있는 일본의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본의 기업이 배상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일본 기업이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두 나라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관계를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이번에 재발한 역사문제는 이런 경우까지를 상정하도록 만들 만큼 특수하고 복잡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된 지 7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오늘의 한일 관계는 아직도 역사의 부채(負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양국에서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정치권력이 재편되는 가운데 역사의 올라미는 양국관계를 더욱 뻘뻘하게 조여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 V.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연계

이번에 돌발한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관찰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점은 두 문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토문제'는 역사문제와 별로 관계없는 국제법상의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유래가 없는 현안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상식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대일본제국이 팽창정책을 구사하며 타국의 영토라고 의심할 만한 지역을 침탈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 씨앗이 뿌려졌다. 거기에다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의 영토 처리를 애매하게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독일은 패전 이후 그전에 약취(略取)한 땅을 모두 반환했다. 한반도의 넓이와 비슷한 동쪽의 영토를 폴란드에 할양했고, 프랑스와 영유권 갈등을 빚어온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넘겨주었다. 반면에 일본은 자국의 본토라고 주장하는 땅을 전부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연원에서 볼 때 외국영토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몇 개의 섬까지도 자국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패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영토 처리는 이처럼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 그것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인접국가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독일의 절박한 운명과 동아시아의 맨 가장자리에서 혼자만으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일본의 처지 차이 때문이었다.<sup>32</sup>

그렇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절박한 운명의 독일은 유럽공동체의 리더로서 부상하여 잃은 영토의 몇 배에 달하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행복한 처지의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하여 보존한 영토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불행하고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할까? 그리고 각각 정반

대의 길을 선택한 독일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어느 쪽이 과연 더 현명했을까? '영토문제'에 대한 독

32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2012, 앞의 책, 57~66쪽

일과 일본의 정책과 선택을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세계사의 시야에서 좀 더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역사의 신(神)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대담한 전후 처리로 인해 땅따먹기식의 국경분쟁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오히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이 결성되어 지역공동체가 실제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침략전쟁에서 획득한 영토를 고수하는 데 집착하여 근린제국(近隣諸國)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토문제'가 여전히 동아시아의 외교쟁점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전이 끝난 지 60년 이상이 경과했는데도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일본에 대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012년 8월 이래 중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폭력을 동반한 반일시위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sup>33</sup>

동아시아에서는 '영토문제'가 흔히 역사문제와 결부되어 폭발하고 있다. 요즘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현안으로 다시 부상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서도 그 일단(一端)을 엿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의 진의(眞意)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간의 언동을 추적해 보면 그러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언론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확실히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인들도 '영토문제'를 역사문제와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치·외교 문제에 민감한 내셔널리스트들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한 세트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012년 8월 이후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라는 우익 활동가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라고 쓴 사각(四角)의 말뚝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묶어 놓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자료와 기록을 전시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연구 홍보하는 동북아역사재

33 《연합뉴스》, 2012. 9. 16 등 참조.

단 독도연구소의 건물에도 부착했다. 나아가 미국의 뉴저지주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와 뉴욕주재 한국총영사관, 일본의 가나자와시(金澤市)에 건립된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에도 같은 말뚝을 부착했다. 심지어는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캠프에도 똑같은 말뚝을 우송했다.<sup>34</sup>

위와 같은 일본인의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인 스스로가 '영토문제'를 역사문제의 일환이거나 상호 관련된 동류의 사안(事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토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배경이자 연원이 된 역사 그 자체와 그것을 다뤄온 내력을 아울러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 VI. 우호신뢰의 한일관계를 향하여 —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극복을 위한 제언

앞으로 한·중·일·러,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의 각국 분위기로 보아서는 유감스럽게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지루한 공방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러 특히 한국과 일본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원인과 내력을 직시하고,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대담하게 양보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희망사항일 뿐이다. 어느 나라의 어느 지도자가 정권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에 대해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있겠는가?

공교롭게도 동아시아의 각국에서는 지금 새 정권이 출현했다. 그런데 각국의 새 정권은 모두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그들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야말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호재(好材)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34 《연합뉴스》, 2012. 8. 22; 10. 27 등 참조.

애국심과 영토주권, 역사주권은 표리일체이다. 새 정권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그러한 심리를 자극하여 집권했다는 공통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중·일·러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거나 2012년 8월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러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출현하고 영토내셔널리즘이 약화되지 않는 동안에는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단칼에 해결하겠다는 조급증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의 처지와 언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금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의 방책은 될 수 있다고 자위해야 한다.<sup>35</sup>

물론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역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는 차치하고라도 한국과 일본만이라도 영토와 역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영토문제'인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이 도발하면 한국이 영유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온 것이 종래의 관행이었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엄연하게 영유하고 있는 국토이다. 그리고 한국인은 독도를 먼 바다에 홀로 솟아 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대일본제국에서 해방된 국가독립의 표상으로 여긴다. 일본인이 후지산을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신앙과 국수(國粹)의 대상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일본이 이런 독도를 어떻게 차지한단 말인가? 일본인은 미국이 후지산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일본은 전쟁과 같은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독도를 빼앗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서 이슈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앞장서서 독도를 이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은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단호하게 관리하는 쪽이 낫다.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사정과 방침을 이해하고 용인해야 한다. 그 대신

<sup>35</sup> 한국 정부의 독도·역사 문제에 대한 간결한 정책 제안으로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최문도, 2013, 「신정부의 대일 독도·역사외교 전망과 정책제안」, 『동북아 역사문제』 72호, 동북아역사재단

에 다른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가 두 나라 사이에서 다른 현안을 압도하는 큰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독도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분위기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게 독도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서 점차 멀어져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더욱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해를 한일 양국이나 연안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중해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동해는 현재 황해에 비해 물자·인간·정보·문화 등의 왕래가 뒤쳐지고 있다. 동해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지중해가 되도록 발전시키면,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대륙과 해양의 번영을 매개하는 허브가 된다. 그리고 동해 속의 독도는 한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영을 선도하는 상징으로 부각될 것이다.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아이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조치를 토대로 하여 응분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일본은 정부 레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 차기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일본의 책임, 사죄, 배상 등을 거부하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모집이나 강제징용자의 피해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과 논리는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sup>36</sup> 다만, 일본 정부가 책임, 사죄, 배상 등을 실현하는 데는

양국의 처지와 여론 등을 감안하여 유연성과 탄력성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 문구의 표현이나 실행의 방법 등은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적절히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다룰 때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해 줄

<sup>36</sup>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로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吉見義明, 2010, 『日本軍「慰安婦」制度とはなにか』, 岩波書店; 坪川宏子·大森典子, 2011, 『司法が認定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加害事實は消せない!』, かもがわブックレット; 吉見義明 監修, 2011, 『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 現代史料出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입법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보상과 지원을 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굳이 공적을 따진다면 지금까지의 조치나마 성취할 수 있도록 진력해 온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제일 높게 평가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공(功)이 있으면 과(過)도 있게 마련이다.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의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하면서 그 공과(功過)를 따져 보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반성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피해자가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양국의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소리(小利)에 집착하지 말고 대리(大利)를 추구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sup>37</sup>

한국과 일본은 불행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와 공영의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일이 만든 ‘기억·책임·미래’재단이 참고가 될 것이다.<sup>38</sup>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연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장학,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기념 등의 사업을 한다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만드는 재단의 이름은 ‘한일미래재단’ 또는 ‘한일우호신뢰재단’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일청구권자금’을 활용하여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몇 개의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37 일본의 전후보상과 역사화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田中宏 他, 2012, 『未解決の戦後補償-問われる日本の過去と未来』, 創史社

38 2000년 8월에 독일 의회를 통과하여 설립된 ‘기억·책임·미래재단(Remembrance·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 EVZ: Erinnerung·Verantwortung·Zukunft)’은 독일의 6,500여 개 기업(50%)과 연방정부(50%)의 후원을 통해 52억 유로(8조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2001~2007년 동안 나치즘 시절의 강제노역, 노동자에게 대한 피해 배상을 실시했다. 44억 유로(6조 원)의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핵심 과제이었던 피해 배상 사업은 2007년에 완료하고, 이후 아래와 같은 분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① 나치 역사 문제 및 현 독일 내 다민족 문제: 20세기 폭압적 역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 활동 지원·장려, 유대인의 독일 사회에 대한 기여·역할 재조명 및 일반인의 인식제고, 현 독일 사회 내 이민자 갈등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간(Intercultural) 이해 증진, ② 인권문제 관련 활동: 역사를 통한 인권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후속세대 교육·장학 사업 등, ③ 나치즘 피해 당사자 지원: 생존 피해자의 치유 개선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조직 및 예산을 살펴보면, 5개 부서(Public Relations, Legal Advise, Department of Programs, Administration, Finance)에 총 30여 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면서, 3억 5천만 유로(5천 3백억 원)의 기금 수익(122억 원)으로 동 재단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동 재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단체도 일본의 ‘전후보상’에 대한 방식으로 이 재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공동선언, 2010. 12. 11.).

바 있다. 한국에서 전전 전후(戰前戰後)에 큰 돈을 번 일본의 기업이 이에 동참하면 좋을 것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 속에는 남북한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신뢰도 들어 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구축하여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선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의 상징적 조치가 바로 ‘한일우호신뢰재단’의 설립일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전후보상’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조치, ‘강제동원’의 경우에는 기업과의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국회, 정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러한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세력의 재편과정을 지켜 보면, 위와 같은 제안은 실현되기 어려운 꿈에 불과하리라는 생각도 든다. 내셔널리스트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일은 궁즉명(窮卽明)이고 정반합(正反合)인 경우도 많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소명의식(召命意識)이 강한 사람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그만큼 통 큰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투철한 국가관, 안전보장, 애국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 다 지난 4월에 별세한 영국의 대처 전 총리를 좋아한다.<sup>39</sup> 선조대(先祖代)부터 친교를 맺어 온 두 정상은 한일관계의 개선이 진정한 국익, 안보, 애국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쉽게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국적·전략적 차원에서 역사와 독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아베 총리는 요즈음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은 자신의 역사인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국회

답변(2013. 5. 15)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아베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와 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39 손열, 2013, 4, 5, “아베 신조와 박근혜”, 《경향신문》

이를 계승하겠다. 자신은 일본이 침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부정한 적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고노 담화와 이해를 같이하면서 정치·외교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태도 표명은 일본과 직접 전쟁을 벌인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한국 정부가 대일 유화정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동아시아공동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제국의 경험을 가진 중국이나 일본은 역사의 업보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 놓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역사의 원죄가 없는 한국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영토와 역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다시 부상한 요즘,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힘써야 한다.

이번에 돌출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는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7년 전인 2005년만 하더라도 ‘독도 문제’와 아스쿠니 참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는 일본과 문화·스포츠 등의 교류를 중단했다. 지방자치기구도 이에 따르고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다른 부문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주장할 것은 당당히 주장하되 교류와 협력은 그대로 추진했다.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다른 부문과 결부시켜 한국을 압박한 것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국민이었다. 중국에서 폭동과 유사한 반일시위가 전국을 휩쓴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번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정부, 학자, 시민 등은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린제국(隣近諸國)의 정부, 연구자, 교육자, 운동가 등과 밀접하게 교류·협력하면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극복

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에 두어야 한다.<sup>40</sup>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이 들지만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신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믿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이 비록 장기간의 방랑이 될지 몰라도 두 나라의 뜻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역사화해를 향한 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40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가 첨예할수록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에 관해 훌륭한 연구자료와 정책제언을 생산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의 저서를 참조할 것.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동아시아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 국문 초록

2011년 말 이후 현재까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한일의 대립과 갈등이 한일관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내역은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수십 년 이래 논란이 되어온 낯익은 현안(懸案)이다. 그런데도 이번 한일관계의 위기는 종래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국의 최고위 정치가 등이 직접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역사갈등과 ‘영토분쟁’이 결합하여 폭발하는 양상이 보인다. 셋째, 한일의 내셔널리즘이 이런 충돌과 결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한일의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한일의 위기상황을 완화하거나 중재하려는 지식인, 시민, 언론인 등의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위기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정치가와 국민이 국제정세의 현실을 직시하고 두 나라의 우호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와 ‘영토’ 문제가 두 나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현안에서 분리하여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 〈주제어〉

한일관계의 위기, 역사갈등, ‘영토문제’, 독도 영유권, 교과서검정, 야스쿠니신사참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 ABSTRACT

Resolving the Crisis in Korea–Japan Relations:  
Disagreements over History and Territory

Chung, Jaejeong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Since late 2011, escalated tension and disagre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historical perceptions and territorial issues have negatively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sovereignty over Dokdo, Japanese history textbooks, visits to Yasukuni Shrine,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and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continue to pose problems. However, the recent crisis in Korea–Japan relations i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highest-ranking politicians of the two countries directly caused or instigated the crisis. Second, historical disagreements and territorial issues combined to cause sharp tension. Third, nationalism in Korea and Japan has tended to join with these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Fourth, Korea and Japan are not showing significant movement to address this crisis although new leaders have taken office in both countries. Fifth,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citizens, and journalists make few efforts to mitigate or intervene in this crisis. Korea and Japan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their citizens and politicians mus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ndscape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Further, the two countries should be wise enough to separate the historical and territorial problems from pending issues in their relations.

## Keywords

Crisis in Korea–Japan relations, historical disagreements, territorial issues, government approval of Japanese textbooks, visits to Yasukuni Shrine,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동아시아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2012, 『일본의 영토분쟁』, 메디치미디어  
 이원덕, 2013, 「박근혜 정부 - 한일과거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동북아  
 역사재단뉴스』 3월호  
 정재정, 2011, 「역사 속에서 본 한일의 문명교류」, 『지식의 지평』 제11호, 한  
 국학술협의회  
 정재정, 2012, 「위기에 선 한일관계: 현황 진단과 타개 방안」, 『일본공간』 1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최운도, 2013, 「신정부의 대일 독도·역사외교 전망과 정책제안」, 『동북아역  
 사문제』 72호,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력위원회, 2013, 「한일협력」  
 정재정 발표문, 2013. 6. 18,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최봉태, 2012. 6. 21,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개인배상권의 인정 이후의  
 과제」, 『한일협정 47년 특별기자회견과 국민보고 자료집』  
 김영희, 2012. 9. 14, “한·일 갈등, MB와 노다가 문제다”, 《중앙일보》  
 빅터 차, 2013. 3. 27, “지금 한국과 일본은 냉전 중”, 《중앙일보》  
 손열, 2013. 4. 5, “아베 신조와 박근혜”, 《경향신문》  
 정재정, 2013. 3. 28, “아베 정권과 교과서 검정”, 《조선일보》  
 “멈추지 않는 日도발, 한일관계 계속 ‘삐걱’”, 《연합뉴스》, 2013. 4. 22  
 “아베 총리의 역사 기억 상실증”, 《중앙일보》, 2013. 4. 12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양국 관계”, 《한국일보》, 2013. 4. 5  
 《동아일보》, 2013. 4. 1; 4. 2  
 《연합뉴스》, 2012. 8. 22; 10. 27  
 《연합뉴스》, 2012. 9. 16  
 《연합뉴스》, 2013. 4. 22  
 《조선일보》, 2012. 8. 11; 8. 13  
 《중앙일보》, 2013. 4. 22

[일본어 문헌]

吉見義明, 2010, 『日本軍「慰安婦」制度とはなにか』, 岩波書店  
 吉見義明 監修, 2011, 『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 現代史料出版  
 東郷和彦·阪正康, 2012, 『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 竹島, 尖閣諸島』,  
 角川書店  
 田中宏 他, 2012, 『未解決の戦後補償—問われる日本の過去と未来』, 創史社  
 志水紀代子·山下英愛, 2012, 『シンポジウム記録, 「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  
 けて—開かれた議論のために』, 白澤社  
 坪川宏子·大森典子, 2011, 『司法が認定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加害事  
 実は消せない!』, かもがわブックレット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社説 “大統領竹島訪問 日韓の未来志向壊した”, 《東京新聞》, 2012. 8. 12  
 社説 “首相親書返還 対話の道は閉じるな”, 《東京新聞》, 2012. 8. 24  
 社説 “日韓新政権 交流深めて懸案解決を”, 《東京新聞》, 2013. 3. 4  
 《読売新聞》, 2013. 4. 18  
 《朝日新聞》, 2011. 12. 18; 12. 19

[홈페이지 자료]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일본 内閣府 홈페이지(www.cao.go.jp)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 이석우 |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 최영호 |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 와다하루키 |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법률용어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권 또는 영유권이란 용어가 있다.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이 국제법상의 개념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느 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 내지는 영유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와 각종 국제사법기관에서 결정된 영토 분쟁에 관한 판례들을 통하여 정립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첫째, 특정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실질적·지속적·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영토 주권은 분쟁 대상인 영토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셋째, 영토 주권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발현을 의미하는 국가 및 정부 권한의 기능 행사에 관해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하는 증거들을 평가함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근소한 우세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그리고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 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sup>1</sup>

이러한 전통적인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현재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에 적용해 보면, 일견(一見)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또는 영유권 행사에 대해 어떠한 이론을 제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또는 영유권 행사 주장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즉,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1905년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에 따른 독도 편입조치 이전까지는 그 이전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 입증과 울릉도와 독도의 종속관계를 강조한 이른바 ‘하나의 단위체(single unit)’ 접근, 둘째, 1905~1945년 해방까지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침탈 과정에 대한 법리적·역사적 비판, 셋째, 1945~1952년까지는 한국의 독립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그리고 독도 영유권의 비결정성(indeterminacy) 강조, 그리고 넷째, 1952년 이후 현재까지는 1952년 소위 평화선 선포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데,<sup>2</sup> 이러한 주장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이 이러한 주장을 얼마만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냐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러한 작업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1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Seokwoo Lee, 2000, “Continuing Relevance of Traditional Modes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a Modest Proposal”, 16 *Connecticut J. Int'l L.* 1-22; Surya Sharma, 1997,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pp. 35~160 등 참조.

2 이석우, 2009,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 설정의 필요성: 독도와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5호, 백산학회, 302쪽

3 대일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패전국 일

즉, 17세기 이른바 ‘울릉도쟁계’, 즉 울릉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 진행과정에서 독도의 지위에 대한 평가,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에 언급된 석도(石島)가 과연 현재의 독도인지에 대한 평가, 일본이 강조하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에의 편입은 그 이전인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연합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sup>3</sup> 1952년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와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심을 구성하는 이러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법리적인 체계의 재구성을 살펴보면, 동 주장을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어, 즉 증거능력, 실증성, 식민지문제, 역사, 타자(他者) 등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어가 현대 국제법에서 어떠한 지위와 이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일 간 독도 문제의 접근에 착근되어야 한다.<sup>4</sup>

## 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국제법상 전시점령국은 피점령국의 영토에 대하여 어떠한 권원이나 권한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피점령국 영토의 지위는 평화조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전시점령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피점령국의 주권이 당연히 법적으로 점령국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점령 당국은 점령지의 질서유지와 평화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권한과 수단을 취득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전시점령군의 권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적용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승국들이 패전국의 영토에 대한 처분행위가 사실상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실질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용인되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의 동맹국(Central Powers)이나 제2차세계대전의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의 패배 이후, 주요 승전국가들은 해당 패전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공동으로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1919년과 1920년에 연합국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llied and Associated States)에서 취

본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연합국의 정무적인 편의성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이석우, 2010,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제3분과 편), 63~81쪽, 교육과학기술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제2기) (동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2010,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재편』, 1~31쪽, 경인문화사(한일관계사연구논집 18)에 재수록되었다.); 이석우, 201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 동북아국제질서의 재편」, 조광·손승철 편, 『한일역사의 쟁점 2010- 하나의 역사, 두가지 생각』, 213~237쪽 참조.

<sup>4</sup> 이석우,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호, 47~63쪽 참조.

해진 결정과 1943년과 1945년의 테헤란, 알타, 포츠담 그리고 이후의 외무장관회의는 이러한 처분권 행사의 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를 살펴보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에서 전승국인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 간의 관계형성에 대한 국제법적·정치외교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패전국 일본의 영토에 대한 법적인 처분행위가 명시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한 주요 연합국들 간의 이해관계 형성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및 중국의 국가수반이 참석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 방침을 정한 1943년 12월 1일자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한국 인민(people of Korea)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정하였다”<sup>5</sup>라고 명시하였다.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문구는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부수적 섬들(minor islands)에 국한될 것이다”<sup>6</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에 따르면 “우리(일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해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

<sup>5</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US Department of State [이하, ‘USDOS’], 196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s of Cairo and Teheran*, pp. 448~449; USDOS, 1950,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Basic Documents*, p. 20

<sup>6</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USDOS, *Dept. of State Publication*, 2671 (Far Eastern Series, 17), p. 53; USDO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id.*, pp. 28~40

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 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sup>7</sup>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선언(declaration)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응(prima facie)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 역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9월 2일자 항복문서를 통해 우선 포츠담선언의 제 8항을 수락함은 물론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포츠담선언은 일반 국제법상 단순한 선언적 효력을 지닌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로 그치지 않고, 연합국 측과 일본국 간에 합의된 국제문서, 즉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문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945년 9월 2일자 항복문서의 법적 성격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한 연합국 측의 전후 처리에 관한 제안(offer)을 패전국인 일본이 수락(acceptance)하는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항복문서 자체가 명확하게 “조항들을 수락한다(accept the provisions)”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작성한 “법적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

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에서는 일방적 선언의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여 법적 권리나 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8</sup> 특히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원칙 제3조는 일방적 선언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언의 내용 및 선언이 이루어진 사실적 배경과 그 선언에 대한 반응(reaction)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비록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국이 행한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법위원회 기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합국의 공동선언이라 하여 그 법적 성격을 일국의 일방적 선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7 USDOS, Aug. 19, 1945, *Dept. of State Bulletin*, pp. 257~259 (“[Japan] ... accept[s]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Potsdam Proclamation] ...”)

8 UN Doc A/CN.4/L.706 of 20 July 2006. 1974년 프랑스의 핵실험 중지 선언, 1957년 4월 24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선언, 요르단의 West Bank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 등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일방적 선언의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9 “3. To determine the legal effects of such declara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ir content, of all the factual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made, and of the reactions to which they gave rise”, *Id.*

우선 내용과 관련하여 포츠담선언 제8항은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라는 처분적 성격을 지닌 조항으로서 이 조항에서 사용된 “shall”이란 표현은 일본의 항복문서를 통한 수락에 의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제조약상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 내지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일본의 항복 문서에 의한 수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포츠담선언의 다른 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이며 처분적인 성격과 내용으로 인해 최소한 연합국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형식에서도 공개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당해 선언들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으므로 명백하게 관련 문구들은 연합국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원칙 제 9항은 일방적 선언이 과연 타국에 대해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그러한 타국의 선언에 대한 명백한 수락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sup>10</sup>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명시적으로 포츠담선언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천명하였으므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음은 물론 신의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 양 선언의 당사국인 중국의 경우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sup>11</sup>

또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제8항은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일본의 패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적 배경을 지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승전국은 패전국의 영토를 취급하는 처분적 권능을 보유하기 마련이므로 당해 선언의 관련 문구는 연합국의 이러한 처분적 권능의 행사이기 때문에 처분의 결과인 패전국인 일본도 구속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츠담선언 제8항은 일본의 주권 범위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10 “9. No obligation may result for other States from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a State. However, the other State or States concerned may inc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such a unilateral declar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clearly accepted such a declaration”, *Id.*

11 Wang Tieya, 1990, “International Law in Chin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pp. 203~357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카이로선언의 문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첫째, 1914년 제1차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내의 모든 섬, 둘째, 1814~1895년 사이에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에게서 침탈한 만주, 대만, 펑호도 등의 지역, 셋째,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 중 세 번째 지역인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취한 지역의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약탈된 것으로 주장되는 한국의 영토처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전승국인 연합국이 패전 일본의 영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토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취한 한국에 귀속되는 영토인지, 아니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는 영토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과정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이와 관련, 카이로선언에 명시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라는 규정과 관련, 당시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영토를 추가적으로 취득해 왔기 때문에 동 규정을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sup>12</sup>는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II. 카이로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945년 7월 발표된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연합국

12 USDOS, William J. Sebald (US POLAD for Japan), 1950, 2.10, “Views on Peace Treaty with Japan”. [USNARA/Doc. No.: N/A] (on file with author) (“the expulsion of Japan from the territory which she took by violence and greed is difficult for the Japanese to understand, since all countries have acquired additional territory in such a way.”)

13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2013,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http://dokdo.mofa.go.kr/upload/korea.pdf, 접속일: 2013. 4. 10), 11쪽, 반면,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에서 출간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접속일: 2013. 4. 10)에는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 가운데 카이로,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에 대한 기술은 없다.

14 3 Bevans 1022; USDO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supra note 5, pp. 23~28; USDOS, Feb. 24, 1946, *Dept. of State Bulletin* 282

15 미국의 법제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알타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구속되지 않지만, 영국의 법제도는 영국 수상이 동 협정에서 합의한 영토 처분과 관련한 사항에 구속될 수 있을 것이다. Hill, F., 1995, “A Disagreement between Allie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Japanese Territorial Dispute, 1945-1956,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9-14 (Fall). 동 사항과 관련한 영국 정부 및 여타 연방국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USDOS, 1947, 9, 2, “Incoming Telegram from Ambassador Butler (Canberra) to Secretary of State”, [USNARA/740.0011 PW (PEACE)/9-247] (“Despite secrecy of Yalta [A]greement it looks as though it must be accepted.”); USDOS, 1947, 9, 1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ritish Commonwealth Conference on Japanese Treaty”, [USNARA/Doc. No.: N/A] (on file with author) (“The Canberra Conference agreed that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Cairo, Potsdam and Yalta would have to be confirmed in the treaty.”); Australian Legation (Rio de Janeiro), 1947, 9, 3, “Copy of a Telegram received from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Canberra, by Australian Minis-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영토가 되었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 되었습니다.”<sup>13</sup>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관련한 이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구도 내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관련한 제반 선언들이 주요 연합국들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단순한 선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영토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논쟁은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선언보다는 쿠릴섬(북방영토)의 영토 처분과 관련하여 1945년 2월 알타협정<sup>14</sup>의 경우에 보다 첨예하게 노정되었다.<sup>15</sup>

알타협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회(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차관(Parliamentary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과 조약국장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과 알타협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즉, “일본이 평화회의에서 포츠담과 카이로 선언을 준수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비밀협정인 알타협정에 일본은 구속되지 않는다. 카이로 선언에 언급된 연합국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는 영토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화회의에서 결정한다.”<sup>16</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이해는, 독도로부터의 일본의 축출은 포츠담 선언 제8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결국 독도에서 일본을 축출하는 것은 이미 카이로선언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연합국이 추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본의 부수적 섬에는 독도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미국, 영국, 중국 및 일본의 행위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항복문서를 통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으므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오로지 연합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신의 부수적 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이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연합국이 발표한 1943년 12월 1일자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을 통하여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원칙이 정하여졌고, 그 원칙은 1945년 9월 2일자 일본의 항복문서에 수용되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은 연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으나,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와 연합국 대표들이 서명한 일본의 항복문서에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서가 하나의 법적인

구도로 통합되어 연합국과 일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되었다. 이들 문서에 명시된 제 원칙하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패전 일본의 전후 영토처리 작업에 관여한 미국 국무성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영토처리가 카이로, 포츠담 등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일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sup>17</sup> 그리고 이러한 전후처리 조치의 합의에 대한 이행과 관련한 미국의 조사와 정책적 결정이 실질적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영토처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 있었다.<sup>18</sup>

일본 스스로도 평화회의를 통한 포츠담과 카이로 선언의 의무 준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카이로 선언에 언급된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는 영토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행해진 대일평화조약에서의 영토처리는 결국 연합국 측의 패전 일본의 영토에 대한 전후 처리와 관련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독립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처리 과정을 분석해 보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당시 정부적인 이해관계의 여파로 비결정(indeterminacy)된 상태로 잔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sup>19</sup>

결과적으로 전승국인 연합국이 패전 일본의 영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토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한국에 귀속되는 영토인지, 아니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는 영토

17 USDOS, 1947. 10. 8, "Communicated Orally: Presented by Hubert Graves (Counselor, British Embassy) to Hugh Borton (Acting Special Assistant to the Director,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USNARA/740.0011 PW (PEACE)/10-847]

18 USDOS, 1949. 12. 29, "Commentary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USNARA/Doc. No.: N/A] (on file with author)

19 이와 관련, Seokwoo Lee and Jon M. Van Dyke, 2010,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s Relevance to the Sovereignty of Dokdo", 9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41-762; Seokwoo Lee, "DOKD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ternational Law on Territorial Disputes, and Historical Criticism", 35 *Asian Perspective* 361-380; Seokwoo Lee, 2011,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and the Legacy of U.S. Security Interests in East Asia", in Seokwoo Lee and Hee Eun Lee (eds.),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ter at Rio de Janeiro at 1300 on 2nd, September, 1947", [USNARA/740.0011 PW (PEACE)/9-347] 등 참조.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natural that Japan should accept Potsdam and Cairo Declarations at the peace conference. "We agree with you that Japan will not be bounded by the Yalta Agreement, which is a secret agreement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Under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the question of the territorial rights to the islands around the Japanese mainland will be settled at the peace conference. ..." *Nihon Keizai Shimbun*, "Japan May Claim Territorial Rights to South Kuriles, Bonins, Okinawas & Iojima, State Gov't Spokesmen", Dec. 22, 1949 (on file with author)

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한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을 당시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일본이 강조하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에의 편입은, 그 이전인,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명시된 카이로선언의 규정 이행과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기타 소도서에 한정될 것이라는 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항복문서에의 수용은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합국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인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일본 영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국문 초록

연합국이 발표한 1943년 12월 1일자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을 통하여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원칙이 정하여졌고, 그 원칙은 1945년 9월 2일자 일본의 항복문서에 수용되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은 연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으나,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와 연합국 대표들이 서명한 일본의 항복문서에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서가 하나의 법적인 구도로 통합되어 연합국과 일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되었다. 이들 문서에 명시된 제 원칙하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처리 과정을 분석해 보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당시 정무적인 이해관계의 여파로 비결정(indeterminacy)된 상태로 잔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승국인 연합국이 패전 일본의 영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토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취한 한국에 귀속되는 영토인지, 아니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 측이 결정하는 부수적 도서에 해당되어 일본에 잔존해야 하는 영토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한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을 당시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일본이 강조하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에의 편입은, 그 이전인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주제어〉

독도, 카이로선언, 국제법

## ABSTRACT

## The Post-World War Two Settlement of the Dokdo Issue and the Legal Effect of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Lee, Seokwoo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having legal binding force clearly limits the scope of Japan's sovereignty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determined by the Allied Powers. It also requires that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be carried out.

The Cairo Declaration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Korea. It also strips Japan of 1)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which it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2) all the territories Japan stole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and 3) all other territories which it took by violence and greed.

There is no time limit to the other territorie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from which Japan was to be expelled. Thus, because Dokdo w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pursuant to the 1905 notice of Shimane Prefecture, Japan must duly be expelled from Dokdo.

Japan's expulsion from Dokdo is the fulfillment in good faith of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and as Japan's expulsion was already settled by the Cairo Declaration, Dokdo did not have to be included in the minor islands to be determined by the Allied Powers. Therefore, th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hina, and Japan at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among Japan and 48 states must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Further, as Japan accepted the terms of the Cairo and Potsdam declarations through its Instrument of Surrender, for Japan to intervene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scope of minor islands originally to be determined by the Allied Powers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promissory estoppel under international law.

## Keywords

Dokdo, Cairo Declaration, international law

## 참고문헌

3 Bevans 1022

Australian Legation (Rio de Janeiro), 1947. 9. 3, "Copy of a Telegram received from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Canberra, by Australian Minister at Rio de Janeiro at 1300 on 2nd, September, 1947" [USNARA/740.0011 PW (PEACE)/9-347]

UN Doc A/CN.4/L.706 of 20 July 2006

US Department of State [이하, 'USDOS'], 196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s of Cairo and Teheran*

USDOS, 1949. 12. 29, "Commentary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USNARA/Doc. No.: N/A] (on file with author)

USDOS, 1947. 10. 8, "Communicated Orally: Presented by Hubert Graves (Counselor, British Embassy) to Hugh Borton (Acting Special Assistant to the Director,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USNARA/740.0011 PW (PEACE)/10-847]

USDOS, 1947. 9. 2, "Incoming Telegram from Ambassador Butler (Canberra) to Secretary of State" [USNARA/740.0011 PW (PEACE)/9-247]

USDOS, 1947. 9. 1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ritish Commonwealth Conference on Japanese Treaty" [USNARA/Doc. No.: N/A] (on file with author)

USDOS, 1950,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Basic Documents*

USDOS, Feb. 24, 1946, *Dept. of State Bulletin*

USDOS, Aug. 19, 1945, *Dept. of State Bulletin*

USDOS, *Dept. of State Publication*, 2671 (Far Eastern Series, 17)

USDOS, William J. Sebald (US POLAD for Japan), 1950. 2. 10, "Views on Peace Treaty with Japan" [USNARA/Doc. No.: N/A] (on file with author)

Hill, F., 1955, "A Disagreement between Allie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Japanese Territorial Dispute, 1945-1956,"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9-14 (Fall)

Lee, Seokwoo and Jon M. Van Dyke, 2010,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s Relevance to the Sovereignty of Dokdo” 9,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41-762

Lee, Seokwoo, 2000, “Continuing Relevance of Traditional Modes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a Modest Proposal” 16, *Connecticut J. Int'l L.*, 1-22

Lee, Seokwoo, 2011, “DOKD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ternational Law on Territorial Disputes, and Historical Criticism” 35, *Asian Perspective* 361-380

Lee, Seokwoo, 2011,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and the Legacy of U.S. Security Interests in East Asia”, in Seokwoo Lee and Hee Eun Lee eds.,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Surya Sharma, 1997,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Wang Tieya, 1990, “International Law in Chin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Japan May Claim Territorial Rights to South Kuriles, Bonins, Okinawas & Iojima, State Gov't Spokesmen”, *Nihon Keizai Shimbun*, Dec. 22, 1949 (on file with author)

외교부, 2013,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http://dokdo.mofa.go.kr/upload/korea.pdf>, 접속일: 2013. 4. 10)

이석우, 2009,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설정의 필요성: 독도와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5호, 백산학회

이석우, 201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 동북아국제질서의 재편」, 조광, 손승철 편, 『한일역사의 쟁점 2010 - 하나의 역사, 두가지 생각』

이석우, 2010,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제3분과 편), 교육과학기술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제2기) (동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2010,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재편』, 경인문화사(한일관계사연구논집 18)에 제수록되었다.)

이석우, 2010. 6,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호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2013,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접속일: 2013. 4. 10)

#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카이로선언에 관한 한국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카이로선언에 한반도 관련 문구가 채택되는 과정을 미국 측 사료에 입각하여 규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3년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 미국, 영국, 중국의 3국 정상은 북아프리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극동아시아 지역의 재편에 관하여 논의했다.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장제스(蔣介石) 대원수,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총리는 각국의 군사고문과 외교고문을 대동하고 카이로의 메나(Mena) 지구에 모였다. 이들은 몇 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수정 작업을 거친 후 12월 1일 테헤란 코뮌iqué와 함께 카이로 코뮌iqué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1914년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제국이 점령한 해외영토에 관하여 내린 최초의 공식문서이면서 한반도의 독립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적 약속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제국의 전쟁수행에 총동원되고 있던 이 시기에 연합 동맹국들은 이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와 조선인의 식민지배 상태를 확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발표문 내용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자에 따라 다양각색이다. 여기서는 카이로 코뮌iqué가 보도된 직후 12월 2일자 《신한민보별보》에 실린 번역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카이로 코뮌iqué에 관한 최초의 한국어 번역문이며 당시 재미 한인 사회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sup>1</sup> 이 자료가 한반도 독립의 절차에 관한 문구 in due course를 ‘당연한 순서’로 번역하고 있어, 이 글에서도 동일한 번역 문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기(首記)의 군사적 사절은 장차 일본에 대항하여 군사적 작전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저 잔악한 원수를 바다로, 류지로, 공중으로부터 대항하여 용서없이 압박할 것을 결의한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압박은 벌써 시작되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형벌하고 역제하려고 이 전쟁을 싸운다. 3국은 각자의 리득을 위하지 아니하며 또 령토적 확장을 생각지 않는다. 3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세계 제1전쟁이 시작된 이후 점령한 섬이나 혹은 획득한 섬을 전부 탈환할 것이며, 또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령지 즉 만주, 대만, 펑호렬도 등을 반드시 중화민국에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역시 일본이 폭력과 욕심으로 취한 모든 다른 령지로부터 방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 말한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적 생활을 주의하여, 당연한 순서에 따라 한국이 반드시 자유되며 독립되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상에 진술한 목적으로 3대 연합국은 일본으로 더부러 교전하난 연합국들로 합동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오기에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 작전을 두호(斗護)하여야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코뮌iqué는 다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

<sup>1</sup> 《新韓民報別報》(EXTRA The New Korea)는 1943년 12월 2일부로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라는 소제목으로 격문을 발행하고 카이로 회의 보도 자료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재미 조선인 사회에 알렸다. 이 자료는 앞부분에 Korea will live again!이라고 하며 감격을 표현했다.

하고 있었다. 첫째, 연합국 3국은 일본에 대해 가차없는 압력을 가한다. 둘째, 연합국 3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제지하고 응징하면서도 영토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취득한 태평양제도의 박탈, 만주와 타이완 등의 중국에 대한 반환, 일체의 점령지역으로부터 일본을 쫓아낸다. 넷째,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 이 코뮌iqué는 발표와 함께 곧바로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 포츠담선언이 제8조에서 이것을 ‘카이로선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승한다고 했고, 일본이 패전에 임하여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sup>2</sup>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카이로선언과 한국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해 왔다. 그런데 한반도의 국가독립은 냉전으로 인한 분단 가운데서 이루어진 까닭에 한국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분단이나 한국전쟁의 기원, 즉 ‘불행한 현실’의 기원에 관하여 주된 연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관심 아래에서 카이로선언의 배경과 과정을 다루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연구자들은 서구의 연구와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카이로선언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제1세대에 속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제2세대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사료 조사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sup>4</sup> 제1세대와 제2세대 연구자들에 거서는 카이로선언에 이르는 과정의 사실 규명에 집중했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카이로선언에 관한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을 계승하며 독창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카이로선언 관련 연구에서 제3세대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정일화 박사를 꼽고 싶다.<sup>5</sup> 정일화의 연구에서는 카이

로선언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사실 규명과 함께 발표문을 초안한 홉킨스(Harry L. Hopkins) 특별보좌관에 대한 높은 평가, 대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낮은 평가, 발표문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되는 ‘행운의’ 기회 등이 특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자가 일차적 자료의 발굴에 집요함을 보인 점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다만 과거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발표문 작성에 관한 자료 발굴과 홉킨스에 관한 조사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정치적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일화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데 충실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인 신진 연구자들 사이에서 카이로선언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sup>6</sup> 과거 연구자들이 한반도 국가독립과 분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카이로선언을 연구해 온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에 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고 하는 점에서 시대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이나 국제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카이로선언에 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05년 2월 일본이 시마네현

에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독도가 카이로선언이 규정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속한다는 논지에 충실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신진 연구자들도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일찍이 제1세대의 연구자들이 개발해 온 논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sup>7</sup>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카이로선언은 준비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여기에 영국이나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동조했으며, 나아가 테헤란회의에서 소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카이로회

2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264~265쪽

3 Soon Sung Cho, 1967,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25; 조승순, 1982, 『한국분단사』, 형성사, 21~31쪽; 정용석, 1971, 『38선획정과 미국의 책임』, 『신동아』 1971년 8월호, 124~137쪽; 김학준, 1975,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7~11쪽

4 유병용, 1992, 『제2차대전중 한국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영국의 외교정책연구』, 『역사학보』 134·135합본, 165~195쪽; 신복룡, 1994, 『한국 신탁통치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구도와 변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2, 25~51쪽; 정용욱, 1993, 『해방이전 미국의 대한구상과 대한정책』, 『한국사연구』 83, 87~138쪽; 구대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제2장~제4장

5 정일화, 2010,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선한약속

6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카이로선언’으로 검색한 결과 2000년 이후 2013년 3월 말까지 총 19편이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신진 연구자들이 카이로선언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일찍이 카이로선언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찾고 한국 측 논지를 개발한 대표적인 연구로 신용하와 김학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253~255쪽; 김학준, 1996, 『독도는 우리 땅』, 한울기, 120~122쪽

담 시기에는 물론 일본 점령 초기에 이르기까지도 연합국의 주된 관심은 과거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영토에서 일본을 철수시키는 포괄적인 방침 설정에 있었으며, 한반도 지리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정보에 머물러 있었고 독도 등 세부적인 영역 확정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밝혀졌다.<sup>8</sup>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국제정치적 배경을 정리하고, 미국의 외교자료를 분석하면서 카이로 코뮈니케에 ‘Korea’ 문구가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대상 외교자료로서는 미국무부의 대외관계 자료인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이하 *FRUS*로 약칭함), 그 가운데서도 카이로와 테헤란 회의에 관한 자료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그리고 맺음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시켜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 II.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배경

### 1. 루스벨트의 국제적 신탁통치 구상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을 꺼리고 점진적으로 자국의 지위를 확대해 가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었다. 국무부, 군부, 재계가 각각의 전쟁 수행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영국과 독일과 같은 유럽 세력이 장기간의 전쟁으로 약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재생을 원조해 가면서 독일 세력을 소련과의 대치 상황에 묶어 놓는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의 남방 진출을 억제하고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 묶어 놓겠다고 하는 구상이었다.

8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 점령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가운데 영토범위 설정문제에 착목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태기, 2009, 『미국의 독도정책 입안연구: 1942~1946년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장~제4장을 들 수 있다.

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pp. 1~891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제국에서의 분리와 같은 방침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을 장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세계’에 통합한다는 포괄적인 현상유지 구상에 머물러 있었다.<sup>10</sup>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당하고 나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향으로 급선회했다.<sup>11</sup> 국내외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전쟁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 안에서 일본제국에서 한반도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보다 구체화된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일찍이 미국무부는 1941년 12월 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 ACPWFP)’를 설치했다. 자문위원회 의장에는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이 임명되었고 그 산하에 정치, 안전보장, 영토, 경제에 관한 4개의 소위원회가 배치되었다.<sup>12</sup>

ACPWFP의 정치소위원회는 1942년 여름을 전후하여 일본제국의 전후처리 구상에 관하여 논의를 거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만주는 중국에 귀속시키고 한반도는 일정기간 국제적 보호 아래 두되 궁극적으로는 독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방침은 종래의 동아시아 구상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여 나온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전후에 들어 주변 강대국과 현지 토착세력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서 국제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하여 소련과 중국 등 강대국의 개입을 조정하고 토착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sup>13</sup>

10 정용욱, 1993, 앞의 글, 90~92쪽

11 진주만 공격 직후 루스벨트는 처칠 수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게 되었다”(We are all in the same boat now)라고 하며 전쟁에 대한 적극 개입 의사를 밝혔다. James MacGregor Burns, 1970, *Roosevelt: the soldier of freedom*, vol. 2.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p. 163

12 김태기, 2009, 앞의 책, 7~9쪽

13 정용욱, 1993, 앞의 글, 93~94쪽

미국 정부는 ACPWFP의 소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이미 국무부 안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특별조사과(Division of Special Research)를 활용했다. 특별조사과에는 세계 각 지역에 관한 민간인 전문가들이 등용되었는데 1942년 9월 시점에는 극동반(Far East Unit)이 편성되어 일본에 관한 조사와 자문을 담당했다. 자연스럽게 극동반에는 친일본적 성향을 가진 일본 전문가,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권위자 블

랙슬리(Goerge H. Blakeslee) 클라크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일본사에 관한 전문가 보튼(Hugh Borton) 컬럼비아대학 조교수 등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군사 제국’ 일본이 붕괴한 후 평화적인 경제국가로 다시 태어나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국무부에 주문했다.<sup>14</sup>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내세우는 가운데 국무부에서 올라오는 유화적인 대일정책을 보류하고 홉킨스와 같은 보좌관과 함께 높은 수준의 외교(high level diplomacy)를 전개했다. 미국이 카이로회담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국무부의 대일정책 기조와는 다른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대일 자세가 있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억누르지 않고 적당히 휴전을 허용한 것이 결국 제2차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에서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를 고려하고 있었다. 두 번 다시 세계평화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침략국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파괴해야 하며 전승국의 주도 아래 침략국에 대한 전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견해는 1943년 1월의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제시된 ‘무조건 항복’ 성명에 그대로 나타났다.<sup>15</sup>

또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중도 좌파(a little left of center)’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sup>16</sup>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의 반식민주의 철학을 신윌슨주의(Neo-Wilsonianism)라고 할 수도 있다. 그는 윌슨 대통령 재임 시에 해군성 차관보를 역임하면서 미국의 해군력 신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윌슨 대통령이 품고 있던 민족자결주의, 국제평화주의, 제국주의의 종식, 무력침략에 의한 영토 확장의 반대,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 군비 감축, 세계경제 질서의 구상 등, ‘이상주의적’ 정책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윌슨의 철학을 국제정치 현실에 반영하고자 했다. 루스벨트의

14 五百旗頭眞, 1999, 『戦後日本外交史』, 有斐閣アルマ, 23~24쪽

15 Brian P. Farrell, 1993, "Symbol of paradox: The Casablanca Conference 1943," *Canadian Journal of History*, 28-1, pp. 21~40

16 David F. Burg, 2005, *The Great Depression. Eyewitness History*, New York: Facts on File, p. 182

반식민주의 철학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아프리카 식민통치의 폐단에서 싹튼 것이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의 신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견해가 한반도의 전후 처리 방식에서 강대국에 의한 국제적 신탁통치를 내세우게 되는 방침으로 귀결되어갔다.

견해에 따라서는 루스벨트의 신탁통치 구상을 그의 이상주의적 사상에 결부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당시 미국인 대중의 대외인식을 현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즉 반식민주의의 표현으로 나타난 국제신탁통치 구상은 루스벨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대외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 종결을 앞두고 미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던 대외인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루스벨트의 일련의 전후처리 구상은 정치적 리더의 외로운 고민에 따른 비전이 아니었고 미국 사회의 일반 대중을 대변하는 정치가가 모색한 정책적 대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sup>17</sup>

시기적으로 1943년 5월 북부 아프리카에서 독일·이탈리아 군대가 연합국에 항복한 것을 비롯하여 소련군의 총공세에 따라 독일군은 패퇴를 거듭했고 대서양에서도 독일 잠수함이 연일 패배를 맛보았다. 연합국의 전략가들은 대체로 1944년에는 독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예상했고 그 후에 집중된 대일전을 통해 일본은 2~3년 안에 패망할 것으로 내다봤다.<sup>18</sup> 그리고 연합국의 완전 승리에는 소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외상회의와 12월의 테헤란회담을 열게 되었다.<sup>19</sup>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공동전선을 공고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을 불러들여 카이로회담을 갖게 되었다.

1943년에 들어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자 한편으로는 전쟁수행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민족과의 전략적 평화를 시도했다. 즉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미얀마·필리핀을 독립시키는가 하

17 신복룡, 1994, 앞의 글, 30~31쪽

18 W. H. 맥니어, 1982, 『大國の陰謀』, 図書出版社, 177쪽

19 W. H. 맥니어, 1982, 위의 책, 126~130쪽

면 대동아공영권 정상회담을 유치하여 점령지역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것이다.<sup>20</sup> 유럽 제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면서까지 전쟁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우월한 전후 질서를 구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 대해서는 구 식민지 체제의 완전한 부활이 이미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해관계가 뒤엎힌 연합국으로서는 당면한 대일전선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겠다고 하는 기본전략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개별 전투에 대한 개입 전술이나 전후처리 구상 등에서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의 전후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태평양전쟁 초기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무부는 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국제적 신탁통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이러한 방안을 승인해 왔다.<sup>21</sup>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합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전후처리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에 대해서 이를 거부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입의 적극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미국의 주도에 이끌려 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1943년 10월 하순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회의는 4대 강국에 의한 전후 국제연합 체제를 결정했다. 이 회의가 끝날 즈음 루스벨트는 장제스에게 이집트 회의에 초대하는 전보를 보냈다. 비록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련이 참가하지 못하여 4대 강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카이로회담 직후의 테헤란회담에 스탈린이 참여함으로써 전후 질서 재편으로 위한 4대 강국 체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sup>22</sup>

## 2. 영국·중국·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신탁통치 방식의 식민지 독립을 원

하지 않았고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 중국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하고 국제신탁통치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과의 전투에 쫓기고 있던 영국은 장래의 구상보다는 당면한 전투의 수행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42년 2월 싱가포르 함락에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공세로 곤궁에 빠져 있었다. 여기에다가 전황 극복을 위하여 미국에서 막대한 군비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미국의 연합국 규합과 전후 구성에 대해 강렬히 저항하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sup>23</sup>

1941년 8월 영국의 처칠 수상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민족자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을 발표했다. 이 헌장은 제1조에서 양국의 영토 확장 의도를 부정한 것을 비롯하여, 제2조에서 영토 변경 때 관계국 인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 제3조에서 민족자결권을 인정할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제3조에서 내세운 민족자결권의 주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이 조항이 세계 전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간주한 것에 대해, 처칠은 나치 독일 점령하의 유럽 국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국이 광범위하게 식민지를 영위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sup>24</sup>

영국이 전시 정책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정책 견해를 보인 것은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었다. 1943년 3월 이든(Anthony Eden) 외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전후처리에 관하여 루스벨트와 회담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때 미국과 영국은 전후에 만주와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고 남부 사할린을 소련에 반환하는 것에는 견해를 같이했으나 그 외의 지역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특히 한반도나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중국이 경찰국가로 나서는 것에 대해 영국은 반대했다. 그리고 태평양의 일본 위임통치령에 대한 전후처리 방침에서도 미영 양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때 미국 측은 모든 지역에서 신탁통치와 같은 국제적 해결

20 細谷千博, 1982, 『日英關係史1917-49』, 東京大学出版会, 185~187쪽

21 Marc S. Gallicchio, 1988, *The Cold War Begins in Asia: American East Asian Policy and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4

22 サンケイ新聞社, 1985, 『蒋介石秘録(下)』, サンケイ出版, 372~374쪽

23 細谷千博, 1982, 앞의 책, 204~207쪽

24 Neta C. Crawford, 2002, *Argument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thics, Decolonizat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97

을 주장했고, 영국 측은 일부 지역에서 국제적 해결이 아닌 단일국의 통치 또는 병합을 주장했다.<sup>25</sup> 결국 카이로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무부와 영국의 외무성은 아시아 지역의 전후처리 방침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중국 단독이 아닌 다수 관련 국가들에 의한 국제신탁통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sup>26</sup>

1943년 4월 이후 카이로회담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의회와 외무성이 대외정책을 논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전후처리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전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자국의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 처리와 관련하여 미국 측이 주장하는 국제신탁통치 방식에 따른 식민지 전후처리 방침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었다.<sup>27</sup> 이와 같이 영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존 식민지의 유지라고 하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적 합의에 따른 식민지 독립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었고 일본의 패퇴에 따른 지역적 공백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패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패권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군사적·경제적인 지원을 적극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미국 측의 한반도 국제신탁통치 구상을 부정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미국에 이끌려가는 형세를 보였다. 중일전쟁에 밀려 1938년부터 충칭[重慶]으로 피신해 있던 국민당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맹주 위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진주만 공격 직후 장제스는 곧바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의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종래의 고립상태를 탈피하고 연합국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sup>28</sup> 또한 1942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합국 공동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중국이 4대 강국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서명한 이후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한

25 유병용, 1992, 앞의 글, 169~175쪽

26 조승순, 1982, 앞의 책, 23~24쪽

27 유병용, 1992, 앞의 글, 176쪽

28 Hollington K. Tong, 1953, *Chiang Kai-Shek*, Taipei: China Publishing Company, pp. 290~291

반도의 전후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세력이 몰려나오기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sup>29</sup>

다만 1943년에 들어 연합국의 세력 판도에 따라 일본의 패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실지회복에 단독으로 나설 것을 희망하는 한편, 이 지역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중국의 지역적 야망과 소련에 대한 우려는 카이로 회담을 바로 앞두고 루스벨트의 개인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한 헐리(Patrick J. Hurley) 준장이 장제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장은 헐리에게 카이로회담에 임하는 심경을 스스로없이 토로하는 가운데 소련이 중국의 공산화와 중국 변방에 대한 정복을 획책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카이로에서 스탈린과 직접 대면하기를 주저하는 발언을 했다.<sup>30</sup> 또한 장은 소련의 세력 확장에 대해 중국이 단독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이로회담에 임하는 루스벨트는 대체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고 소련에 대해서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파악했다.<sup>31</sup> 카이로에 도착하기 전에 루스벨트는 군함 아이오아(Iowa) 위에서 통합참모본부 관리들과 가진 비밀회의에서 며칠 후에 장제스를 만나면 그에게 소련의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로 했다.<sup>32</sup> 이때 루스벨트는 장제스가 만주의 회복을 원할 뿐 아니라 외몽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의 영토 확장 의도에 불만을 표시했다.<sup>33</sup>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대체로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이 견해를 약간 달리 했다. 미국은 중국을 연합국 강대국의 일원으로서 인

29 구대열, 1995, 앞의 책, 87~89쪽

30 The President's Personal Representative (Hurley) to the President, 1943, 11. 20,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102~103

31 구대열, 1995, 앞의 책, 91~92쪽

32 Paper Prepared by the Joint Staff Planner, 1943, 11. 15~19,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245~246

33 정용석, 1971, 앞의 글, 126~127쪽

정하면서도 중국이 강대국 지위를 이용하여 한반도와 같은 주변 약소국의 독립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은 중국이 전후에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반도의 경우에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압록리에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sup>34</sup>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정치 세력인 소련이 카이로 회담 직전 시점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테헤란 회담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전쟁 종결을 위한 미국의 현실적 필요와 전후 구상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1941년 4월에 일본과 맺은 중립조약을 유지하고 있어 대일 방침에서 다른 연합국과 공동전선을 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련은 대일전선에 관한 공동성명을 논의하는 카이로 회담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대신 테헤란 회담을 통해 유럽전선에 관한 공동보조를 천명하게 되었다. 반면에 미국 정부는 1942년 시점에 이미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에 못지않게 소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련 내부에 사단 규모 정도의 한인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기도 하지만,<sup>35</sup> 소련이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남하 정책을 전개해 왔다고 하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내 군사 전략가들은 소련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반도를 지목했다.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루스벨트의 군부 관리들은 소련의 남하 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장제스나 스탈린과 회합할 때 이를 확인할 것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특히 마셜(George C. Marshall) 육군 참모총장은 소련이 일본에서 가까운 커다란 항구로 부산을 지목하고 이를 원하고 있다고 했으며,<sup>36</sup> 킹(Ernest J. King) 해군 작전사령관은 부산을 통해 대련항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려고

<sup>34</sup> 구대열, 1995, 앞의 책, 145~151쪽

<sup>35</sup> 구대열, 1995, 위의 책, 173~174쪽

<sup>36</sup> 마셜은 부산을 Kuzan이라고 발음했다. 이것은 미국 군부가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세부적인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Paper Prepared by the Joint Staff Planners, 1943.11,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257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군부 정책결정자들의 한반도 인식은 훗날 38도선 획정이나 일본군 무장 해제 과정에서 소련이 보여준 한반도 개입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것이었다.

미국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소련을 적극 끌어들이고자 한 데에는 영국과 중국이 소련의 진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반도의 전후 질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과 함께 소련을 개입시키려고 했던 입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결국 미국은 강대국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어느 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43년 5월과 8월에 워싱턴 D.C.와 퀘벡에서 열린 미영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후에 소련의 동의 없이 유럽에서 지역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영국도 미국의 전후 설계에 소련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에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sup>37</sup>

### III. 카이로선언과 한반도 문제

#### 1.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미중 정상회담

카이로 회담은 11월 22일 오전에 이집트 미대사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정례회의는 23일부터 열렸다. 그런데 연합국 정상은 카이로 회담에 임하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예비적 문서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은 같은 해 10월 하순에 미국·영국·소련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38</sup>

<sup>37</sup> W. H. 맥닐, 1982, 앞의 책, 154~155쪽

<sup>38</sup>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108~109

적어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국제적 관리를 통한 독립의 당위성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며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준

비된 의견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한 주 전에 미국 참모본부 관리들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장제스의 의향을 묻겠다고 준비한 메모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다. 굳이 한반도와 관련된 준비된 자료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전후 일본 점령에 대한 참가 문제와 일본에게 정복당한 영토를 되찾는 문제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메모가 있었을 뿐이다.

일련의 카이로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11월 23일 저녁에 루스벨트 대통령 숙소에서 만찬을 겸하여 열린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였다. 이 자리에는 홉킨스도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이때 미중 정상 간 대화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인 일본의 천황제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내 여론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루스벨트가 천황제 존속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의견을 물으면서 관련 대화가 시작되었다. 장제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일본 군부에 대한 응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국제(國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다.<sup>39</sup> 또한 영토문제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반도 독립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루스벨트보다 장제스 자신이 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때 자신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독립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회고했다.<sup>40</sup>

다만 미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적인 회담으로 여기기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한반도의 독립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성을 보였는지 정확히 실증해 내기는 쉽지 않고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그 다음 날 24일 오전에 열린 미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 놓고 있는데, 그 기록에는 전날 중국과 가진 회담의 결과에 대해 장제스가 매우 만족했다고 되어 있을 뿐이

39 サンケイ新聞社, 1985, 앞의 책, 377~378쪽. 이 책은 1974년 8월 15일부터 1976년 12월 25일까지 《산케이(産経)신문》에 연재된 회고록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40 サンケイ新聞社, 1985, 위의 책, 378~379쪽

41 Meeting of the Combined Chiefs of Staff with Roosevelt and Churchill, 1943.11.24,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334

다.<sup>41</sup> 미국무부 대외관계 자료집에는 나중에 1956년이 되어 주미 중국 대사가 중국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국무부에 제출한 것이 실려 있다.<sup>42</sup> 중국 측 번역 자료 속의 기록을 보면 23일 저녁에 한반도·인도차이나·태국과 같은 식민지역·점령지역의 독립에 관하여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눈 것이 확인된다. 이때 양국이 식민지 독립에 관하여 공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장제스는 한반도 독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Chiang stressed on the necessity of granting independence to Korea*)고 되어 있다.<sup>43</sup>

일찍이 구대열 연구자는 관련 자료들을 추적하여 미국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식민지의 독립문제를 ‘지적’했고 여기에 중국이 한반도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견해에 ‘동의’했다고 보았다.<sup>44</sup> 그는 앞의 장제스 회고록과는 달리 미국이 먼저 한반도 독립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먼저 한반도 독립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전후 식민지 독립에 관한 미국의 의사가 분명했고 한반도 독립문제에 관한 중국의 견해가 강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 일본 천황 문제, 일본 점령과 배상 문제, 군사적·경제적 지원 문제, 영토 회복과 독립 문제 등, 폭 넓은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따라서 중국이 회담 결과에 만족했다고 하는 것을 한반도 문제에만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제스가

연합국 참가를 인정받고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한 것에 관하여 전적으로 만족했고, 이러한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나중에 루스벨트는 처칠에게 “중국이 만주와 한반도의 재점령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There was no doubt that China had wide aspirations which included the re-occupation of Manchuria and Korea)”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

42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1943.11.23,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322~323

43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325. 이 부분에 대해 정일화 연구자는 중국 측의 일방적인 번역으로 한반도 독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일화, 2010, 앞의 책, 72~74쪽

44 구대열, 1995, 앞의 책, 127쪽

다.<sup>45</sup> 이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때의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카이로선언문에 Korea 문구가 들어가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추론하고 싶다. 중국 측 번역 자료나 장제스의 회고록 등 중국이 한반도 독립 방향을 지지했다고 하는 기록에 대해 사실 무근의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어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중국 측 자료를 불신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카이로 코뮈니케 발표문 작성에 끼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일이다. 중국이 즉각적인 한반도 독립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한반도 독립에 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 패전 후에 독립해야 할 지역으로서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이 그 다음 날 홉킨스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Korea 문구를 넣게 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46</sup>

## 2. 홉킨스의 초안 작성과 수정

미국무부의 대외관계 자료에서 11월 24일에 홉킨스가 작성한 발표문 최초 원안을 확인할 수 있다.<sup>47</sup> 홉킨스 원안에는 Korea 문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 사람들의 반역적인 노예상황을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도록 결의했다.”<sup>48</sup> 홉킨스 개인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는지 아니면 전날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결과적으로 그가 선언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가능한 가장 이

른 시기에’라고 하는 절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한반도의 독립에 관하여 강도 높게 언급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때 홉킨스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회복해야 할 곳을 열거하는 가운데 Korea 문구를 사용했다. 따라서 태평양 도서들과 만주·대만과 같은 지역과 같은 문단에서 Korea를 언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홉킨스가 전날의 회담 분위기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통령은 원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Korea 관련 문단을 중국 관련 문단에서 분리하여 따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루스벨트는 한반도가 만주나 대만과는 달리 일본 패망 후에 독립되어야 하는 지역이지 중국에 귀속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문단에서 따로 떼어내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 독립 시기와 관련하여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라고 하는 문구를 ‘적절한(proper) 시기에’라고 하는 문구로 수정함으로써 그 강도를 약화시켰다. 대통령의 문구 수정 결과는 대외관계 자료에 실려 있는 원본<sup>49</sup>과 활자본<sup>50</sup>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대통령이 한반도 관련 문구에서는 표현을 약화시켰지만 반면에 대일전에 관한 문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강화시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홉킨스 원안에 적힌 ‘일본에 대한 강력한 공격(vigorous offensives)’이라는 문구에다가 ‘지속적이고 점차 강력해지는 공격(continuous and increasingly vigorous offensives)’이라는 보다 강렬한 수식어를 추가한 것이다. 대통령의 수정 지시 결과를 통해 이때 그가 미국 국민들이 열망

하는 대일 전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부분에서는 보다 강렬하게 표명하기를 원했고 반면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그다지 관심 사항이 되지 않는 한반도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조를 낮추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날 장제스와의 회담에서 대일 전투에 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오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만약 이 분위기가 홉킨스의 원안 작성에 영향을 끼쳤다

<sup>45</sup> 같은 자료.

<sup>46</sup> 중국 측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중국 측 변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정일화 연구자도 이날 한국 문제가 토의된 것이 확실하며 만일 장제스가 카이로에 오지 않았다면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기회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은 가법계나마 인정하고 있다. 정일화, 2010, 앞의 책, 72~74쪽

<sup>47</sup>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Hopkins), 1943, 11, 24,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01~402

<sup>48</sup>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sup>49</sup>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With Amendments by President Roosevelt, 1943.11.25,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399~400

<sup>50</sup> Revised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1943.11.25,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02~403

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루스벨트는 전후 한반도가 어느 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미중 양국 정상은 공통적으로 일본 패망 후 즉각적인 한반도 독립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정안에서 한반도 독립에 관한 문단이 중국 관련 문단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것에서도 동일하게 유추해 낼 수 있다. 대통령은 중국 관련 문단이 짧아지자 원안의 문장 뒤에 “일본에 의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모든 점령지는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풀려날 것이다(All the conquered territorie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by the Japanese will be freed from their clutches)”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것은 전후 중국에 반환되어야 할 영토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강조한 문장이다. 즉 문맥으로 볼 때 한반도의 독립문제보다는 중국의 실지회복문제에 보다 더 힘을 실어주는 문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의 수정안은 홉킨스의 원안에 비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더욱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보다 깊은 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25일 루스벨트의 검토를 거친 미국 측 발표문 초안은 당일 장제스와 처칠에게 건네졌다. 공산당과의 내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장제스는 대단히 만족했고 자연스럽게 미국 측 초안에 대해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 측에서 받은 초안의 문구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관련 문단과 한반도 관련 문단을 하나로 이어지게 했으며, 일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점차 강력해지는 공격’이라는 표현을 없애거나,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도서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1914년 제1차대전 발발 이래’로 한정하는 등, 전면적으로 문구들을 뜯어고쳤다.<sup>51</sup>

카이로 회담에 루스벨트가 국무부 관리를 대동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처칠은 대서양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을 포함하여 외교적 수사에 능통한 측근들을 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측은 미국 측 초안이 세련되지 않은 표현들

<sup>51</sup> British Draft of the Communique, 1943.11.25,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404

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52</sup> 이러한 입장에서 영국은 한반도 관련 서술에서 미국 측 초안의 ‘반역적인’과 같은 용어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국 측 초안에 제시된 ‘일본 패망 후 적절한 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을 영국 측은 ‘당연한 순서로(in due course)’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했다. 여기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조차지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미국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측 초안에서 즉각적인 독립을 일반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표현에 대해 영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든 외상이 11월 25일에 열린 3국 정상회담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미국 측이 사용하는 ‘독립’이라는 용어에 불쾌하게 느꼈다고 술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자치령과 식민지 관리를 통해 발전해 온 영국국로서는 한반도에 자치정부를 허용하는 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다.<sup>53</sup>

이무튼 영국의 수정작업을 통해 ‘세련된’ 발표문이 되었고 이 영국 측 문안을 기초로 하여 11월 26일 카이로 회담 마지막 날에 최종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리된 최종 발표문<sup>54</sup>에는 “3개 강대 동맹국은 일본을 제압하고 징벌하기 위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3국은 자신의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영토 확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sup>55</sup>고 하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영국안대로 한반도와 관련된 문장이 중국 관련 문단에 함께 서술됨으로써, 한반도를 ‘일본에 의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모든 점령지’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카이로 코뮈니케는 11월 30일에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고 12월 1일에 서구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sup>56</sup> 이로써 세계에 널리 카이로 회담의 결과가 알려졌고 특히 미국에서 루스벨트는 외교적 성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57</sup>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sup>52</sup> 유병용, 1992, 앞의 글, 179쪽

<sup>53</sup> 유병용, 1992, 위의 글, 177쪽

<sup>54</sup> Final Text of the Communique, 1943.11.26,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48~449

<sup>55</sup>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sup>56</sup>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Davis) to the British Minister of Information (Bracken), 1943.11.30,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52~453. 로이터(Reuters)는 리스본에서 엠바고를 어기고 11월 30일에 카이로 코뮈니케를 보도했다.

<sup>57</sup> The President's Secretary (Early)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Hopkins), 1943, 12, 2,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453

와 같이 미국의 한인 사회는 즉각적으로 한반도 독립에 대한 국제적 약속으로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인들이 매주 발행하던 《신한민보》가 12월 2일 즉각적으로 번역문을 작성하여 격문으로 배포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신한민보》는 12월 9일자에서 4면 전체를 할애하여 카이로 코뮈니케에 대한 평론과 관련 기사들을 내보냈다. 이 가운데 중경 임시정부의 김구 대통령이 12월 5일 기본적으로는 연합국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당연한 순서’ 문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고 일본 패전과 동시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다는 기사가 있다.<sup>58</sup> 또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2월 7일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에게 감사하는 전보를 보내고, 카이로회담이 “한국과 한인에게 새로운 생활을 주었다”고 칭송했다는 기사가 있다.<sup>59</sup>

반면에 총력전 체제에서 언론 통제를 받고 있던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는 카이로 코뮈니케 소식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 신문들은 태평양 길버트(Gilbert) 섬에서 일본의 해군이 연일 승리하고 있다고 전했고 버마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중국으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영국 전투기들을 격추하고 있다는 전과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성일보》, 《매일신보》와 같은 한반도 안의 신문들도 이와 같은 통제된 기사만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결전(決戰) 의지를 북돋우었다.<sup>60</sup>

그러나 재외한인사회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카이로회담 소식은 암암리에 한반도 조선인들에게 전파되어 갔다. 총독부가 1944년 8월에 치안대책을 작성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영국·중국이 해외 조선인 불령분자를 사주하여 조선어 방송으로 조선의 독립을 사주 선동하고 추축국 전황에 대한 날조 등으로 왜곡 과장하여 반도 민심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sup>61</sup> 여기에다가 비록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버마와 필리핀이 독립을 인정받으면서 ‘대동아공영권’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독

58 《新韓民報》, 1943.12.9, 1면

59 《新韓民報》, 1943.12.9, 1면

60 《京城日報》, 1943.12.1, 1면; 《京城日報》, 1943.12.2, 1면; 《每日新報》, 1943.12.1, 1면

61 「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 水田直昌·土屋喬雄 編, 1962,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朝鮮近代史料 朝鮮總督府關係重要文書選集(3)」, 友邦協會朝鮮史料編纂會, 78~79쪽

립 보장에 관한 소식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민중 사이에 ‘유언비어’를 나눌게 했다.<sup>62</sup> 이에 따라 전쟁 말기에 일본의 총력전 태세에 저항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조선인이 자연스럽게 증가해 갔다.<sup>63</sup>

#### IV. 맺음말

이상으로 카이로선언에 이르는 국제정치적 배경을 정리해 보았다. 태평양전쟁을 주도하게 된 미국은 대전 후 세계의 전후처리에 영국은 물론 소련과 중국을 끌어들이 4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이 이 체제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후질서 재편에 소련이 끼어들어오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각국이 지리적 안보상황과 기존질서에 따른 이해관계로 각 지역의 전후질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음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 이외에는 모든 국가가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이 없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이 제시하는 협조체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sup>64</sup>

62 水野直樹, 2006, 「戰時期朝鮮の治安維持体制」, 『支配と暴力: アジア・太平洋戦争 7』, 岩波書店, 113~115쪽; 정병준, 2009,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6~201쪽

63 荻野富士夫, 2005, 「総力戦下の治安体制」, 『戦争の政治学: アジア・太平洋戦争 2』, 岩波書店, 154~155쪽, 전쟁말기 조선인의 저항 사례로, 1944년 5월 12일 샤프로 지방재판소가 장종원(張本宗願)에게 내린 판결문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문은 “대동아전쟁 수행 도중 일본의 국력이 피폐하여 조선에 대한 통치력이 박약해지는 것에 편승하여 일제히 봉기하여 소련의 원조 아래 일거에 조선독립을 실현하겠다”고 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언도했다. 국가보훈처, 2012, 「일본사법성형사국 사상월보: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6」, 국가보훈처, 786~787쪽

64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과 그 동맹국가들에 대한 전투에 소요되는 군수품 가운데 미국이 35%를 총량했고 일본에 대한 전투에서는 군수품 전체의 85%를 미국이 담당했다. 김학준, 1983,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18쪽

일반적으로 대외적 성명서나 선언문을 발표할 경우에는 견해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부분만을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 방법을 둘러싸고 견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방향에서 공통 인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공통 인식 부분만을 대외적으로 발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카이로선언에 이르는 국제정치적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포함한 전후처리 구상이 미국이 주도하는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희미하게나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홉킨스의 초안에서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카이로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가능한 일차적 자료의 기록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특히 11월 23일의 미중 정상회담이 홉킨스의 초안 작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홉킨스의 업적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카이로선언 초안 작성과정에서 Korea 독립 문구를 기입한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65</sup> 이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정일화 연구자가 홉킨스의 ‘업적’을 추적하고 높이 평가한 것은 카이로선언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홉킨스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식민지 독립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다가 장제스가 일본 군부에 대한 응징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강조한 것이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Korea 독립 문구를 넣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이로회담에서 4대 강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해외 조선인 독립운동 단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임정이나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 한반도 국가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둘러싸고 민족 내부의 요인을 중시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sup>66</sup> 결과적으로 패전 이후 일본 세력이 물러난 한반도는 조선인의 손에 의한 관리가 허용되지 않았고 강대국에 의한 국제관리 상태에 놓였으며 전후 신탁통치 구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카이로선언은 한반도 국가독립의 과정에서 ‘미미한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sup>65</sup> Robert E. Sherwood, 1948, *Roosevelt and Hopkins*(volume 2: *From Pearl Harbor to Victory*), New York: Bantam Books, pp. 375~439

<sup>66</sup> 한반도 분단 원인의 내재적 요인을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로, 강만길, 2008, 『한국 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108~123쪽을 들 수 있다.

‘커다란 결과’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권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카이로선언은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 첫 번째 국제협약이었다. 즉 일본제국의 패전 이후에 찾아온 국가수립은 완전한 독립을 향하여 가는 과정(course) 가운데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그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는 새로운 국가를 보유하게 된 한반도 사람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요컨대 식민지 말기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완전한 국가독립은 국제사회에서 거저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반도 내부에서 미소분할점령, 신탁통치방안, 6·25전쟁, 분단, 대치라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으며 진행되어 온 것이다.

끝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계속하여 독도가 카이로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에 의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점령지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패전 직후 미국이나 점령당국도 한국 정부와 같은 독도 인식을 해 오다가 1949년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일본이 정당하게 취득한 영토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동조하기 시작했다.<sup>67</sup>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미국

이 다소 일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중립적’ 입장이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sup>68</sup>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독립 상태가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단의 원인을 민족 외적인 요소 즉 국제정치적 요소에서 찾는다고 하면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을 야기한 연합국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

<sup>67</sup> 하와이대학의 반 다이크(Jon M. Van Dyke) 교수는 한국강제병합 10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국제공동연구에서 카이로선언과 독도 문제의 관련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20세기 초에는 어느 국가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영토를 획득했기 때문에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점령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존 M. 반 다이크, 2009, 『독도/다케시마 주권에 관한 법적 문제』, 이태진·사시가와 노리가츠 편,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871~873쪽

<sup>68</sup> 최영호, 2010,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 논형, 219~224쪽

가 한반도 불완전 독립의 원인은 주변국 가운데 패전국 일본에게도 있다.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을 마치자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폭력과 탐욕으로 침탈했던 한반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단한 대미접촉을 거쳐 애초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시켰던 초안을 바꾸어 일본 측 영토로 하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강화조약 문안에서 독도 관련 문구를 지우는 데 성공했다.<sup>69</sup> 20세기 초두 제국주의 시대에 침탈당한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유권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가 완전한 국가 독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up>69</sup> 정병준, 2010, 「독도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314~365쪽;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분석」, 『영토해양연구』 1, 49~61쪽

## 국문 초록

이 글은 카이로 코뮤니케와 관련하여 홉킨스의 초안에서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가능한 일차적 자료의 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1943년 11월 23일의 미중 정상회담이 홉킨스의 초안 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다가 장제스가 한반도 독립 문제를 강조한 것이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한국 독립에 관한 문구를 넣도록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한반도 독립 문구에 대해서 영국과 소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카이로회담 시기에 미국은 영국, 소련, 중국과 함께 4강 협조체제에 따른 전후질서를 모색했다. 각국이 지리적 안보상황과 기존질서에 따른 이해관계로 각 지역의 전후질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음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에 대체로 동조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 아래에서 태어난 카이로선언은 국권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 첫 번째 국제협약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특정 조선인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패전 이후 일본 세력이 물러난 한반도는 강대국을 통한 국제관리 상태에 놓였다. 결국 카이로선언은 한반도 국가독립의 과정에서 '미미한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커다란 결과'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었다. 일본 패전 이후의 한반도 국가수립은 완전한 독립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가는 일은 한반도 사람들의 과제가 되었다.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완전한 국가독립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완전 독립의 국제정치적 원인은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을 야기한 연합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있다.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을 마치자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폭력과 탐욕으로 침탈했던 한반

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카이로선언, 루스벨트, 장제스, 홉킨스, 한국 독립, 독도

ABSTRACT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in International Politics

Choi, Youngho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Youngsan University

This paper arranges the procedures from a draft by Harry L. Hopkins to the announcement of the Cairo Communique through research in primary sources. The summit meeting of America and China held on November 23, 1943,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Hopkins' work. Chiang Kai-shek made a strong mention of Korea while he asserted the necessity of strict punishment of Japan. I infer that adding to the basic U.S. stance of assisting the independence of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Chinese stress on Korean decolonization made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and Hopkins write expressions about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American draft. The expressions did not meet with opposition from Great Britain or the Soviet Union.

At the Cairo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was seeking a post-war cooperation system by the four powers. Other countries sympathized with the American conception of a peace system by check and balance although they held different opinions about geographic security and concession acquisition. The Cairo Declaration created beneath the backgrou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arrangement giving boundless hopes to the Korean people who had suffered torture from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However, after Japan's surrender, no country approved a national representative of Korea. As a result, the Korean peninsula was placed under international control of superpowers. Consequently, the Cairo Declaration is a sign of insignificant beginning, and not a splendid end in the course of national

independence. Also, Korean people receiv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s only the starting phase in the process towards complete national independence, and at the same time they changed the assignment to achieve the goal.

Korea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from foreign powers yet because the country is troubled by national division and rejects of Dokdo's dominium. The cause of the in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 was provided by Japan as well as by the superpowers, who caused national divis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Two.

Keywords

Cairo Declaration, Franklin Delano Roosevelt, Chiang Kai-shek, Harry L. Hopkins, Korean independence, Dokdo

참고문헌

[1차 사료]

《京城日報》

《每日新報》

《新韓民報(The New Korea)》

《新韓民報別報(EXTRA The New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한국어 문헌]

강만길, 2008, 『한국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구대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국가보훈처, 2012, 『일본사범성형사국 사상월보: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6』, 국가보훈처

김태기, 2009, 『미국의 독도정책 입안연구: 1942~1946년을 중심으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김학준, 1975,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김학준, 1983,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김학준, 1996, 『독도는 우리땅』, 한줄기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즈 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병준, 2009,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정병준, 2010, 『독도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정일화, 2010,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선한약속

조승순, 1982, 『한국분단사』, 형성사

최영호, 2010,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 논형

신복룡, 1994, 「한국 신탁통치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구도와 변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2

유병용, 1992, 「제2차대전중 한국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영국의 외교정책연구」, 『역사학보』 134·135합본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분석」, 『영토해양연구』 1

정용석, 1971, 「38선획정과 미국의 책임」, 『신동아』 1971년 8월호

정용욱, 1993, 「해방이전 미국의 대한구상과 대한정책」, 『한국사연구』 83

[영어 문헌]

Burg, David F., 2005, *The Great Depression. Eyewitness History*, New York: Facts on File

Burns, James MacGregor, 1970, *Roosevelt: the soldier of freedom*, vol. 2,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Cho, Soon Sung, 1967,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rawford, Neta C., 2002, *Argument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thics, Decolonizat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rrell, Brian P., 1993, "Symbol of paradox: The Casablanca Conference 1943," *Canadian Journal of History*, 28-1

Gallicchio, Marc S., 1988, *The Cold War Begins in Asia: American East Asian Policy and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herwood, Robert E., 1948, *Roosevelt and Hopkins*(volume 2: *From Pearl Harbor to Victory*), New York: Bantam Books

Tong, Hollington K., 1953, *Chiang Kai-Shek*, Taipei: China Publishing Company

[일본어 문헌]

サンケイ新聞社, 1985, 『蔣介石秘録(下)』, サンケイ出版

細谷千博, 1982, 『日英関係史1917-49』, 東京大学出版会

水田直昌·土屋喬雄 編, 1962,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朝鮮近代史料 朝鮮總督府関係重要文書選集(3)』, 友邦協會朝鮮史料編纂会

五百旗頭眞, 1999, 『戦後日本外交史』, 有斐閣アルマ

W. H. マクニール, 1982, 『大國の陰謀』, 図書出版社

水野直樹, 2006, 「戦時期朝鮮の治安維持体制」, 『支配と暴力: アジア·太平洋戦争 7』, 岩波書店

荻野富士夫, 2005, 「総力戦下の治安体制」, 『戦争の政治学: アジア·太平洋戦争 2』, 岩波書店

#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번역 박은진 동북아역사재단

카이로회담과 카이로선언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 II.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근대 일본은 새로운 영토를 전쟁으로 획득해 왔지만, 1945년 8월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연합군 군대에게 패배하여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 결과는 1951년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명기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조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대만 및 펑후제도[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쿠릴열도[千島列島]와 사할린[樺太] 남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또한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미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제도’에 동의하고 당분간 미국이 오키나와를 통치하는 것을 인정했다. 강화 후, 일본 국회는 이후의 문제로서 오키나와 통치에 대한 참가를 요구하는 것과 쿠릴열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화회의에서 선언했던 하보마이제도[齒舞諸島], 시코탄[色丹] 섬의 반환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결의했다.<sup>1</sup>

1955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던 소련과의 사이에서 국교교섭이 개시되자 일본 정부는 소련이 자국령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쿠릴열도와 사할린 반환에 관해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영토라고 표명했는데, 따라서 하보마이제도와 시코탄 섬의 반환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목표로 교섭을 진행했다. 의외로 소련은 교섭개시 2개월 후에 이 두 섬의 인도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에토로프[捉提], 구나시리[國後] 섬도 포함한 4개 섬을 요구하고, 이들 두 영토에 대해서는

소련령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국제회의에서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sup>2</sup>

에토로프·구나시리 섬은 남쿠릴열도에도 속하는 쿠릴열도의 일부이다. 즉, 강화조약으로 포기한 쿠릴열도에 속해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

## I. 머리말

1944년 11월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삼국의 정상이 회담을 했다. 발표된 공식 성명서는 카이로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담과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삼국 정상이 합의한 결의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연구된 것은 많지 않다. 영국인 케이트 세인트바리의 1985년 연구가 거의 유일한 연구이며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의 연구는 알 수 없다.

종래 카이로회담과 카이로선언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주로 해방 후 조선의 운명과의 관련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포츠담선언에 카이로선언이 인용된 부분에서 영토불확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에 높은 관심이 모아져 왔다. 카이로선언은 소련(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북방 4섬 영토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써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카이로회담과 카이로선언 그 자체에 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필자는 일본의 연구자로서, 일본의 영토문제와의 관련에 초점을 맞추고,

1 1952년 7월 31일의 중의원 본회의결의, 《朝日新聞》, 1952. 8. 1.

2 和田春樹, 1990, 『北方領土問題を考える』, 東京: 岩波書店, 134~165쪽; 田中孝彦, 1993, 『日ソ国交回復の史的研究』, 東京: 有斐閣, 95~160쪽

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요구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논리를 필요로 했다. 1955년 12월경부터, 국회에서의 답변에서 외무성 관계자가 여러 가지 주장을 전개했다.

1955년 12월 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나카가와 도루[中川融] 아시아 국장이 답변했다. “쿠릴열도라고 말했을 경우에 어떤 섬을 포함할지는 [...] 섬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문제로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메이지 초기 러일 간에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섬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 괄호 안에 있었던 섬에 남쿠릴 섬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러시아와의 법률관계, 조약관계에서 쿠릴열도의 경우에는 남쿠릴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sup>3</sup> 메이지 초기의 협정은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 일본에서는 치시마·가라후토(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조약의 일본어 번역문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영토 ‘쿠릴’ 군도”라고 하여, 18개 섬의 이름이 언급되어 그 섬들을 일본에게 양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에토로프·구나시리 섬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러일 간의 구 조약에 나오는 쿠릴 제도에 에토로프·구나시리 섬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섬은 쿠릴제도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12월 16일에는 시게미쓰[重光葵] 외무대신이 “남쿠릴 섬, 즉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고유영토, 홋카이도 직속의 이 섬들 [...] 이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쿠릴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조인국의 의향, 특히 미국 등의 의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념에서는 역시 홋카이도 직속의 섬이라고 보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sup>4</sup> 남쿠릴 섬의 에토로프·구나시리 섬은 ‘일본 고유의 영토’, ‘홋카이도 직속의 섬’ 이기 때문에 강화조약에서 포기했던 쿠릴열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논리였다.

그러던 중, 사회당의 오카다 하루오[岡田春夫], 호즈미 시치로[穂積七郎] 등의 의원이 에토로프·구나시리

<sup>3</sup> 『第三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會議録』 제6호, 1955. 12. 9, 7쪽

<sup>4</sup> 위의 자료, 제4호, 1955. 12. 16, 2, 5쪽

섬 등 남쿠릴 섬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엄격하게 추궁한 것에 더해 이와 같은 논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내 1956년 2월 11일에 이르러 모리시타 구니오[森下国雄] 외무차관이 정부 통일견해를 발표했다.

“남쿠릴 섬, 즉 구나시리·에토로프 두 섬은 계속 일본의 영토였던 것으로 이 점에 관해서 이전에 조금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고 반환은 당연한 것”, “1875년, 메이지 8년에 체결한 치시마·가라후토(쿠릴·사할린) 교환조약에서도 두 섬은 교환의 대상인 쿠릴로써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소련이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평화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쿠릴열도 중에서도 두 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sup>5</sup>

즉, 구나시리·에토로프 두 섬은 남쿠릴이지만 쿠릴열도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근거로서 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1956년 8월 시게미쓰 외상이 전권대사가 되어 모스크바에서 제2차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 교섭에서 시게미쓰 전권대사가 중심으로 내세웠던 것이 남쿠릴 섬은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포기할 리가 없다는 논리였다. 1956년 7월 31일, 시게미쓰 전권대사는 회담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일본은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구나시리·에토로프 두 섬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규정된 쿠릴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 과거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일본의 영토입니다.”<sup>6</sup>

계속하여 시게미쓰는 영토불확대 원칙을 존중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기서 카이로선언을 제기했다.

“제2차세계대전 중 연합국들이 최고 원칙으로써 영토 확대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 대서양헌장은 스탈린 시대에 소련이 찬성했던 큰 방침이고, 소련이 오늘날에도 부정할 수 없는 국제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츠담

<sup>5</sup> 『日露(ソ連)基本文書・資料集(改訂版)』, 2003, 東京: ラジオプレス, 146쪽

<sup>6</sup> 『毎日新聞』, 1956. 8. 2.

선언이 채택한 카이로선언에는 일본이 타국에게 ‘탈취했던’ 지역을 반환시키도록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련을 포함한 연합제국들이 천명한 원칙입니다. [...] 귀국 소련은 이미 1942년 1월 1일 대서양현장에 참가하여 영토불확대를 선언하였고 또한 포츠담선언으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효력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소국교 회복 때에는 반드시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이 당시 세워졌던 이 원칙들을 따라 소련이 일본 고유의 영토로부터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 할 것을 믿습니다.”

시게미쓰 전권대사는 이 두 논리로 4개 섬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이 요구를 시종 거부했다. 마침내 시게미쓰는 두 섬 반환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단해야만 했다. 즉, 이 말은 당초 시게미쓰의 ‘고유의 영토’론도 ‘영토 불확대’ 원칙도 함께 철회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쿄 정부는 시게미쓰의 방침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2차 교섭은 끝나게 되었다. 일소교섭은 그해 10월의 하토야마[鳩山一郎] 수상 의 방소로 제3차 회담에서 타결의 방향으로 향했으며 2개 섬의 인도 약속을 담은 일소공동선언이 1956년 10월 19일에 조인되었다.<sup>8</sup>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 이후의 일본 정부는 4개 섬 반환을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일소공동선언을 경시하게 되었다. 1961년에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이 흐루시초프 수장과 왕복서한을 교환하고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 당시 이케다 수상은, 남쿠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에토로프 섬·구나시리 섬은 쿠릴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한편,<sup>9</sup> 영토불확대 원칙을 내세워 소련에게 4개의 섬 반환을 독촉하였던 것이다. 1961년 11월 15일 이케다 수상이 흐루시초프 앞으로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카이로선언에는 연합국 자신도 ‘자국을 위한 어떠한 이득을 바라지 않고 또한 영토 확장의 의사도 전혀 없다’는 요지가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련 정부가 [...] 구나시리·에토로프 두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카이로선언의 조항과 완전

7 위와 같음.

8 和田春樹, 1990, 앞의 책, 205~214쪽; 田中孝彦, 1993, 앞의 책, 238~304쪽

9 『第39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會議録』 제2호, 25쪽

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10</sup>

일본 외무성은 1970년대 이래 팸플릿 『우리의 북방영토(われらの北方領土)』를 매년 간행하였지만 거기에서도 먼저 일본은 “쿠릴열도를 러시아로부터 양도 받은 대신에 러시아에 대해 사할린을 모두 포기할 것을 결정하고 러시아와 치시마·가라후토(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의 제2조에는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섬으로 [...] 우르프 섬까지 18개 섬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으며, 4개의 섬은 “한 번도 타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쿠릴열도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1</sup>

다음으로 카이로선언의 ‘영토불확대 원칙’이 강조되어 있다.

“카이로선언은, 남가라후토·치시마열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시마열도는 [...] 치시마·가라후토(쿠릴·사할린) 교환조약으로 평화롭게 우리나라가 양도받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약취한 지역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에토로프 섬, 구나시리 섬, 시코탄 섬 및 하보마이 군도가 카이로선언에 나와 있는 ‘일본국이 약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sup>12</sup>

“[...]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쿠(四国)와 함께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8항)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제8항 뒷부분의] 카이로선언의 영토불확대 원칙을 거스르는 방침을 말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 이 선언이 카이로선언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항복했을

당시 포츠담선언을 수락했던 것이고, 또한 소련도 포츠담선언에 참가한 결과로써 카이로선언의 영토불확대 원칙을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sup>13</sup>

이처럼 카이로선언은 소련(러시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북방영토’ 요구를 뒷받침하는 ‘영토불확대 원칙’의 전거로써 오늘날 매우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이 글은

10 『日露(ソ連)基本文書・資料集(改訂版)』, 176~177쪽

11 外務省国内広報課, 『われらの北方領土』 2000년판, 6~7쪽

12 外務省国内広報課, 위의 책, 8쪽

13 外務省国内広報課, 위의 책, 9쪽

카이로선언이 나온 경과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포츠담선언에 인용되고 있는 의미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영토문제 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I. 카이로회담에 이르기까지 제2차세계대전의 경과

1939년에 시작된 독일의 유럽 침략으로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41년 6월의 히틀러의 소련 침공과 같은 해인 12월 8일,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은 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세계대전 속에서 일본은 소련의 최대 적인 나치스 독일의 동맹국이었고, 일본의 정면의 적인 미영 양국은 소련과 함께 나치스 독일과 싸우고 있었지만, 일소 양국은 1941년 4월에 맺은 일소중립조약 하에 기묘한 중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전쟁 국면의 전환은 유럽 전선에서 먼저 나타났다. 소련은 1942년 11월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사투에서 승리하여 1943년 여름의 크루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추격전으로 전환했다. 이후 유럽 대륙의 남쪽과 서쪽에서 미국군과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공격을 가해 제2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 급선무가 되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1943년 봄에 과달카날, 뒤이어 부젠빌에서 옥쇄하여 패배의 후퇴전으로 들어갔다. 미국·영국군과 중국군의 협력으로 버마작전이 일정에 올라 미국의 소련에 대한 참전 요청도 날이 갈수록 강해졌던 것이다.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은 반(反)히틀러 전쟁의 큰 세력인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과 회담을 갖고, 전쟁의 진행 방향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를 오랫동안 바라고 있었다. 처칠(Winston Churchill) 영국 수상과 함께 스탈린에게 북아프리카 주변에서 회담을 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제의하였던 것은 1942년 12월이었다.<sup>14</sup> 그러나 스탈린은 전쟁

14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rukovoditelei trekh soiuzykh derzhav—SSSR, SSha i Velikobritanii*, Sbornik dokumentov, Moscow, pp. 43~44

지휘를 위해 러시아를 떠날 수 없다며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sup>15</sup> 1943년 6월 쑹칭링(宋慶齡)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루스벨트와 만났다. 루스벨트는 장제스(蔣介石)에게 회담을 하자고 6월 30일에 제안했다. ‘두 나라 수도의 중간 어디쯤에서’라고 제안되었다.<sup>16</sup>

8월에는 케백 회담 후,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에게 다시 한 번 3자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의 전보를 보냈다. 스탈린은 회담의 중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전쟁지도를 위해 국가를 떠날 수 없다는 같은 답변을 했다.<sup>17</sup> 그러나 9월 8일이 되자 스탈린 쪽에서 이란에서 만나는 것은 어떠하겠냐는 제안이 왔다.<sup>18</sup> 9월 10일, 루스벨트는 기꺼이 스탈린에게 11월 15일~12월 15일 사이에 북아프리카에서 3명이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sup>19</sup> 이 제안에 대하여 스탈린은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회담 장소는 이란으로 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sup>20</sup> 이에 대해 루스벨트는 10월 14일, 헌법상 대통령이 상시연락이 되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희망하며 11월 20일 내지 25일에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sup>21</sup>

10월 하순에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국외상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루스벨트는 소련에게 대일 전쟁에 참전한다는 약속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10월 5일 국무성 관계자와의 간부회의에서 “쿠릴제도는 러시아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sup>22</sup> 남사할린이 소련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루스벨트는 장제스와의 회담도 잊지 않고 있었다. 10월 13일 루스벨트는 장제스에게 편지를 보내 헐리를 특사로 파견하니, 회담 일정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sup>23</sup>

15 스탈린의 회신 날짜는 1942년 12월 6일이었다. Ibid., pp. 44~45

1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Washington, p. 13

17 Ibid., pp. 20~21, 22

18 Ibid., pp. 23~24

19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p. 55

20 Ibid., p. 56

21 Ibid., pp. 59~60; *FRUS*, Cairo and Teheran, pp. 31~32

22 五百旗頭真, 1985, 『米国の日本占領政策』上, 東京: 中央公論社, 156~157쪽

23 *FRUS*, Cairo and Teheran, p. 30

한편 모스크바 삼상 회담은 1943년 10월 19일부터 열렸다. 헐 국무장관은 쿠릴제도를 넘겨준다는 것을 제시하여 소련의 참전을 설득했지만 몰로토프는 회담을 유보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최후의

만찬회 석상에서 스탈린은 혈에게 처음으로 “소련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망을 검토한 결과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대일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sup>24</sup> 혈의 기쁨과 흥분은 매우 컸다. 보고를 받은 루스벨트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스탈린은 미·영·소 삼국 정상회담의 장소에 관해서는 테헤란 이외는 안 된다고 10월 19일에도 회답했었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25일에 장문의 전보를 보내 불만을 진했지만 결국 테헤란으로 가는 결의를 굳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테헤란에 앞서 카이로에서 장제스와 만나기로 하였고, 10월 27일에 장제스에게 연락했다.<sup>25</sup> 스탈린에게 테헤란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보낸 것은 11월 8일이 되어서였다.<sup>26</sup>

마침 그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이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다. 1943년 11월 6일 동맹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를 모아 도쿄에서 대동아(大東亞)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다. 회의를 주도한 것은 신임 외상인 시게미쓰 마모루였다. 시게미쓰는 미영 양국이 1941년에 발표한 대서양헌장을 강하게 의식하여 그에 대항하는 전쟁 이념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었다.<sup>27</sup> 이 회의에는 만주국과 왕자오밍(王兆明) 정권의 중국 이외에, 일본이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 태국, 필리핀, 버마, 인도 임시정부의 대표가 초청되었다. 그러나 태국은 일본의 의도를 경계하여 참가하지 않았다. 어전회의의 결정으로 ‘제국영토(帝國領土)’로 간주되었던 인도네시아는 초대받지 않았다.<sup>28</sup> 이 회의에서 대동아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타 국가와 타 민족을 억압하고 특히 대동아에 대해서는 마음껏 침략과 착취를 행하여 대동아 예속화의 야망을 키워 결국에는 대동아의 안정을 근거부터 뒤집으려고 했다. 대동아전쟁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연계하여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미영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그 자존자위를 완전하게 하고

[...] 대동아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

대동아 건설의 강령으로서 열거된 것은 ‘공존공영의 질서’, ‘자주독립’과 ‘호조돈목(互助敦睦)’의 ‘대동아 친화’, ‘인종적 차별’의 ‘철폐’였다.<sup>29</sup> 모두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아름다운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로 영토를 확대하려고 하는 일본으로서는 대서양헌장에 아무리 대항하려고 해도 그 첫머리에 제창되었던 ‘영토불확대’라는 원칙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 IV. 카이로회담의 경과

같은 달에 카이로에서 열린 미·영·중 삼국의 정상회담은 대동아회의에 대항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에게 그러한 의식은 전혀 없었다. 왕자오밍 정권의 대표자가 참가한 이 회의에 적의와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은 장제스뿐이었을 것이다.

11월 21일에 먼저 처칠과 장제스가 카이로에 도착했다. 루스벨트의 도착은 다음 날 22일 아침이었다. 22일 밤 9시, 세 정상이 예비회담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장제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sup>30</sup> 본격적인 세 정상 회담은 1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의제는 버마작전이였다. 루스벨트와 장제스는 이날 밤 8시부터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이 기록은 중국 측에만 남아 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4대국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고, 대등하게 4대국의 결정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장제스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루스벨트는 친황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장제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장제스는 그것은 일본 국

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제스는 배상에 관해서 중국에게 지불해야 하며, 산업설비, 함선, 철도차량 등의 현물의 형태로 좋다고 언급하였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sup>31</sup> 영토문제에 관해서

24 Cordell Hull, 1948, *Memoirs II*, New York: Macmillan, p. 1309; 코데일·홀, 1949, 『回想録』, 朝日新聞社, 2~3쪽

25 FRUS, Cairo and Teheran, pp. 33~34, 47.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보낸 25일자 전보는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pp. 62~64

26 FRUS, Cairo and Teheran, pp. 71~72

27 波多野澄雄, 1996, 『太平洋戦争とアジア外交』, 東京大学出版会, 제6장, 제7장

28 波多野澄雄, 1996, 위의 책, 175~179쪽

29 波多野澄雄, 1996, 위의 책, 171쪽

30 FRUS, Cairo and Teheran, pp. 293~294, 303

31 Ibid., pp. 323~324

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장제스 총통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힘으로 중국에서 취한 중국 동북사성, 대만, 평후제도는 전후에 중국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요동반도와 뤼순 및 다이렌 등도 포함하도록 양해되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류큐제도 문제를 언급하고 거듭 중국은 류큐를 요구할 것인지 물었다. 총통은, 중국은 중국과 미국의 공동점령에는 기꺼이 참여하고, 결국에는 국제기구의 신탁 하에서 양국에 의한 공동통치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홍콩 문제도 제기했다. 총통은 대통령이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전에 영국당국과 이 문제를 토의하도록 시사했다.”<sup>32</sup>

이날의 장제스의 일기에는 류큐는 “국제기구의 위임 속에서 미국과의 공동관할로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고 적혀 있다. 첫 번째로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류큐는 청일전쟁 이전부터 일본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구역을 미국과 공동관할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전관으로 하는 것에 비해 타당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sup>33</sup> 그렇지만 장제스는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홍콩과 티베트<sup>34</sup>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반환요구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조선과 인도차이나의 장래 지위에 관하여 루스벨트가 장제스의 의견을 물으면 ‘조선에 독립을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언하고, 인도차이나도 독립을 이루어야 하며 태국도 독립을 회복해야 한다고 대답했다.<sup>35</sup>

한편 여기에서 있었던 미영회담의 결과가 카이로회담의 공동성명인 카이로선언의 기본적인 골격을 정했다고 생각된다. 11월 24일 오후, 루스벨트의 보좌관 홉킨스가 구술하여 작성한 최초의 원안이 남아 있다. 홉킨스는 어떠한 안도 손에 들지 않고 구술했다. 최초 원안의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잔인한 적(brutal enemy)에게 바다, 육지, 상공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이 압력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가 공동공격을 개시할 때, 장소와 규모는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일본은 그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점령해 온 태평양의 여러 섬(그 대부분은 군사화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특별하고 명확한 서약에 반하여 강력한 기지로 바뀌었다)은 일본에서 영구히 빼앗고 일본이 중국에게 신뢰를 저버리고 훔친(so treacherously stolen) 만주, 대만과 같은 영토는 당연히 중화민국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단했다. 우리는 조선 인민을 기만하는 예속(t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에 유의하고 일본의 항복 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조선이 독립하고 자유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결단했다.

우리는 일본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격렬하고 결연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3국은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얻어내기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맹세하는 바이다.”<sup>36</sup>

이 문장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조는 장제스의 말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모른다. 태평양의 위임통치령을 미국이 일본군에게서 획득해야 한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심사만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안은 장제스의 보좌관 중국 국방평의회 사무총장인 왕충후이(王寵惠)에게 넘겨졌다.<sup>37</sup>

25일 아침 홉킨스는 제2안 수정안을 구술 전달했다.<sup>38</sup> 이 수정안은 루스벨트와 중국 측에게 보인 결과 그들의 의견을 넣은 수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정 사항은 세 가지이다. 먼저,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공동 공격을 개시할 때, 장소와 규모는 지금 밝힐 수 없지만”이라는 문장이 삭제

되었다. 두 번째는, “일본에게서 영구히 빼앗고”에서 문장을 잘라, “영구히 빼앗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일본인이 폭력과 탐욕으로(by violence and greed) 취한 모든 정복지(conquered territory)는 그들의 파수(clutches)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졌다. 세 번째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였던 것이 “적당한 때에(at the

36 FRUS, Cairo and Teheran, pp. 401~402

37 D. Dilks, ed., 1971, *The Diaries of Sir Alexander Cadogan*, London: Cassell, p. 577

38 제1안에 루스벨트가 직접 수정한 사진본이 FRUS, Cairo and Teheran, pp. 399~400에 있으며 청서된 제2안이 Ibid., pp. 402~403에 있다.

32 Ibid., p. 324

33 張秀章 編, 2007, 『蔣介石日記揭秘』下, 北京: 團結出版社, 683~684쪽

34 1942년 10월 29일의 일기, 위의 책, 668쪽

35 FRUS, Cairo and Teheran, p. 325

proper moment)”로 바뀐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루스벨트의 수정이었다.

전날에 도착한 처칠의 수행원 이든(Anthony Eden) 외상과 카도간(Alexander Cadogan) 외무차관이 이날부터 협의에 참가했다. 카도간은 10시 30분을 넘어서 홉킨스와 만나 성명서 문안을 보았다. 그는 “그것은 문장은 나쁘지만 내용은 괜찮아 보였다.” 후에 “성명서에 몇 가지 결함과 누락된 한 부분을 발견하여 미국 측에게 수정안을 건넸다”라고 일기에 적고 있다. 카도간이 할리팩스 주미대사에게 말한 것에 따르면 왕충후이는 이날 오후에 시행된 문안의 수정 교섭 중에서 수정에 반대하며 원래 문장이 좋다고 말했다. 카도간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sup>39</sup> 그리하여 영국 측의 주도로 문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거친 문장이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영국 수상의 용지에 타이핑된 안이라고 생각된다.<sup>40</sup> 수정한 점의 한 가지는 조선의 독립에 관해서 “적당한 때에(at the proper moment)”였던 것이 “적절한 절차로(in due course)”라고 바뀌어져 있다. 이것은 식민지의 독립에 소극적이고 신중한 영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이 폭력과 탐욕으로(by violence and greed) 취한 모든 정복지는 그들의 마수(clutches)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문장은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취한 다른 모든 영토에서 추방된다”라고 수정되었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을 냉정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용적으로는 덧붙여진 점은 없다. 이러한 이른바 영국 안이 최종 텍스트의 기초가 되었다.

26일에는 오후 3시 반부터 해리먼과 카도간 사이에서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해리먼은 “성명문에 가해진 나의 개정이 맘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카도간은 적고 있다. 4시쯤 되었을 때 처칠이 수정한 안이 도착해 곤란한 상황이 해소되어 “우리는 그 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가서 수상과 대통령, 장제스 부부와 함께 앉아서 잠시 동안 가십거리를 이야기했다”라고 카도간은 적고 있다.<sup>41</sup> 그러나 남겨진 영국 안에 처칠이 가필한 점은 그렇게 큰 수정이 아니었고 카도간이 적고 있는 부분과

<sup>39</sup> D. Dilks, ed., 1971, 앞의 책, p. 577

<sup>40</sup> 처칠이 수정한 영국안 사진본은 *FRUS*, Cairo and Teheran, pp. 404에 있다. 그것을 청서한 것이 *Ibid.*, pp. 405~406에 있다.

<sup>41</sup> D. Dilks, ed., 1971, 앞의 책, p. 578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성명서 안이 세 정상의 회의에 회부되어 승인된 것 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루스벨트와 동행했던 루스벨트의 아들 엘리엇 루스벨트 사관의 회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오후는 최종 정치회담에 할애되었다. 장제스 부부, 수상, 해리먼, 이든, 카도간은 대통령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정원의 자리에 앉아 성명서의 말을 고쳤다.”<sup>42</sup>

장제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루스벨트와의 회담은 4시 반까지 걸렸다. 처칠, 이든, 카도간, 해리먼과 왕충후이 비서장 모두 출석했다. 그들은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든이 그 자리에서 한번 낭독했다. 나와 루스벨트, 처칠 두 사람은 모두 동의하였고 마침내 원고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처칠이 스탈린과 테헤란 회담을 끝낸 후, 공포시기를 다시 정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인정했다.”<sup>43</sup>

카도간 등이 정리한 안이 그대로 승인되었던 것인지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수정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26일의 과정으로 인해 성명서에는 미국 안이나 영국 안에 없었던 한 문장이 더해진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일본은 그 힘을 알 것이다”의 뒤에 나오는 문장, 즉 “삼대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억제하고, 벌하기 위해 이 전쟁을 하고 있다. 삼국은 자신들의 어떠한 이득도 바라지 않으며 영토 확장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라는 문장이다. 바로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론 중에서 주목되고 있는 ‘영토불확대 원칙’을 언급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누구의 어떠한 판단으로 이 문장이 들어간 것일까.

카이로·테헤란 회담의 연구자 케이트 세인즈바리는 1985년의 『전기』라는 저서에서, 이 문장은 처칠과 카도간의 의견이 포함 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카도간과 처칠이 획득할 수 있었던 최대의 것은 일본이 취했던 모든 영토로부터 추방된다는 것과 삼대국은 ‘영토 확장의 생각을 갖

<sup>42</sup> Elliott Roosevelt, 1946, *As He Saw It*.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p. 166

<sup>43</sup> 張秀章 編, 2007, 앞의 책, 687쪽

지 않고, '자신들의 어떠한 이득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표명을 미국 안에 추가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영토불확대 원칙의 표명이라는 것은 "장차 중국의 홍콩, 티베트 요구, 나아가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야망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었다"고 적고 있다.<sup>44</sup>

그러나 그 주장 중 절반은 맞지 않다. 일본이 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영국안의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미국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토불확대 원칙'의 표명이 영국 측의 제안이었다고 한다면, 만주를 중국에게 돌려준다고 성명서에 명기하게 될 때 만주에 관심을 가진 소련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영국이 걱정하고 있었다고 세인즈바리가 쓰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탈린과의 테헤란회담을 앞두고 영토불확대 원칙을 여기서 재확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미국은 소련 참전의 보상으로 쿠릴제도를 소련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었지만, 쿠릴제도는 평화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영토불확대 원칙'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것이다.

그녀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를 보아도 그녀의 주장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의문이다. 실제 그녀는 9년 후에 쓴 책에서는 '영토불확대'의 주장을 넣은 것이 영국 측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만다.<sup>45</sup>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필을 제안했던 것은 중국 측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창한 대동아선언을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중국 측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선전적인 전쟁목적 선언에 대항하여 미·영·중 삼국의 전쟁목적을 훌륭한 것으로서 내세우고 싶다는 것이 동기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중국 측의 동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이 문장은 매우 급하게 추가된 듯한 문장이다. 대서양헌장 제1항은 양국은 "영토적 확대나 그 외의 증대강화를 일체 원하지 않고 (their countries seek no aggrandizement territorial or other)"<sup>46</sup>

<sup>44</sup> Keith Sainsbury, 1985, *The Turning Point: Roosevelt, Stalin, Churchill, and Chiang Kai-Shek, 1943; The Moscow, Cairo, and Teheran Confer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p. 214

<sup>45</sup> '결국, 영국이 쟁취한 최대의 것은 일본은 그들의 획득했던 영토 전부를 되돌려 주도록 강요받아야 한다는 표명이었다.' Keith Sainsbury, 1984, *Churchill and Roosevelt at War: The War They Fought and the Peace They Hoped to Make*, London: Macmillan, p. 174

라고 되어 있어 격조가 다르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 측의 의견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생각으로 마지못해 인정했던 것은 아닐까.

## V. 카이로회담 이후

카이로회의에 이어서 11월 28일부터 테헤란에서 미·영·소 정상회담이 열렸다. 카이로회담의 성명문은 소련 측으로 넘어갔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의 반응을 신경 쓰며 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이것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날 중에 몰로토프 외상이 해리먼과 영국의 주소 대사에게 답신을 전했다. "스탈린 원수는 [...] 회의의 성명문 내용을 인지했다. 스탈린 원수는 정보에 감사하며 이 성명문에 관한 어떠한 견해도 없다고 말했다."<sup>47</sup>

테헤란회의의 중심 의제는 유럽 전선의 문제였지만 일본과의 전쟁 문제도 28일에 열린 최초의 삼국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다. 스탈린은 "독일이 최종적으로 격파되면 시베리아에 필요한 지원군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고, 우리는 공동전선에서 일본을 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라고 대일참전을 정식으로 약속했다. 29일의 루스벨트, 스탈린 양자회담에서는 스탈린은 "필요로 하는 것은 독일이 또다시 침략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국경 가까이의 독일 내부 지역, 혹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라도 모종의 물리적인 지역을 통제하는 것이다. [...] 같은 방법이 일본의 경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일본에 가까운 섬들을 일본이 침략의 코스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sup>49</sup> 루스벨트는 100퍼

<sup>46</sup> *FRUS*, 1941, Vol. 1, Washington, 1958, p. 368

<sup>47</sup>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p. 185

<sup>48</sup> *FRUS*, Cairo and Teheran, p. 489;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p. 95

<sup>49</sup> *FRUS*, Cairo and Teheran, p. 532

센트 찬성한다고 답했다. 스탈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쿠릴열도이고 루스벨트의 머릿속에는 오키나와가 있었을 것이다.

11월 30일 제2회 삼국 정상회담에서 처칠이 스탈린에게 카이로회담의 성명문을 읽었는지 물었다. 스탈린은 읽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

지만 성명문과 그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승인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은 독립해야 하고, 만주, 대만, 평후제도는 중국에게 돌려줘야한다는 것은 옳다.”<sup>50</sup> 이 표명은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을 안심시켰다.

잠시 소련의 국토가 광대하다는 것이 화제에 올랐다. 스탈린이 러시아가 이러한 국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독일에게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칠은 러시아와 같은 대국은 부동항을 가지는 것이 어울린다고 말하고 그것은 강화 때의 결정해야 한다며, 동지끼리의 의논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은 러시아의 ‘정통한 문제제기’에 이론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스탈린은 이 건에 대해서는 서두를 것 없이 적당한 시기에 논의하면 괜찮다고 말했지만,<sup>51</sup> 확실히 만족한 것 같았다.

소련 측의 기록에서는, 스탈린은 소련의 함선이 극동에서는 봉쇄되어 있고 시모노세키해협이나 쓰시마해협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둘 다 언제 일본이 폐쇄할지 모른다고 말하며 보상에 대한 약속을 은근히 확인하고 있다. 루스벨트와 처칠도 당연히 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반응했다.<sup>52</sup>

회담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루스벨트의 귀국 후 태평양전쟁 회의 연설에서, 스탈린은 전 사할린의 반환과 쿠릴제도의 인도를 요망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루스벨트는 이 연설 중에서 스탈린이 “조선인은 아직 독립통치를 행사하여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40년간의 신탁통치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히 동의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sup>53</sup>

## VI. 카이로·테헤란 회담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일본 측은 카이로·테헤란 회담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도조 수상은 1943년 12월 8일, 카이로·테헤란 두 회담에 대한 반론을 단파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우선 “대동아 10억 민족의 견고한 공동결의는 지난번 대동아회의로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설명한 후, “적 미

50 Ibid., p. 566

51 Ibid., pp. 566~567

52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p. 142 미국 측 자료에는 이 발언은 없다.

53 FRUS, Cairo and Teheran, p. 869

국·영국의 지도자”는 “입으로 정의, 인도, 박애, 인의를 외치면서 그 행하는 바는 표리상반된다” “특히 동아에 대해서는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동아 여러 민족에 대하여 [...]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결국 그들이 동아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구한 예속화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카이로회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최근 카이로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는 마음대로 동아의 처우를 논하고 제국을 삼류국가로 비하하여 호언하고 있다 [...] 게다가 오랫동안 그들이 약속해 온 전 세계에 걸친 영역과 [...] 압박받는 민족의 해방에 관해서는, [...]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또한 인도도 아니다. [...] 구태의연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타민족 착취이다.” “카이로회담이야말로 참으로 이러한 분수에 넘치는 희망을 내외에 폭로하며 그들의 궁극적인 전쟁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세계에 공언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sup>54</sup>

도조 수상의 이러한 말들은 전쟁 중인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적국의 전쟁목적 선언을 기만적인 정치선전이라고 하여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

## VII. 포츠담선언에 인용된 카이로선언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은 1945년 7월 26일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이 작성하고 중국이 지지한 것이었다. 소련은 8월 8일에 참전하면서 발표한 대일선전포고 중에 포츠담선언에 대한 동조를 선언했다.

포츠담선언<sup>55</sup>은,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하면 “일본국 군대의 [...] 완전한 괴멸”과 함께 “일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군국주의자적 조언자에 의해 계속 통치될 것인지, 이성의 길에 설 것인지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

54 外務省, 1997, 『終戰史録』, 82~83쪽

55 영문은 앞의 책, 504~505쪽. 일본어 번역은 앞의 책, 506쪽

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조건을 받아들여 항복할 것, 일본 군대는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terms)은 다음과 같다”로 하여, 군국주의의 구축,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세계정복의 행동에 나서게 한 과오를 범한 자의 권력과 그 세력”의 영구제거를 비롯하여 일곱 항목의 조건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영토에 관한 조건이 있다. 영문과 일본 정부 번역문을 나란히 싣고 있다.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八. 『カイロ』宣言ノ条項ハ履行セラルベク又日本国ノ主權ハ本州、北海道、九州及四国並ニ吾等ノ決定スル諸小島ニ局限セラルベシ.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역문에서는 terms를 ‘조항’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에 ‘조항’이라는 의미는 없다. ‘조건’, ‘요구’라고 번역해야 한다. ‘카이로선언의 조건’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카이로선언에 있는 일본에 대한 요구, 태평양 위임통치령의 포기, 만주·대만·평후제도의 중국으로의 반환, 조선의 독립이 일본에 의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영토로는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정도는 남지만, 이 이외의 여러 작은 섬들의 귀속은 후에 연합국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카이로선언 첫머리에 적혀 있는 “자국을 위한 어떠한 이득도 요구하지 않고 영토 확장의 어떠한 뜻도 갖지 않는다”는 연합국 삼국의 방침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서약이 포츠담선언에 명기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영국은 소련의 대일참전을 촉구하기 위해 1945년 2월 11일 알타회담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에게 남사할린을 반환하게 하고, 쿠릴열도를 소련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포츠담선언은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영토불확대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에 관한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의 반응은 나중에 그가 GHQ의 요청에 응하여 대답한 진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카이로선언은 그 외의 관계도 그렇지만, 대서양헌장과의 관계에서도 모순이 있다. 또한 청일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보는 것에는 역사상 오류가 있다. 또한 만약 소련이 포츠담선언에 참가할 경우에는 남사할린 등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러일전쟁이 문제가 된다. [...] 러일전쟁이라는 것은 옛 제정러시아 정부와 일본 측 양쪽의 자본주의적 활동으로 인한 만주에서의 투쟁이 러일전쟁이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을 단순히 일본만의 침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으로 그 점에 관해서 모순이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sup>56</sup>

도고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하며, 카이로선언에 이의를 달고 있다. 영토불확대 원칙은 대서양헌장과의 관계에서만 문제시되고 있고, 포츠담선언이 대서양헌장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도고는 스가모[巢鴨] 교도소 안에서 쓴 수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서 조선의 독립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만 등의 반환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일본의 영토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이외의 경우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어 대서양헌장에 비추어 보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sup>57</sup>

도고는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 외무차관에게 “법률적 관점에서 엄밀한 검토를 가할 것을 명했다, 연합국과 교섭하여 “불리하고 불명확한 점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명을 받아 외무성에서 포츠담선언의 번역과 검토를 했던 사람은 조약국 제1과장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였다. ‘카이로선언의 terms’를 ‘카이로선언의 조항’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였다. 그러나 그의 조서에는 카이로선언에서 ‘영토불확대 원칙’에 주목하여 이에 기

반하여 입론하는 기색은 없다. 그의 견해는 삭제된 조

56 栗原健·波多野澄雄 編, 1986, 『終戦工作の記録』下, 東京: 講談社, 325~326쪽

57 東郷茂徳, 1989, 『時代の一面—大戦外交の手記』, 東京: 中央公論社, 506쪽

서의 1절, “따라서 이번에 선언한 영토조항은 메이지유신 당시에 비해 증가한 제국 인구를 메이지유신 당시의 제국 영토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사활에 관한 것이 됨에 비추어, 이번 선언 중 우리가 가장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 표현되어 있다.<sup>58</sup>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수락한 단계에서, 일본 정부는 포츠담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카이로선언에 관한 문언이 ‘영토불확대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다.

전후에도 오랫동안 카이로선언은 일본에게 ‘무조건항복’을 강요한 난폭한 항복권고로 여겨졌다. 아마도 카이로선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부정적인 반발이 마지막으로 표출된 것은 1953년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전권대사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로선언은 전쟁 중의 흥분상태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 VIII. 맺음말

카이로회담의 성명문을 준비해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면, “삼국은 자신들의 어떠한 이득도 바라지 않으며 영토 확장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1절은 제1차 안에도 제2차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것이 분명하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이 대일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고 이를 위해 소련에게 일본의 영토 일부를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불확대 원칙을 여기에서 선언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최후의 덧붙임은 장제스 쪽에서의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츠담선언 중에서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써넣었던 것도 연합국

이 의무로서의 ‘영토불확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 카이로 선언의 핵심인 일본에서의 몇 개의 영토 반환을 일본에게 이행시키려고 한 것이 합의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은 카이로선언에 강한 반발과 적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카이로선언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소련에 대한 영토 요구를 두 섬의 반환에서 4개 섬의 반환으로 수정했던 1955년 말 이후이다.



<sup>58</sup> 日本外交史料館文書, A1,0,0,1 『ポツダム宣言受諾關係』 제1권, 0110-0130

## 국문 초록

1944년 11월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삼국의 정상이 회담을 했다. 발표된 공식 성명서는 카이로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담과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삼국 정상이 합의한 결의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연구된 것은 많지 않다. 영국인 케이트 세인즈바리의 1985년 연구가 거의 유일한 연구이며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의 연구는 알 수 없다.

종래 카이로회담·카이로선언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주로 해방 후 조선의 운명과의 관련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포츠담선언에 카이로선언이 인용된 부분에서 영토불확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에 높은 관심이 모아져 왔다. 카이로선언은 소련(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북방 4섬 영토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써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카이로회담·선언 그 자체에 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필자는 일본의 연구자로서, 일본의 영토문제와의 관련에 초점을 맞추고, 카이로회담과 선언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카이로회담, 카이로선언, 쿠릴열도, 일본, 영토문제, 포츠담선언

## ABSTRACT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and Japanese Territorial Issues

Wada Haruki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Tokyo

In November 1944,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held a summit meeting in Cairo and issued a joint statement, which is known as the Cairo Declaration. The Cairo Summit and the Cairo Declaration are very significant as they represent the determination of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which were fighting with Japan in the Asia-Pacific region. However, the Cairo Summit and the Cairo Declaration have not been researched very well. The study by a British researcher, Kate Sainsbury, is the only research on this topic, while research in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re not known.

Attention to the Cairo Summit and the Cairo Declaration has focused on the situation in Korea after its liberation. However, the part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at quoted from the Cairo Declaration which states the principle of “non-expansion of territory” has drawn attention in Japan because the Cairo Declaration is an important ground to support Japan’s territorial claims over the Kuril Islands against Russia. Thus, the Cairo Declaration itself has not been a focus of research in Japan.

As a researcher specializing in Japan, I would like to reexamine the Cairo Summit and the Cairo Decla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erritorial issues of Japan.

Keywords

Cairo Summit, Cairo Declaration, Japanese territory, the Kuril Islands issue, the principle of non-expansion of territory, Franklin Delano Roosevelt, Winston Churchill, Chiang Kai-shek, Joseph Stalin, Assembly of Greater East-Asiatic Nations, Joint Declaration of the Assembly of Greater East-Asiatic Nations, Potsdam Declaration

## 참고문헌

- コーデル·ハル, 1949, 『回想録』, 朝日新聞社
- 東郷茂徳, 1989, 『時代の一面—大戦外交の手記』, 東京: 中央公論社
- 末沢昌二·茂田宏·川端一郎 編著, 2003, 『日露(ソ連)基本文書·資料集(改訂版)』, 東京: ラジオプレス
- 五百旗頭真, 1985, 『米国の日本占領政策』上, 東京: 中央公論社
- 外務省, 1997, 『終戦史録』, 北洋社
- 外務省国内広報課, 2000, 『われらの北方領土』
- 栗原健·波多野澄雄 編, 1986, 『終戦工作の記録』下, 東京: 講談社
- 張秀章 編, 2007, 『蒋介石日記揭秘』下, 北京: 團結出版社
- 田中孝彦, 1993, 『日ソ国交回復の史的研究』, 東京: 有斐閣
- 波多野澄雄, 1996, 『太平洋戦争とアジア外交』, 東京大学出版会
- 和田春樹, 1990, 『北方領土問題を考える』, 東京: 岩波書店
- 『第二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제4호(1955.12.16)
- 『第二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제6호(1955.12.9)
- 『第39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 제2호
- 日本外交史料館文書, A1,0,0,1 『ポツダム宣言受諾関係』 제1권
- 《毎日新聞》, 1956. 8. 2
- 《朝日新聞》, 1952. 8. 1

- Cordell Hull, *Memoirs*, II, 1948, New York: Macmillan
- Dilks, D. ed., 1971, *The Diaries of Sir Alexander Cadogan*, London: Cassell
- Elliott Roosevelt, 1946, *As He Saw It*,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Washington
- Keith Sainsbury, 1985, *The Turning Point; Roosevelt, Stalin, Churchill, and Chiang Kai-Shek, 1943; The Moscow, Cairo, and Teheran Confer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 Keith Sainsbury, 1894, *Churchill and Roosevelt at War: The War They*

- Fought and the Peace They Hoped to Make*, London: Macmillan
- Tegeranskaia konferentsiia, 1978, *rukovoditelei trekh soiuznykh derzhav-SSSR, SShaA I Velikobritanii, Sbornik dokumentov*, Moscow
- FRUS, 1941, Vol. 1, Washington, 195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국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문건에 관한 법적 고찰

김현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머리말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한다고 주장하는 연안국은 자국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sup> 이렇게 제출된 정보는 동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며 위원회는 제출된 문서 심사 후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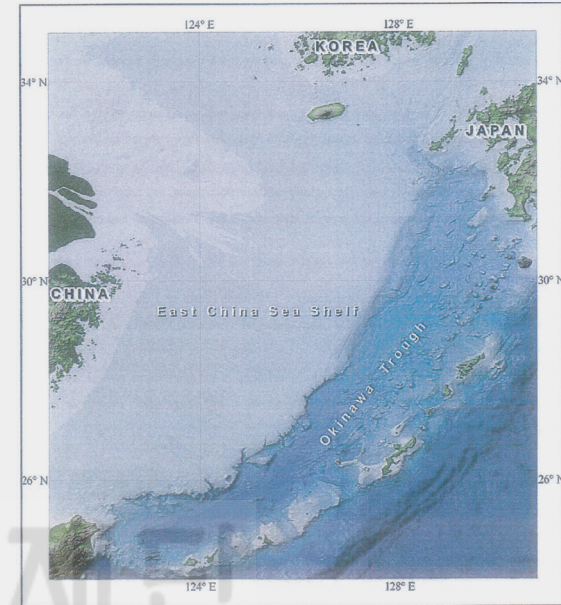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9년 5월 11일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에 대한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sup>3</sup>를 제출하였고,<sup>4</sup> 이를 통해 향후 언제든지 정식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요

1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2 Ibid

3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는 2008년 제18차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SPLoS/183)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①대략적인 대륙붕 외측한계, ②현재 문서제출 준비현황, ③향후 정식정보 제출 계획 등을 우선 제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한계 정보제출 의무를 충족하게 하는 제도이다. 김현수, 2009, 「2008년도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제21(1)호, 57쪽

4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preliminary.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preliminary.htm)



〈그림 1〉 동중국해

출처: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kor\\_2009preliminaryinformation.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kor_2009preliminaryinformation.pdf).

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 제65번째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동중국해에서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문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다.<sup>5</sup>

한국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정식정보 제출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번엔 정식정보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6</sup>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은 대륙붕을 지형학적 기준(자연연장) 또는 거리 기준(200해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륙붕은 ①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outer edge of continental margin) 또는

5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submissions.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submissions.htm).

6 《조선일보》, 2012. 12. 28 참조.

②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 미만인 경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금번 한국의 정보 제출은 동조 1항 첫 번째 기준에 기초하여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한국의 대륙붕 권원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서,<sup>7</sup>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번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sup>8</sup> 즉,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대륙붕 개념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 한국 측이 대륙붕 권원을 보유하며, 유엔해양법협약 어느 규정에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고,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은 제출국 권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로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sup>9</sup>

이 글에서는 금번 한국 정부가 동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사예 및 국가관행 등을 기초로 분석·평가하여 동 문서의 법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결방향 등을 전망하고자 한다.

## II. 문서제출 배경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된 후 20여 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 동 협약은 명실상부하게 해양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본 협약은 21세기 해양의 최대 관심사인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여 그 법적 근거와 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간 해양이익의 강한 충돌로 그 구체적 이행과 적용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 문제는 오늘날 모든 연안국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국가

7 《조선일보》, 2012. 11. 26 참조.

8 《조선일보》, 2012. 12. 28 참조.

9 2009년 5월 6일 말레이시아·베트남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영토분쟁 중인 남사군도 200해리 내측에 대해 공동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다.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mysnm33\\_2009.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mysnm33_2009.htm)

적 명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양경계획정이란 바로 해당 국가의 해양관할수역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해양자원 특히 광물자원이나 석유자원 등이 국가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경계획정 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계획정 대상 수역 내에 분쟁도서가 있거나 대상수역의 폭이 좁아 해저자원의 분포구역이 중첩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계획정 문제의 해결방식은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하는 것이나, 이 역시 당사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그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 해결이 어려운 경계획정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엔은 대륙붕한계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고 동 위원회에 해당 국가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200해리 이원 주장 대륙붕을 심사하고 그 한계를 권고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동시에 동 위원회 권고를 근거로 당사국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0</sup>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대륙붕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며 대륙붕 및 대륙붕을 구성하는 부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륙변계는 연안국 본토의 해저연안으로 이루어지며, 대륙붕의 해저 및 하층토, 대륙사면 및 대륙용기로 구성된다. 대륙변계는 심해상과 그에 부속한 해양산맥 또는 하층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동 협약 제76조는 대륙붕에 대한 지리적·지형학적 또는 지질학적 정의와는 달리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 군도 국가나 도서 국가들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를 경계획정하도록 허용하는 법적인 근거

10 김현수, 2009, 「유엔에 제출된 예비문건 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제21(3)호, 49~50쪽

거가 되기도 하였다.

동 협약 제77조에 따르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사실적이며 원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①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하여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이다.
- ③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동 협약 제2부속서 제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따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동 협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는 연안국에 의한 공평한 지리적 대표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대륙붕의 외측한계 확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하여 연안국에 의해 확정된 대륙붕의 경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동 협약 제2부속서 제4조는 연안국의 제출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자국대륙붕의 외연을 확립하려고 하는 경우, 동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및 기

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본 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동 연안국은 동국에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 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규정의 구체적 이행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하여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든 연안국의 책무인 것이다. 따라서 연안국이 이러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동 협약은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서의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제출국에게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륙붕에서 연안국은 이들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sovcreign rights)를 행사하며 타국은 해당 연안국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개발활동도 할 수 없으므로 연안국은 해당 대륙붕에 대하여 그 탐사, 이용 및 개발을 독점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륙붕 자체가 소위 ‘해저자원 관할수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III. 관련 근거

#### 1.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에서는 대륙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며,<sup>11</sup>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대륙변계(continentl margin)에 대하여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 용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

11 제76조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하여 두 가지 Formulae Rules, 즉 퇴적암의 두께가 가장 바깥 고정점에서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선과 대륙사면의 끝에서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두 가지 Constraints Rules, 즉 영해기선에서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는 요건을 요구한다.

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 협약 제2항에 따르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동 협약 제76조 제7항에 따르면, 연안국 대륙붕 외측한계 고정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6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대륙붕이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동 협약 제76조 제1항~제7항에 따라 동중국해 동쪽지역에서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에서 350해리까지 대륙붕 외측한계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한국 정부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하여는 2009년 5월 12일 한국 정부가 유엔에 예비정보 제출시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sup>12</sup> 한국의 예비정보에는 동중국해 200해리 대륙붕 외측한계가 오키나와 해구에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곳에서의 동중국해 해저 및 하층토가 협약에 규정된 한국 연안에서 한계까지 확장되는 지속적인 대륙지각을 포함한다고 한다.<sup>13</sup>

그러나 예비정보는 한국의 외측한계를 1974년 체결된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상의<sup>14</sup>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 JDZ) 내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까지로 한정하였다. 동 수역 내에서 양국은 석유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5</sup>

이는 한·일 간에 체결된 협정을 고려하여 한·일 간 동중국해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고 유엔에서 인정한 예비정보제출을 근거로 하여 구속력이 없는 대략적인 외측한계만을 고려하여 제출하였다.<sup>16</sup>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영해 기선부터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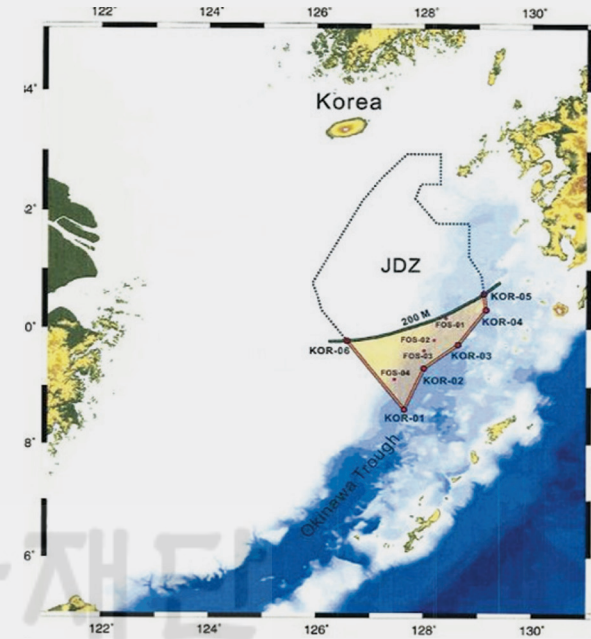
12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preliminary.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preliminary.htm)

13 *Ibid*

14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하여 2028년 6월 22일에 종료한다.

15 *Ibid*, 제5조 제1항

16 이에 관하여는, 김현수, 2009, 앞의 글, 47~48쪽



〈그림 2〉 한일공동개발구역 및 예비정보 제출수역  
출처: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kor\\_2009preliminaryinformation.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kor_2009preliminaryinformation.pdf), p. 8

17 CLCS에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는, Ted L. McDorman, 1995, "The Entry into Force of the 1982 LOS Convention and the Article 76 Outer Continental Shelf Regim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IJMCL)* 10, pp. 165~187; Ted L. McDorman, 2002,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 Technical Body in a Political World", *IJMCL* 17, pp. 301~324; David A. Colson, 2003,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ring Stat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7, pp. 91~107; Huw Liewellyn, 2007,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를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항에 의거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

## 2. 대륙붕한계위원회(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sup>17</sup>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근거하여 200해리 대륙붕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를 행한다. 또한 동 협약 제76조 제10항은 "이 조의 규정은 대항 또는 인접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확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 대륙

붕이 한국과 기타 관련국가와의 사이에 경계획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러한 문서 제출이 경계획정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sup>18</sup>

### 3.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sup>19</sup>

동 의사규칙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하여 연안국이 문서를 제출할 경우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와 함께 동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sup>20</sup> 또한 대상수역에서 대항 또는 인접국 간 미해결 육상 및 해상분쟁이 존재시, ‘위원회’는 문서제출이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을 침해하지 않음을 제출국으로 하여금 확신을 받아야 하며,<sup>21</sup> 이 경우 동 의사규칙 제1부속서에 따라 경계획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륙붕 부분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2</sup> 또한 동 제1부속서는 “연안국의 문서제출은 해당 대륙붕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서 국가 간의 경계획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륙붕 부분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다.”<sup>23</sup>라고 한다. 한편, 동 ‘위원회’는 대항 또는 인접국 간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제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sup>24</sup> 이 밖에도 대륙붕한계위원회 과학적 및 기술적 지침<sup>25</sup> 등이 있다.

Joint Submission by France, Ireland,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Quarterly* 56, pp. 677~694; Ron Macnab, 2004, “The Case for Transparency in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UNCLOS Article 76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1982”,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ODIL)* 25(1), pp. 1~17; Michael Sheng-ti Gau, 2009, “Third Party Intervention i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Regarding a Submission Involving a Dispute”, *ODIL* 40, pp. 61~79 참조.

18 대륙붕한계위원회 제2부속서 제4조는,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언급한다.

19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제46조 (Rule 46)는 “대항 또는 인접국가 간 또는 미해결 육상이나 해상분쟁의 경우, 위원회는 제출하는 연안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쟁을 통보받아야 하며, 동 제출이 국가 간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제출하는 연안국으로 하여금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20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제45조 (Rule 45).

21 *Ibid.*, 제1부속서 제2항

22 *Ibid.*, 제45조(Rule 46)

23 *Ibid.*, 제1부속서 제3항

24 *Ibid.*, 제6항

25 1999년 5월 13일 대륙붕한계위원회 제5회기에서 채택되었다.

## IV. 동중국해 지형 분석

### 1. 지형

한국은 남쪽 및 남서쪽 방향에서 동중국해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그림 3>에서 보듯이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데 하나는 동중국해가 넓고 완만한 경사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좁은 상태의 동북 및 서남 방향으로 전개되는 오키나와 해구(Okinawa Trough)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가지 지형적 특징은 수심 180~200m 깊이의 뚜렷한 단절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sup>26</sup>

동중국해는 한국에서 대만까지 확장되며 델타로 형성된 양자강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 면적이 80만km<sup>2</sup>나 된다.<sup>27</sup> 동중국해 대륙붕은 또한 경사가 완만하고 단조로운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오키나와 해구에서 점차 깊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키나와 해구는 그 지형의 굴곡이 심하고 북서쪽에서는 그 경사가 단조로우나 남동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불규칙하다. 오키나와 해구는 북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지며 남쪽에서는 수심이 2,200m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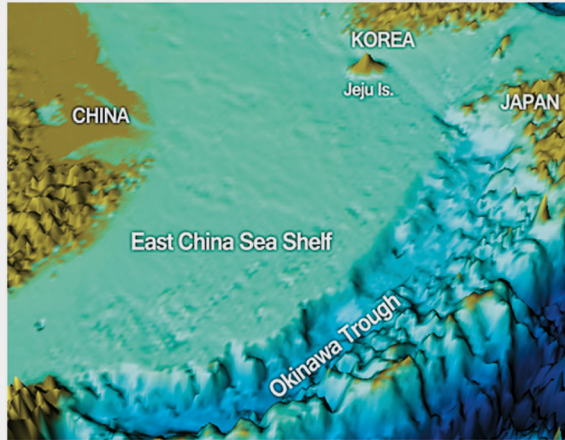
### 2. 자연연장

동중국해 및 오키나와 해구에서의 대륙붕 및 대륙사면은 지형학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는 바, 제주도과 대륙붕 단절 사이의 대륙붕 지역은 평균 1%의 해저 경사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륙붕이 단절되는 지역 이원의 해저는 3%의 상향 경사도를 갖게 되어 상당히 가파른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지형학적 연속성은 오키나와 남쪽과 비교하여 오키나와 북서쪽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대륙붕 단절이 화산 해산, 구릉 및 연안 도서를 포함한 높은 지형의 존재로 인하여 분명히 나타난다.<sup>28</sup>

26 김현수, 2011, 『해양법각론』, 215쪽

27 이석우·박영길, 2012, 「동중국해 해양 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Strategy 21』 제15(2)호, 185쪽 참조.



〈그림 3〉 동중국해 및 오키나와 해구 지형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의 육지영토를 구성하는 해저지형(암석 지형)은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를 지나 제주도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 오키나와 해구의 단절 부분 중심까지 이어지게 된다.<sup>29</sup>

### 3. 대륙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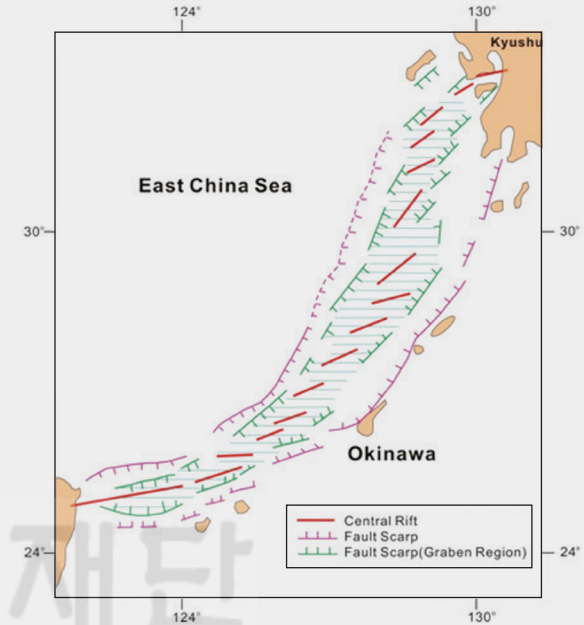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의 정확한 정의는 연안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대륙사면이 대륙붕 외측한계를 정하는 기준선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sup>30</sup>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의 중요성을 동 ‘위원회’ 지침(Guidelines)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대륙사면은 확장된 대륙붕 및 그 외측한계 경계 권원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엔해

28 오키나와 해구와 대륙붕의 관계 문제에 관하여는 김관원, 2012,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 『영토해양연구』 Vol. 4, 70쪽 참조.

29 김현수, 2011, 앞의 책, 215쪽

30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b)



〈그림 4〉 오키나와 해구 단절 부분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양법협약 제76조 제4항(a)(b)에 따르면 공식규정(formulae rules)으로 특정된 대륙붕 한계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이다.<sup>31</sup>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 제4(b)항에서 대륙사면을 결정할 목적으로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으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동 지침 제5.1.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 협약 제76조 제4(b)항이 대륙사면의 결정은 대륙사면 해저 경사도의 최대변경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대륙사면 결정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① 대륙사면의 기저(基底)로서 정의된 지역을 식별하고, ② 대륙사면 기저에서 경사도가

31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제5. 1. 1항

최대한 변경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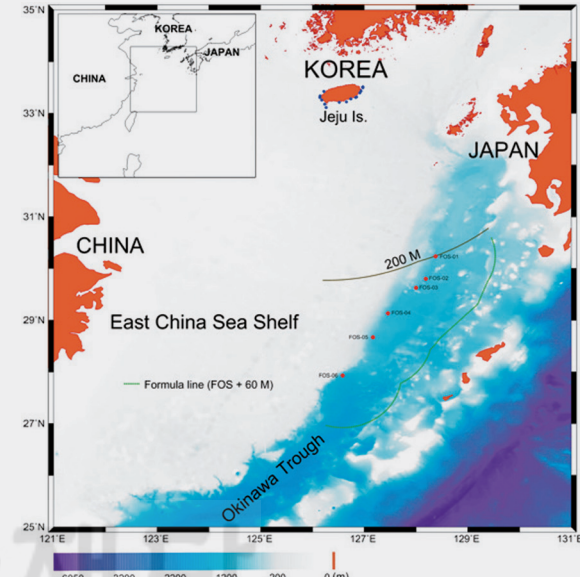
## V. 제출문서의 법적 분석

### 1. 관련 규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 '위원회'에 영해기선부터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 협약 제2부속서 제4항에 의거 한국은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와 함께 영해기선부터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에 대한 상세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동 협약 제76조 제1항은 대륙붕외측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즉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 협약상 연안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에서 어떠한 방식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았고, 동 중국해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을 위하여 동 협약 제76조 제1항 첫째 항을 적용하였다. 동 협약 제2부속서 제3항은 위원회 기능을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서의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중국해가 반폐쇄해라서 그 폭이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국은 동 협약 제2부속서 제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륙붕 외측한계가 200해리를 초과하는”이라는 문구가 대항 또는 인접국 연안기선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제출국 연안기선부터 거리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에 대한 연안국 제출을 언급하고 있는 동 협약 제2부속서 제4항<sup>32</sup> 및 연안국의 대륙붕을 언급하는 동



〈그림 5〉 한국 주장 동중국해 대륙사면 위치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협약상<sup>33</sup>의 정의와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점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동 협약에서 일국부터 200해리 이원에 존재하나 타국의 200해리 이내인 수역에서의 대륙붕외측한계 설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즉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번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즉 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대륙붕 개념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 한국 측이 대륙붕 권원을 보유하고, ② 동 협약 어느 규정에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며, ③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은 제출국 권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로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

32 제4항은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한다.

33 제76조(대륙붕의 정의)는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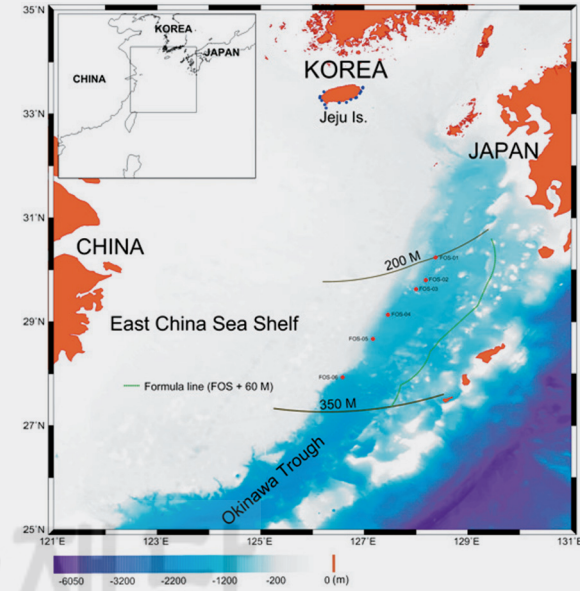
개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연안국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양자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서 생겨난 상이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동 협약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바, 즉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sup>34</sup> 그리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sup>35</sup> 하여 각자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을 명시한다. 이 점에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은 서로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한계 이원으로 연안국의 대륙붕은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협약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의 대륙붕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치는 동중국해 대륙변계의 외측끝까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따라 영해 이원으로 확장되는 해저지형을 포함하며, 이는 동중국해 대륙변계의 한계를 결정짓는 지리적 및 지형학적 불연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본 제출문서에서 기술된 대륙변계의 외측은 동 협약 제76조 4(a)(ii)항에 규정된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대륙사면끝단(Foot of Slope: FOS)의 위치는 동 협약 제76조 제4(b)항 및 동 협약 지침 제5.1.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 본 문서에서의 한국 기선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는 대륙사면의 끝부터 60해리 외측에서 나오는 85개 고정점을 포함하는 선으로 결정되었으나,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영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의사규칙<sup>36</sup>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제출문건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은 동 협약 제83조 제1항<sup>37</sup>에 의거 한국과 관련국가 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 위원회에 고지하였다.<sup>38</sup> 한국은 동 협약 제76조 제8항 및 동 협약 제83



〈그림 6〉 200해리 이원 대륙붕 최대 외측한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 제1항상의 의무가 본 제출을 통하여 최선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관련 해양경계획정과 관계국과의 협의

한국 정부는 본 제출이 동중국해에서의 대항 또는 인접국가와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동 협약 제76조 제10항,<sup>39</sup> 동 협약 제2부속서 제9조<sup>40</sup> 및 동 위원회 의사규칙 제1부속서 제1항에<sup>41</sup>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sup>42</sup>

한국 정부는 나아가 인접국가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sup>43</sup> 특

34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3항

35 *Ibid.*, 제78조 제1항

36 동 의사규칙 제1부속서 제2항은 “대항 또는 인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분쟁이 있거나 미해결된 육상 또는 해양분쟁이 있는 경우 (a) 이러한 분쟁을 문서제출국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37 제83조(대항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는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한다.

38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kor\\_65\\_2012.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kor_65_2012.htm), para.4.2, p. 7

39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획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0 제9조 “위원회의 행위는 대항국 또는 인접국 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1 1. “위원회는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문제 처리의 권한이 해당 국가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42 *Ibid.*, para.4.4, p. 7

43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executive\\_summary.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executive_summary.pdf), p. 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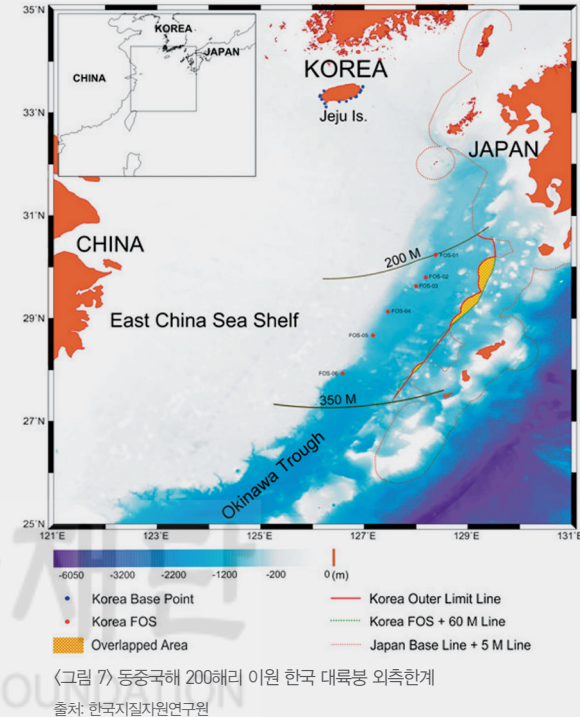
히 동중국해 200해리 위원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식문서 제출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동중국해 이용에 관한 기존협정 당사국의 권리 및 동 협정 비당사국의 어떠한 권리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접국가에게 확신시키려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안다.<sup>44</sup>

## VI. 맺음말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을 향유하고 있는 연안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대륙붕 바깥한계를 분명히 하고 자국의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해당수역에 대한 정밀탐사와 연구를 상당 기간 동안 수행하여 왔으며, 이 결과 자국 대륙붕 외측한계를 법적 및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를 입증하는 방대한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는 실로 ‘해저영토’ 확장이라는 국가적인 대업달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대륙붕 경계확정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한국의 대륙붕 권원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 문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관계국 간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륙붕 권원을 법적인 근거하에 최대한 확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 ‘위원회’ 절차규정에 따르면 대상수역 내에 해양 분쟁(경계확정 포함)이 존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이상 제출한 정보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국은 문서심사를 위하여 동 문서제출이 당사국 간 경계확정에 관하여 전혀 영향이 없음을 연안국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서제출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근거로 일본은 인접 또는 대항국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경계확정 <sup>44</sup> Ibid 참조.



〈그림 7〉 동중국해 200해리 이원 한국 대륙붕 외측한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측의 해당수역에서의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sup>45</sup>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는 동 협약상 대륙붕의 개념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 한국 측이 대륙붕 권원을 향유하며, 유엔해양법협약 어느 규정에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대륙붕한계 정보제출은 제출국 권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로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경계확정 문제와는 별개로 금번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sup>46</sup>

<sup>45</sup> 일본은 2008년 11월 태평양 방면에만 정식정보를 제출하였다.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jpn.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jpn.htm) 참조.

<sup>46</sup> 2009년 5월 6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영토분쟁 중인 남사군도 200해리 내측에 대하여 공동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다.

따라서 관련규정상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의 문서제출에 관련국이 분쟁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않고, 관례상 문서제출 및 심사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남중국해에 대한 말레이시아·베트남 공동제출문서(2009.5.6)와<sup>47</sup> 베트남 제출문서(2009.5.7)<sup>48</sup> 등이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베트남 공동제출문서에 대하여는 중국,<sup>49</sup> 필리핀<sup>50</sup> 및 인도네시아 등이<sup>51</sup>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베트남 제출문서에 대하여는 중국<sup>52</sup> 및 필리핀<sup>53</sup>이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CLCS는 소위원회 구성 여부부터 논의한 후 소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본격적으로 제출문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며, 이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권고를 심의·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 또는 근거를 기초로 하여 일본은 2013년 1월 11일 우리 정부의 문서제출에 대하여 유엔에 구상서 형식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sup>54</sup> 즉, 일본은 동 구상서에서 “① 동중국해에서의 한·일 간 대항해안의 폭이 400해리 미만이며, ② 이 지역에서의 대륙붕 경계확정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83조에 따라 관계국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sup>55</sup> 또한 일본 정부는 동 위원회 의사규칙 제1부속서 제5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분쟁 존재시, 위원회는 분쟁 관련국이 제출한 문서를 고려하거나 제출자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 이러한 지역에서의 제출은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인용하면서<sup>56</sup> 일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mysvnm\\_33\\_2009.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mysvnm_33_2009.htm)

<sup>47</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mysvnm\\_33\\_2009.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mysvnm_33_2009.htm)

<sup>48</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vnm\\_37\\_2009.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vnm_37_2009.htm)

<sup>49</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hn\\_2009re\\_mys\\_vnm\\_e.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hn_2009re_mys_vnm_e.pdf)

<sup>50</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lcs\\_33\\_2009\\_los\\_phl.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lcs_33_2009_los_phl.pdf)

<sup>51</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idn\\_2010re\\_mys\\_vnm\\_e.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idn_2010re_mys_vnm_e.pdf)

<sup>52</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vnm37\\_09/chn\\_2009re\\_vnm.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vnm37_09/chn_2009re_vnm.pdf)

<sup>53</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vnm37\\_09/phl\\_re\\_chn\\_2011.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vnm37_09/phl_re_chn_2011.pdf)

<sup>54</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jpn\\_re\\_kor\\_11\\_01\\_2013.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jpn_re_kor_11_01_2013.pdf)

<sup>55</sup> *Ibid.*

<sup>56</sup> 이에 관하여는, 김현수, 2008, 「대륙붕 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20(3)호, 35~38쪽

본은 “동 위원회에 제출 문건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sup>57</sup> 물론 한국 정부도 일본의 이의제기에 대한 이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sup>58</sup>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문서에 대한 심사 여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문서제출에 대한 사전동의나 이외는 별도로 동 위원회의 심사 여부 결정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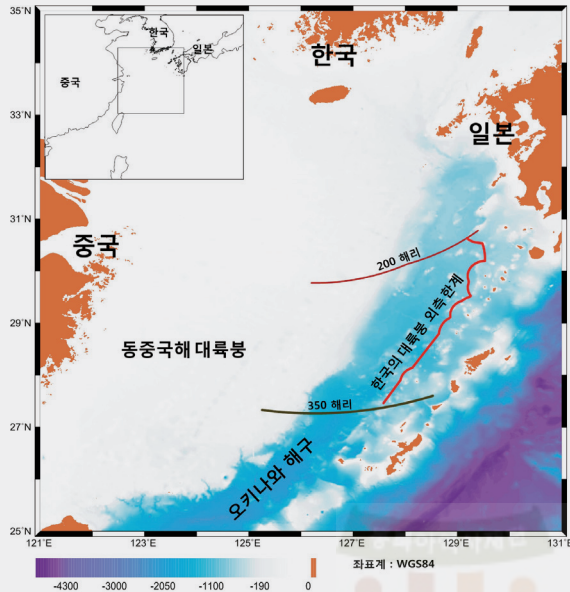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해당 연안국이 자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에 대하여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심사를 하여 해당 국가의 대륙붕 한계를 권고하여 대륙붕 경계확정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성격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0항 및 제2부속서 제9조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 제출 또는 CLCS의 심사·권고가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확정과 별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정보 제출 역시 해양경계확정 협상에 대한 법적 효과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제출국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의 권원(entitlement)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계확정 회담시 중간선 원칙이 아닌 제출국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따른 경계확정 방식을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충분히 원용될 수는 있다고 본다.

결국 인접 또는 대항국 간 대륙붕 경계확정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들은 관련국들이 제출한 정식문건의 내용과 성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계확정 교섭시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본 문건이 해당 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나,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하나의 국제법상 의무행위를 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만일 해당 국가가 본 문건에 제시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협상시 언급하거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를 왜곡할 경우 소위 국제법상의 금반언(禁反言) 원칙 등을 제시하여 경계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 합의에 이르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용이한 해

<sup>57</sup> *Ibid.*

<sup>58</su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kor\\_re\\_jpn\\_23\\_01\\_2013.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kor_re_jpn_23_01_2013.pdf);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kor\\_re\\_jpn\\_23\\_01\\_2013.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kor_re_jpn_23_01_2013.pdf).



〈그림 8〉 유엔에 제출한 한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출처: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executive\\_summary.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kor65_12/executive_summary.pdf), P.9.

결책을 도출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유엔에 제출된 정식 정보문건은 해당 연안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에 대한 법적·과학적 권원의 확인, 즉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 또한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한국 정부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문서제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우리 대륙붕 권원의 한계를 법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및 제시하였으며 둘째, 한국 정부의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에 활용된 고도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으며 셋째, 주변 이해당사국과의 해양마찰을 최소화하여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여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해결된 동

중국 대륙붕 경계획정문제를 해양법협약상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해양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문서제출은 우리의 대륙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받는 절차인 것이며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sup>59</sup>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종적인 경계획정협의의 도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정보제출이 경계획정작업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향후 동 ‘위원회’에서 심사가 된다면 그 권고결과를 참고로 이해당사국과의 해양경계(대륙붕)획정 교섭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9 이창열 2012,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규칙의 해석을 통해 본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4호, 131~132쪽 참조.

## 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위원회’)에 동중국해에서의 한국 대륙붕이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고 있는 연안국으로서 의무이행을 행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본 문서제출에 대하여는 일본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연장 주장과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향후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나, 한국의 문서제출 그 자체는 상당한 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 미만이므로 이러한 수역에서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본질적으로 그 개념이 상이한 바, 연안국 해저의 지리적 특성이 동 협약상의 대륙붕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번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정식 정보문건 내용에 대하여 이들 문건이 갖는 법적·과학적 의미를 분석 및 평가하여 동중국해에서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 결정을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 또는 대륙붕경계획정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 〈주제어〉

동중국해, 대륙붕한계위원회, 유엔해양법협약, 예비정보, 오키나와 해구, 해양경계획정, 대륙붕, 대륙사면, 배타적 경제수역, 자연연장

## ABSTRACT

A Legal Review of the Korean Documents Submitted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Kim, Hyunsoo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On December 26, 2012,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 report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dicating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country's territorial sea is measured and which is extended to the Okinawa Trough. This submission was based on article 76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s a State having a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miles. However, it is anticipated that Japan will strongly protest against Korea's submission. Also, most of the submission zones overlap with China's extended and claimed zones in the East China Sea continental shelf. Nevertheless, Korea's submission has great legal meaning in the law of the sea.

Some countries argue there is no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miles because the breadth of the East China Sea is not wider than 400 miles. But, the Convention reads that the concep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so a coastal state may claim its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miles if its geographical configur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s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analyse and evaluate a legal meaning of the document submitted by Korea to the CLCS. In addition,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decision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r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 Keywords

East China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eliminary Information, Okinawa Trough,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ontinental Shelf, Exclusive Economic Zone, Natural Prolongation

## 참고문헌

## [한국어 문헌]

- 김관원, 2012,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 『영토해양연구』 Vol. 4
- 김현수, 2008,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3호
- 김현수, 2009, 「2008년도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제21권 1호
- 김현수, 2009, 「유엔에 제출된 예비문건 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제21권 3호
- 김현수, 2011, 『해양법각론』, 청목출판사
- 이석우·박영길, 2012,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Strategy 21』 Vol. 15(2)
- 이창열, 2012,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규칙의 해석을 통해 본 대륙붕한계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4호

## [영어 문헌]

- Colson, David A., 2003,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ring Stat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7
- Gau, Michael Sheng-ti, 2009, "Third Party Intervention i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Regarding a Submission Involving a Disput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ODIL)* 40
- Gau, Michael Sheng-ti, 2011,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s a Mechanism to Prevent Encroachment upon the Are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
- Gau, Michael Sheng-ti, 2012, "Recent Decisions by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n Japan's Submission for Outer Continental Shelf",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
- Liewellyn, Huw, 2007,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Joint Submission by France, Ireland,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Quarterly* 56

- Macnab, Ron, 2004, "The Case for Transparency in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UNCLOS Article 76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1982", *ODIL* 25(1)
- McDorman, Ted L., 1995, "The Entry into Force of the 1982 LOS Convention and the Article 76 Outer Continental Shelf Regim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IJMCL)* 10
- McDorman, Ted L., 2002,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 Technical Body in a Political World", *IJMCL* 17



# 러일의 내몽골 분할협약 연구(1912)

: 제3차 러일협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제국주의 시대 서구열강이 동아시아의 영토를 그들의 이해에 따라 획득한 주요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의 발달과 전비부담이었다. 이는 제국주의 열강으로 하여금 식민지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대립을 전쟁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에 분쟁지역의 영토를 분할하는 방식이 최상의 타협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국경선이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어지게 됨으로써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일상은 구부러지고 장벽으로 에워싸이고 말았다. 이러한 일상의 왜곡은 분단국 한 국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분할 방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그 역사성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러일 간의 최대 현안인 ‘남쿠릴열도’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측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논리 역시 이른바 ‘면적균등분할론(面積均等分割論)’이다. “하보마이[齒舞]·시코탄[色丹] 두 곳은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다. 에토로후[擇捉] 섬은 면적이 크다. 절반으로 나누면 3개의 섬과 함께 에토로후 섬의

20~25%정도가 된다”는 것이 ‘면적균등 분할론’의 요체이다. 이러한 ‘면적균등’ 분할론은 2004년 중·러 국경획정 협상에서 아무르·우수리강 합류점의 불쇼이 우수리스크(Большой Уссурийск, 중국명 黑瞎子島) 섬을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100년 전 러일 양국이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여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역사적 사례는 제국주의 시기 외교적 타협을 통한 영토분할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와 일본의 내몽골분할협정(1912. 7. 8)의 체결과정을 고찰하고 그것의 현대적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몽골분할협정에 대한 기존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다만 일본의 요시무라 미치오[吉村道男]<sup>1</sup>와 국내의 배경한 교수의 성과<sup>2</sup>들이 이 주제의 연구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워주고 있다. 요시무라는 외몽골의 독립과 노몽수호조약(露蒙修好協約) 체결(1912. 11. 3) 전후의 정세에 초점을 맞춰 주로 일본의 대만몽(對滿蒙) 정책을 고찰했다. 반면 배 교수는 신해혁명을 전후한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요구와 그에 대한 중화민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변방의 독립의 의미를 살폈다. 전자가 몽골의 독립을 둘러싼 러일 양국의 정책을 고찰했다면 후자는 신해혁명기 변방 소수민족의 독립의 의미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조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신해혁명기 중국 변경의 위기를 러일 양국 또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위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에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신해혁명은 유럽의 발칸 위기와 동시대적 사건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국주의 국제관계사의 거시적 시각에서 내몽골 분할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만몽(滿蒙) 문제를 ‘보편과 특수’의 대립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보편의 원칙을 옹호한 미국과 특수 원칙을 지지한 러시아와 일본의 만몽정책의 차

1 吉村道男, 1965, 「第三回日露協約成立前後－露蒙協約との関連において」, 『國際政治』 31號. 요시무라는 종래에 언급되었던 내몽골 분할을 다루고 있는 제3차 러일협약을 축진시킨 요인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四國借款團의 만주 진출. ② 러시아의 북만주 병합기도. ③ 신해혁명기의 외몽골의 독립이 그것이다.

2 배경한, 2011, 「동아시아 역사속의 신해혁명－공화혁명의 확산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東洋史學研究』 제117집

이점을 밝힐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만몽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한 반면, 러일은 만몽 분리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들의 의견대립은 신해혁명의 결과 수립된 중국의 신정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열강의 공동 행동을 좌절시키고 말았기 때문이다. ‘보편의 원리’를 주창한 미국은 문호 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고수한 반면 ‘특수의 원칙’을 옹호한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몽골을 자국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 대한 열강의 개입을 지지함으로써 중국 신정부 지원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그 결과 중국은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재차 제국주의 열강의 과분(瓜分) 위협에 놓이고 말았다.

둘째, 신해혁명 시기 중국 서북변경의 위기와 유럽의 발칸 위기의 상관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신해혁명 시기 만주, 몽골, 신장, 티베트로 이어지는 중국 서북변경 벨트의 위기는 고립된 개별위기가 아니라 유럽 발칸 반도의 위기와 연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에서 독일과 패권경쟁을 벌이던 영국이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기 위해 중국 서북변경벨트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이익을 승인한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신생 중화민국이 혁명의 여파를 잠재우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강의 합의된 행동과 재정지원이 필요했는데도 러시아와 일본은 신해혁명의 혼돈 속에서 만몽에 대한 자국의 특수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타 열강과는 별도의 독자행동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제1차세계대전 직전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열강의 합종연횡이 러일 간의 내몽골 분할협약 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신해혁명기 서구열강의 중국 정책과 제국주의 시기 국제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문제에 대한 열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들을 글로벌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내몽골 분할을 위한 제3차러일협약 체결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공간(公刊)자료인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미국대외관계자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관련 영국문서집(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을 활용했으며 러시아의 경

우, 러시아국립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소장 자료를 발굴하여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 II. 내몽골 분할협정 체결 배경: 만몽 문제를 둘러싼 미일의 대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9년 5월 13일 주일 영국 대사 맥도널드(C. McDonald)를 만난 자리에서 “3년 내에 중국에서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한 것<sup>3</sup>은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대청 간섭이 본격화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토와의 회동에 관해 영국 외상 그레이(E. Grey)에게 보낸 맥도널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토는 중국이 극도의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 및 개혁정책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청 정부와 조정은 권력 장악을 위한 음모와 파쟁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중앙정부를 약화시키고 힘과 능력을 검비한 원세개도 떠남으로써 북경정부에 대화 상대가 없다는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일본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중국청년당(The Young Chinese Party)이 권리회복정책(the Rights Recovery Policy)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말 앞에 마차를 놓은 형국(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스스로 태만과 부주의로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에 대해 서구열강에게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말과 마차를 순서대로 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자각하지 못한 중국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거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 본 결과로서,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 타협적인 대외정책을 조언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으나, “일본이 집안정돈을 잘하기 전까지는 외국열강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양보적인 정책을 조

<sup>3</sup> C. MacDonald – E. Grey, 13 May 1909,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 Vol II, 1898–1914, Ed. by G. P. Gooch and Harold Temperley(이하 BD로 약함)

언했다는 것이다.<sup>4</sup> 결국 이토에게는 중국이 내정을 정비하기 전에 제국주의 열강에게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내외외환(內憂外患)을 부추겨 혁명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었다.

이에 이토는 본국 출장을 앞둔 맥도널드에게 중국 문제에 대한 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그의 진의가 영국 정부에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동양의 평화가 영일동맹에 의존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토는 영국인들이 국내문제에 함몰되고 극동보다는 근동의 현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에서 사태의 추이에 예의주시해 줄 것을 일본 정부는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영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인도에서 영국에 커다란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요컨대 영국이 중국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기대하는 동맹국 일본의 희망을 저버린다면, 인도에 대한 일본의 방위부담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일본 정계의 원로이자 당대의 경제가로서 이토의 이 같은 견해는 결국 신해혁명이라는 드라마의 줄거리와 개요를 정리한 시놉시스(sinopsys)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중국 문제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 이토는 이를 바탕으로 남만주에 대한 일본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주일 영국 대사가 “요동반도의 조차기한이 다가올 경우, 대련항의 장래”에 대한 이토의 입장을 질의하자 그 대답형식으로 드러났다. 이토는 먼저 일본 정부가 장래 대련보다는 여순을 상업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 후, 조차기한(1923)까지 아마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요동반도의 중국 환부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남만철도가 수익성이 없고 대장성에서 철도와 항구 유지비용을 대야 할 처지가 된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일본은 결코 남만주에서 철수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토는 일본의 만주 정책을 러시아의 그것과 연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북만주의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는 바, 그들이 하얼빈에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반

<sup>4</sup> C. MacDonald - E. Grey, 13 May 1909, *BD*, Vol. II, pp. 466~469

드시 남(만주)에 남아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sup>5</sup> 따라서 이토와의 회동에 관한 주일 영국 대사의 기밀보고서는 신해혁명 발발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끼칠 영향을 기층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토와 맥도널드의 예상은 적중한 것 같다. 청국은, 이토가 우려한 바와 같이 내정의 정비보다는 불평등한 대외관계의 조정과 만주를 비롯한 변경지역에 대한 권리회복에 전력함으로써 인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이 러시아에 접근을 모색하게 된 계기 역시 청 정부가 만주를 경제적으로 진흥시키고 중앙정부와의 행정적인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차관 도입정책에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11년 4월 5일 청 정부는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만주에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차관도입을 위한 예비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청국의 재무대신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 공동차관단이 체결한 이 협정은 차관총액 5천만 달러 가운데 만주 산업발전에 할당될 자금 2천만 달러가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이는 청국 정부의 만주 산업개발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지배력 회복 의지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청국과 4개국 은행단 간의 차관협정은 1907년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세력권으로 획정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시도한 청국과 차관제공을 통해 청 정부를 지원한 미국이 한편이 된 반면, 만주에 대한 현상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러일이 다른 한편이 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미청과 러일의 대립은 그 결과에 따라 대조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데, 전자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청 정부는 만주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주권회복과 문호개방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만몽에 대한 러일 양국의 독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만주 차관은 당초 미청통상조약(1903. 10. 8) 제13조에서 청 정부가 전 중국에서 통용되는 단일화폐 채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sup>6</sup> 1910년 봄 주미

<sup>5</sup> C. MacDonald - E. Grey, 13 May 1909, *BD*, Vol. II, p. 468

청국 대사는 미국무성에 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한 후, 1910년 6월 14일 국무성을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동년 10월 2일 청 정부는 주청 미국 대사를 통해, 만일 미국 은행들이 차관제공을 주관한다면, 만주에 할당된 차관 2천만 냡을 포함한 총규모 5천만 냡(tael)의 차관을 5천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도와줄 재정고문으로 미국인을 임명할 것임을 약속한 청 정부에 대해 모건 신디케이트(Morgan Syndicate)가 중간사인 미국 은행단은 이를 수락하였다.<sup>7</sup> 요컨대 청 정부는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를 표방한 미국의 태프트 행정부를 대청차관을 구실로 만주 문제에 깊숙이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청국의 기대와는 달리 단독차관보다는 유럽 은행들과의 공동차관 형식을 선호했다. 화폐개혁은 청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청국과 이해당사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sup>8</sup> 이는 태프트 행정부의 대청 정책을 주도한 국무장관 녹스(P. Knox)의 주청 미국 전권공사에게 보낸 각서에 잘 나타나 있다. 녹스는 “자본을 투자한 국가들은 그곳에서 평화와 유지되고 자원개발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전제한 후, 청 정부가 화폐개혁차관에 여타국가의 자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는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토대로 달러를 신탁

으로 삼아 평화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침투하려는 미국의 ‘달러 외교’의 장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달러 외교’란 차관 제공국이 평화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수혜국은 차관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매우 이상적인 외교 형태로 간주되었다. 이에 1910년 10월 27일 청 재무 대신은 미국이 채권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차관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차관단에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sup>9</sup>

그러나 녹스가 주도한 달러 외교는 이상주의적 원

칙을 추구함으로써 동시에 비현실인 측면도 강했다. 이는 청국의 개혁정책의 한계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청국에 이해를 가진 모든 열강이 이를 지지하고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녹스가 지적한 대로, 중국의 개혁정책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열강이 있을 경우, 청 정부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국의 개혁에 무관심한 일부 국가들을 적극적인 지지국으로 변모시킬 강제력을 과연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청국의 개혁정책 성공의 관건이었다. 청국과 이해당사국 모두가 청국의 개혁에 협력할 경우, 성공의 과실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개혁에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강제할 힘과 제도를 미국은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국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미국과 특정지역의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 국가들 간의 대립은 이후 보편과 특수라는 중국 근대사 전개 양태 축이 되었다.

청 정부가 화폐개혁 및 만주 산업개발을 위한 차관 예비협정에 서명하던 날, 러시아의 부외상 네라토프(A. A. Нератов)는 만주에서 러시아의 기득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청 정부의 만주 산업개발 계획과 군사력 증강정책이 만주에 부설될 러시아 철도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의화단사건으로 러시아 철도에 대한 청국의 파괴공작을 경험한 러시아는 1900년 만주 점령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었으나,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군대의 만주 철병이 이루어진 반면 청 정부가 만주 진흥을 위한 경제개발 및 군비증강을 적극화함에 따라 동청철도의 보호는 초미의 급선무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만주 주둔 러시아 군대의 증강은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고, 비록 1개 사단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에 맞서 청국이 2개 사단을 증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에 네라토프는 일본과 이 문제를 논의하여 궁극적으로 러청일 3국 간의 협정체결을 최선의 대안으로 상정했다. 만주에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한 3국협정체

제에 청국 정부를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군사조치를 취할 경우, 계약국 간의 상호협정을 준수한다는 조약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삼국협정체결론(三國協定締結論)’의 골간이었다.<sup>10</sup> 만일

6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pecial Envoy of China, 1911. 1. 18. Notes on the course of the loan negotiations now pending at Peking,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함), 1912, pp. 92~93

7 Calhoun-Knox, 1910. 10. 2; *FRUS*, 1912, p. 90

8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Ambassador to France, 1910. 10. 31; *FRUS*, 1912, pp. 91~92

9 Calhoun-Knox, 1910. 10. 27; *FRUS*, 1912, p. 91

10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이하 РГИА로 약함), Ф.

청국 정부가 3국협정에 참여거부를 한다면, 러시아는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국이 만주 주둔 자국군대의 규모와 배치에 관한 의무를 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네라토프는 주러 일본 대사 모토노를 만나 청 정부의 만주에 대한 지배권 강화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역시 만주 문제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었다. 전자는 청국의 만주군 증강이 야기할 수 있는 철도파괴를 우려했던 반면, 후자는 청국 군대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혹은 일본을 공격할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토노는 그가 예견하는 유일한 위협으로 미국을 지목하였는데 건설 중인 ‘파나마운하(Panama Canal)가 완공되면, 태평양의 미국 함대는 매우 강력해짐으로써 일본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급급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모토노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러일 양국은 청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 정부에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약속하고 만주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도쿄에서 양국 간의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1</sup> 모토노에게는 러시아가 우려하는 만주에서의 청국 군대 증강보다, 미국의 만주 시장 침투가 훨씬 심각한 위협이었다.

미국에 대항하여 만주에서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만주의 현상유지를 위한 ‘러청일삼국협정(露清日三國協定)’ 체결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일본 외상 고무라[小村壽太郎]를 면담한 주일 러시아 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는 만주에서 청국 군대의 증강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만주의 현상유지를 위해 ‘러청일삼국협정’을 체결하려는 구상은 청 정부의 의심을 부추겨 단지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반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2</sup> 결국 고무라에게는 산업차관을 앞세운 미국의 만주 침투정책에 대한 견제가 초미의 관심사였

560. Оп. 28. Д. 436 Л. 194–195: Письмо Нератова–Столыпину, 2 Апреля 1911 г.

11 Gorge Abel Schreiner, 1921,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New York & London, p. 31; Neratoff to the Russian Ambassador at Tokio, April 29, 1911

12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283–284об.: Доверительная Депеш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6 мая 1911 г.

다. 1911년 5월 13일 그는 주일 미국 대사 오브라이언에게 청국의 화폐개혁차관, 특히 만주에 할당된 차관의 목적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청(美淸) 접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무장관 녹스가 “만주의 산업발전을 위해 할당된 차관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영국 주재 미국 대사 레이드(Whitelaw Reid)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sup>13</sup> 이에 레이드는 “계획 중인 만주 개발사업들이 철도와 관련이 없다면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영국 외상 그레이의 견해를 보고했다.<sup>14</sup> 이는 영미 간 타협의 징후로서 사실상 고무라 외상이 가장 두려워한 사태의 진전이었다. 왜냐하면 미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무라 외교의 대표업적이자 일본 대외정책의 중심축인 영일동맹이 균열의 전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III. 분할협정의 체결 경위: 영일동맹의 위력약화와 일본의 대러 접근

이 같은 영일동맹의 균열에 일조한 것은 상술한 미일 간의 전쟁위기가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교전국 러시아와 외교적 타협을 이루어낸 반면, 일본을 지지했던 미국과는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전쟁위기로 빠져들었다. 이에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특징은 러일 간의 타협과 미일 대립의 격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일 간의 갈등요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미국 서부에서 두드러진 일본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정책이 그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만주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대립이었다. 일본의 만주 독점 정책과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으로 표출된 양국 간의 정책 충돌은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나, 일본에게 만주는 러일전쟁의 전리품이었던 반면, 미국에

13 Knox–Reid, May 22, 1911; *FRUS*, 1912, p. 97

14 Reid–Knox, May 31, 1911; *FRUS*, 1912, p. 98

게 만주는 청제국의 영토이자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모든 국가에게 상공업상의 기회균등 원칙이 보장되어야 할 지역이었다. 이는 '보편'과 '특수'라는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결국 보편과 특수 세계관 충돌은 미일 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 외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영일동맹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해법 마련에 전력을 다했고,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동맹국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위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대안모색을 고심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법은 무엇인가?

그 해법의 요체는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미영중재조약(1911. 8. 5)이었다. 이는 미영 양국이 이해의 충돌과 대립을 전쟁이 아닌 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 소위 반전(反戰)협정의 체결을 의미했다. 그러나 영일동맹이라는 공수동맹(攻守同盟) 체약국인 영국이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재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동맹국 일본에 대한 배임일 수 있었고 군사동맹과 중재재판제도를 양립시킨다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sup>15</sup> 1911년 4월 3일 주영 일본 대사가 영국 외상 그레이에게 "미국 언론에서도 영미중재조약의 장애물로 영일동맹을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에 영일 양국은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영일동맹을 존속시키되, 영국은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중재조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영일동맹 조약문의 수정이 불가피했다.<sup>16</sup> 따라서 1905년 동맹의 효력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제2차 영일동맹(1905. 8. 12)은 1911년 7월 13일 제3차 영일동맹조약으로 갱신되었고, 제4조에서는 "만일 체약국 가운데 일방이 제3국과 일반중재조약을 체결할 경우, 이 협정으로 그 일방에게 중재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전쟁을 하도록 어떠한 강제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제3차 영일동맹협정에 따라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차 영일동맹갱신협정과 영미중재조약의 체결이 영국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면, 일본 정부에게는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

를 요구했다. 이는 영국과 일본이 중재제도에 대해 현격한 인식차를 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sup>17</sup> 왜냐하면 1910년 8월 미국이 영국에게 중재조약 체결의사를 타진했을 때부터, 영국은 미국과의 중재조약 시스템에 일본을 끌어들이고자 한 바 있었으나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례가 이를 반증한다.<sup>18</sup> 만일 영미일 중재조약이 체결된다면, 이들 3국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사실상 상호 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무라 외상은 주일 영국 공사 맥도널드에게 "일본이 왜 미국과의 중재조약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중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고무라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중재재판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중재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러일전쟁의 예를 들

시킨다는 중재결정이 난다면, 일본은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결국 개전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sup>19</sup> 이는 분명히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릴 경우 그 나라는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는 것으로 고무라는 일본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와 중재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sup>20</sup> 따라서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법치(法治)의 전통을 수립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 태프트 행정부의 구상은 국가 생존논리를 앞세운 일본의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써 단지 아카데미한 수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주일 영국 대사관 고문(Counselor of British Embassy in Tokyo) 럼볼드(H. Rumbold)는 '국가생존논리' 이외에도 일본이 중재조약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17 Sir C. McDonald to Sir Edward Grey, March 16, 1911; *BD*, p. 506

18 J. Bryce - E. Grey, August 9, 1910; *BD*, pp. 541~542, 1910년 9월 26일 그레이가 맥도널드에게 보낸 편지.

19 1911년 3월 17일 맥도널드가 그레이에게 러일 간의 전쟁을 촉발시킬 현안들이 중재재판에 회부된다면, 러시아는 즉각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여 대규모 군대를 만주로 집중시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벌 것이고, 이는 일본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 Sir C. McDonald to Sir Edward Grey, March 16, 1911; *BD*, p. 506. 맥도널드의 보고에 따르면, 1910년 12월 6일 태프트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정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본은 태프트가 제안한 중재조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5 Mr. Rumbold to Sir Edward Grey, July 29, 1911; *BD*, pp. 537~538

16 Edward Grey - James Bryce, April 3, 1911; *BD*, p. 560

보다 궁극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 부외상 이시이[石井菊次郎]와 만나 제3차 영일동맹 갱신조약에 대해 논의한 럼볼드는 중재조약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영국 외무성에 보고(1911. 7. 27)했다.<sup>21</sup> “영일 양국은 중재조약을 상이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영국은 원하는 모든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에 관심이 많다. 반면 일본은 신흥국가로서 잠재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것을 얻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바, 중재조약의 효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과 일본의 중재조약에 대한 인식차는 영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발전단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국가생존의 논리뿐만 아니라 영토팽창의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은 제3차 영일동맹조약을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들에 대한 보장”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의 팽창가능성을 조약의 틀 속에서 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3차 영일동맹 갱신과 관련, 주영 러시아 대사 벤켄도르프(A. Бенкендорф)는 영국 부외상 니콜슨(A. Nicolson)과 논의사항을 보고한 기밀보고서에서, 이 갱신조약은 영국 측의 대일 견제수단의 일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한 동맹의 존속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조약갱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한 러시아의 문제제기에 대해 영국이 그 배경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니콜슨은 영일동맹의 갱신은 영러관계가 과거의 대립관계로 회귀할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제한 후, 조약갱신 본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제는 영국의 식민지,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관련된 매우 델리케이트한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 법률에는 황인종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볼 때, 조약효력의 소멸은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비록 개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영국에게 지속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니콜슨은 조약갱신이 호주에서 일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일본의 악의(ill-will)에 대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3차 영일동맹은 어떠한 일

<sup>21</sup> Mr. Rumbold to Sir Edward Grey July 29, 1911; BD, pp. 537~538

<sup>22</sup> Gorge Abel Schureiner ed., 1921,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p. 32; The Russian Ambassador in London to Neratoff, July 17, 1911

본인도 미일 전쟁시 영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빌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의 팽창을 억압하는 기제로서의 역할까지 기대되었다. 결국 영일동맹은 체결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맹외교의 주축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는 일본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인 현실이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현상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주목한 나라는 다른 아닌 러시아였다. 이는 주일 러시아 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가 귀국을 앞두고 일본 정계의 주요 거물들과 일련의 회동을 한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2년 전 주일 영국 대사 맥도널드가 귀국을 앞두고 이토 히로부미와 가쓰라[桂太郎] 수상을 만나 청국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간도 문제를 포함한 일본 정계의 의견을 본국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이토는 간도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청일협상에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었고 이는 결국 1909년 청일 간의 ‘만주5안건 및 간도협약’ 체결로 귀결된 바 있었다.

이에 본국 휴가를 앞두고 아마가타[山縣有朋]와 가쓰라 수상과 회동한 사실을 보고한 주일 러시아 대사의 보고서(1911. 7. 10)<sup>23</sup>는 2년 전 일본의 대영 접근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러 접근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러시아 대사를 방문하여 휴가를 잘 다녀오라는 안부를 전한 뒤, 러일협정 체결이 양국에 가져다줄 실익에 대해 설과한 사람은 아마가타였다.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극동의 평화를 위해 아시아대륙에서 상호이해를 제고할 것을 희망”한 아마가타의 발언에 주목한 계기는 후자가 천황과 매우 지근한 사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아마가타와 회동한 러시아 대사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여 러일관계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재차 전달한 이는

수상 가쓰라이다. 수상은 이토부터 시작하여 아마가타에 이르기까지 러일 간의 우호관계 수립과 대러 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한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견해는 “개

<sup>23</sup> РГИА. Ф.1276 Оп. 3. Д. 721 Л.56-60об.: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27 июня 1911 г.

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천황이 승인하고 지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천황, 원로, 각료들이 대러 접근에 공감하고 지지한 궁극의 목적을 가쓰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만일 양국 국민 간의 우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양국은 극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특히 “태평양이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정치·경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열강 간의 각축의 중심으로 부상할 때” 양국 간의 공조의 효력이 각별해진다는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일본의 당로자들은 향후 도래하게 될 태평양 시대의 패권장악을 위해, 미국과의 중재조약이나 영국과의 동맹 강화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 시대를 대비할 러일 양국 간의 공조의 출발점으로 가쓰라는 중국, 특히 만주를 지목했다. 말레프스키-말레비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쓰라는 현재 중국이 극동을 둘러싼 열강의 격전장이 되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치적 공조가 더욱 필요하며, 특히 만주의 경우 러일 양국이 주인임을 표방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제3국의 일체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는 정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sup>25</sup> 따라서 만주의 산업진흥을 위한 미국 주도의 4개국 공동차관은 러일 양국으로 하여금 만주 문제에 대해 공동행동하기로 결정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 수상은 만주 진흥을 위한 4개국 공동차관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가쓰라 수상이 4개국 공동차관에 반대한 속내는 무엇인가? 중국의 내부사정에 밝은 그가 대중 차관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청 정부 내에 협상력과 권위를 갖춘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과 둘째, 외자를 끌어들여 내정을 개혁하려는 청 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차관의존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예상이 그것이다. 이 같은 가쓰라의 입장은 “청국이 대외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국가 파산으로 이끌어 독립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외국채권단은 지급보증을 요구하며 중국의 재정을 국제적으로 감독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가쓰라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에서 양국의 이해를 보장할 공동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6</sup>

대러 접근을 위한 일본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주일 러시아 대사가 본국 출발 전 외무성에 들렀을 때 고무라 외상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외상 역시 청국의 정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러일 양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27</sup> 고무라가 주목한 청 정부의 위기는 외국차관 도입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그 본령이었다. 외상의 진단에 따르면, 첫째, 청 정부는 일단 외자유치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차관에 의존하게 되어 머지않아 심각한 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둘째, 값싼 이자의 대규모 차관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셋째, 청국은 행정개혁과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차관이 필요하지만, 차관 운용에 미숙한 청국인들이 외자유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무라는 현재 청국의 재정상태로 미루어 중국이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지는 의문이며, 이는 조만간 국가 파산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은 청국의 파산상태에 대비하여 만주에 대한 양국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28</sup>

이는 신해혁명 발발 이전부터 일본 당로자들이 청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무라는 “청국의 국가 부도사태뿐만 아니라 4억 인구의 청국에서 신군(新軍)은

4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 정부가 과연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소요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왜냐하면 청국에서 반정부진영에 혁명운동을 지도할 만한 강력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혁명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것이 청국

26 Там же

27 Там же

28 РГИА. Ф.1276 Оп. 3. Д. 721 Л.56-59об.: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Малевского о-Малевица, 27 июня 1911 г.

24 РГИА. Ф.1276 Оп. 3. Д. 721 Л.56-59об.: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Малевского о-Малевица, 27 июня 1911 г.

25 Там же

경제에 끼칠 엄청난 악영향은 청국의 재정파탄을 앞당길 것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무라는 “일본의 대러 접근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천황이 원하는 사항임을 러시아 정부에 꼭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러시아 출발 당일 이토와 친분이 깊었던 교통상 고토[後藤新平]가 직접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를 찾아와 러일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sup>29</sup> 이제 러시아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편승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 IV. 내몽골 분할협정의 국제관계: 만몽 문제와 발칸 문제의 연동

1911년 9월 3일 주청 미국 대리공사 윌리엄스(E. T. Williams)는 미국무부에 청국의 사천성(四川省)에서 외국인의 철도부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호남성(湖南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예견되었던 혁명과 더불어 청제국의 와해가 가시화되었다.<sup>30</sup> 청제국의 와해는 변경의 위기를 동반했는데, 그 가운데 봉합되어 있던 몽골의 독립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1910년 제2차 러일협약에서 몽골과 한국을 각각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만일 몽골이 청국에서 분리될 경우, 몽골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와 동등해질 것이었다. 이에 1907년 제1차 러일협약의 비밀조항 부속조항에서 합의된 만주 분계선에 따라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한 바 있던 러시아와 일본은 몽골·북만주와 한국·남만주에서 각각의 특수권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었다. 이 경우, 만몽지역에서 양국 간의 세력권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던 유일한 지역은 바로 내몽골이었다. 결국 신해혁명에서 비롯된 중국의 정치불안은 청제국 변경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에 신해혁명은 몽골의 독립선언(1911. 11. 30), 러일의 내몽골 분할(1912.

7. 8), 러몽협약 체결(1912. 11. 3)로 이어지는 중국 북방변경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한 러일 간의 합의는 단지 일본과 러시아 양국 간의 협상의 산물일 뿐, 결코 청국이 동의하거나 묵인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청제국의 서북변경을 구성하고 있던 몽골은 외몽골의 경우, 독립선언을 거쳐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내몽골은 동서로 획분되어 러일 양국의 세력권으로 변모된 과정은 청제국의 위기, 몽골의 독립의지, 러시아와 일본의 만몽 침략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신해혁명기 내몽골 문제의 요체는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 ‘신해혁명’이라는 청제국의 위기는 유럽의 발칸반도의 위기와 연동됨으로써 제1차세계대전 직전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위기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둘째,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는 극동의 신해혁명보다는 유럽의 발칸 위기를 보다 중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관심을 집중해 주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를 중국보다는 발칸 위기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한 몽골, 북만주,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권들을 열강이 인정해 주는 데 있었다.<sup>31</sup> 이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상호 동맹과 협상체결을 통해 형성한 4국 양탕트체제(Quadruple Entente System)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제국주의 시기 국제관계를 재단하고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이 부여됨으로써, 4국 양탕트체제는 일종의 정치적 카르텔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전제왕조의 잔재를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한 중국인들의 변혁시도는 양탕트 4국의 이해와 양립 가능할 경우에만 성공이 보장되는 구조가 수립된 것이다. 특히 신해혁명의 혼란 속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은 만주를 양분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에게 만주에서의 기득권 유지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sup>29</sup> Там же

<sup>30</sup> Williams-Knox, Sept. 3, 1911; *FRUS*, 1912, pp. 47~48

<sup>31</sup> Reid-Knox, June 10·11, 1911; *FRUS*, 1912, pp. 136~137

이에 러일 양국은 그 해법으로 만주와 중국 본토를 행정적으로 분리시키고자 했으며, 외국열강에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주에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러일의 독자행동은 신해혁명에 대한 열강의 공조를 깨뜨리는 데 일조함으로써, 과도기의 혁명정부가 열강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체제로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제국주의 열강은 신해혁명 시기 신정부가 우호적인 대외환경 속에서 새로운 체제에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공조체제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장기적인 혼란과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정국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우창(武昌) 봉기 직후인 1911년 10월 14일, 주일 미국 대사 슈일러(M. Schuyler)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는 청국 사태에 대한 열강 간의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단초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sup>32</sup> 왜냐하면 슈일러의 보고서는 일본이 신해혁명 시기의 청국 사태에 대해 중국 본토와 만주로 구분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청국 본토에서 자국의 이해가 침해받지 않는 한, 청 정부의 지원요청을 거절하고자 한 반면, 소요사태가 만주로 파급될 경우, 관련 열강과 사전 논의 없이 즉각 군대투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남만주에 거점을 둔 일본은 홍콩에 5,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영국보다 훨씬 신속하게 북경으로 2만 명의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군사전략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본의 입장을 열강이 예의주시한 주요 원인이었다. 결국 열강이 일본의 군사전략상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행동의 틀에 일본을 속박하는 것이었다. 슈일러가 일본 부외상 이시이에게 미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 것도 그 맥락이다. 그럼에도 슈일러는 “일본이 열강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그들의 조치들은 청국의 장래와 일본을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sup>33</sup>

일본이 청국 사태에 대해 제3의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중국의 장래에 깊이 관여하려는 간섭국이 될 것

<sup>32</sup> Schuyler-Knox, Oct. 14, 1911; *FRUS*, 1912, p. 50

<sup>33</sup> *Ibid.*

인지, 아니면 만주에 국한하여 주인행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이 신해혁명은 청국 정부를 위기로 몰아갔다. 주청 미국 대리공사 윌리엄스는 국무성에 보낸 보고서(1911. 10. 26)에서 최대의 위기에 처한 청 정부는 분할 혹은 몰락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사태를 진단했다.<sup>34</sup> 이에 대한 윌리엄스의 해법은 원세개의 복귀인데,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설득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반정부적 성향의 지방들에서 지지를 회복한다면 만주 왕조는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 의 지원 이외에는 남부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일본군 2개 사단의 파병준비 소문에 귀추가 주목된 것도 그것이 청 정부의 존망뿐만 아니라 상술한 일본의 대청 간섭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일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일본의 대청 간섭이 일정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주일 대리대사 브로넨스키는 “사이온지(西園寺公望) 내각이 군부의 모험주의를 억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신규 예산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국가재정 상황”이었다고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1911. 11. 29)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5</sup> 결국 일본의 재정악화는 중국 사태에 소극적인 사이온지 내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모험주의로 표현된 일본 육군의 적극적인 중국 개입 정책을 좌절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일본의 대청 정책이 적극적인 군사개입에서 외교적 협력의 방식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마침내 만몽 문제를 둘러싼 러일 공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모종의 외교적 성과를 내하고자 했다. 특히 1912년 12월 28일 청 정부의 혼란을 틈타, 몽골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내무, 외교, 군정,

재정, 사법의 5부를 설치하여 정부를 조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몽골의 승인을 둘러싼 러일 간의 외교 교섭의 단초가 되었다. 아울러 이는 사이온지 내각의 소극적인 대청 정책에 대한 야마가타와 육군수뇌부의 노골적인 비판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

<sup>34</sup> Williams-Knox, Oct. 26, 1911; *FRUS*, 1912, p. 52

<sup>35</sup>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3-3об.; Довер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А.А.Броневского. 16(29) ноября 1912 г.

이기도 했다. 따라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던 우치다 외상은 이제 외교적 방식으로 남만주의 외연확장에 착목하기에 이르렀다.

우치다가 구상한 '남만주의외연확장안(南滿洲外延擴張案)'은 제1차 러일협약(1907. 7. 30)에서 획정한 북만주와 남만주의 분계선을 서부로 연장하여 내몽골을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남만주와 맞닿아 있는 내몽골 동부를 일본의 세력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내몽골의 동부는 일본의 특수이권 지역으로, 서부는 러시아의 그것으로 승인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만주에 한정된 일본의 세력권을 내몽골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군사력이 아닌 러시아와의 외교협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이었다. 우치다는 그 실마리를 제1차 러일협약 제3조에서 찾았다. 왜냐하면 제1차 러일협약에서 일본은 외몽골에서 러시아의 특수이해를 인정한 바 있었지만, 내몽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치다는 내몽골의 동서분할을 위한 대러 교섭에 착수했다. 1912년 1월 10일 주러 대사 구리노(栗野慎一郎)에게 러일 양국이 내몽골에서의 세력범위를 설정할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명분을 제시한 후, 내몽골의 장가구(張家口)-고륜(庫倫)을 잇는 대도(大道)를 경계로 동서로 양분하는 문제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구했다.<sup>36</sup> 그러나 이에 대해 구리노는 현재 상기 협정이 가능한지 명확한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러시아는 기회가 되면 만주의 분할을 단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답관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득책임을 진언하였다.<sup>37</sup>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만주 분할은 청국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던 사이온지 내각에게 결코 수용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던 일본 정부는 남만주에서 내몽골로 세력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치다는 러시아와의 내몽골 분할의 빌미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몽골과 외몽골의 명확한 용어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내몽골 분할협상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1912년 1월 11일 몽골의 독립에 관한 러시아 외무성의 성명에서 “러시아는 몽골을 침략할 야심은 없지만, 몽골에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골이 청국과 관계를 단절할 경우, 몽골 정부와 업무상 관계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의 성명을 발표한 것<sup>38</sup>이 그 발단이 되었다. 여기에 서 일본 외상 우치다는 외몽골과 구분하지 않고 시종일관 사용된 ‘몽골’이라는 용어가 내몽골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를 묵과할 경우, 러시아는 제1차 러일협약 제3조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광대한 전 몽골(全蒙古)을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9</sup> 따라서 “양국 간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내몽골에서 양국 간의 세력범위 확정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러일 양국 간의 교섭은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기준선의 설정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 양국은 내몽골 분할을 즉각 단행할 수 없었다. 열강의 견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내몽골의 분할이 열강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열강은 “중국 사태에 대한 열강의 공동행동”이라는 명분하에 러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양국을 견제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열강의 공동행동”이라는 굴레에 대해 러일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1912년 2월 26일 주일 러시아 공사 브로넨스키(А. А. Броневский)는 러시아 외무성에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러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열강의 움직임을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일 독일 외무성이 ‘베를린 주재 외교대표단의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주독(駐獨) 일본 공사에게 중

국 사태에 개입이 필요할 경우, 열강은 공동행동해야만 할 것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sup>40</sup> 이러한 열강에 견제에 봉착한 일본은 “공동이익과 특수이익”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그는 주독 공사에 “본국 정부 역시 중국에서 열강의 공동이해와 관련될 경우, 공동행동을 유지할 것이나, 일본의 특수이

38 위의 책, 露國栗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 1. 11.

39 위의 책, 48~49쪽; 露國栗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 1. 16.

40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31.: Секретная тел. А.А.Броневского, 13 Февраля, 1912 г.

36 『日本外交文書』第45卷 第1冊, 40~43쪽; 內田外務大臣-露國栗野大使, 1912. 1. 10.

37 위의 책, 44~45쪽; 露國栗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 1. 13.

익에 관련된 지역일 경우, 일본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회신토록 지시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의 특수이익 지역으로 간주한 남만주에서 타열강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겨냥한 국가는 독일뿐만 아니라 달리 외교를 통해 만주에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하던 미국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최우선의 의미가 있는 남만주의 특수이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도 통보토록 훈령했다”고 우치다 외상이 주일 러시아 공사관에 알린 것도 미국에 대한 러일 공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정부 승인 문제를 열강의 의견일치를 통해 결정하지는 미국무장관 녹스의 제안에 대해 우치다 외상이 “플라토닉한 희망사항”으로 평가한 것도 미국을 겨냥한 러일 공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sup>41</sup>

결국 중국 신정부의 승인을 둘러싼 미국·일본·러시아 3국 간의 대립은 중국 혁명정부의 장래에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열강 간의 의견일치를 통해 신정부를 승인한다는 미국이 제안한 “보편의 논리”와 만주는 열강의 의견일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러일의 특수이익 지역임을 강조한 일본의 “특수의 논리” 간의 지리한 대립구도와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만일 만주의 지위가 일본과 러시아의 특수이익 지역으로 설정된다면, 만주와 인접한 내몽골 역시 양국의 특수이익 지역으로서 타 열강의 진입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러시아 역시 만몽 문제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특수이익 지역으로 남겨 두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조노프 외상은 원세개가 이끄는 중국의 신정부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열강의 신정부 승인 이전에 국제 신디케이트가 원세개가 요구하는 대중 차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차관은 중국인 스스로 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더욱

41 우치다[内田康哉]는 브로넨스키가 열강의 범주를 어떤 나라들로 한정하려 하는지를 질문하자, 중국 문제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을 들 수 있으나, 이 국가들이 북경에 외교대표부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목록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다면, 목록을 확대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52-52об.; Секретная те л. Броневского. 11 марта 1912 г.

이 열강의 대중 차관은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보다는 극동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은행가들의 사적인 이해에 복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사조노프는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과연 러시아가 모든 관심과 힘을 극동으로 돌리는 것이 3국협상(Trifle Entente) 진영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영국 외장 그레이와 검토해 볼 것을 주영 러시아 대사 벤켄도르프에게 지시(1912. 3. 18)함으로써 구체화되어 갔다.<sup>42</sup>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패는 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 측의 이해와 맞물리기 시작했다. 사조노프는 3월 22일 벤켄도르프에게 보낸 전문에서 “대청 차관의 조건은 러시아가 극동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과 발칸에서 관심을 거두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삼국협상 진영의 공통의 이익”임을 통보함으로써, 러시아가 유럽의 발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만몽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열강이 승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sup>43</sup> 요컨대 영국이 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 결과 영국은 만몽의 문호개방(open door)을 추구한 미국과 다른 한편으로 만몽에서 특수이익을 보호하려는 러일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과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1912년 6월 10일 주영 미국 대사 레이드가 미국무장관 녹스에게 “몽골과 만주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특수권리를 천명한 것에 대해 영국 정부는 그러한 권리들을 인정할 것이나, 동시에 문호개방 원칙도 확인할 것”이라는 영국 외무성의 극동국장 랭글리(W. Langley)의 전언을 타전했기 때문이었다.<sup>44</sup> 영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일견 절충적이었지만, 사실상 만몽지역에 대한 러일의 특수이익을 승인한 것으로서,

42 G. A. Schreiner, 1922,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Matrix of the History of Europe*, p. 37; Sazonoff - Benkendorff, 1912. 3. 18.

43 G. A. Schreiner, 1922, p. 37; Sazonoff - Benkendorff, 1912. 3. 22.

44 Reid-Knox, 1912. 6. 10, *FRUS*, 1912, p. 136

만몽에서의 문호개방은 러일 양국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되고 말았다. 결국 내몽골 분할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영국 정부가 제공하였다. 이제 전직 일

본 수상 가쓰라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내몽골 분할을 골자로 하는 러일 간의 제3차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수순만 남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 외상이 주영 대사에게 전문으로 보낸 극비문서는 다름 아닌 몽골 관련 러일협약의 초안이었다.<sup>45</sup> 러일 양국 간의 협약체결 이전에 영국에게 비밀협약 초안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는 4국(英佛日露) 양당트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이었다.<sup>46</sup> 결국 1912년 7월 8일에 체결된 내몽골 분할을 위한 비밀협약은 전문과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에는 체결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 ① 제1차 러일협약(1910)과 제2차 러일협약(1910)의 조문을 보완함으로써 만몽에서 각자의 특수이익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② 제1차 러일협약의 추가조관에서 정한 만주의 분계선을 연장하여 내몽골에서의 각자 특수이익의 지역을 확정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제1조에서는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분계선에서 출발하여 내몽골의 경계를 정의하고, 제2조에서는 북경의 경도(동경 116도 27분)를 기준으로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여 동부는 일본의 특수이익권으로, 서부는 러시아의 그것으로 승인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하였다. 제3조에서는 협약 양국이 이 협약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하였다.<sup>47</sup>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와 주러 일본 대사 모토노가 협약을 체결하던 당일, 전직 수상 가쓰라가 고토(後藤新平) 등과 더불어 러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는 러일관계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1차세계대전 시기에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1912년 11월 3일 전직 주청 공사 코로스토펜츠를 고륜(庫倫)으로 파견, 중몽(中蒙) 간의 과거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몽(露蒙) 간의 신시대를 여는 러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강력한 정치 블록을 형성한 4국(영불일러)협상 체제가 중국 문제에 타 열강의 개입을 억제하고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4국협상 체제에 대한 독일의 도전은 제1차세계대전 발발의 주

<sup>45</sup> G. A. Schreiner, 1922, pp. 39~40; Sazonoff-Benkendorf, 1912. 7. 2.

<sup>46</sup> 1912년 7월 1일 일본 역시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후,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알렸다. 『日本外交文書』第45卷 第1冊, 88~90쪽;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 7. 1.

<sup>47</sup> 『日本外交文書』第45卷 第1冊, 91~92쪽; 內田外務大臣-在中國伊集院公使, 1912. 7. 8.

요 원인이 됨으로써,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3국동맹(Triple Alliance) 진영과 총력전을 벌이는 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국 문제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 V. 맺음말

상술한 바와 같이 신해혁명 시기 만몽 문제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은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적 사건들과 연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내몽골 분할의 합의를 이끌어낸 제3차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신해혁명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발칸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발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영국은 러시아를 유럽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만몽에 대한 러일의 특수이익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공과 혁명정부의 안착을 위해 중국에 이해를 갖고 있던 열강의 공조는 좌절됨으로써 중국 내부의 혼란은 장기화되고 말았다.

이에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러일 간의 내몽골 분할협정 체결의 배경으로 만몽 문제를 둘러싼 미일의 대립구도와 중국과 러시아가 그 외연을 이루는 구조를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은 만주를 중국 본토와 행정적으로 통합시키고 상공업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러일전쟁 이후 만주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에서의 기득권 보호에 고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내몽골 분할협정 체결의 경위를 제3차 영일동맹의 체결과 일본의 대러 접근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미일관계의 악화는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영국으로 하여금 대일관계를 재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영국은 미일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영미중재조약을 모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침략과 팽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은 영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설정하기로 한 제3차 러일협약 체결이 가능했던 원인들을 설명하였다. 이를 러일의 만몽 침략정책과 발칸 위기 간의 연동으로 설명한 바, 이는 영국이 유럽에서 영국·독일 간의 패권경쟁과 관련된 러시아의 유럽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만몽을 러일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인정했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국주의 열강의 합종연횡과 외교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영토 및 세력의 확장과정은 신해혁명의 격동기를 보내고 있던 중국의 정치상황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몽 문제의 전례가 되었던 한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한국인들의 삶과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이 한국 병합 이후 만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는 동안 식민지 한국인의 삶은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순응 여부에 따라 강제이주 혹은 무력저항의 방식으로 갈라졌다. 봉천 주재 러시아 영사 콜로콜로프(Колоколов)는 일본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한인농(韓人農) 2,833명이 만철연선 지역으로 이주해 왔으며, 3개년 상환을 조건으로 정착과 경작 비용을 정부에서 일시불로 지원받고 있음을 보고(1912. 4. 24)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한인들을 만철연선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은 정치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주가 성공한다면 향후 철도연선은 식민을 목적으로 한 일본과 한인 관할 이주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up>48</sup>

반면 주일 러시아 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의 기밀보고서(1912. 7. 8)에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보고하고 있다. 가쓰라가 러시아 및 유럽을 순방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련으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장춘을 거쳐 동청철도로 갈아타기로 결정한 배경과 조선 총독이 파견한 헌병장교와 한국어 통역관이 가쓰라를 수행하게 된 것도 한국 혁명파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왜냐하면 일부 한인 혁명대원들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로

향발하여 이곳에서 가쓰라를 저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이

<sup>48</sup>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69-69 об.:Выписка из секретного донесения Колоколова. 11 апреля 1912 г.

에 주일 러시아 대사는 블라디보스토크 군관구 사령관 및 곤다치(Н. Л. Гондатти) 총독 및 하르바트(Д. Л. Хорват) 장군에게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얼빈 거주 한인 용의자 명단을 발송했음을 사조노프 외무상에게 보고하고 있다.<sup>49</sup>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러일 공조는 대외적 팽창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러일관계에 대한 신뢰는 때로는 강력한 동맹의 형태로 혹은 느슨한 연대의 형태로 태평양전쟁 시기까지 이어져갔다.

그러나 한국·중국·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지형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변모시켰던 제국주의 시대의 러일관계는 냉전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종래의 협력관계에서 대립관계로 변화되고 말았다. 과거 한반도 분할에 대해 협상했고 만주와 내몽골을 확보했던 러시아와 일본은 이제 남쿠릴열도의 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영토분할론은 제국주의 시대 인접국의 영토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재단하던 논리였지만, 이제 적어도 일본에게는 제살을 깎는 해법이 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sup>49</sup> Там же. Л.104-105: Делеша Гофмейстер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25 июня 1912 г.

## 국문 초록

이 글은 신해혁명 시기 만몽 문제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은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적 사건들과 연동되고 있었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반발에도 러시아와 일본이 내몽골 분할의 합의를 이끌어낸 제3차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원인도 신해혁명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발칸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발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영국은 러시아를 유럽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만몽에 대한 러일의 특수권익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공과 혁명정부의 안착을 위해 중국에 이해를 갖고 있던 열강의 공조는 좌절됨으로써 중국 내부의 혼란은 장기화되고 말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해혁명기 서구열강의 중국 정책과 제국주의 시기 국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문제에 대한 열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들을 글로벌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아울러 내몽골 분할을 위한 제3차 러일협약 체결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공간자료인 『일본외교문서』, 『미국대외관계자료집』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관련 영국문서집』을 활용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국립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소장 자료를 발굴하여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 〈주제어〉

제3차 러일협약, 내몽골 분할과 발칸 위기의 연동, 보편의 원칙, 특수성의 원칙, 글로벌 히스토리

## ABSTRACT

The Russia–Japan Treaty of 1912 and the Division of Inner Mongolia

Choi, Deokkyo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paper seeks to reveal that the rivalry among the powers over Manchuria and Mongolia during the Chinese Revolution was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landscape during the imperial period. In particular, despite opposition fro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were able to sign the third agreement on the partition of Inner Mongolia because of the Balkan crisis that took place in the same period as the Chinese Revolution. That is, as the Balkan crisis escalated, the United Kingdom granted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ights over Manchuria and Mongolia in order to bring Russia back to the European stage. As a consequence, the powers, which endorsed the success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failed to collaborate, thus extending the chaos in China over a long period.

The core issue of the conflict among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in regards to Manchuria and Mongolia was that the United States regarded Manchuria as part of China, while Russia and Japan maintained the “partition of Manchuria” policy. Such a gap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joint action among the powers to help stabilize the new government of China,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Chinese Revolution. The United States supported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and promoted equal opportunity and the open door policy in China. Meanwhile, Russia and Japan adhered to the “principle of particularity” and set Manchuria and Mongolia as their areas of particular interest and blocked the powers from intervening in these regions. As a result, the future of Manchuria and Mongolia, that is, which path these two regions would eventually take, became a great concern. This issue requires an approach from a world-history point of view as it was interconnected with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reevaluates the causes that prevented the powers from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Chin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history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imperial period and China policies of the Western powers during the Chinese Revolution. This paper refers to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a sourcebook of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ish documents on World War I in order to identify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third Russo agreement on

the partition of Inner Mongolia, and also cites from materials of the National Historical Archives of Russia.

Keywords

The 3-rd Russo-Japanese Agreement, Partition of inner Mongolia, Principle of universality, Principle of particularity, Global History

연구논문

참고문헌

배경한, 2011, 「동아시아 역사속의 신해혁명 - 공화혁명의 확산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東洋史學研究』 제117집

吉村道男, 1965, 「第三回日露協約成立前後 - 露蒙協約との関連において」, 『國際政治』 31號

Gooch, G. P. and Harold Temperley ed.,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 1898-1914*, Vol II: The Anglo-Japanese Alliance and the Franco-British Entente.

Schreiner, G. A. ed., 1922,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Matrix of the History of Europ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12: Notes on the course of the loan negotiations now pending at Peking.

Россий 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Ф. 560(Концелярия Мин. Фин.)  
Ф. 1276(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日本外交文書』第45卷 第1冊, 事項 2, 第三回日露協約締結一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분석을 기초로

허은실 양산신기초등학교 교사  
남상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영토가 없으면 국가와 국민은 존속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토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과 안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결속력을 다져 주고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국가 생명의 원천(서태열, 2007)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토교육은 국민들의 국가의식과 영역의식을 길러 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생들은 영토교육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 중 하나인 국토를 알게 되고 국토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 형성·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교육에서는 영토교육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김병후, 2006; 서태열, 2007; 이경환, 2007; 박선미, 2010).

체계적인 지식 및 내용체계에 대한 연구가 결여된 영토교육은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에 대한 감정적이고 논리

가 결여된 영토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 사회과 등 교과교육에서 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학습함으로써 영토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확고하게 형성되고, 나아가 영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는 영토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 사회과에서의 영토교육이, 지속적인 체계적인 교과교육 속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회과에 나타난 영토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초등 사회과에서의 영토교육 발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과와 유사한 내용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토교육’에서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 영토교육이 가지는 목적과 그 내용적인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유율이 높은 교과서 출판사 중 한 곳인 동경서적(東京書籍)의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와 초등학교 사회과 5종의 교과서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일본 200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 나. 동경서적 교사용 지도서 및 CD-ROM
- 다.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新しい社会)』, 교육출판(教育出版)의 『소학사회(小学社会)』, 광촌도서(光村図書)의 『사회(社会)』,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教出版)의 『소학사회(小学社会)』, 『소학생의 사회(小学生の社会)』 교과서
- 라.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과 지도(新しい社会科地図)』, 제국서원(帝國書院)의 『소학생의 지도장(小学生の地図帳)』 지도(地圖) 교과서

## II. 일본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분석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영토를 통해 국민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토교육은 영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토에 관련된 사고, 영토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과정 속에서 여러 교과에 걸쳐 영토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영토교육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영토 확장 및 수복과 관련한 사실을 다룬 역사영역과 영토를 국가의 구성요소로 다루고 있는 공민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리영역의 경우에는 위치와 영역, 역사는 영토 확장과 수복, 공민에서는 영토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다음에서는 위치와 영역, 영토 확장과 수복, 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영토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 1. 일본의 개정 소학교 신학습지도요령(小学校 新学習指導要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10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08년 3월 28일에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공시되었고 2009년 4월 1일부터 이행 조치되고 있다. 현재 일선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2011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내용구성은 기존 학습지도요령대로 하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새롭게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특히 영토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008c)에 따르면 3학년 및 4학년에서 '47도도부현(都·道·府·縣)의 명칭과 위치', 5학년에서 '세계의 주요 대륙과 해양', '주요 국가의 명칭과 위치'를 새롭게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5학년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국가의 위치와 영토'는 학

습 내용을 개선하고 더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소학교 사회과에서는 교육 목표에서, 국토애와 자국사의 인식이 공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키우는 것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년의 목표 및 내용에서도 국토 또는 영토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3학년과 4학년의 내용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영토에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내용(6)의 '아(ア)' 항의 '도도부현(都·道·府·縣) 내에서 자신들의 시구정촌(市·區·町·村) 및 일본에서 자신들의 도도부현의 지리적 위치, 47도도부현의 명칭과 위치'가 그것이다.

'도도부현 내에서 자신들의 시구정촌 및 일본에서 자신들의 도도부현의 지리적 위치'를 조사하는 것은, 방위 등을 사용하여 발표하는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위치를 국토라는 넓은 시야에서 바라 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7도도부현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47도도부현의 명칭과 위치'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47개의 도도부현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도도부현의 명칭과 위치를 하나하나 지도장으로 확인하여, 일본지도(백지도) 위에서 지적(指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이런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의 위치를 넓은 시야에서 파악하여, 그 특색을 생각하는 실마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5학년에서 학습하게 될 '일본의 국토(영토)'와도 직접 연관되며 국토이해의 기초적인 학습으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토교육과 관련된 본격적인 학습은 5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5학년 목표(1) '우리 국토의 모습, 국토의 환경과 국민생활의 관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연재해 방지의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깊이

하고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르도록 한다.’는 내용(1)에 관련한 이해와 태도에 관한 목표이다. 내용(1)의 ‘아(ア), 이(イ), 우(ウ), 에(エ)’ 항목에 관해 지도, 지구본, 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하여 ‘우리 국토의 모습, 국토의 환경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르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1)에서도 특히 ‘아(ア)’항이 영토교육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아(ア)’항은 목표(1)을 위해 학생들이 조사하고 학습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로, ‘세계의 주요 대륙과 해양, 주요 국가의 명칭과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자국 영토를 학습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륙과 해양을 중심으로 세계 속에 나타나는 자국 영토의 지리적 위치와 도서국(島嶼國)으로서의 특징을 학습하게 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를 채택하여 그 국가들과의 위치관계를 파악한 뒤, 자국의 영역으로 시야를 좁혀 일본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섬들의 명칭과 영토의 범위를 학습시키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일본의 강한 영유권 주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설명들 속에는 독도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일본 영토의 동단, 서단, 남단, 북단, 일본열도 주변의 바다를 채택하여 자국의 위치와 영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지역에 대한 언급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학년에서는 목표(1)의 내용(1)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목표(1)에 관련된 내용(1)은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9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 ‘쿠(ク)’항의 ‘일청·일러 전쟁’, ‘조약 개

정’과 ‘케(ケ)’항의 ‘일중전쟁’, ‘일본에 관련된 제2차세계대전’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 2. 일본 초등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는 동경서적에서 출간한 『새로운 사회(新しい社會)』의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는 각 학년별로 한 학기당 1권씩의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의 종류가 『지도편』과 『연구편』, 『활동사례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도(地圖) 교과서에도 교사용 지도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편』 지도서는 다시 「총론편」과 「전개편」 2부로 이루어져 있다. 「총론편」은 각 학년의 상(上)권에 게재되어 전체의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연간 지도 계획의 작성, 교과 내용의 연구 등에 쓰이는 부분이며 「전개편」은 단원의 지도·평가계획과 각 차시의 전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지도편』 지도서는 한국의 교사용 지도서의 ‘각론’에 나타나는 ‘차시별 수업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도편』 지도서는 매일의 학습지도에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정리하였으며, 좌우양면에 ‘본시의 목표(목적), 학습의 흐름, 자료 활용의 방법,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작은 지식, 판서계획, 본시의 평가와 지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쉽도록 교과서 페이지와 똑같은 페이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활동사례편』은 5·6학년의 상·하 교과서에만 있는 교사용 지도서로서, 전국에서 발굴한 지역교재를 활용하여 만든 교사용 지도서이지만 특징적인 지역과 관련된 교재로서 영토교육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1) '위치와 영역'에 대한 기술

동경서적 교사용 지도서에서 영토교육과 관련하여 지도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5학년 상, 1단원 '우리들의 국토'의 단원도입 및 제1소단원 '세계 속의 국토'이다.

이 단원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1)의 '아(7)'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넓은 시야에서 일본의 국토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의 주요 대륙이나 해양, 세계의 주요 국가의 명칭과 위치를 채택하여,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관점은 우주로부터 일본으로 zoom인하는 방식을 택하고, 근린제국에서 보는 일본의 위치나 국토를 구성하는 주요 섬들, 동서남북 위치, 일본의 주변 바다를 채택하여 국토의 위치나 영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흐름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활용되는 학습자료로는 지구본과 지도장이 있는데, 세계의 주요 국가, 주요 대륙이나 해양의 명칭과 위치를 조사하여, 일본 국토의 위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국토의 위치와 영토를 파악해 가도록 하고 있다.

소단원(1)은 단원 도입 부분 1시간, 제1소단원의 학습 시간 5시간으로서 6차시의 구성이며 『연구편』 지도서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인 차시별 지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본 초등 사회과 '위치와 영역' 관련 단원 차시별 지도 내용(東京書籍)

단원의 목표 만들기(오리엔테이션)			1차시
1. 세계 속의 국토 (5시간)	파악하다	① ② 세계의 주요 국가들	2차시
	조사하다	③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④ 국토의 범위와 영토	1차시 1차시
	정리하다·활용하다	⑤ 하늘에서 국토를 바라보자	1차시

단원 도입에 해당되는 '단원의 목표 만들기'에서는 세 가지의 분절목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1단원의 목표를 유추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표(1)을 통해, 우주로부터 보이는 지구의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이나 의문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위치나 세계 국가들의 위치를 아는 범위에서 예상하게 하며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목표(2)에서는 위도·경도의 의미와 지구본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학습의 흐름이다. 이에 따른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과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지구본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도편』 지도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게임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구본 활용에서 위도와 경도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위도·경도를 확인하는 활동을 도입하여 위도와 경도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3)에서는 지구본을 사용하여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세계 국가들, 대륙과 해양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명칭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일본이 세계 속 어디에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제1소단원 '세계 속의 국토'는 5시간의 학습을 한다. 처음 2시간은 세계 속의 일본의 위치를 조사하기에 앞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명칭과 위치를 지도장이나 지구본을 통해 조사하여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3차시에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해 학습하게 한다. 지난 시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명칭과 위치, 국기 등을 학습하고, 이때 일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했다면 이 시간에는 일본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일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4차시는 '국토의 범위와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륙과 해양,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살펴본 일본의 위치를 살펴보았다면 이 차시에서는 일본의 국토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섬들과 북방 영토, 일본 동서남북의 가장자리에 대해 조사해 국토의 넓이와 일본 영토의 윤곽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5차시는 이 소단원의 마지막 차시로, 지금까지 학습해 온 것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차시에서 기록했던 백지도를 활용하여 교과서 10쪽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그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거나 발표해 보게 한다.

## 2) '영토 확장과 수복'에 대한 기술

'영토 확장과 수복'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역사영역을 다루고 있는 6학년 상(上)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일청·일러전쟁', '조약 개정', '일중전쟁, 일본이 관련된 제2차세계대전'<sup>1</sup>에 언급된 부분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소단원 7 '메이지의 국가 만들기를 추진한 사람들'의 5차시 '이타가키 다이스케와 자유민권운동'의 한 부분에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에서는 영토 수복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영토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기술된 부분은 소단원 8인 '세계로 뻗어나간 일본'과 소단원 9 '길게 이어진 전쟁과 사람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소단원 8 '세계에 걸음을 내디딘 일본'은 총 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영토교육과 관련성이 깊은 것은 2~4차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중일전쟁, 러일전쟁,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배상금이나 식민지를 얻거나 조선을 병합하는 등 식민지를 넓혀 영토 확장을 한 일본에게 있어 자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사회 속에서의 일본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구미 제국과 맺었던 불평등조약도 개정할 수 있었다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단원 9 '오랜 전쟁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신학습지도요령 6학년 내용(1)의 케(ヶ)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케(ヶ)항의 내용을 전쟁 중과 전쟁 후로 나누어 이 소단원에서는 「중일전쟁에서 제2차세계대전이 끝

1 신학습지도요령 제6학년 목표(1)의 내용(1)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들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학습지도요령이나 일본 교사용 지도서, 일본 교과서 내의 용어를 인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날 때까지」의 전반 부분을 범위로 다루고 있다.

이해 및 태도에 대한 목표를 살펴보면 중일전쟁과 일본이 관계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하다 패전하면서 입은 국민의 피해와 전쟁터가 된 지역에 손해를 입은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東京書籍株式會社, 2011m: 174).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 대전 시기의 자국의 영토 확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포되어 있다.

소단원9에서는 일본이 중국에서 만주국을 독립시킨 것이나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불경기로 인해 나빠진 국내 상황에 대한 자구책에서 비롯된 것, 중국으로부터의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차시에서는 교과서와 도서 자료를 기초로 제2차세계대전에 대해 이해 시킨 다음, 교과서 130쪽의 「전쟁터가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살펴보고 일본군의 세력이 넓었음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군의 공격범위가 넓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석유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유럽)이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공격해야 했음을 알게 하도록 하고 있다.

## 3) '영토분쟁'에 대한 기술

현재 일본이 영토분쟁화하고 있는 지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sup>2</sup> 독도가 있다. 북방영토는 현재 러시아가, 독도는 한국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지역들에 대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국 영토

임을 주장해 왔고, 학교 교육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5학년 상 교사용 지도서(연구편, 지도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연구편 지도서에서는 소단원1 '세계 속의 국토'의 지도·평가계획에서 '반드시 실시하게 하고 싶은 학습활동'으로서 "국토를 구성하는 주요 섬들이나 일본을 둘러싼 바다, 우리나라의 동

2 '센카쿠열도'는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북방영토'는 현재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쿠릴열도 남방4도'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일본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학습지도요령이나 일본 교사용 지도서, 일본 교과서 내의 용어를 인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서남북 끝의 명칭이나 위치에 대하여, 지도장이나 지구의로 조사하여 백지도에 표시함과 동시에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에 관해 리포트로 정리하는 활동을 한다.”를 기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5학년 상 연구편 지도서 1단원의 소단원 1 ‘세계 속의 국토’의 4차시에 북방영토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 우선 소단원 1 전체의 ‘지식의 구조도’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과 소단원의 차시별 지도계획을 기술한 부분에서 모두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4차시의 수업 전개안 부분에서는 “‘반환을 기다리는 북방영토’를 읽고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알게 한다.”라는 기술과 함께 “러시아연방이 (북방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 센카쿠제도라고 하여 일본 이외의 국가도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섬이 있다.”라고 기술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 4) 그 밖의 영토 관련 기술

일본의 경우, 부분적이기는 하나 육지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5학년 1학기 2단원의 소단원 2 ‘수산업이 번창한 시즈오카현’에서는 수산업이 일본의 식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 영위되어 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8차시의 내용 중 4차시에 해당하는 ‘수산업의 변화’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 자료들을 보고 일본의 어업 생산량 감소의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하여 발표해 보게 하는데 지도서에서는 어업 생산량 감소의 이유를 크게 수산업 종사자의 감소와 200해리 경제수역, 남획,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들고 있다.

영토교육과 관련된 기술은 지도(地圖)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도 교과서의 특성상 영토에 대해 가르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도 교사용 지도서에서 영토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의 47도도부현을 지도에서 확인하자’에 대한 내용과 ‘일본과 그 주변 국가와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도 교과서 7페이지 ‘일본의 47도도부현을 지도에서 확인하자’에서는 800만분의 1 축적으로 한 페이지에 일본 전도를 수록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도도부현청 소재지, 도도부현의 경계, 지방의 경계, 외국과의 경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독도를 다케시마(시마네현 소속)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홋카이도 지방에 북방영토라 불리는 4개의 섬을 표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센카쿠열도 표기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해설편에 수록된 ‘일본과 그 주변 국가와 지역’에서는 영토에 대한 언급은 물론 영해와 관련된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토와 관련하여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명과 동서남북단의 4개 섬의 위치를 통해 위도·경도 상의 일본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요 섬들의 면적을 제시한 표와 더불어 일본의 전체 면적을 수치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토분쟁지역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위도·경도 상의 일본의 위치에 대한 설명에서 북방영토 4개 섬 중의 하나인 에토로후 섬을 일본의 북단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본의 주요 섬들의 면적을 제시한 표에서는 에토로후 섬과 구나시리 섬<sup>3</sup>을 포함하고 있다. 영해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일본의 경제수역(200해리수역)’을 언급하며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주목된다.

연안국이 어업 및 광물자원에 대해 외국을 배제해 자국만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해안에서 200해리(총 370km)이내의 수역이 인정

받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 측은 확정되어 있으나 일본해, 동지나해의 경제수역은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해설편의 기술과 연관시켜 지도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먼저, 일본을 둘러싸

3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은 러시아의 ‘쿠릴열도 남방 4도’로서 하보마이군도의 러시아 명칭은 Острова Хабомай, 시코탄 섬은 о.Шикотаи, 구나시리 섬은 о.Кунашир, 에토로후 섬은 Итуруп 이다(최장근, 2009).

고 있는 바다와 주변 국가들의 명칭이 지도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76쪽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위도와 경도에 따라 일본의 동서남북 끝의 영토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등 영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200해리 경제수역의 경계선도 지도 안에 표시하고 있다.

### 3.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와 영토교육

일본 교과서의 경우, 학습지도요령을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각 교과서별로 단원명이나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본 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동서정적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살펴본 뒤,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도 함께 소개하였다.

#### 1) '위치와 영역'에 대한 기술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영토교육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년의 내용은 5학년의 국토와 관련된 단원이다. 5종의 교과서 중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 교과서를 제외<sup>4</sup>하고는 모두 5학년 1학기 1단원에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3·4학년 하(下) 교과서에서도 국토학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3·4학년 하 교과서들의 경우, 단원의 번호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과서의 맨 마지막 단원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縣)'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표지역을 통해 살펴본 주제들(위치, 지형, 토지 이용의 모습, 현에 속한 도시, 교통의 범위, 주요 산업 등)을 자신이 살고 있는 현에도 적용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학습에 앞서서 또는 학습을 마친 뒤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 교과서 첫 페이지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과 관련된 단

4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에서는 5학년 상권 도입부분에 6페이지 가량의 소단원으로 6대륙 3대양과 일본과 그 주변 국가들, 일본의 도도부현과 지방구분, 일본의 산지와 평야의 넓이 비율, 일본의 기후 분포, 우주에서 바라본 일본의 모습을 간략하게 지도와 위성사진, 그래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토 관련 단원은 5학년 하권 4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5학년 상(上) 교과서에서 활용하는 47도도부현의 명칭과 위치 학습의 예

원의 도입부에 펼침 페이지 형식으로 일본 전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일본 전도를 학습하는 부분이면서 다음 학년인 5학년에서 처음 배우는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관한 단원' 학습에 대한 기초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5학년 상 교과서에 나타나는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 5학년 상권의 경우, 1단원 도입부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라는 제목의 세계 위성사진이 나오며, 이 위성사진을 보면서 학생들은 우측 페이지에 제시된 아이들의 대화 예시와 같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말해 보거나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소단원 1의 1~2차시에서는 6대륙 3대양에 있는 세계 주요 국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국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차시에 배울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 배우기 전 배경학습이 되는 연속차시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국기와 특징, 위치를 살펴보고 하고

있다.

소단원 1의 3차시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여러 대륙과 해양, 여러 국가들의 위치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본의 위치를 살펴보게 한다.

다른 4종의 교과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경서적과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가 '세계 속의 우리나라 위치'와 관련하여 3~4페이지를 할애하여 각 대륙의 주요 나라의 명칭과 위치 및 국가들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세계 속의 일본의 위치를 살펴보게 하였다. 광촌도서와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 5-하(下)에서는 6대륙 3대양의 명칭을 학습하고 그 속에서 일본의 위치를 살펴보는 활동을 하지만 각 대륙의 주요 나라의 명칭이나 위치를 살펴보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 주변 국가와의 위치 관계를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차시에서는 국가의 영역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룬다. 4차시 '국토의 범위와 영토'에서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일본을 조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삽입된 지도 또한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가 그려진 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 차시보다 일본 국토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지도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계선을 표시함과 더불어 일본 영토의 영역을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 세계 속에서 나타난 일본의 범위를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도만으로 표현하기 힘든 일본의 범위(동서남북의 끝)와 일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에 반환되길 바라는 북방영토'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8쪽 하단부와 9쪽을 통해 사진자료와 문장자료로 제시하여 지도 학습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다.

다른 4종의 교과서에서도 '국토의 범위와 영토'를 학습하는 차시에서는 동경서적과 마찬가지로 일본 주변의 동북아시아 지도와 동서남북단의 섬의 위치와 그 사진, 북방영토에 대한 글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경서적의 경우, 다른 4종의 교과서와는 달리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동서남



(그림 2) 동경서적 5학년 상(上) 교과서 '국토의 범위와 영토' 부분

북단의 영토의 위치를 정확한 경도·위도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있다.<sup>5</sup>

5차시의 내용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의문점을 정리해 보도록 일본 국토의 모습이 들어 있는 삽화와 정리한 것을 써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삽화의 경우, 일본의 영역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 사이의 경계선을 표시해 두었으며 동서남북단의 섬 4개와 독도를 죽도(竹島)란 이름으로 기재하고 있다.

5 에토로후 섬의 경우 현재는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는 섬이지만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에토로후 섬을 비롯한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을 북방영토로 규정하고 러시아연방에서 반환받아야 한다는 다소 강한 표현이 있었지만, 5종 교과서 모두 에토로후 섬을 일본의 최북단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바로 아래의 "윌래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현재는 러시아연방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남겨져 있습니다(東京書籍株式会社, 2011c: 9)"라는 문장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 2) '영토의 확장과 수복'에 대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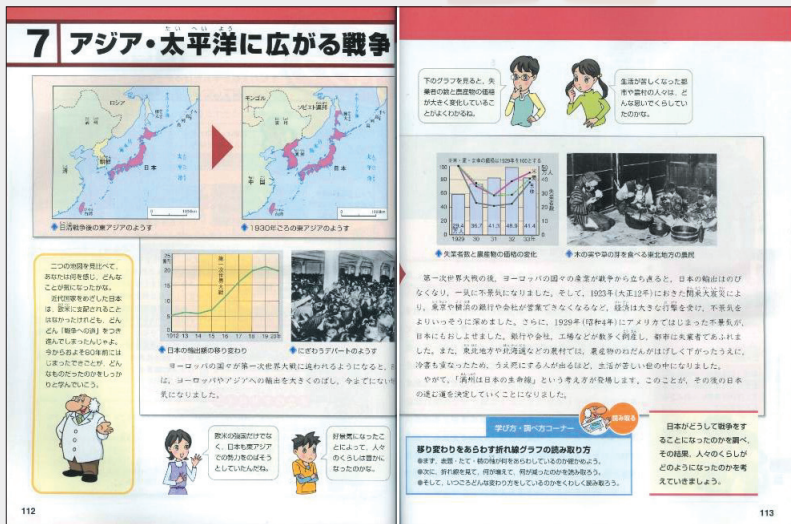
'영토 확장 및 수복'과 관련된 내용은 신학습지도요령과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로 6학년 상(上)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타국과의 전쟁이나 조약 등을 통해 영토를 넓히거나, 식민지를 개척했던 시대에 대한 기술에서 영토 확장과 관련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동경서적 6학년 상 교과서 1단원 소주제8의 2차시

인 '조약개정을 목표'에서는 막부가 구미제국과 맺은 「수호통상조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구미제국과의 불평등조약에 대한 비교적 비중 있는 부분, 즉 조약 내용이 보조 설명이 아닌 교과서 주요 기술에 들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약 개정에 대한 노력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3차시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차시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였다는 사실, 승리하면서 얻게 된 배당금이나 상대국의 영토와 같은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기술은 다른 4종의 교과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광촌도서의 『사회』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얻게 된 배당금이나 영토, 성과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교육출판의 『소학사회』가 청일전쟁 전과 후(1895), 러일전쟁 후(1905)의 3개의 지도를 제시하며 전쟁 이후 확대된 일본 영토를 살펴보게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림 3〉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사회』 교과서

이는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언급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에서는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일본이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 일부에서 확대된 생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경서적을 비롯한 5종의 교과서에서는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도를 통해 일본의 세력범위를 보여주고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지도의 경우, 중국으로 넓어져 가는 전쟁터를 묘사한 역사지도와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터를 묘사한 역사지도를 각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광촌도서의 『사회』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한 지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 3) '영토분쟁'에 대한 기술

앞서 기술한 것처럼 신학습지도요령과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영토분쟁 지역'으로서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반환되기를 요구한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교과서의 경우에도 '북방영토'에 대한 언급은 신학습지도요령과 교사용 지도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 5종의 교과서 모두 일본의 동서남북의 북단(北端)의 영토로 북방영토 4개 섬 중의 하나인 에토로후 섬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차시에는 '북방영토'가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에 따라 반환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이 어김없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북방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역사적인 권원에 대한 교과서의 직접적인 내용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북방영토 지역이 일본의 지배권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출판의 『소학사회』 교과서는 다른 4종의 교과서보다 '북방영토'에 관련된 기술을 더 많이 담고 있다. 5학년 상(上) 교과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외에도 1단원 소주제 3 '살기 좋은 생활과 환경'의 선택학습 '훗

카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에서 한 페이지에 걸쳐 북방영토에 대한 사진과 내용 기술을 하고 있다.

2단원 소주제 2 '수산업이 번창한 지역을 찾아서'의 5차시 '세계 속의 일본 어업'에서도 북방영토에 대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무로 시에서 보이는 북방영토의 모습을 사진자료로 게재하는 것과 함께 일본이 북방영토의 섬들을 돌려주기를 러시아에 대해 계속 요구하고 있음을 기술(教育出版株式會社, 2011c)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방영토의 섬들과 그 주변'이라는 제목의 지도를 제시하고 일본이 러시아연방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섬들을 표시하여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독도에 대한 기술도 찾아볼 수 있다. 5종 교과서 모두 독도를 자국의 영토(다케시마)로 기술하고 있다. 동경서적과 교육출판, 광촌도서의 교과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경계선 표시와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기술하였으나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사회』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 표시만 하고 있으며 일본문교출판의 다른 교과서인 『소학생의 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에 가려 경계선 표시도 '죽도(竹島)'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아래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 문제'라는 문장 자료에서 "이 외에도, 시마네 현에 속하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현에 속하는 센카쿠제도를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다른 4종의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문장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학습지도요령과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아메리카 군용지'에 대한 기술도 발견할 수 있다. '아메리카 군용지'에 대한 언급은 모든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경서적과 교육출판의 교과서에서는 오키나와 현과 관련된 차시에서 '아메리카 군용지'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광촌도서 및 일본문교출판의 두 교과서 모두, 아메리카 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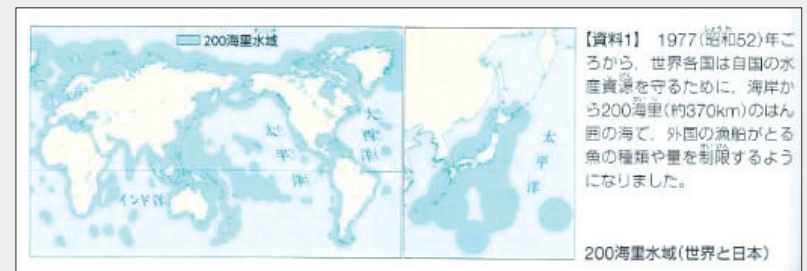
지에 대해 오키나와 현의 토지이용도와 역사 연표를 통해 아메리카 군용지가 오키나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북방영토, 아메리카 군용지의 반환에 대한 내용은 6학년 교과서에서 전후(戰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술하고 있다.

#### 4) 그 밖의 영토 관련 기술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교사용 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영해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영토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의 양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5종 교과서 모두 일본의 식료생산, 그중에서도 수산업을 주제로 다루는 소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5종 교과서 모두 200해리 경제수역의 의미를 기술하고, 200해리 경제수역에 따라 외국의 어선이 잡는 물고기의 종류와 양이 제한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5종 교과서 모두 세계의 200해리 경제수역의 범위가 그려진 지도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지도만으로는 일본의 200해리를 살펴보기가 어렵다.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문제로 인한 영해 및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문교출판의 『소학사회』는 세계의 경제수역 범위가 표시된 지도 안에 다른 색으



〈그림 4〉 광촌도서의 『社會』 교과서에서 살펴본 200해리 경제수역 지도

로 일본의 경제수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광촌도서의 『사회』는 세계의 200해리 경제수역 범위 지도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수역 지도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또한 영토교육과 관련된 기술은 지도(地図) 교과서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6</sup> 2종의 지도 교과서 모두에서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독도와 센카쿠제도는 대략적 위치만을 표시하고 있다면 ‘북방영토’는 홋카이도 지방의 지도와 함께 포함되어 표시하고 있

6 일본 소학교 사회과 검정 지도 교과서로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과 지도』와 제국서원의 『소학생의 지도장』 등 2종이며 점유율(2009)은 동경서적 5.8%, 제국서원 94.2%이다(박병섭, 2011: 32).



〈그림 5〉 제국서원의 『소학생의 지도장』의 ‘일본과 그 주변’ 지도

며 섬 내 주요 지형의 명칭 또한 일본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일본 교과서에서 북방영토를 온전히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또한 일본전도와 더불어 일본과 그 주변 국가 간의 위치 관계 및 영역과 관련된 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지도에는 어김없이 경제적 배타수역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표나 통계자료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다. 통계자료는 제국서원의 『소학생의 지도장』은 4쪽,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과 지도』는 3쪽에 불과하며 역사지도 또한 제국서원의 『소학생의 지도장』은 2쪽,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과 지도』는 1쪽에 불과하다. 일본의 지도 교과서에는 역사지도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대신 사회 교과서 안에서 교과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역사지도와 관련 통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의 지도 교과서에서는 2종 모두 백지도가 교과서 안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 도도부현 및 일본전도의 백지도와 교과학습 관련 학습지 및 평가지가 수록되어 있는 교사용 CD-ROM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III. 맺음말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관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교과로서의 사회과에서 영토교육은 중요한 주제이다. 최근 교육과정을 개정한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에서 영토교육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점이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등 사회과에서의 영토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본의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의 영토교육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 상세화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비해 대강(大綱)을 제시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경우,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비하여 학년별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많은 편이다.

교사용 지도서 또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교사용 지도서는 철저하게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때 교과서마다 「연구편」과 「지도편」을 따로 구성,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편」에서는 필수 지도 내용과 지도 목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편」에서는 「연구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 상황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간편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지식이나 개념을 순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습내용이 다소 많아 보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 지도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활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체계적인 영토교육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영토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의 경우, 독도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 및 동경서적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며, 교과서에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이 들어 있으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일본의 동서남북단의 위치와 주변의 바다를 통해 자국의 위치와 영토를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에 대한 기술은 자연스럽게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지역에 대한 언급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영토 관련 정책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교과서 내용 또한 자국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근린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하는 학습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영토분쟁 지역을 교육과정 내용

에 편성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의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영토 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해양영토에 대한 교육내용의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영해에 대한 언급보다는 자국 영역을 설명할 때, 동서남북단의 섬들과 주변 바다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해양영역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수산업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대륙붕이나 해양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도서국(島嶼國)으로서의 특징을 학습시키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해양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해양영토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좀 더 확대되고 상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영토교육에 필요한 학습 자료에 대한 제시 방법이다. 일본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지도(地圖)나 지구본, 백지도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도를 통한 학습은 지도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地圖) 지도서를 통해 그 구체적인 학습 방법과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구본 사용 방법이나 지구본을 통한 영역 학습 내용이 교사용 지도서 및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어 지도나 지구본을 교과교육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백지도는 일본 전도 및 47도도부현의 지도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교사용 CD-ROM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중 활용이 용이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언급된 학습 자료의 활용을 실제 수업과정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의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위치와 영역, 영토 확장과 수복, 영토분쟁 등과 같은 내용들을 교과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자국 영토에 대한 자각과 소속감 형성, 국가 정체성을 형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토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이를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체계성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추어 해양영토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영역교육과 관련해서는 교과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기술로 일관되고 있다.

영토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그들을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존재감을 부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성격상,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적인 요구나 정책, 민족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 학습하고, 교과 내용 속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영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영토에 대한 관심과 감정은 물론 영토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앞으로 지구촌을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영토교육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국문 초록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과 관련된 단위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구성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 일본의 영토교육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 내용과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영토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은 '위치와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의 영토교육 내용을 개선 및 보충하였으며 새롭게 반영된 내용도 있다. 둘째, 영토 확장을 국력의 신장으로 보고 있다. 외교 기술도 국력의 중요한 부분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근대에 들어서서 조약과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에 적극적이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영토분쟁 지역에 대하여 자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있으며, 영토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영토분쟁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넷째, 영토교육과 관련이 깊은 해양영토에 대한 기술과 지도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영해의 범위보다는 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미와 영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해양영역을 인지하게 하고 있다. 요약한다면, 일본은 자국의 영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영토에 대한 자각과 소속감 형성, 국가 정체성을 형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제어〉

일본 초등 사회과, 영토교육

ABSTRACT

Territor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in Japan: Curriculum, Teachers' Editions, and Analyses of Textbooks

Heo, Eunsil  
Sinyu Elementary School

Nam, Sangjoon  
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of contents related to territorial education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teacher's guide, and the textbooks of Japan,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territorial education.

The results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 with the largest changes related to territorial education in Japan is contents about "locations and areas," Japan improved and supplemented previous contents about territorial education, and there were new contents.

Second, Japan considers the expansion of territory a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wer. Japan also emphasizes that diplomatic ab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power, and it is written that Japan was active in the expansion of territory through pacts and wars with the advent of modern times.

Third, Japan selects the contents of educ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a disputed territory belongs to their dominion, and much of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teacher's guide, and the textbooks about territorial education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disputed territory.

Fourth, this study investigated descriptions about territorial waters and contents of map textbook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erritorial education. Japan makes students recognize their own territorial waters based on the meaning and area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at is wider than the scope of territorial waters.

In sum, Japan attempt to form the awareness of dominion, belongingness, and national identity through education about its territories. Its features are clearly evident in the curriculum, the teacher's guide, and textbooks.

Keywords

Elementary social studies of Japan, territorial education

참고문헌

- 김병후, 2006, 『지리교육에서 국가 영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외, 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태열·김혜숙·윤옥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장근, 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일본의 제국주의 흔적과 영토 내셔널리즘』, 제이앤씨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II): 일본」, 『교육과정자료』 437, 부산광역시 교육청
- 박병섭, 2011,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제11호(12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박선미, 2010,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6권 제3호
- 이경한, 2006, 「초등학생들의 세계 이해도 발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 [분석 대상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및 관련 누리집]
- 文部科學省, 2008a, 『小學校學習指導要領 總則編』, 文部科學省 누리집(<http://www.mext.go.jp>)
- 文部科學省, 2008b,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文部科學省 누리집(<http://www.mext.go.jp>)
- 文部科學省, 2008c, 『各教科等の改訂案のポイント』, 文部科學省 누리집(<http://www.mext.go.jp>)
- 光村圖書株式會社, 2011a, 『社會』 3·4 上, 光村圖書
- 光村圖書株式會社, 2011b, 『社會』 3·4 下, 光村圖書

光村圖書株式會社, 2011c, 『社會』 5, 光村圖書  
 光村圖書株式會社, 2011d, 『社會』 6, 光村圖書  
 教育出版株式會社, 2011a, 『小學社會』 3·4 上, 教育出版  
 教育出版株式會社, 2011b, 『小學社會』 3·4 下, 教育出版  
 教育出版株式會社, 2011c, 『小學社會』 5 上, 教育出版  
 教育出版株式會社, 2011d, 『小學社會』 5 下, 教育出版  
 教育出版株式會社, 2011e, 『小學社會』 6 上, 教育出版  
 教育出版株式會社, 2011f, 『小學社會』 6 下, 教育出版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a, 『新しい社會』 3·4 上,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b, 『新しい社會』 3·4 下,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c, 『新しい社會』 5 上,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d, 『新しい社會』 5 下,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e, 『新しい社會』 6 上,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f, 『新しい社會』 6 下,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g, 『新しい社會科地圖』, 教師用指導書 指道·研究·解説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h, 『新しい社會科地圖』, 教師用指導書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i, 『新しい社會』 3·4 上,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j, 『新しい社會』 3·4 下,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k, 『新しい社會』 5 上,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l, 『新しい社會』 5 下,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m, 『新しい社會』 6 上,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n, 『新しい社會』 6 下,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o, 『新しい社會』 3·4 上,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p, 『新しい社會』 3·4 下,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q, 『新しい社會』 5 上,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r, 『新しい社會』 5 下,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s, 『新しい社會』 6 上,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t, 『新しい社會』 6 下, 教師用指導書 研究編 CD-ROM,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u, 『新しい社會』 3·4 上, 教師用指導書 指導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v, 『新しい社會』 3·4 下, 教師用指導書 指導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w, 『新しい社會』 5 上, 教師用指導書 指導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x, 『新しい社會』 5 下, 教師用指導書 指導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y, 『新しい社會』 6 上, 教師用指導書 指導編, 東京書籍  
 東京書籍株式會社, 2011z, 『新しい社會』 6 下, 教師用指導書 指導編, 東京書籍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a, 『小學社會』 3·4 上,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b, 『小學社會』 3·4 下,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c, 『小學社會』 5 上,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d, 『小學社會』 5 下,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e, 『小學社會』 6 上,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f, 『小學社會』 6 下,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g, 『小學生の社會』 3·4 上,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h, 『小學生の社會』 3·4 下,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i, 『小學生の社會』 5 上,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j, 『小學生の社會』 5 下,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k, 『小學生の社會』 6 上, 日本文教出版  
 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1l, 『小學生の社會』 6 下, 日本文教出版  
 帝國書院株式會社, 2011, 『楽しく學ぶ 小學生の地圖帳』 4·5·6年, 帝國書院

#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현재 우리가 '독도'라고 부르는 섬을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는 주로 '마쓰시마[松島]'<sup>1</sup>로 칭했으며 다케시마[竹島], '리양쿠르 열암(리양쿠르 島, 랑코 島, Liancourt Rocks)'으로도 칭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국령으로 불법 편입하면서 '오키도에서 서북 85리(哩)'에 있는 도서 명칭을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이 호칭은 일본이 표방한 공식 명칭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공식 명칭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리양쿠르 島'와 유사 명칭, 그리고 매우 이질적인 명칭들이 1905년 전후는 물론 1950년대 초까지도 공식 명칭과 함께 혼용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런 호칭상의 혼란을 고유영토 의식과 결부시켜 보려는 것이다.

'독도'연구사는 도명(島名)과 고유영토 의식의 관계를 밝혀 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은 한국의 우산도와 삼봉도, 석도가 독도인가를 두고 논란해 왔고, 한국은 일본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호칭의

1 이 글은 호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한자만 쓰거나 일본어로 표기한다. 특히 '랑코 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므로 원문대로 표기한다. 竹島는 댕섬을 의미할 때는 '죽도'로 표기하되 분명하지 않을 때는 '竹島'로 쓴다. 일본어 표기는 아래와 같이 음독하기로 한다. タケシマ: 다케시마, リヤンコ: 리양코, 랑코: 랑코, 토크손: 독섬, 레인코트: 레잉코트

도치, '랑코 도'로의 대체를 두고 논란해 왔다.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던 일본은 '다케시마'로 정하게 된 계기를 수로지에서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하여 '마쓰시마'를 울릉도의 호칭으로 정한 데서 구했다. 울릉도의 호칭이던 '다케시마'가 수로지에서 '마쓰시마'로 바뀌게 된 원인 자체가 구명되어야 할 논쟁거리의 하나지만, 단순화시켜 보면 그 과정에는 '랑코 도'라는 또 다른 호칭이 개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1905년 이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만 부르지 않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에서 독도 문제가 부상한 1947년에도 명칭의 문제는 소속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채 다뤄졌다. 독도 연구의 1세대로 불리는 이병도, 신석호, 최남선, 방중현 등은 '독도' 명칭의 연원을 추적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독도가 '독섬'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독도'와 '석도' 표기의 병행을 당연시했으나, 최남선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배경에 "일본인의 '다케'란 것이 조선명인 '독'과 음이 유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sup>2</sup>라고 추측하되 무언가 '혼효착란(混淆錯亂)'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에서 도서 명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근대 이전의 명칭에 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일본이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다케시마 혹은 랑코 도로 부르게 된 배경, 그 밖에 다마고시마[田島]라는 호

칭이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많이 사용된 호칭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전 근대와 근대기에 한정되어 있어<sup>3</sup> 1945년 전후를 포함한 시기의 명칭 혼란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이에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호칭'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실제 독도 도항자와 울릉도 거주자의 증언을 통한 호칭의 변화를 함께 다룬

2 최남선, 1953, 「울릉도와 독도」, 『신석호 전집』(1996), 697쪽

3 김영수, 2009,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 일관계』에 잘 정리되어 있다(159~194쪽).

4 정영미, 2012,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있는데, 1950~1960년대 독도 영유권 논쟁기, 1906년 오쿠하라 헤키운 연구, 다보하시 기요시 연구, 아키오카 다케지로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다. 이 글에서 1905년 편입 이후 호칭을 통한 도서 인식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의 편입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이 주장하듯이 자국의 편입 조치가 합법적이며 편입 당시 명명한 ‘다케시마’가 공식 명칭이라면 문헌과 실제의 양 측면에서 ‘다케시마’ 호칭으로 일관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 II. 편입 이후 호칭의 변화

### 1. 1905년 전후의 호칭

일본이 1904년 9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청원할 때의 독도 명칭은 ‘리양코 도(リヤンコ島)’였다. 이 ‘리양코 도’의 엄밀한 호칭은 ‘리양쿠르 암석’<sup>5</sup>인데, 이를 ‘다케시마’로 명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호칭은 ‘독도’였고 일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sup>6</sup> 영토 편입의 계기를 제공한 나카이 요자부부가 1904년 9월 29일 ‘리양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sup>7</sup>을 제출했을 때의 명칭은 ‘리양코島’였다. 이에 앞서 편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리양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 설명서(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貸下願説明書)’<sup>8</sup>에도 ‘리양코 도(島)’로 되어 있다. ‘리양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 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인다.

속설에 울릉도는 마쓰시마(松島)이고 진짜 다케시마는 따로 있으며, 커다란 대나무가 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요나고의 아무개가 왕복한 다케시마는 확실하

5 프랑스 포경선 리양쿠르 호가 독도를 1848년에 발견했지만 1850년 수로지에서 ‘프랑스 리양쿠르호가 발견한 바위섬’이라고 했고 울릉도는 ‘Dagelet(Matsusima)섬’으로 칭했다. 1851년 프랑스 해도국 문서는 “다즐레 동쪽의 암석으로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29도 26분”에 있는 암석으로 소개했다. ‘리양쿠르 바위섬(le rocher du Liancourt)’ 명칭이 등장한 것은 1853년 수로지인데, 태평양 지도에 리양쿠르 바위섬을 마쓰시마(Matsu-Sima)의 남동쪽에 위치시켰다고 기술했다. 1855년 영국 호넷호가 측량한 후 1858년 수로지는 ‘Rochers Liancourt(Hornet)’로 표기했다(정은철, 2010, 『프랑스 리양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 20~28쪽).

6 『新高艦行動日誌』, 1904. 9. 25.

7 “오키열도 서북 85리(里), 조선 울릉도의 동남쪽 55리 떨어진 바다에 사람들이 리양코島로 부르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

8 『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貸下願説明書』, 『秘』竹島(明治 38~41年) (5-1), 시마네현 총무과 소장. (5-1)은 시마네현이 매긴 건번(件番)과 지번(枝番)이다. 이하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표기하되 소장처는 생략한다.

울릉도이다. 이른바 마쓰시마·다케시마 두 섬(松竹兩島)은 방인(邦人)이 명명한 바로서, 울릉도와 본도를 명칭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오키 열도를 거쳐 울릉도로 여러 차례 왕복한 사람은 본도를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즉 방인은 일찍이 본도를 발견했으면서도 애석하게 기록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 뿐이라고 믿고 있다.<sup>9</sup>

위의 언설을 보면, 나카이 요자부로는 울릉도를 현재는 마쓰시마로 부르지만 에도시대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짜 다케시마’ 운운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혼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카이는 울릉도인 마쓰시마 외에 대나무가 나는 진짜 다케시마가 따로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나고 사람이 간 곳 울릉도를 일러 ‘다케시마’라고 했으니, ‘진짜 다케시마’는 울릉도가 아닌 곳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나카이가 말한 ‘진짜 다케시마’는 ‘땃섬’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는 땃섬 즉 ‘죽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나카이의 인식은 오키 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1905년 영토 편입 결정에 앞서 시마네현 내무부장 호리 신지[堀信次]가 오키 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에게 ‘다케시마’ 명칭에 대해 물었을 때 오키 도사는 아래와 같이 회답했다.

원래 조선의 동쪽 해상에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두 섬이 존재함은 일반에게 구전되는 사실로, 종래 이 지방에서 나무하고 농사짓던 자들이 왕래하던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지만 실은 마쓰시마로서, 해도(海圖)로 보더라도 명료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도(新島)를 놔두고 다른 것을 다케시마에 해당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래 잘못 칭해온 명칭을 다른 데로 돌려 다케시마라는 통칭을 이 신도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sup>10</sup>

9 위의 글

10 『島嶼所屬に付名稱命名の回答寫』, 『秘』竹島(明治 38~41年) (003-00); 유미림, 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3쪽

지닌 지역 호칭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면 일본은 편입 후에 ‘다케시마’ 호칭으로 일관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편입 후에도 ‘다케시마’와 ‘리양코島’를 병칭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관보(官報)<sup>11</sup>에서도 볼 수 있다. 1905년 5월 29일자 관보의 ‘전보(戰報)’란에는 “연합함대의 주력은 …… 리양코루도 암(リヤンコールド岩) 부근에서 적함 ……”이라고 했고, 5월 30일자에서도 “28일 오후 리양코루도 암 부근에서 ……”라고 하여 ‘리양코루도 암’으로 칭했다. 이 호칭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일본은 6월 5일에 두 날짜(5월 29일과 30일)의 해전 속보에 ‘리양코루도 암’이라고 쓴 것을 모두 ‘다케시마(竹島)’로 정정한다는 사실을 실었다. 1905년 6월 1일 《오사카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sup>12</sup> ‘영광스런 다케시마’라고 했지만, 내용에서는 “리양코르도 암(일명 다케시마)은 옛날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한낱 무인도에 지나지 않아 ……”라고 했다. 제목과는 달리 내용에서는 ‘리양코르도 암’을 주칭, ‘다케시마’를 일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메지마(鮫島) 사세보 진수부(佐世保鎮守府) 사령장관이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낸 1905년 7월 4일자 문서에서 “이번에 당국의 훈령에 따라 본부에서 일본해 다케시마(리양코르도 암)의 영조물 건설에 착수하게 될 것임”<sup>13</sup>이라고 했듯이, 다케시마와 리양코르도 암을 병칭했다. 1905년 7월 일본 외무성이 부산영사관보 스즈키 에이사쿠(鈴木榮作)로부터 보고받은 「울릉도 현황」에도 “랑코 도(ランコ島)의 강치잡이는 작년(1904 - 역자)경부터 울릉도만이 잡기 시작했고 ……”라고 하여 편입 후인데도 여전히 ‘랑코 도’로 호칭하며 울릉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었다.

편입 이후 ‘다케시마’를 가장 먼저 다룬 학술지는 『지학잡지(地學雜誌)』<sup>14</sup>이다. 제목을 「오키국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지리학상의 지식」이라고 했지만, 내용에서는 “조선수로지에 의해 리양코루도 열암의 명칭 아래 매우 간단한 기사를 보일 뿐이었지만”이라고 했다. 덧붙여 다나카 아가마로(田中阿歌麻呂)는 위 잡지에서

“울릉도에서 50리, 울릉도 해상에서 멀리 이를 바라볼 수 있다. 방인은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칭하는 데 비해 이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했지만 외국인은 1849년 처음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양쿠르 호의 이름을 따서 그 명칭을 ‘리양코루도 도(島)’라고 하며, 한인(韓人)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며 본방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리양코島’라고 칭한다. 대체로 영국명 리양코루도의 전와(轉訛)에 따른 것이다”라고 명칭 유래를 소개하고 한인의 호칭도 소개했다. 다나카 아가마로는 군함 조사와 1905년 8월 시마네현 지사의 독도 시찰도 언급했다. 그가 기술한, 독도의 특성과 ‘다케시마’ 명칭 유래에 관한 정보는 리양코루도를 영국명으로 본 오류를 제외하면 대체로 정확하다. 『지학잡지』는 1908년에도 독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독도를 ‘오키 열도의 북서 약 80리(裡)의 다케시마(竹島)’<sup>15</sup>로 소개하면서 “東嶼(女島)는 북위 37도 14분 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라고 한다”<sup>16</sup>고 하여 동·서도를 구분했는데 근거는 관보(제7597호, 1908. 10. 21)이다.

이렇듯 편입 이후에도 일본 문헌은 ‘다케시마’와 ‘리양코루도 암’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향은 수산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1908~1910)는 울릉도의 별명이 ‘마쓰시마’라는 사실과 함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Liancourt rocks)’로 호칭했다. 독도의 위치는 1908년 측정에 따르면, 오키 열도 북서 약 80리(裡)에 있으며 두 섬 중 “동서(東嶼, 女嶋)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라고 하여 『지학잡지』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지학잡지』는 그 근거가 관보였다면, 수산지는 수로부 고시 제2094호였다. 1910년에 나온 『조선신지지(朝鮮新地誌)』(足立栗園 著)는 울릉도를 일러 마쓰시마라고도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섬의 동쪽에 작은 竹嶼라는 섬이 하나 있다”고 했다. 표기는 ‘竹嶼’로 하고 ‘다케시마’로 음독했다. 보통 수로지에서는 ‘竹嶼’에 서양명 ‘Boussole Rx’를 같이 써 주어 ‘다케시마’와 ‘죽도’가 다른 것임을 밝혔지만, 지리지에서는 ‘竹島’가 ‘다케시마’인지 ‘죽도’인지 혼동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1905년 편입 이후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

11 일본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12 “도쿄전화[東京電話], 《大阪朝日新聞》(1905. 6. 1) 제8358호, 2면, 「大阪朝日新聞 竹島關係記事寫」, 「秘」 竹島」(21-1)에서 재인용

13 佐鎮機密 제7호의 49, 「竹島海驢漁獵者腐敗海驢投棄にて投棄方法嚴達及照會」, 「秘」 竹島」(明治 38~41年) (19-1)

14 『地學雜誌』 210호, 1906. 6. 東京地學協會

15 田中阿歌麻呂, 1908, 「竹島の位置新測」, 『地學雜誌』 239호, 821쪽

16 田中阿歌麻呂, 1908, 위의 글

로 호칭하되 ‘리양코루토 암’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죽도’는 ‘竹嶼’로 표기하고 ‘다케시마’로 음독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다케시마’ 호칭의 정착을 방해했다.

## 2. 강제병합 이후 ‘로크 리양코루도’와 ‘죽서’

『최신조선지지(最新朝鮮地誌)』는 강제병합 후인 1912년에 나온 지리지다. 조선의 도서(島嶼)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울릉도를 “내지인이 소위 마쓰시마라고 한다”는 점을 밝혔다. 독도에 관해서는 “이(울릉도-역자) 부근에 일본해전으로 이름이 알려진 로크(rock-역자) 리양코루도가 있다”고 했다. 일본이 편입한 후인데도 조선의 지리를 다루면서 ‘독도’를 다루고 있으며 호칭도 ‘다케시마’가 아니라 ‘로크 리양코루도’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독도를 여전히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1910년 이후 대부분의 지리지는 울릉도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독도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1920년대에도 지리지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향은 계속되었지만<sup>17</sup> 울릉도 외에 죽도와 관음도가 추가되는 새로운 경향이 보였다.<sup>18</sup> 일제강점기에는 ‘독도’ 관련 기술은 현저히 줄어들어, ‘죽도’에 관한 정보는 자세해지고 기술도 빈번해졌다. 본래 ‘죽도’에 관해서는 수로지(水路誌)가 처음으로 기술했다. 수로지는 대부분 울릉도를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 혹은 ‘鬱陵島 一名松島(Dagelet island)’, 독도를 ‘리양코루토 열암’ 혹은 ‘竹島(Liancourt rocks)’로 호칭하고 ‘죽도’는 ‘竹嶼’, ‘Boussole rock’, ‘보즈루 암’ 등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sup>19</sup> 1883년의 『수로잡지』는 ‘죽서(竹嶼)’에 대해 “조선인은 이를 죽도(竹島)라고 한다”는 분주(分註)를 넣었고 본문에서는 ‘죽서’가 울릉도 근해에서 가장 큰 섬이며,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7련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죽서’에 대한 표기도 단일적이지 않아 ‘竹嶼’로 표기되다가 1907년 『조선수로지』 제2개판에서는 ‘竹嶼(Boussole

17 『新編 朝鮮地誌』(히다카 유시로[日高友四郎], 1924)에도 독도에 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18 『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1919)에는 울릉도와 죽도, 관음도의 면적이 나와 있다.

19 그 변천에 대해서는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참조.

rock)’로 표기되었고, 1911년 『일본 수로지』에는 ‘竹嶼’로, 1920년 『일본 수로지』에는 ‘竹島(竹嶼)’로 표기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한인이 덧섬을 ‘죽도’로 읽는다는 사실을 1883년에 이미 밝혔으면서도 ‘竹嶼’로 표기했다. 1920년대에 와서야 ‘竹島(竹嶼)’라고 하여 竹島를 주칭으로 하고 ‘죽도’로 음독했다. 1920년의 『일본 수로지』는 ‘竹島(Liancourt rocks)’라고 하여 ‘竹’자 옆에 ‘夕ヶ(다케)’라고 써주어 ‘죽도’가 아님을 밝혔고 괄호에 ‘Liancourt rocks’를 넣었다. 1933년 『조선연안 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에도 ‘竹島(タケシマ)’로 표기하여 ‘다케시마’임을 밝히고 ‘죽도’와는 구분했다. 특히 수로지는 독도를 ‘리양코루도 열암’으로 표기하다가 1907년 이후부터 1933년까지는 ‘竹島(Liancourt rocks)’로 병기했으므로 두 호칭의 구분이 정착한 시기는 1933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사이에 ‘竹島’가 ‘다케시마’인가 ‘竹嶼’인가에 대한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 혼란의 정점을 이룬 것이 쓰보이와 나카이, 다보하시 사이에 있었던 호칭 논란으로 볼 수 있다.

## III. ‘독도’ 호칭과 학명 ‘다케시마’의 출현

### 1. 竹島인가 武島인가

이렇듯 일본에서 독도 호칭은 ‘다케시마’로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런 혼란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병합한 조선에서 가중되기 시작했다. 울릉도와 독도, 현지 조사가 수월해졌지만 이것이 ‘다케시마’ 호칭의 단일화를 결과했는지는 의문이다. 현지 조사는 지명을 알 수 있는

첩경인데, 일본인의 울릉도 지명 파악은 식물조사에 부수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 식물조사가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지만<sup>20</sup> 울릉도 식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2년 오카모토 긴조(岡本金藏)의 조

20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1854년 독일 탐험가 살펜바흐가 처음 버드나무와 철쭉을 채집한 이래 네덜란드 식물학자 미켈이 최초로 보고했고 일제강점기 때 나카이 다케노신이 총 1118분류군으로 발표했다.

사, 1917년 이시도야 쓰토무(石戸谷勉)·가와치 이치(河内春一)의 조사 및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sup>21</sup>의 조사를 들 수 있다.<sup>22</sup> 울릉도 식물조사가 독도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나카이 다케노신이 붙인 ‘다케시마’라는 학명 때문이다. 그가 울릉도를 조사한 시기는 1917년 5월 30일~6월 22일까지인데<sup>23</sup> 독도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1917년 조사에 근거하여 『울릉도식물조사보고서(鬱陵島植物調査報告書)』<sup>24</sup>를 제출했고 조선총독부는 이 보고서를 『울릉도식물조사서(鬱陵島植物調査書)』(1919. 12)로 출간했다. 나카이는 1910년에 *Flora of Korea*를 낸 바 있다. 그는 여러 저술에서 울릉도(鬱陵島)를 한국어로는 울릉도, 영어로는 Ulreungdo와 Ooryongto or Dagelet island 등으로, 제주도는 Quelpaert로 표기하고 한국은 Corea로 표기했다. 『울릉도식물조사서』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 외에 ‘관음도(觀音島), 竹島’가 표기되어 있다. 이때의 ‘竹島’는 죽도를 말하는데 나카이는 음독을 달지 않았다. ‘다케시마’<sup>25</sup>로 읽은 듯하다.

『울릉도식물조사서』에 따르면, 울릉도는 조선 최동단의 섬으로, 경위도는 동경 130도 47분 40초에서 130도 55분이며, ‘부속한 竹島’의 동단은 130도 56분 10초, 북위 37도 27분 44초에서 37도 33분 31초로 되어 있다. 울릉도 최고봉인 ‘상봉’은 해발 920미터<sup>26</sup>이며 날씨가 맑은 날 서쪽지방 강원도의 산자락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비가 내리기 전 날씨가 맑을 때는 동남방 바다 멀리 희미하게 다마고시마(卵島)가 보인다”고 했다. 여기서 ‘卵島’는 그 정황으로 보아 독도를 가리킨다. 죽도가 아닌 섬으로 날씨가 맑을 때 동남방에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카이는 왜 독도를 ‘卵島’

로 호칭했을까? 그렇다면 그에게 학명 ‘다케시마’는 어떤 섬을 의미하는가? 나카이는 『울릉도식물조사서』를 출간하기 전후 3회에 걸쳐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와 도명(島名)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울릉도에 관한 나카이의 인식은 아래의 진술에 보인다.

오키 이즈모 주변 주민은 조류(潮流)를 이용하여 일찍부터 왕래했듯이, 섬을 이름하여 <sup>タケシマ</sup>武島<sup>27</sup>라고 칭했고 그 토산인 武島百合, 오동나무(桐樹) 등을 내지로 옮겼다. 현재 주민은 소속도서 중 하나인 竹島와 함께 한편으로는 松島라고도 부른다. 이는 松이 번무하고 竹이 번무하기 때문이 아니라 松竹이라고 병칭하여 축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일로전쟁 당시 해군 보고서에 松島라고 한 이유이다.<sup>28</sup>

위에서 말한 ‘竹島’는 위에서 첨부된 지도와 마찬가지로 죽도인데, 松島와 함께 언급된 정황이 ‘다케시마’로 음독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松島’라고 한 것은 맥락상 울릉도를 가리키는데 울릉도를 <sup>タケシマ</sup>武島로, 토산을 ‘武島百合’<sup>29</sup>이라고 하고 있어 이는 과거 오키 주민들이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호칭해 온 역사적 사실과는 배치된다. 수로지와 지리지에서 ‘松島’는 울릉도를, 그 대(對)인 ‘竹島’는 리양코루도 열암을 가리켜 왔는데, 나카이가 지적하듯 위의 기술방식대로 松竹의 일부인 ‘松島’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竹島’는 독도를 가리켜야 하는데 ‘소속 도서 중 하나인 竹島’라고 했으므로 이때의 竹島는 독도로 볼 수 없다. 여기서 ‘竹島’를 ‘다케시마’로 읽었지만 실은 ‘죽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나카이는 기록상 보이는 ‘다케시마(울릉도-필자)’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울릉도를 ‘武島’로 표기하고 있다. 둘 다 ‘다케시마’로 음독하되 표기를 달리하여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1918년 2월 27일자 서신에서 쓰보이는 나카이에게 아래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21 나카이 다케노신(1882~1952)은 식물분류학자로서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한국에 와서 전국의 식물 표본을 채집했다.

22 오수영, 1978, 「울릉도 관속식물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논문집』 25호. (동아일보)에는 이시도야 쓰토무와 하스미(達見) 기사(技師)의 조사가 1916년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鬱陵島植物相 ①” (동아일보), 1937. 9. 3.

23 루트는 道洞-苧洞-羅里洞峯-도동-옥천동 형제암/사동/도동 면유림-도동/망루대-羅里洞-미륵봉-도동-통구미-남양동-台霞洞/馬岩峙-玄圃-竹岩-錐山-도동-竹島이다.

24 영어 타이틀은 「Report on the Vegetation of The Island Ooryongto or Dagelet Island, Corea, February」이다.

25 나카이가 죽도를 竹島로 표기하고 음독(音讀)을 달지 않은 것은 통상 ‘다케시마’로 읽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명 이름테면 錐山은 송곳산, 苧洞은 모시계, 黃土未은 한도기미, 南陽洞은 고리켄, 羅里洞峯은 라리골봉 등으로 위에 음독을 함께 적었는데 竹島는 卵島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竹島가 죽도임을 첨부된 지도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26 나리동 봉우리는 900미터, 미륵봉은 800미터라고 적어 상봉과 구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1933년 9월 17일자에는 성인봉은 983미터, 미륵봉은 900미터로 되어 있다.

27 오키의 기록인 『隱州視聽合記』나 『隱岐古記集』에는 竹島로 되어 있다.

28 中井猛之進, 1919, 『울릉도 식물조사서』, 3~4쪽

29 통상 ‘다케시마유리’라고 읽는다.

タケシマ(다케시마-역자)라는 것은 에도막부 시대에 대나무와 전복을 찾아 방인(邦人)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로부터 엄담(嚴談)을 받은 일이 두세 번 있다. [...] 신라시대에는 于山이라고 쓴 것이 가장 오래되지만 후에 문자를 고쳐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 썼다.鬱陵이라고 쓰는 것은 고려 이후의 일이다. 于와 羽는 조선음 우(우), 武음은 무(무), 鬱은 同音 울(울)로서 어느 것도 음(音)을 전하기까지 자의(字意)와 관계없다. [...] 이는 도명은 본래 우 또는 무인데, 오키인이 지금도 武島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의 옛 이름 그대로 했기 때문이니, ‘ムシマ(무시마-역자)’로 칭해야 하고 ‘ムタウ(무타우-역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sup>30</sup>

즉 쓰보이는 ‘武島’를 ‘다케시마’가 아니라 ‘무시마’로 읽었다. 그는 나카이로부터 아래의 내용을 들은 사실도 밝혔다(1918. 8. 3).<sup>31</sup>

소생은 작년(1917) 울릉도로 건너가 竹島인지 武島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섬의 개척자로서 거의 도장 격인 가타오카 기치베(도동 거주)와 남양동의 아마나카(山中), 태하의 富輩(원문대로)에게 반복해서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질문하신 Liancourt는 卵島로서, 일로전쟁 당시는 해군 저탄소였지만 지금은 랏쓰코(아시카를 잘못 쓴 것은 아닌지) 사냥장이며 수목은 결코 무성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의 본도를 松島라 하고 그 동쪽의 부속도서 중 가장 큰 섬을 竹島라 하는 것은 소나무가 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송죽(松竹)’이라는, 축하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로(古老)로부터 전해지는 바라고 합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Liancourt’라고 한 것으로 보아 쓰보이가 독도를 ‘Liancourt’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의 본도를 松島라 하고 그 동쪽의 부속도서 중 가장 큰 섬을 竹島라 하는 것은”이라고 하여 ‘松竹’과 연계시켰으므로 ‘竹

30 中井猛之進, 1919, 앞의 책, 4쪽

31 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歴史地理』 38권 3호, 167쪽

은 ‘다케’로 음독했지만 ‘죽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고래로부터 울릉도의 호칭인 ‘松島’의 대로서의 ‘竹島’는 ‘다케시마’이다. 이 ‘다케시마’는 1905년 이후 공식 명칭이 되었고 1918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을 쓰보이와 나카이, 울릉도의 가타오카 기치베는 몰랐을까? 민간에서 독도를 ‘랑코도’로 불렀다고 해도 그것은 일본이 말하는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나카이는 울릉도 현지에서 ‘竹島’를 ‘다케시마’로 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때의 ‘다케시마’는 독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나카이가 전래되던 독도 호칭 ‘다케시마’에서 ‘다마고시마(卵島)’로 전화시킨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나카이는 ‘竹島’와 ‘武島’ 중 어느 것을 ‘다케시마’로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현지에서 댛섬인 ‘竹島’를 ‘다케시마’로 읽는다는 것을 확인한 데다 쓰보이로부터도 ‘武島’를 ‘무시마’로 읽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다케시마’ 대신 ‘卵島’를 고안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나카이가 붙인 학명 ‘다케시마’도 ‘죽도’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나카이는 쓰보이로부터 도명의 유래에 대해 들었다. 쓰보이는 우릉도, 우루마, 울섬, 磯竹島, 竹島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다케시마사건[竹島事件]’ 및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문담(竹島文談)』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에도 막부에서는 ‘다케시마’가 울릉도의 칭호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오키 사람만 이 섬을 ‘무시마(武島)’로 칭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또한 쓰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나카이에게 알려 주었다.

武島는 武陵과 같은 것이며 한인(韓人)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울도(蔚島)는 마찬가지로 우루마 또는 울섬의 대음(對音) 또는 대역(對譯)이다. 오키인이 이를 다케시마(タケシマ)라고 혼독하는 것은 쓰시마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닌지, 다케시마라는 것은 쓰시마인에게서 나왔다 해도 이미 공용, 외교용 호칭으로 성립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지당하다. [...] 주도를 松島, 속도를 竹島라고 구별하여 小名을 정함과 동시에 축하의 뜻을 나타낸 것은 아름답고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이다. [...] 요컨대 이 섬의 大名 즉 총

명을 竹島라 하든, 武島라 하든, 蔚島라 하든 [...] <sup>32</sup>

즉 쓰보이에게 ‘武島’를 ‘다케시마’로 읽어야 할 필연성은 없었다. 그는 ‘다케’라는 훈이 ‘竹’에 해당되고 ‘武’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히려 울릉도를 ‘武島’로 칭하든, ‘竹島’로 칭하든 竹島와 松島를 다 보존해 주도와 속도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더 중시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주도·속도 개념을 보면, 울릉도와 죽도만 포함되고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카이 다케노신은 ‘죽도’를 ‘竹島’로 표기했고, 쓰보이는 나카이로부터 ‘다케시마’의 ‘다케’가 ‘武’인지 ‘竹’인지를 확인받았다. 이에 쓰보이는 ‘다케시마’라는 도명은 ‘武島’의 왜훈(倭訓)임이 명백하므로, 여기에 ‘竹島’를 비정하는 것은 두찬(杜撰)이며 ‘기죽도’에 비정하는 것은 더욱더 두찬이라고 보았다. <sup>33</sup>

이런 쓰보이의 논증은 나카이의 확인에 근거하여 억지로 꿰어맞춘 느낌이 든다. 쓰보이는 오키 군도의 이도인 ‘卵島’가 『일본지리지』에 실려 있지 않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지리지』에는 ‘竹島·松島’만이 실려 있어 ‘卵島’ 즉 ‘독도’의 존재가 문제가 되므로 쓰보이는 ‘卵島’를 거론한 것이다. 쓰보이는 “이 섬(독도-펄자)을 竹島로 개칭한 것은 너무 타당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구명(舊名)을 폐지하고 신명(新名)을 붙이는 것은 근년의 유행과도 비슷하지만 특히 이 경우는 근거리 사이에 동명인 이도(離島)가 두 개 있는 것이 되어 자못 맞지 않습니다.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여 ‘卵島’여야 할 호칭이 ‘竹島’로 된 것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그는 죽도인 ‘竹島’를 독도인 ‘竹島’와 동명으로 본 것이다. 이런 논리는 쓰보이가 울릉도와 죽도, 卵島 명칭을 천착하는 저의를 의심케 한다. 그가 말하는 ‘卵島’가 일본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 서남쪽 세 개의 이도 즉 울릉도와 죽도, 卵島를 일괄하여 그 호칭을 문제삼는 것은 이들을 모두 일본의 부속도서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32 中井猛之進, 1919, 앞의 책, 6쪽; 쓰보이의 1918년 8월 3일자 서신

33 坪井九馬三, 1921, 앞의 글, 168쪽

## 2. 卵島와 죽도

『일본지리지』 권50 ‘오키’조 ‘도서’항의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가운데 독도를 가리키는 것은 ‘마쓰시마’였다. 일본 후쿠우라에서 “해로로 약 100리 4정 남짓” <sup>34</sup> 떨어진 곳에 있는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쓰보이는 독도 호칭인 ‘卵島’를 해군에게 잘못 ‘다케시마[竹島]’로 가르쳐준 데서 ‘다케시마’로 되었고 이를 시마네현청이 잘못 공인하여 1905년에 卵島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위의 두 섬을 울릉도와 독도에 비정하지 않았다. 쓰보이는 위의 두 섬을 ‘외국 제도(製圖)에서 검토하면 Is, Dagelet(Matsou Sima) (Jap.) Is, Liancourt on Hornet (Jap.)’이라고

한 것이 이것인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오키의 이른바 전설에서 말하는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두 섬의 거리관계를 언급한 지 <sup>35</sup>의 기술을 믿는 대신 나카이의 현지 조사를 더 신뢰했다. 이런 쓰보이와는 다른 견해를 취한 자가 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이다. 그는 “竹島(리앙코루도島)는 울릉도와 함께 모두 지금은 조선 강원도 <sup>36</sup>에 속한 것으로 조선의 영분(領分)으로서 일본해 중 가장 동부에 속해 있다. 매우 협소한 도서이다” <sup>37</sup>라고 하여 ‘竹島(리앙코루도島)’를 조선 영토로 보았다. 다만 호칭은 ‘다케시마’와 ‘리앙코루도島’ 두 가지를 병칭하고 있다. 쓰보이의 관심은 히바타의 설을 비판할 의도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관심을 반영하여 논문 주제가 ‘鬱陵島’에서 ‘竹島’ <sup>38</sup>로 바뀌었다.

『일본지리지』에 없는 오키 제삼 부속도(附屬島)는 卵島라는 무애(無碍)의 암서로 수목이 나지 않고 해려(아시아)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37-8년 전쟁 중 해군은 저탄

34 『日本地誌提要』 권50 오키

35 “서북 방향으로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 두 섬이 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오키군 후쿠우라항에서 마쓰시마에 이르는 해로는 약 69리(里) 35정(町), 다케시마에 이르는 해로는 약 100리 4정, 조선에 이르는 해로는 약 136리 30정이라고 한다.”(『일본지리지』)

36 다무라 세이지부로[田村清三郎]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히바타 셋코씨의 『역사와 지리』의 기술은 메이지 이전에 다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킨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개인의 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이 발표된 1930년에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했지, 결코 강원도에 속하지 않았다. 울릉도 자체도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류로 가득 찬 논저는 어떤 증거도 되지 않는다.”(다무라 세이지부로, 『島根縣竹島の新研究』, 195쪽)

37 樋畑雪湖, 1930,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歴史地理』 55-6

38 坪井九馬三, 1931, 『竹島について』, 『歴史地理』 56-1

소로 이용했다. 외국 제도의 Liancourt 또는 Hornet이 이 암도이다. 울릉은 마쓰시마로 현재 사용되는 한명(韓名)이다. [...] 산이라 쓰든 능이라 쓰든 모두 섬이라는 뜻으로 [...] 울은 우(ウ)를 빌려 쓰고 있지만 자의(字意)와는 관계없다. 경장 연간에는 조선인은 모두 이 섬을 오로지 울릉 또는 다케시마라고 했듯이 다케시마라는 도명의 인연은 명확하지 않다. [...] 울릉의 동쪽 바다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암서가 있다. 울릉의 부속도서로 竹島라고 한다. 이 竹島라는 것은 한명<sup>39</sup>이 아니다. 오키에서 온 이민이 본도를 松島라고 하므로 부속도서를 竹島라고 하여 축하의 의미로 부르는 것이라고 가타오카는 명명(命名)의 인연을 확실히 기억했다고 나카이 박사는 말했다.<sup>40</sup>

이어 쓰보이는 “卵島를 함부로 竹島라 부르는 것은 누군가가 해군 당사자에게 가르쳐주었는지 소생은 모르지만, 혹은 『일본지리지』의 불확실한 기사를 제멋대로 짐작하여 응용한 것은 아닌지…… 무릇 지명과 같은 것은 소속 지방의 고로(古老)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일개 무인(武人) 또는 무학(無學)의 지방 관원 등이 마음대로 명명할 문제가 아니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소생은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쓰보이가 지명의 명명에 현 지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나카이가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의 증언을 신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가타오카의 증언은 믿을 만한가?

가타오카 기치베는 1899년 4월 울릉도 도감 역할을 하던 오성일(오상일)이 일본 상인들로부터 세금 납부를 약속받으면서 받아낸 약속문 서명자 중의 일인이다.<sup>41</sup> 그 후에는 1902년 울릉도에서 조직된 일상조합의 부조합장을 지냈으며,<sup>42</sup> 1906년 시마네현 시찰단이 울릉도에서 돌아갈 때 전송하기도 했다. 시찰단 중에 오쿠하라 헤키운이 있었는데 오쿠하라는 저술을 목적으로 시찰에 참가했으므로 둘 사이에 정보 교류가 있

39 竹島の 한명은 ‘댓섬’이고 이를 혼독한 것이 ‘竹島’인데 쓰보이는 이를 한명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죽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음독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40 坪井九馬三, 1931, 앞의 글, 34쪽

41 「受命調査事項 報告書」 중 ‘輸出税の件’ (외무성기록 3532, 1900, 『鬱陵島における伏木關係雜件』에 수록)

42 1900년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할 때 가타오카 히로치카(片岡廣親)가 나오는데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다.

었을 것이다. 이후 1917년 나카이 다케노신이 식물 채집을 위해 울릉도에서 가타오카를 만났을 때 그는 우편국원 신분이었다. 이는 그가 오랜 울릉도 거주자였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그는 독도 편입 사실이나 ‘다케시마’ 명칭의 유래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타오카를 비롯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댛섬인 ‘죽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리앙코루 도’를 ‘다마고시마(卵島)’로 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쓰보이는 이 ‘卵島’ 호칭이 1905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卵島’는 ‘랑코도(ランコ島)’를 음차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다마고시마’가 아니라 ‘란토’<sup>43</sup>로 음독되어야 한다.

### 3. 학명 ‘다케시마’

나카이 다케노신은 ‘다케시마 유리’라는 ‘참나리(鬼百合)’류의 표기가 ‘武島百合’ ‘竹島百合’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울릉도에서 조사했다. 즉 ‘다케시마’의 ‘다케’가 ‘武’인지 ‘竹’인지를 조사한 것인데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타오카 기치베의 증언을 통해 ‘다케’가 ‘竹’임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나카이는 ‘다케시마’ 즉 竹島란 울릉도 옆의 섬 ‘죽도’인 것으로 인식했다. 나카이는 1917년 조사 후에 1918년 2월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조선 총독부는 1919년 12월에 보고서를 책자로 출간했다. 나카이가 쓰보이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은 1918년 2월 27일과 8월 3일 등 모두 세 차례<sup>44</sup>이다. 따라서 나카이는 출간을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쓰보이의 견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쓰보이의 견해대로라면 ‘다케시마(武島)’는 ‘무시마’로 읽어야 하지만 ‘무시마(武島)’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나카이는 1916년에 울릉도 식물을 조사한 조선 총독부 기수들의 표본을 조사하고 식물 명칭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때 ‘다케시마’를 붙일 것을 제안했다.<sup>45</sup> 섬의 자생식물 중 특산품에는 \* 표시를 했

43 나카이가 가타오카의 말을 인용할 때는 ‘卵島’로만 표기했는데 쓰보이는 이를 ‘다마고시마’로 음독했다. 다가와 고조는 1953년 「우산도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卵島(리앙쿠르 島)’라고 쓰고 있다. 다가와는 ‘난도’를 ‘리앙코루 도’의 음차로 본 것이다.

44 1회 서신은 날짜가 나와 있지 않다.

45 ‘아마자쿠라’를 ‘다케시마자쿠라’로 ‘미야마쿠마이치고’를 ‘다케시마이치고’로, ‘데우센야마부도우’를 ‘다케시마야마부도우’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정한 것 중에는 다케시마야나기, 다케시마부나, 다케시

다.<sup>46</sup> 특히 나카이는 “부나, 이누부나, 홋카이도부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케시마부나이다.”<sup>47</sup>라고 하여 ‘다케시마부나’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도 울릉도 특산종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부나(フナ)’란 너도밤나무 종류인데, ‘다케시마부나’는 일본너도밤나무와 다른 종이므로 일부러 ‘다케시마’를 붙여 울릉도 고유종임을 나타낸 것이다. 나카이는 『울릉도 식물조사서』에서 학명을 ‘たけしま(다케시마)’라고 표기했으나 『조선삼림식물편(朝鮮森林植物編)』에서는 takeshimense, takeshimana 등의 영어로 표기했다. 나카이는 울릉도와 죽도(竹島)를 구분하여 인지했지만 ‘죽도’를 ‘다케시마’로 음독했고, ‘독도’는 ‘다마고시마(卯島)’로 표기했다. 그런 그가 ‘다케시마’가 과거 울릉도 호칭이었으며 현재는 ‘죽도’ 호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명으로 ‘다케시마’를 붙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카이는 1917년 당시 ‘다케시마’가 ‘리양코루도’에서 바뀐 독도 호칭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학명에 ‘다케시마’를 붙인 것인가?

나카이는 『울릉도식물조사서』라고 했듯이 조사 대상이 ‘울릉도’ 식물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기 붙인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武島’도 ‘다케시마’로 읽을 수 있지만 쓰보이로부터 ‘무시마’라고 들었으므로 나카이는 ‘다케시마’가 ‘武島’보다는 ‘竹島’일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죽도’에 대해 ‘竹島’라고만 쓰고 ‘츠크트(죽도-역자)’라는 음독을 달지 않았다. 해도에서는 ‘竹島’ 대신 ‘竹嶼’로 쓰고 있었는데도 나카이는 이 표기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나카이는 학명 ‘다케시마’를 울릉도와 죽도를 포함하는 호칭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울릉도를 ‘鬱陵島’로 호칭하고 영어로는 ‘다줄레 도(島)’로 표기했으면서도 학명으로는 ‘다케시마’를 사용했다. 그가 독도에 간 적이 없으므로 ‘다케시마’가 독도 식물에 붙여진 학명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그가 ‘다케시마’가 武島이든 竹島이든 과거 울릉도 호칭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붙였다면, 그가 지칭하는 ‘다케시마’는 1905년 이후 이른바 일본령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마시나노키 등의 명칭이 보인다.

46 \* *athyrium acutipinnulum*, kodama 다케시마메시다(신종)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47 中井猛之進, 1919, 앞의 글, 11쪽

점도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에게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나카이와 쓰보이의 인식은 서로의 정보 교환으로 인해 오히려 인식 혼란이 가중되었을 뿐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이 점을 후에 다보하시에게 지적받는다.

나카이의 조사 결과는 1937년에 《동아일보》<sup>48</sup>에도 연재되었다. 나카이가 조사한 372종의 자생종 중 32여 종이 특산식물로 특기되었다. 이 특산식물 가운데도 학명에 ‘다케시마’가 붙은 것들이 있다.<sup>49</sup> 신문에서 “本島는 總面積 四, 七方里에 不過하나 野生植物數 四百五十種이나 되며 더욱 特産植物이 豊富하다는 點, 植物名의 學名으로 Takesimeusis, Takesimense, Takesimana 或은 insularis insulare 日本名으로 ‘タケシマ(다케시마)’라는 植物은 本島 特産植物種이라는 것을 表示하거나 或은 그 植物의 原産地가 本島라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학명 ‘다케시마’가 울릉도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사에는 “竹島와 鬱陵本島間 僅 五里 밖에 못되는데 水深 二百尋與라 하니 本島가 海底에서 急急 峻出된 火山이란 것은 可히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여기서 竹島는 ‘죽도’를 말한다. 이 기사를 보건대, 1930년대 후반 한국의 신문은 죽도를 竹島로 표기하면서도 독도의 일본명이 같은 竹島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1921년 쓰보이의 글이 발표된 후에 출간된 『도근현지(島根縣誌)』(1923)는 “조선에서는 獨島라고 쓴다. …… 竹島는 일본해 항로에 있어 1849년 불선

(佛船) 리양쿠르 호가 발견한 이래 리양코토 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본현에서는 이를 리양코암으로 속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쿠가와 시대에는 울릉도를 竹島라고 하고 리양코암을 松島라고 지칭했다. 그런데 ……<sup>50</sup>”라고 했다. 1920년대에도 여전히 리양코 암이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근현지』는 시마네현 해안지방에서는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 ‘다케시마’가 동명이도인 것처럼 혼란을

48 都達涉, 1937. 9. 3~9, “科學 鬱陵島 植物相1-4”, 《동아일보》

49 섬개야광나무(タケシマシヤリンタフ), 섬덩강나무(タケシマシクバネウシギ), 섬말나리(タケシマユリ), 섬버들(タケシマヤナギ), 섬괴불나무(タケシマヘウタンボク), 너도밤나무(タケシマフナ), 황경피나무(タケシマキハダ) 등으로 나온다.

50 島根縣教育會 편찬, 1923, 『島根縣誌』, 690~691쪽

야기한다는 사실도 덧붙이고 있다.

#### 4. 卵島와 竹島: 죽도와 竹嶼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 호칭으로 전래된 것은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였지만, 이것이 나카이와 쓰보이에게 부정되자, 반향이 있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울릉도는 본래 산음지방 어민이 도항하면서 이 소타케시마[磯竹島]로, 후에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마쓰시마[松島]로 알려졌는데, 울릉도 동남에 해중에 우뚝 솟은 거암(현행 해도상의 리양쿠르島, Liancourt)이 알려지면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울릉도와 리양쿠르島 사이에 혼동되는 경향이 생겼다고 했다.<sup>51</sup> 그는 울릉도의 별명을 마쓰시마로, 리양쿠르島의 별명을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는 것은 영국 해군의 관용을 따른 것이지만, 영국 해군 수로지에는 다줄레 도(島)의 본명을 ‘Matu Sima’로 했음을 밝혔다. 또한 수로지에서는 ‘리양쿠르 도’에 대한 일본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울릉도의 별명이 ‘마쓰시마’로 규정된 이상 ‘다케시마’가 ‘리양쿠르 도’의 별명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했다. 즉 울릉도의 별명이 ‘마쓰시마’로 확정됨으로 인해 본래의 별명 ‘다케시마’가 소도 리양쿠르로 옮겨진 것은 자연스럽다고 본 것이다. 다보하시에게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두 호칭이 역사성을 무시하고 도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칭이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다.

1931년 5월 다보하시는 「울릉도 명칭에 대해」라는 글을 발표했다. 부제를 “쓰보이 박사의 가르침에 답하다”라고 하여 쓰보이와 논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쓰보이는 다보하시에게 3월 22일자 서신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나카이의 설에 기초한 것이었다. 쓰보이의 논리는, 나카이가 울릉에서 竹島와 松島의 유래를 조사한 데 근거하고 있다. 즉 오키에서 온 사람들이 식민지의 전도(前途)를 축하하여 본도를 마쓰시마[松島]로 그리고 그 동쪽바다 앞에 있는 부속 암서를 竹島로 불렀고 또한 오키의 동북쪽 바다에 있으며 강치 번식지로 알려져

51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제3호, 2쪽

있으며 보통 해도에 Liancourt라고 한 것은 오키인이 모두 다마고島 - 卵島 - 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를 다케시마라고 한 것은 ‘자연의 이치’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쓰보이는 나카이 설에 근거하여 일본해의 섬 세 개를 일본 쪽에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卵島, 鬱陵島(松島), 竹島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다보하시는 세 섬을 해도에 비정한다면 竹島, 鬱陵島(松島), 竹嶼(Tei Somu)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양 이름, 조선명, 현행 해도, 그리고 쓰보이와 나카이 설을 대비시켰다. 다보하시는 Liancourt, 즉 해도에 ‘다케시마[竹島]’로 되어 있는 것을 나카이가 ‘卵島’라고 하고 쓰보이도 이를 따랐는데 이 명칭이 보이는 문헌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sup>52</sup> 다보하시가 보기에 ‘다마고시마[卵島]’라는 명칭은 나카이 보고서에 처음 등장할 뿐 고기록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보하시는 울릉도 호칭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는 Boussole 즉 뱃섬이다. 해도에 ‘竹嶼’라고 한 것을 나카이와 쓰보이는 竹島로 보았지만, 다보하시는 ‘竹島(대섬)’의 혼독으로 보았고, 음독하면 ‘죽도’가 된다고 보았다. 다보하시는 쓰보이와 나카이가 竹島가 일본명 다케시마인지, 조선명 대섬(訓)인지, 아니면 죽도(音)인지조차 판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곡을 찔렀다. 다보하시는 나카이가 가타오카의 질정을 받아 ‘다케시마’를 ‘竹島’로 봤지만, 松島와 竹島 명명의 유래를 松竹을 병칭하는 관습에서 온 것으로 본 것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지봉유설(芝峯類說)』 등의 기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보하시는 쓰보이와 나카이가 竹島(タケシマ)에 武島(タケシマ)라는 한자를 쓰는 일이 오키 이즈모 주민의 관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헌으로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보하시는 여러 문헌에 보이는 磯竹島 혹은 竹島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속 암초인 ‘죽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sup>53</sup>

다보하시는 리양쿠르와 부속 암의 명칭은 문헌상 확인할 수 없고 울릉도에 대해서만 竹島·松島 두 이름이 있었음을 논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결과적

52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の名稱に就て」, 『靑丘學叢』 제4호, 105쪽

53 田保橋潔, 1931, 위의 글, 106쪽

으로 리앙쿠르 암과 다즐레 島의 혼동을 초래했고, 본래는 울릉도 명칭이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두 섬으로 나뉘었다가 울릉도의 일본 명칭을 ‘마쓰시마’로 확정하면서 다른 일명인 ‘다케시마’가 독도의 이름으로 옮겨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보하시의 논리는 1905년 영토 편입 때 독도 호칭인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로 바뀌게 된 배경을 수로지에서 구한 오쿠하라 헤키운의 논리와 비슷하다. 즉 오쿠하라는 『수로지』와 해도에 이미 울릉도를 松島라고 명명한 이상, 竹島에 해당되는 섬은 리앙코도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竹島라고 명명하게 된 것<sup>54</sup>으로 보았지만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이런 논증과정에 따라 다보하시는 松島·竹島를 두고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에 혼동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명칭을 ‘竹嶼’와 혼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보하시의 논리대로라면 쓰보이와 나카이가 설명하듯이 울릉도 명칭이던 ‘다케시마’가 댛섬의 명칭인 ‘죽도’의 명칭으로 전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후 武島(タケシマ)나 卵島 명칭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카이와 쓰보이의 명명은 일시적인 예외였음을 알 수 있다. 나카이와 쓰보이의 명명이 이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역사성을 무시한 명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이 독도 도해 혹은 거주 경험에 있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래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IV. 거주지역과 ‘독도’ 호칭

##### 1. 어업인의 호칭: 다케시마와 랑코도(島)

일제강점기 어업자를 비롯한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1951년~1953년에 걸쳐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면접자료이다. 일본은 대일 평화조약 발효 이후 한국이 교섭해 올 것에 대비하여 외무성의 가와카미 겐조가 중심이 되어

54 유미림, 2009, 앞의 책, 108쪽

시마네현에 조사를 요청하면 시마네현이 다시 오키지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외무성은 이때 다케시마어업회사의 경영현황과 ‘獨島’와 ‘破浪島<sup>ドク</sup>에 대한 한국의 주장과 명칭의 연원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게 했다.<sup>55</sup> 면접대상에는 어로자뿐만 아니라 울릉도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1905년 6월 초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강치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케시마어업조합회사원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가토 주조[加藤重藏, 重造] 4명이었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생존자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아들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 55세], 하시오카 도모지로의 아들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였다. 이들은 아버지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하시오카 다다시게는 하시오카 도모지로가 백부 이케다 요시타로[池田吉太郎] 및 고카[五箇]의 유지들과 함께 1903년 이전부터 ‘다케시마’로 출어하여 강치와 해산물을 채취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56</sup> 하시오카는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1953년에도 했는데, 면접은 1953년 7월 6~11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하시오카 외에 나카이 요이치, 오쿠무라 료[奥村亮], 하마다 쇼타로[浜田正太郎] 등이 참여했다.<sup>57</sup> 이때의 구술에서 하시오카는 “기노시타 서커스 및 나카다 다다이치[仲田忠一, 츄이치]씨의 말에 따르면, 랑코 島의 강치는 세계에서 두 곳(한 곳은 미합중국) 밖에 없을 정도의 우수한 강치로서, 재주를 잘 부렸다. 당시 재주를 부리는 미국산 강치는 25,000엔 정도였다고 하는데, 내가 포획한 것은 140~200엔 정도로 팔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카다는 ‘랑코 島’로 호칭했고 하시오카는 ‘다케시마’로 호칭했다.

하시오카의 진술과는 달리 나카이 요이치는 하시오카 다다시게가 실제로 다케시마에 거주하지도 않고 어로만 끝나면 바로 돌아갔으며 서커스단에게 강치를 파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카이 요이치는 하시오카가 어업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특히 조선인)에게 다케시마에서 독점적 어업을

55 「竹島の調査依頼について」, 『渉外關係綴』(昭和 26年)008; 「竹島の調査依頼に對する回答を受けて 更に教示を依頼」, 『渉外關係綴』(昭和 26年) 009

56 「竹島の調査について」, 『渉外關係綴』(昭和 26年) 010

57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원하는 대로 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측의 어업실적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때 나카이는 울릉도를 ‘울릉도(ウツリヨ-島)’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호칭했다. 나카이 요이치는 나카이 요자부로 의 장남으로서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메이지 38년에 개명되어 붙여졌다. 오키섬 사람은 현재 이 섬을 랑코 도(ランコ島)로 부르고 있다. 당시 다케시마라는 것은 울릉도였는데, 오래된 해도(海圖)에는 다른 이름으로 마쓰시마[松島]라고도 되어 있다”고 하여 도명의 유래를 알고 있었다. 나카이 요이치는 1917년~1929년까지 해마다 강치를 잡으러 ‘다케시마’에 갔다고 했다. 이로써 면접에 응하던 1953년에도 오키인들은 독도를 ‘랑코 도’로 호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마다 쇼타로는 1953년 당시 42세로, 1933년 4월 18일~5월 2일 동안 다케시마에 도항한 적이 있다. 1951년 5월 중순 5톤 배로 4명의 친구와 함께 다케시마에 도항했는데, 동력 14척, 약 50명의 한국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미역을 채집 중이었고 하마다 일행은 상륙하여 한국인과 대화를 했고, 밤에는 좌담회를 열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므로 빨리 섬에서 나가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들은 다케시마가 일본·한국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미역을 따러 온다”고 하며 거부했다고 한다. 하마다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칭도 ‘다케시마’로만 썼다. 나카토세 니스케[中渡瀬仁助, 73세]도 “1905년 6월 나카이 요자부와 동행한 이래 1941년에 이르기까지 다케시마 출렵에 동행했다”고 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했다.

## 2. 울릉도 재주인의 호칭: 다케시마, 랑코 도(島), 독섬

위에 언급된 사람들이 독도로 간 출어자라면 오키무라 헤이타로와 그의 아들 오키무라 료[奥村亮, 43세]는 울릉도 재주인이었다. 오키무라 료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1916년 이후-필자 주) 울릉도 어선이 난파되어 랑코 도(ランコ島) 부근에 표류했었는데 오키 도 어민에게서 이 섬에서 강치 어획

이 크다는 말을 듣고 랑코 도의 경영을 기도하던 무렵, 1921년경부터 조선인을 주력으로 하여 출렵해서 랑코 도에서 주로 전복과 소라 밀렵을 행했다<sup>58</sup>고 했다. 1920년대 전후로는 주로 ‘랑코 도’로 지칭했음을 알 수 있다.

오키무라 료는 1933년 아버지가 죽자 사업을 이어받아 야하타 초시로[八幡長四郎]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1942년까지 했다. 그 후 1945년까지는 계약 없이 출렵하여 전복을 채집했다. 오키무라 료의 어획에 참가한 자는 감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인 그리고 제주도 해녀들이었다. 1953년 7월 11일자 면접 기록에는 오키무라 료가 “당시 조선인은 랑코 도(竹島)를 獨島(トクソン)라고 했는데, 내지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島라고 했다.”<sup>59</sup>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오키무라의 말에 근거하여 도명을 보충한 기록에는 “울릉도의 한국인은 다이쇼·쇼와 연간에 걸쳐서 다케시마를 獨島(トクソン)라고 불렀지만, 이것은 한국인들끼리 부른 것이고 일본인과의 대화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섬이 일본 영토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sup>60</sup>고 되어 있어 약간 다르다.

위 기록을 보면, 호칭이 다케시마, 랑코 도, 랑코 島(竹島), 獨島(トクソン) 등으로 나와 모두 독도에 대한 호칭이지만 오키무라의 호칭인지 기록자의 호칭인지 분명하지 않다. 괄호 안의 호칭이 오키무라가 부른 호칭인 듯하다. 괄호에 ‘トクソン’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면, ‘독섬’은 문서상의 호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오키무라가 ‘독섬’으로 칭한 것을 관리가 문서화하면서 ‘獨島’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도 지명 표기에서 차자 표기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때는 오키무라 료가 어업합자회사로부터 어업권을 사서 울릉도의 한인들을 데리고 독도에서 전복 등의 어로를 하던 때였다. 당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였으므로 편입 여부를 떠나 독도를 포함한 전 영토가 일본 땅으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울릉도의 조선인은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고”라고 했다. 이 말은 병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편입에 따라 일본

58 「竹島漁業の變遷」,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01-02), 참고자료-奥村亮口述書

59 위의 글

60 「竹島漁業の變遷」,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01-02), 참고자료-竹島島名について補足

영토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또한 위의 구술은 일본인들이 한인들이 독도를 ‘독섬’으로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 주며, 일제강점기 한인들은 실제로 ‘독도’ 호칭보다 ‘독섬’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보다 ‘독섬’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은 1950년대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61</sup> 한인들이 일본인과 대화할 때 ‘랑코 도’라고 했다는 사실은 울릉도 재주 일본인 사이에 ‘랑코 도’ 호칭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에서의 출어자들이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오쿠무라 료는 “울릉도 동동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竹島라고 하는 돌레 약 20정(町)의 섬이 있고 받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울릉도의 속도(屬島)이다. 이 섬의 존재도 한국 측이 이용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 ‘竹島’는 ‘죽도’를 말한다. 오쿠무라가 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독도를 ‘랑코 섬’과 ‘다케시마’로 호칭했음에 비춰 볼 때 ‘죽도’로 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로써 보면, 오쿠무라 부지는 독도의 호칭내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자이다. 이들 부지는 ‘다케시마’와 ‘랑코 도’를 자연스럽게 병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울릉도의 속도 죽도(竹島)를 의식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1930년대 울릉도 재주인이 ‘죽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던 점에 비춰 볼 때 가타오카 기치베가 1917년 당시 ‘죽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나카이의 인식은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시마네현 이외 지역민의 독도 인식: 울릉도와 다케시마, 랑코도(島)

면접조사는 시마네현 이외에서도 이뤄졌다.<sup>62</sup> 하마다시(浜田市)의 요시나카 슈이치(吉中周市, 70세)와 가지메 쓰치마쓰(梶目槌松, 61세)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메이지 45년(1912) 5월 다케시마(竹島)의 오징어가 좋다는 말에 나가보자고 하여 다케시마까지 길안내를 받게 되

61 박병섭, 2009 보고서; 유미림, 2012, 「차자(借字)표기 방식에 의한 ‘석도=독도’설 입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집 1호

62 시마네현의 다무라 주사는 11월 10일과 11일 하마다시와 마스다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외무성 조약국 제1과 가와카미 사무관 앞으로 보냈다. 다무라는 당시 하마다 도서관의 자료를 조사하는 임무도 맡았다.

었다. 오후 5~6시경 우라고(浦郷)를 출항하여 하루 밤낮을 노를 저어 다음날 8~9시 무렵 다케시마에 도착했다. 도중에 랑코 도라는 작은 섬을 보았다. 가서 보니 다케시마는 울릉도라는 것을 알았다. [...] 조선 본토에는 가지 않았다. 산에 빨감을 찾으러 갔는데, 주의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랑코 도는 본 기억이 없다. 고기를 잡을 때도 랑코 도는 보이지 않았다. [...] 마쓰바라 우라(松原浦)에서 정북쪽으로 가서 다케시마에 닿은 후 그곳에서 울릉도로 가는 항로를 선택하는 것은 당시의 자석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다.

위의 진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1912년 시점에 다케시마는 울릉도로, 독도는 랑코 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도착해서 야 다케시마가 울릉도임을 알게 된 사실은 다케시마가 어디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당시는 특히 시마네현 이외 지역에서는 ‘다케시마’가 독도 호칭으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케시마에 닿은 후 그곳에서 울릉도로 가는 항로를 선택하는 것은”이라고 한 것은 ‘다케시마’를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이때의 ‘다케시마’는 독도를 가리킬 수 있다. 울릉도의 산에 오르거나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도 “랑코 도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으므로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목격하지 않았다. 따라서 1910년대 시마네현 이외의 지역민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 랑코 도에 대해 혼돈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마다시 마쓰바라우라의 이타야(板谷, 74세)는 “다이쇼 9년(1920)부터 11년(1922)까지 경상북도 호우기코(호교)진<sup>63</sup>을 근거지로 운반업을 하면서 여러 번(14~15회 항해) 울릉도에 다녔던 자이다. 그는 “랑코 도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나는 경상북도에 갈 때 부산을 통해 갔다. 본토에서는 울릉도가 보였는데 △ 형태로 보였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오키나 부산을 경유해서 갔다”고 했다. 이타야는 울릉도만 거론할 뿐 ‘랑코 도’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가 ‘랑코 도’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한 사실로 미뤄 볼 때, 조사자가 독도를 ‘랑코 도’로 지칭한

63 포함인지 확실하지 않아 원문대로 썼다.

듯하다.

수산시험장의 기수 오가타 히데토시[尾方秀敏]는 “일본 배로 정북항을 향해 다케시마[竹島]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봄여름은 순풍을 이용하고, 조류의 흐름만 잘 알고 있다면 자석 하나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가 하마다의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거리가 135리(裡)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부에게는 직접 다케시마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시험선 야소시마마루[八十島丸](18톤)로 물통의 자석만 가지고 다케시마에 갈 자신이 있다”고 했다. 히데토시는 ‘다케시마’를 독도로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하고 있다.

마스다시의 야스다[安田]중학교 교사인 마노 시게미쓰[真野重光]는 울릉도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그는 메이지 시대 말기에 3세경으로, 아버지가 소학교 교장, 경성사범 6년, 대구에서 소학교 교사 10년, 다시 울릉도에서 교사를 한 후 종전 후 일본으로 철수했다고 한 것으로 보건대, 유소년기와 장년기를 울릉도에서 보낸 듯하다. 그 때문에 그는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소년시대, 현지의 일본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다. 리앙코 도는 ‘랑코’라고 불렀다. 소학생인 나는 해도(海圖)에서 울릉도가 마쓰시마[松島]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 울진이나 다케시마 주변 해안에서 울릉도는 보이지 않는다. 높은 산에 오르면 울릉도가 보인다. 해상에서는 절반 정도 나가지 않으면 울릉도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로 보인다”<sup>64</sup>고 했다. 메이지 시대 말기라면 1910년경을 말한다. 그는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랑코’ 혹은 ‘리앙코 도’로 부르고 있었음을 증언했다. 그 자신이 해도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케시마 주변 해안에서 울릉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있다. 그는 “울릉도에서는 랑코가 잘 보인다. 높은 산에 오르지 않아도 나즈막한 언덕에서도 잘 보였다. 날씨가 좋고 구름이 없는 날에는 확실히 보였다.

삼각형이 두 개 보였다”고 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인다는 사실, 울진의 높은 산에서 울릉도가 보인다

<sup>64</sup> 「竹島に關する調査結果の送付につい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18-00)

는 사실을 증언했다.

한편 그는 “해녀 세가와 기요코[瀨川清子]의 기록에, 메이지 초기에 이세[伊勢]의 해녀가 다케시마에 갔다고 적혀 있는데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랑코의 큰 전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1880년대의 다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세 지역에서 온 해녀들이 독도로 전복을 채취하려 갔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업권 관계로 일반 어민은 울릉도에서 랑코로 가지 않았다. 오쿠무라가 매년 잠수기로 전복을 채취하러 가는 것과, 마쓰다가 미역을 따러 메이지부터 쇼와까지 가끔 다녀왔다”고 한 사실은 독도의 어업상황을 진술한 것이다. 이는 오쿠무라 헤이타로가 야하타 초시로부터 강치 이외의 어업권을 3년간 1,600엔에 매입한 1925년경을 말한다. 마노 시게미쓰는 1925년의 독도를 ‘랑코’로 호칭했다. 마노 시게미쓰는 어업권을 오쿠무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어민은 독도에서 어로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어업권 매입 이전에는 울릉도민들이 독도로 출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4. ‘고카무라 다케시마’와 ‘고카무라 독도’

일본은 1926년 7월 1일 지방제도를 개혁, 도청(島庁)을 폐지하고 다케시마 소관처를 지청으로 바꾸었다. 이에 하시오카 다다시게는 다케시마 사용료를 1935년부터 1941년까지 오키지청에 납부했지만, 외무성은 이런 재정상의 사무위임이 반드시 소속의 이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1937년 고카무라 촌장은 다케시마가 고카무라 주민이 어업권을 가지고 출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고카무라 구역에 편입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시마네현 지

사는 고카무라 편입을 촌장의 요망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촌회의 의결을 거쳐 현회 참사회에 자문하여 통과시킨 뒤 내무성에 신청하려 했다. 이때 업무 담당자였던 요시노[吉野]<sup>65</sup>는 “그 지역에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십 리나 떨어져 있는 곳을 해당 지역이라

<sup>65</sup> 1937년 7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시마네현 지방과에 주임속(主任屬)으로 근무했다. 이 자를 면회한 일시는 1945년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면회자는 우와테[上手] 주사, 다무라[田村] 주사였다. 『(極秘) 竹島につい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013-00)

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것도 문서로 내무성에 문의하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구두로 물어본 뒤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결론이 났다”<sup>66</sup>고 했다. 그 후 요시노는 신문 지상을 통해 ‘고카무라 다케시마 [五箇村竹島]’라고 쓴 것을 보고 편입 사실<sup>67</sup>을 알게 되었다고 토론했다.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는 고카무라의회의 의결만으로 소속 미정지의 정촌구역 편입 절차가 행해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케시마’를 고카무라 소속으로 할 근거는 없다고 했지만, ‘다케시마’는 1939년에 고카무라에 편입되었다. 다시 ‘다케시마’는 1940년 8월 17일 공용을 폐지하고, 해군 재산으로 현(縣)에서 마이즈루 진수부[舞鶴鎮守府]로 인계되었다. 다무라는 이때는 ‘고카무라 다케시마’로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1941년 11월 28일 마이즈루 진수부 장관은 야하타 츠시로에게 해군용지 ‘다케시마’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다케시마는 1945년 11월 1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장성 소관 국유재산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해군에서 인계받은 국유지 대장의 비고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오치군 고카무라 독도[穩地郡 五箇村 獨島]’라고 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무라는 “본인이 알고 있는 한, 마쓰에재무부의 국유지 대장에는 20년(1945) 11월 1일 해군에서 인계받았던 다케시마방어구에 관해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

카무라 독도(獨島)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공문서인데, 비고란의 기입이 20년(1945) 11월 이전의 해군 기록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sup>68</sup>고 했다. 그렇다면 해군은 왜 ‘獨島’라고 표기했을까? 1945년 11월 1일 대장성이 해군에서 인수받은 토지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防禦區]’였고, 이 토지의 가격은 1947년 3월 31일 개정되었다. 두 경우에 해당되는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다무라 자신도 이런 불일치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sup>69</sup>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는 1946년 1월 29일 SCAPIN-677로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일

본의 행정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지정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1946년 7월 26일부 일본이 현령(縣令) 49호로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어업을 삭제한다고 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45년 ‘다케시마 방어구’, ‘고카무라 독도’, 1946년 현령의 ‘다케시마’ 등에서 보이는 혼돈을 일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945년 11월 대장성이 인수받은 뒤로부터 1951년 2월 대장성령 4호와 6월 총리부령 24호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었을 때의 독도 호칭은 ‘竹の島’였다. 이들 국내법적 조치가 1952년 평화조약의 발효 전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 또는 제한<sup>70</sup> 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제반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양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검토는 필자의 능력 밖이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와 같이 일본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한 지명이 제각각으로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라고 하여 관할지를 밝히면서 그 뒤에 ‘독도’로 쓴 사실, 그리고 군정하 법령에서는 ‘竹の島’라고 호칭한 사실들이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인식이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자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51년 8월 시마네현 지사 쓰네마쓰 야스오(恒松安夫)는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게 보내는 문서 제목에서 ‘시마네현 영토 다케시마(レインコート島)의 재확인에 대하여’<sup>71</sup>라고 하고, 내용에서는 ‘리얀코르틀레안(LIANCOURT ISLANDS)’<sup>72</sup>이라고 썼다. 당시 문서에 ‘다케시마(レインコート島)’, ‘리안코르 열암’, ‘LIANCOURT ISLANDS’ 등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리양코루(リヤンコール)島’로 표기되던 것이 여기서는 ‘레이코토 도(レインコート島)’로 달라져 있다. ‘리양코루’가 ‘LIANCOURT’

에서 온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프랑스어 발음이 ‘레이코토’로 와전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렇다고 ‘리얀코르’와 ‘LIANCOURT’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성립하기 어렵다. 시마네현 지사가 표기한 ‘레이코토島’가 오키지청장에게 보내질 때는 다시 ‘竹島’ 형태로 바뀌었다.<sup>73</sup> 이런 인식은

66 「(極秘) 竹島につい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13-00)

67 고카무라의회의는 1939년 4월 24일 다케시마의 고카무라 편입을 결정했다.

68 「(極秘) 竹島につい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13-00). 면회자는 우와테(上手) 주사, 다무라[田村] 주사로 되어 있으나 다무라의 견해로 보인다. 아시아국이 작성한 원문 비고란의 ‘獨島’ 두 글자에 먹칠이 되어 있다. 시마네현이 이 자료를 2007년에 공개하면서 먹칠한 듯하다. 「竹島漁業の變遷」,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01-02)

69 「(極秘) 竹島につい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13-00)

70 홍성근, 2009, 「일본의 독도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119쪽

71 「島根縣領土竹島(レインコート島)の再確認について」, 『涉外關係綴』(昭和 26年) (002-00)

72 위의 글

1953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시마네현 관리가 “오키 도민은 울릉도를 옛날에는 다케시마로 불렀고, 신 다케시마를 지금도 랑코 도(리양코도의 사투리)라고 부른다”<sup>74</sup>고 했다. 다무라는 오쿠무라 료의 말을 인용하여, “울릉도의 한국인은 다이쇼·쇼와 연간에 걸쳐 다케시마를 獨島라고 불렀지만, 이것은 한국인들끼리 부른 것이고 일본인과의 대화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었다”<sup>75</sup>라고 했다. 여전히 다케시마, 신 다케시마, 독도, 랑코 도가 뒤섞여 있다.

## V. 맺음말

독도에 대한 일본 호칭은 에도 시대에는 ‘마쓰시마’였지만,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 호칭은 울릉도의 호칭으로 바뀌었고, 울릉도 호칭이던 ‘다케시마’가 독도 호칭으로 전칭되었다. 이런 도치는 수로지에서 울릉도를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 혹은 ‘鬱陵島 一名松島(Dagelet island)’, 독도를 ‘리양코루도 열암’ 혹은 ‘竹島(Liancourt rocks)’로 호칭한 데서 연유한다. 여기에 ‘죽도’ 즉 ‘竹嶼(Boussole rock)’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호칭 혼란은 심화되었다. 1905년에 ‘다케시마’로 명명된 뒤에도 ‘다케시마’와 ‘리양코루도 열암’ 혹은 ‘다케시마’와 ‘양코 도’가 병기되었고 ‘양코 도’로만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Liancourt rocks’는 외국어였으므로 통일성이 없이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또한 ‘Liancourt Rocks’ 표기가 문헌상으로는 주로 ‘리양코루도 섬’, ‘리양코 섬’으로 표기된 반면 구술조사에는 주로 ‘랑코 도’로 약칭되고 있었다.

1910년대 후반 울릉도 식물조사를 한 나카이는 역사학자 쓰보이로부터 도명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독도’를 ‘다마고시마(馬島)’로 호칭했다. 그는 ‘다케시마’가 ‘竹島’인가 ‘武島’인가를 둘러싼 논란에서 울릉

73 「竹島(レインコート島)の調査依頼について」, 『涉外關係綴』(昭和 26年) (003-00)

74 「竹島漁業の變遷」,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04-02)

75 위의 글

도 거주자 가타오카 기치베의 말을 신뢰하여 ‘竹島’를 ‘다케시마’로 음독했고 이 섬을 울릉도 동쪽의 부속도서에 비정했으므로 결국 죽도를 ‘다케시마’로 읽는 오류를 빚었다. 한편 나카이는 울릉도 특산종에 ‘다케시마’라는 학명을 붙였는데 이때의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므로 다보하시로부터 ‘竹島’가 ‘다케시마’인지 ‘죽도’인지 혼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편입 이후에도 일본이 명명한 ‘다케시마’는 정착되지 않은 채 혼돈이 계속되었지만 직접 독도에 가 보거나 울릉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의 호칭은 문헌상의 호칭과는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다케시마어렵 합자회사원을 포함한 어업인은 ‘다케시마’로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랑코 도’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오키 현지인들은 주로 ‘랑코 도’로 호칭했다. 울릉도에서 오래 거주했던 오쿠무라 부지는 주로 ‘랑코 도’로 호칭했지만 ‘다케시마’를 병칭했으며 ‘죽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오쿠무라는 한인들이 일본인에게 ‘랑코 도’로, 자신들끼리는 ‘독도(독섬)’로 호칭한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 이는 한인에게 ‘랑코 도’ 호칭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울릉도에서 성장한 일본인은 울릉도에서 ‘랑코’가 잘 보여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낮은 언덕에서도 잘 보인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며 1910년 전후까지도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랑코 도’로 불렀음을 증언했다.

오키 이외 지역에서 울릉도로 간 사람은 ‘다케시마’를 울릉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독도 호칭 ‘다케시마’와 ‘랑코 도’가 다른 섬인 듯 혼동하기도 했다. 부산을 통해 경상북도로 가거나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은 울릉도만 거론하고 ‘랑코 도’는 거론하지 않아 독도에 관한 경험도 없고 인식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가 되던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온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한 반면 울릉도의 일본인은 ‘랑코 도’로, 울릉도의 한인은 ‘독섬’으로 칭하고 있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왕래의 경험이 없는 관료들은 실제 경험자들을 면접하면서 문헌상 습득한 호칭과 달라 혼동을 겪게 되었고 이는 문서상으로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술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 ‘고카무라 다케시마(五箇村

竹島]’로 적혀 있던 행정지명이 1945년에는 ‘다케시마방어구[竹島防禦區]’ 비고란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 독도[獨島]’로 적혀 있기까지 하다. 호칭의 변화는 단순한 표기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바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무라 자신도 이런 행정상의 실수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일본 시마네현은 2007년에 한국에 문서를 넘겨주면서 ‘獨島’라는 두 글자에 먹칠을 했다. 이는 일본이 지명의 혼동으로 인해 ‘고유영토’ 주장이 훼손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1905년~1950년대 초까지 일본 기록에 보인 ‘독도’ 호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괄호도 원문이므로 원문대로 입력한다. リヤン코는 리양코, 리ヤン코ール는 리양코루, 리ヤン코ール트는 리양코루토, 리ヤン코ールド는 리양코루도, レインコート는 레잉코토, 竹島는 다케시마, 松島는 마쓰시마로 음독함을 밝힌다).

竹島, 竹島(舊松島), 松島(新竹島), 新竹島, 竹島(リヤンコール島), 松島(リヤンコール 즉 현재의 竹島), 리ヤン코島, 리ヤン코ール트岩(一名 竹島), 松島(リヤンコール島 列岩), 리ヤン코ール트島(松島), 리ヤン코ール列岩(LIANCOURT ISLANDS), 리ヤン코ールド列岩, 리ヤン코ール트列岩(Lian Court), 松島(リアンコール트列岩), 竹島(レインコート島), 竹島(リヤンコール트列岩), 竹の島

일본에서 ‘독도’ 호칭은 ‘다케시마’로 명명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일련의 변전과정 즉 마쓰시마[松島] → ‘리양코루도 열암’ → 竹島(Liancourt rocks) → ‘다케시마’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변용이 있었다. ‘Liancourt rocks’ 표기만 해도 리양코루토 열암(リヤンコール트列岩)에서 리양코루 열암, 리양코 島, 리양쿠르 島(リヤンクール島) 등으로 변전하여 ‘바위’의 의미는 퇴색하고 ‘도서’로 바뀌었다. 또한 ‘リヤンコール트列岩(Lian Court)’<sup>76</sup>에서 보듯이, 외국어 표기가 ‘LIANCOURT ISLANDS’에서 ‘Lian Court’로 바뀌고 있어 어원에 대한 정보조차 희박해졌다.

76 「竹島の日本領土として編入された経緯等」, 『涉外關係綴』(昭和 26年) (11-00)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오랜 동안 ‘다케시마’와 ‘랑코 도’가 병존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된 것은 ‘다케시마’가 아니라 ‘랑코 도’이며, 이런 현상은 울릉도 제주 일본인에게 더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으로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던 전통이 오래도록 잔존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은 ‘죽도’와 ‘다케시마’를 혼동하여 ‘죽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한 적도 있었다. ‘다케시마[竹島]’는 주로 문헌을 통해 전래된 호칭이고 ‘죽도(竹島)’<sup>77</sup>는 실견에 따른 호칭이므로 착오가 있기 어려운데도 이런 괴리가 있었다. 이렇듯 일본인의 ‘독도’ 호칭은 1905년 ‘다케시마’ 명명 이후에도 위무성 관리와 해군성 관리, 시마네현 관리, 식물학자와 역사학자, 울릉도 현지 일본인, 울릉도 현지 어업인, 일본 재류 어업인, 시마네현 향토사학자가 저마다 다르게 호칭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공식 명칭으로 정한 ‘다케시마’는 직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시기적으로도 분절되고 간극이 보여 연속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랑코 도’ 호칭은 다른 호칭보다 오래도록 사용되었으며 ‘다케시마’ 호칭과 병칭된 경우가 많았다. 에도 시대 울릉도 호칭이던 ‘다케시마’가 1905년 편입을 계기로 독도 호칭으로 도치되었고, 한편으로 ‘랑코 도’ 호칭이 오래 상존했다는 것은 ‘다케시마’ 호칭의 정통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매우 이질적인 두 호칭, 랑코 도와 다케시마 간의 괴리가 그만큼 오래도록 메꿔질 수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의 독도 호칭이 우산도, 석도, 독도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석도’의 우리말 호칭 ‘독섬’과 ‘독도’ 호칭이 병칭되다가 ‘독도’로 귀착되어 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77 한국은 문헌상의 호칭인 ‘우산도’는 혼돈을 겪었지만 덧섬인 ‘죽도’는 혼돈을 겪지 않고 줄곧 죽도(竹島)로 표기해 왔다. 1794년 한창국의 보고에 ‘죽도’, 1882년 이규원의 지도에 ‘죽도’로 되어 있고 1900년 칙령 제 41호에도 ‘죽도’라고 칭했다.

## 국문 초록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독도를 불법 편입하면서 과거 독도 호칭이던 ‘마쓰시마’ 대신 울릉도의 호칭이던 ‘다케시마’를 독도 호칭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독도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 되었으나 1905년 이후에도 일본은 이 명칭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독도 호칭으로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리앙쿠르 島(Liancourt Rocks)’도 함께 사용되었고 ‘리앙쿠르 락스’는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었다. 울릉도 가까이에 ‘죽도’ 즉 ‘竹嶼(Boussole rock)’가 있어 일본은 이 섬을 ‘다케시마’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하여 ‘다케시마’에 대한 표기가 ‘竹島’인가 ‘武島’인가 논란이 있었으며, ‘독도’를 ‘다마고시마[卯島]’로 호칭하는 학자도 있었다. 한편 일본은 울릉도 특산중에 ‘다케시마’라는 학명을 붙였는데 이때의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이렇듯 편입 이후에도 일본이 명명한 ‘다케시마’는 정착되지 않은 채 혼돈이 계속되었지만 직접 독도에 가 본 자들의 인식은 달랐다. 일본에서 독도로 간 자들은 ‘다케시마’로 호칭하거나 ‘랑코 도’를 병칭했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랑코 도’로 호칭했다. 오키인들은 주로 ‘랑코 도(Liancourt Rocks)’로 호칭했다. 울릉도에서 오래 거주했던 어업인은 한인들이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 도’로, 자신들끼리는 ‘독도(독섬)’로 호칭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울릉도에서 성장한 자는 울릉도에서 ‘랑코’가 잘 보여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낮은 언덕에서도 잘 보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왕래 경험이 없는 관료들은 ‘독도’ 표기가 ‘竹島(レイント島),’ ‘고카무라 다케시마,’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 독도,’ ‘리양코,’ ‘레이코토 島,’ ‘竹島(舊松島),’ ‘リヤンコールト岩(一名 竹島),’ ‘松島(新竹島),’ ‘竹の島’ 등으로 다양했다.

일제강점기 ‘독도’ 호칭은 ‘다케시마’와 ‘랑코 도’가 병존했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이 더 많이 호칭한 것은 ‘랑코 도’였으며, 이런 현상은 울릉도 채주 일본인에게 더 많이 보인다. 이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던 전통이 오

래도록 잔존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竹島’라는 유사 호칭이 있어 ‘다케시마’와 혼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랑코 도’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본은 1905년 공식적인 ‘다케시마’ 명명 이후에도 어업인과 울릉도 거주자, 정부 관료, 학자에 따라 호칭이 일치하지 않아 독도에 대한 인식 혼란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독도, 독섬,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랑코 도(Liancourt Rocks), 다마고시마[卯島], 죽도(竹島), 죽서(竹嶼)

## ABSTRACT

Names for Dokdo Used by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Yoo, Mirim  
Director,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Japan changed “Matsushima” (the old Japanese name for Dokdo) into “Takeshima” (the old Japanese name for Ulleungdo), illegally incorporating Takeshima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Since then, “Takeshima” has been the official name of Dokdo. However, Japan did not use this name only after 1905. Dokdo was called “Liancourt Rocks” as well as “Takeshima,” and “Liancourt Rocks” was variously recorded. Japan called “Boussole Rock” near Ulleungdo “Takeshima.” Therefore,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the “Takeshima” designation. Some scholars argued that “Takeshima” is “竹島” or “武島” and they called “Dokdo” “Tamagoshima (卵島).” There is an endemic species called “Takeshima” as a botanical name. This Takeshima means Ulleungdo.

As mentioned above, “Takeshima” as nam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as not established and the confusion has lasted. However, Japanese who visited Dokdo had different perceptions. They called Dokdo “Takeshima” or “Lyanko Islands (a Japanese colloquial term derived from “Liancourt Rocks”).” Japanese living in Ulleungdo and Oki island people mainly called Dokdo “Lyanko Islands.” Japanese fishermen testified that Koreans called Dokdo “Lyanko Islands” when they talked with Japanese and Dokdo “Dokdo” (Dokseom) when they talked with one another. Japanese who grew up in Ulleungdo testified that “Lyanko Islands” were easily visible in Ulleungdo and even in low hills on fine day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had not visited Ulleungdo and Dokdo recorded Dokdo variously as “Takeshima (Liancourt island),” “Kokamura Takeshima,” “Shimane-ken Ochi-gun Kokamura Dokdo,” “Liancourt,” “Leincourt island,” “Takeshima (formerly Matsushima),” “Liancourt Rocks (another name for Takeshima),” “Matsushima (present Takeshima),” “Takenoshim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Dokdo was called “Takeshima” or “Lyanko Islands.” However, Japanese used “Lyanko Islands” more, and Japanese living in Ulleungdo used this name much more. This indicates that the tradition calling Ulleungdo “Takeshima” remain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similar name like “Jukdo (竹島),” Japan could prefer “Lyanko Islands” for avoiding confusion with “Takeshima.” It is shown here that the name “Dokdo”

among fishermen, Japanese living in Ulleungdo, and government officials was not accorded after the official naming in 1905.

## Keywords

Dokdo (Dokseom), Takeshima,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magoshima, Jukdo (Jukseo, Boussole rock)

참고문헌

『島根縣誌』  
 『「秘」竹島』(明治 38-41年), 시마네현청 총무과  
 『涉外關係綴』(昭和 26年), 시마네현청 총무과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 28年), 시마네현청 총무과  
 『日本地誌提要』 권50  
 『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독도와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은철, 2010, 『프랑스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용역보고서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919, 『鬱陵島植物調査書』, 조선총독부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 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平田: 報光社

김영수, 2009,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김휘·최병희·장진성·장계선, 2007,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 행적과 지명 재고 (Ⅲ): Tomijiro Uchiyama」, 『식물분류학회지』 Vol 37-2, 한국식물분류학회  
 오수영, 1978, 「울릉도 관속식물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논문집』 25호  
 유미림, 2012, 「차자(借字)표기 방식에 의한 ‘석도=독도’설 입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정영미, 2012,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에 대한 연구’와 Liancourt Rocks」,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최남선, 1953, 「울릉도와 독도」, 『신석호 전집』(1996)  
 홍성근, 2009, 「일본의 독도영토 배제조치의 성격과 의미」, 『독도와 한일관

계』, 동북아역사재단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 1908, 「竹島の位置新測」, 『地學雜誌』 239호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제3호, 靑丘學界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31, 「鬱陵島の名稱に就て」, 『靑丘學叢』 제4호, 靑丘學界  
 다테이와 이와오[立岩 巖], 「鬱陵島の ブナ에 대하여」, 『수필조선』 하권(1924~34)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歷史地理』 38권 3호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 1931, 「竹島について」, 『歷史地理』 56권 1호  
 히바타 셋코[樋畑雪湖], 1930,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歷史地理』 55-6



# 인접국 갈등과 협력의 기승전결(상)

: 독일 · 프랑스 숙적관계의 역사현장 이야기<sup>1</sup>

김재한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 1. 머리말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사람뿐 아니라 물건과 돈이 국경선을 쉽게 넘나들고 있다. 근대국가의 배타적 경계선이 약화되면 영토·해양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다. 이런 전망과 반대로 오늘날 특정 지역에서는 영토·해양 분쟁이 오히려 빈발하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영토·해양 분쟁은 극지(極地)와 오지(奧地)를 포함한 변방(邊方)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더 이상이 변방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일부 기인한다. 과거의 교통, 통신, 과학 수준에서는 영유 및 점유가 별 의미 없던 지역이 오늘날에는 큰 가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먼 나라 간의 영토·해양 분쟁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영토·해양 분쟁은 인접국 간에 전개된다. 이 글이 인접국 간 갈등과 협력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이다. 또 양극체제의 냉전시대에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던 영토·해양 분쟁은 다극체제의 탈냉전시대에 와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탈냉전시대의 영토·해양 분쟁이라고

<sup>1</sup> 초고를 읽고 건설적 조언을 준 조윤수 박사께 감사드린다.

해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이슈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탈냉전과 탈근대 시대 영토·해양 분쟁의 근원(根源)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이 역사현장 중심으로 서술하는 이유이다. 또 인접국이 서로 숙적관계에서 우호관계로 바뀐 사례는 많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 근대화 및 근대국가가 형성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고받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적대국이었으나 냉전시대에는 한 진영에 속했고 오늘날은 협력관계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이 독·프 사례를 정리하는 이유이다.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국내외 문헌들이 있다. 지역연구에서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쉽지 않다. 현지 지역에 관한 일차문헌 중심의 학술적 연구는 그 일차문헌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새로운 연구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다. 오늘날 새로운 연구란 새로운 사실의 발굴보다 사실의 새로운 구성에 의존한다. 그 구성은 사실의 나열보다 사실 간의 연결 곧 인과론적 서술이 되어야 한다.

인과론적 관계를 드러내는 서술 가운데 하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방식이다. 그렇지만 영화나 TV드라마의 허구적 스토리텔링식 서술은 자제해야 한다.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다 보면 자칫 근거 없는 픽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역사왜곡이다. 영토 및 해양 관련 분쟁의 다수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해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이 그러한 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정반대로 해석하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은 적지 않다. 한 쪽 문헌만으로 정리하다 보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일방의 주관적 주장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답습하고 전파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히스토리텔링(historytelling)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쓴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1935년 합의안', '1951년 합의안', '1987년 권고안', '2004년 편찬 지침' 등은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문헌이다. 이 글은 기행(紀行)적 서술이지만 현장에서의 감성적 소회(所懷)보다 개별 사실에 대한 고증(考證)을 통한 현장 이야기로 채우고자 한다.

그렇다고 필자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을 주저하지는 않겠다. 너무나도 당

연한 내용만 서술하다 보면 글의 독창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객관적 사실과 인과론적 관계에 근거하여 독일과 프랑스 현지의 역사 현장들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인접국 간 분쟁의 등장과 해소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함의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다만, 이는 만큼 보이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알 수 있게 보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II. 범독일 제국과 프랑스 제국

프랑스의 작은 도시 베르딩(Verdun)은 제1차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수십만 명의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죽거나 다친 가장 치열한 전투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로부터 1세기 전 같은 장소 베르딩에서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두 나라가 출범했다고 말할 수 있다. 843년의 베르딩조약으로 샤를마뉴(Charlemagne) 제국이 로타르(Lothar)의 로타랭기아(Lotharingia, 중프랑크), 루드비히(Ludwig, Louis)의 게르마니아(동프랑크), 샤를(Charles, Carolus)의 프랑스(서프랑



\* 샤를마뉴 제국의 분열 현황은 지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위 작은 지도는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의 것이다.

## 인접국 갈등과 협력의 기승전결(상)

크)로 분열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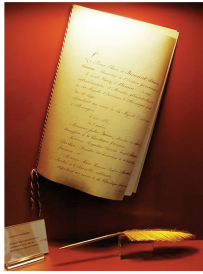
중프랑크에 해당하는 로타랭기아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접경지역 로렌(프랑스어 Lorraine, 독일어 로트링겐 Lothringen)의 어원이다. 로타랭기아는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의 틸비구니에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다. 로타랭기아의 대표국 부르고뉴(Bourgogne) 공국은 1468년 프랑스 루이 11세의 침공을 받자 상속녀 마리 드 부르고뉴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의 막시밀리안(Maximilian)과 결혼했고,<sup>2</sup> 곧 뒤이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승리했다. 부르고뉴 공국이 1477년 해체됨으로써 로타랭기아의 역사는 종식되었지만, 그 이후 로렌 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중간지대로 독·프 간 분쟁거리로 존속하였다.

1871년~1918년까지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제국은 제2제국으로 불린다. 962년 오토 1세부터 1806년 프란츠(Franz) 2세까지의 신성로마제국이 독일의 제1제국으로 불린다. 신성로마제국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로 대표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거의 300년 이상 신성로마제국 황제 자리를 독식하였다. 오스트리아는 19세기 전반 프로이센이 주도한 독일 통일에 하나의 방해 세력으로 존재했지만, 중·근세시대에는 독일제국의 대표로 프랑스와의 경쟁을 주도하였다.

1519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자리 경쟁에서 합스부르크의 카를(Karl) 5세가 프랑스의 프랑수아(François) 1세를 이김으로써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범독일이 앞서 나가게 되었다. 프랑수아 1세의 발로아 왕가와 카를 5세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16세기 내내 전쟁을 치렀다.

17세기 프랑스 왕조는 부르봉 왕가로 교체되었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와 경쟁과 전쟁은 계속되었다. 독일에서는 1618~1648년 이른바 30년전쟁이 치러졌고 국토와 인구가 황폐화되었다.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인데도 독일에서 벌어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30년전쟁에서 루이 13세는 프로테스탄트를 지원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

고 이에 프랑스는 많은 국력 성장을 이루었다.  
<sup>2</sup> 막시밀리안은 25년 후인 1493년에 신성로마황제 막시밀리안 1세로 즉위하였다.



\* 프랑크푸르트의 구(舊)시청사 뢰머(Römer)는 1562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2세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대관식이 거행된 장소로 52명의 실물 크기 신성로마황제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함부르크 인근 프리드리히스루(Friedrichsruh) 비스마르크재단(Otto-von-Bismarck-Stiftung)이 소장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조약문이다. 1871년 5월에 체결된 프랑크푸르트조약에 따라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알자스-로렌 지역을 할양받았다.

태양왕 루이 14세를 거친 프랑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 1804년 이후는 나폴레옹 1세)에 와서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1804년 나폴레옹 1세는 전통적 프랑스 왕 대관식 장소인 랭스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 대신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렀다. 나폴레옹 1세는 당시 몰락한 부르봉 왕가 대신 서유럽을 통일한 샤를마뉴를 계승한다는 상징조작을 만들었다. 나폴레옹 궁정화가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에서 아래 바위에 보나파르트, 한니발(Hannibal), 샤를마뉴(Karolus Magnus)의 이름을 적어 넣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1806년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재위 1804~1835, 신성로마황제로는 프란츠 2세)는 예나(Jena)-마우어슈테트(Auerstedt)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에게 패배했다. 신성로마제국에 속해 있던 남서 독일 16개국은 신성로마제국에서 이탈하고 대신 나폴레옹의 보호국인 라인연방(Rheinbundstaaten)에 가입하였다.



\* 루브르(Louvre)박물관 2층(1er étage)에 전시되어 있는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 대관식 그림이다. 왼쪽 작은 사진은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모습을 상징조작으로 묘사한 다비드의 그림이다. 다비드는 알프스 나폴레옹 그림을 다섯 개 그렸는데 사진은 그 첫 그림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실제 나폴레옹의 알프스 통과 모습을 묘사한 역사가가 들라로슈(Paul Delaroché)의 그림이다. 들라로슈 역시 나폴레옹 1세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이에 따라 신성로마제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는 더 이상 독일 제국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대신에 호엔츨레른(Hohenzollern) 왕가의 프로이센이 독일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III. 프로이센 속의 프랑스

17세기까지 독일 특히 베를린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었다. 1640년 12월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공국의 제후에 오른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 재위 1640~1688)은 신성로마황제와 동맹하여 프랑스 루이 14세에 대항했다가 신성로마황제의 배신으로 프랑스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국 발전을 위해선 외국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독일은 17세기 프랑스 신교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당시 이를 기념하여 베를린 헌병광장에 프랑스성당을 세웠다. 작은 사진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공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포츠담에서 프랑스 위그노를 환영하는 모습을 그린 포겔(Hugo Vogel)의 그림이다.

1685년 10월 루이 14세는 종교 자유를 인정한 앙리 4세의 낭트칙령을 폐지하였다. 이에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 즉 위그노(Huguenot)들은 외국으로 망명하려 하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11월 8일 포츠담칙령을 발표하여 약 2만 명의 신교도(위그노)들을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으로 유치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위그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치했다. 위그노들에 의해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공국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1688년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사망 후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3세가 브란덴부르크 선거후(재위 1688~1701)로 즉위하여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였고 동시에 프랑스에 대항할 때도 있었다. 1701년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공국은 프로이센 왕국으로 승격하였다. 베를린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브란덴부르크 대신에 오늘날 폴란드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프로이센이 왕국의 명칭이 되었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공국의 프리드리히 3세가 프로이센 초대 국왕 프리드리히 1세(재위 1701~1713)로 즉위했다. 위그노들을 위한 프

란취지셔돔(Französischer Dom) 즉 프랑스성당이 1701~1705년에 걸쳐 베를린 젠다르멘마르크트(Gendarmenmarkt) 즉, 헌병광장에 세워졌다. 프로이센은 1870~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 독일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 저력은 17세기 프랑스에서 프로이센으로 망명한 위그노들에 의해 키워졌던 것이다.

프로이센의 두 번째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재위 1714~1740)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추진하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주요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군인왕으로 불린 이유는 바로 그가 상비군(常備軍) 양성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프랑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아들이자 프로이센의 세 번째 왕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1786)는 흔히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der Große)이라고 불리는 계몽전제군주였다. 그는 프랑스인 가정교사의 교육 때문인지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였다. 황태자 시절 프리드리히 2세의 문화예술 관심은 아버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와의 심각한 불화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2세 재위 기간 중 1740~1763년은 슐레지엔(Schlesian)<sup>3</sup> 영유권 문제를 두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치른 기간이다. 제1차·제2차 슐레지엔 전쟁은 오스트리아 계승전쟁과 거의 일치한다. 1740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 카를 6세는 아들이 죽고 딸 마리아 테레시아만 남아 있어 황실의 전 영토를 딸에게 상속시키고 죽었다. 카를 6세의 아우이자 바이에른(Bayern) 선제후인 카를 알베르트 5세는 이에 반발하여 왕위계승을 요구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시아에게 왕위 계승을 승인하는 대가로 일부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요구했으나,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1741년 4월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의 몰비츠에서 프로이센에게 대패하였다. 프랑스, 스페인, 바이에른, 프로이센 등으로 이루어진 반(反)오스트리아 동맹은 바이에른 선제후가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직을 갖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현재 벨기에)를 양도받으며,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얻기로 하였다.

3 오늘날 체코와 인접한 폴란드 지역이다.      다. 1742년 마리아 테레시아는 프로이센

과 휴전한 후 바이에른 수도 뮌헨을 점령하여 보헤미아를 바이에른으로부터 재탈환하였다.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은 7년전쟁(1756~1763)으로 불린다. 1756년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국 대신 200~300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와 전쟁한 프랑스를 동맹으로 받아들였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러시아, 스웨덴 그리고 작센 등의 기타 독일 공국들과도 동맹을 결성했다. 프로이센을 누르기 위한 목적이었다. 반면 프로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1756년 8월 작센에 대한 프리드리히 2세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1757년 6월 보헤미아에서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에게 승리하는 등 오스트리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프랑스가 영국과의 식민지 전쟁으로 유럽의 7년전쟁에서 이탈하고, 1762년 러시아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에게 적대적이던 엘리자베타 여제(女帝)가 갑자기 사망하고 대신 프리드리히 2세에게 우호적인 표트르 3세가 즉위하여 프로이센과 협력하게 되었다. 1763년 2월 후베르투스부르크(Hubertusburg) 조약으로 7년전쟁은 종식되고,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 수복에 실패하였다. 같은 해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인도의 프랑스 식민지를 얻는 조약을 프랑스와 맺었다. 7년전쟁은 프랑스가 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대신 독일에서의 주도권을 확립한 시기였다.

프리드리히 2세는 제2차 슐레지엔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이 직접 그린 도면으로 포츠담에 궁전을 짓게 하였다. 1748년에 완공된 상수시(sans souci) 궁전이다. 상수시는 ‘근심’이라는 수시(souci)와 ‘없’이라는 뜻의 상(sans)이 결합되어 ‘근심 없는’이라는 뜻이다. 상수시궁전의 양식은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로코코 양식이다. 상수시궁전은 언덕 위 조성, 정원, 숲, 조각상 등 프랑스 궁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프리드리히 2세는 궁전이 완성되자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Voltaire)를 초청하였다. 프리드리히 2세는 자신의 궁전에서 볼테르의 편지를 낭독했고, 볼테르는 프리드리히 2세의 편지를 파리에서 낭독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이미지 메이커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볼테르는 1750~1753년 기간 상수시궁전에 머물면서 역사서 『루



\* 독일 민족주의의 상징적 존재인 프리드리히 2세가 포츠담에 건축한 프랑스풍의 상수시궁전이다. 작은 사진은 상수시궁전에서 프랑스인 볼테르가 프리드리히 2세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묘사한 멘첼(Adolf von Menzel)의 그림이다.

이 14세기(Le Siècle de Louis XIV)』를 완성하였으나, 정치윤리에 대한 생각이 프리드리히 2세와 달라 상수시궁전을 떠났다. 프리드리히 2세는 볼테르뿐 아니라 루소 등 다른 프랑스인들과도 교류하였다. 상수시궁전 서재에는 2천여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는데 대부분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당시 유럽의 다른 귀족들처럼 프리드리히 2세도 프랑스 가정 교사에게 교육받아 독일어보다 프랑스에 훨씬 익숙하였다. 그가 쓴 저서들도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2세는 1786년 상수시궁전에서 생을 마감했다. 프랑스 문화를 흠모한 프리드리히 2세는 당시 민족국가나 민족주의의 개념이 없던 독일의 여러 작은 공국 사람들에게 독일 민족주의 의식을 제공한 인물이다. 제1차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의 여러 정파들은 자신의 정치동원에 프리드리히 2세를 이용했다. 특히 히틀러는 프리드리히 2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여겼다. 보불(普佛, 普魯西-佛蘭西, 프로이센-프랑스)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초기에 프랑스를 이긴 독일의 힘은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에서 왔던 것이다.

#### IV. 나폴레옹과 독일 민족통일

프리드리히 2세의 뒤를 이어 그의 조카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재위 1786~1797)가 프로이센 국왕으로 즉위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1788~1791년에 걸쳐 브란덴부르크문(Brandenburger Tor)을 건축했다. 브란덴부르크문이 건축될 무렵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혁명은 대내적으로 봉건체제를 타파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양시켰다.

브란덴부르크문을 개선문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국가는 프로이센이 아니었다. 1806년 프로이센은 나폴레옹 1세에게 선전포고하여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1806년 10월 나폴레옹 1세는 예나에서 승리한 후 베를린에 입성하여 브란덴부르크문 위의 장식품 크바트리가(quadriga, 네 마리 말의 이륜전차) 승리 여신상을 전리품으로 파리로 가져갔다. 1807년 틸지트조약으로 엘베(Elbe)강 서안 지역은 나폴레옹 1세의 아우 제롬 보나파르트(Jérôme Bonaparte)가 원수로 취임한 웨스트팔리아 왕국으로 되고 프로이센은 전쟁보상금 지급과 군비 제한을 약속했다. 프랑스는 틸지트조약으로 프로이센의 영토를 절반 가져갔던 것이다. 프랑스에 인접한 독일 공국들은 라인연방이라는 나폴레옹 속국이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14년까지 여러 국가들과 전쟁을 수행하여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다. 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의 민족주의 의식도 고취시켰다. 나폴레옹 1세의 유럽 정복은 프로이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 정신뿐 아니라 프랑스 정복에 반대하는 민족자결의 이데올로기도 전파시켰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게 역풍으로 작용하였다. 나폴레옹 1세는 1812년 러시아 진격 실패에 이어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의 반(反)나폴레옹 연합군에 대패했고 몰락하게 되었다. 프로이센은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프랑스를 이긴 후 파리에 입성하여 승리 여신상을 베를린으로 가져왔고 1814년 8월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여신상을 원래 자리인 브란덴부르크문 위에 다시 두었다. 그때 이후 브란덴부르크 광장은 프로이센군의 파리 점령을 기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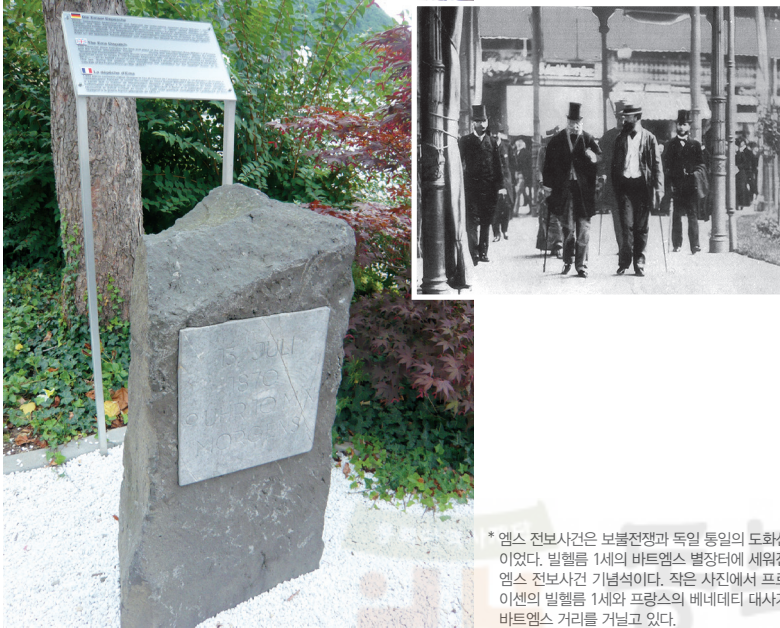


\* 동서독 통일 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위로 다시 돌아온 승리의 여신상 장식품이다. 작은 사진은 나폴레옹 1세가 프로이센을 이긴 후 브란덴부르크문을 통과하는 모습의 메이니에(Charles Meynier) 그림이다.

파리광장(Pariser Platz)으로 불리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브란덴부르크문은 연합군의 폭격을 받았고 1945년 전쟁이 끝난 때부터 독일의 영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관리를 받았는데, 브란덴부르크문까지가 소련의 관리구역이었다. 동독 정부는 여신이 들고 있던 독수리 모양의 장식품 대신에 동독 국기를 걸었다. 베를린장벽 설치로 브란덴부르크문은 폐쇄되어 더 이상 문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후부터는 브란덴부르크문 위에 독수리 장식품이 다시 걸려 있고, 브란덴부르크문은 개방되었다.

나폴레옹 1세 몰락 이후 프랑스는 부르봉왕정복고(1814~1830)와 7월왕정(1830~1848)을 겪었고 1848년 2월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선포되었다. 1848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루이 보나파르트(나폴레옹 1세의 아우)의 셋째 아들 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Charles-Louis-Napoléon Bonaparte)가 당선되었다. 그는 1851년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하고 1852년 제2제정 헌법을 만들어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였다.



\* 엠스 전보사건은 보불전쟁과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었다. 빌헬름 1세의 바트엠스 별장터에 세워진 엠스 전보사건 기념석이다. 작은 사진에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와 프랑스의 베네데티 대사가 바트엠스 거리를 거닐고 있다.



\* 스당은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며 아직 성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이곳에서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에게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작은 사진은 스당 전투 직후 비스마르크(오른쪽 사람)의 포로가 된 나폴레옹 3세(왼쪽 사람)를 묘사한 캄프하우젠(Wilhelm Camphausen)의 그림이다.

한편 프로이센에서는 1840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즉위했다. 독일 제후의 연합을 통한 독일 통일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861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아우 빌헬름 1세가 프로이센 국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1862년 비스마르크(von Bismark)를 프로이센 수상으로 임명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는 토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鐵)과 피(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바트엠스(Bad Ems)는 라인(Rhein)강의 지류인 란(Lahn)강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로 17세기에 온천으로 개발된 휴양도시로 1867년부터 20년 동안 빌헬름 1세의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다. 비스마르크도 애용한 휴양지이다. 1870년 7월 13일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로 프랑스 대사 베네데티(Benedetti)는 엠스를 방문하여 빌헬름 1세를 면담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이 스페인 왕위계승에 대한 발언권을 영구히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빌헬름 1세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 면담내용은 전보로 당시 프로이센의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보내졌다. 비스마르크 수상은 이 전보를 더 간단하면서도 자극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였다. 이를 엠스 전보사건(Die Emser Depesche, La dépêche d'Em, The Ems Dispatch)으로 부른다. 프로이센 여론은 일개 프랑스 대사가 프로이센 국왕을 모욕했다고 흥분하였고, 프랑스 여론도 대국 프랑스의 요청을 무례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였다.

1870년 7월 19일 프랑스가 먼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프로이센에게 패배를 설욕하려는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바덴(Baden) 등이 대(對)프로이센 전쟁에 합류할 것으로 프랑스는 기대하였다. 프랑스 군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군대와 공동으로 남부 독일로 진격하여 프로이센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키려던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프로이센의 군 동원은 급속히 이루어졌던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했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했다. 독일 남부 공국들은

오히려 프로이센 편에 서서 대프랑스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9월 2일 프랑스 스당(Sedan)에서 프랑스는 대패했고 나폴레옹 3세는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다. 스당 전투에서 대패한 이후에도 프랑스는 새로운 정부를 세워 프로이센과 전쟁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프로이센이 승리하여 통일독일의 제2제국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독일이 등장하였고 이는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다.

카셀(Kassel)은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이다. 카셀 지역의 빌헬름스회에 산(Wilhelmshöhe Berg) 공원은 유럽 최대의 언덕 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1801년 완공된 빌헬름스회에궁전(Schloss Wilhelmshöhe)은 나폴레옹 1세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에 웨스트팔리아 왕 제롬 보나파르트에 의해 나폴레옹스회에(Napoleonshöhe)로 한때 불리기도 했다. 나폴레옹스회에에 명칭은 현재 궁전의 공식 명칭이 아니지만 궁전 뒷편 상단에 부착되어 있다. 빌헬름스회에궁전은 20세기 초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여름 궁전이자 제1차세계대전 후반 독일 최고사령부가 배치되었고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이곳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해산하였다.

압 나흐 카셀(Ab nach Kassel)은 '꺼져라' 혹은 '서둘러라'는 독일어이다. 압과 나흐는 각각 '분리차단'과 '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이니 어학적으로 '카셀로 꺼져라'는 의미이다. 1870년 9월 스당에서 포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카셀의 빌헬름스회에궁전에 수개월 동안 잡혀 있었는데, 카셀로 오기 전 네덜란드·벨기에 인접 독일 도시 아헨(Aachen)의 시민들이 나폴레옹 3세에게 했다는 말이 바로 압 나흐 카셀이다. 최근에는 카셀 관광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빨리 카셀로 오세요' 뜻의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후 프랑스의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었다. 프랑스는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파리에서 제일 높은 몽마르트 언덕(해발 129m) 위에 성당을 세우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비잔틴식 웅모작이 채택되었고 1875년 공사가 시작되어 1919년 완공되었다. 바로 에펠탑과 더불어 파리 어디서나 보이는 사크레코르(Sacre-coeur, Sacred Heart, 성심) 대성당이다. 결과적으로 나폴레옹 3세가 사크레코르 대성당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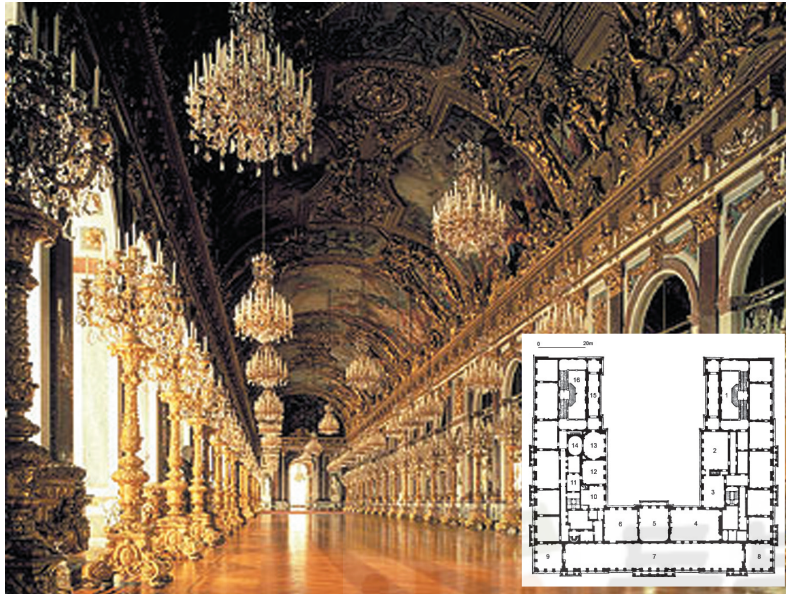


\* 빌헬름스회에궁전은 스당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있었던 곳이다. 사진의 건물 맨 위는 빌헬름스회에궁전과 카셀 전역을 내려다보고 있는 헤라클레스 조각상이다. 작은 사진은 파리 몽마르트 언덕 위의 사크레코르 대성당이다. 나폴레옹 3세의 충격적 패배로 인한 프랑스 국민의 좌절을 달래기 위해 건축되었다.

## V. 베르사유궁전의 치욕과 설욕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Versailles)궁전은 국내에서 인기 만화로 연재될 정도로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이다. 베르사유궁전은 1631년 프랑스 루이 13세가 만든 작은 성을 루이 14세가 개축한 궁전이다. 프랑스 왕들의 초상화와 흔적들이 많은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에서 처형당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흔적도 많다. 베르사유궁전엔 화장실이 없었고 당시 귀족들은 구석진 곳에 볼일을 봤으며 당시 부푼 치마 스타일과 하이힐 패션이 그래서 생겼다는 주장도 전해져 오고 있다. 물론 현재는 궁전 내의 건물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독일이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을 처음으로 직접 활용한 것은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다. 1871년 1월 베르사유궁전 거울홀



\* 독일 헤렌킴제성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울홀 사진이다. 헤렌킴제성 내부에선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베르사유궁전 거울홀과 매우 유사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작은 그림은 헤렌킴제성의 도면인데, 9번 전쟁홀을 지나 7번 거울홀, 다시 8번 평화홀의 순서를 포함해 베르사유궁의 도면과 거의 일치한다.

에서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를 황제로 하는 독일제국의 탄생이 선포되었다. 간접적으로 그 이전부터 베르사유궁전이 독일에서 기억되고 있었다.

베르사유궁전의 화려함은 당시 유럽의 많은 왕들이 동경했다. 바이에른의 루드비히 2세(1845~1886)도 그런 왕이었다. 그는 막시밀리안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죽자 18세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았다. 보불전쟁이 전개될 당시 루드비히 2세는 독일 남부 튀센 등에 체류하며 궁전 건축에 몰두했다. 디즈니랜드 성의 원조인 노이슈반슈타인성(Schloss Neuschwanstein)을 포함해서 린더호프성(Schloss Linderhof) 그리고 헤렌킴제성(Schloss Herrenchiemsee) 등 세 개의 성을 건축했다. 바이에른의 바다 킴호수(Chiemsee)의 작은 섬에 건축된 헤렌킴제성은 자금 부족으로 본관만 지어졌고 실제 루드비히 2세가 오래 머물지도 않았지만 당시 독일 사람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던 베르사유궁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은 17개의 아치형 창문과 동일한 모양의 17개 거울이 맞은편에 있는 방이다. 이 거울홀은 독일과 프랑스 간 앙숙 관계의 상징적 장소이다.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 프로이센은 1871년 1월 28일 파리를 함락하고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에서 통일 독일제국 선포식 겸 빌헬름 1세 독일 황제 대관식을 치렀다. 1871년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은 독일이 프랑스에게 치욕을 안겨준 장소였다.

독일제국 첫 번째 황제 빌헬름 1세가 1888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3세의 짧은 집정 후, 그의 손자 빌헬름 2세가 즉위하였다. 젊은 황제 빌헬름 2세와 불평해진 비스마르크는 1890년에 수상직을 사임했다. 이후 독일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전했고 빌헬름 2세도 황제 직위를 빼앗겼다. 제1차세계대전 강화(講和)조약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에서 치러졌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설욕하고 독일은 치욕을 당하는 자리



\* 여름 성수기 수많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베르사유궁전 거울홀 모습이다. 왼쪽 작은 사진은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에서 독일 제국이 선포되는 모습을 베르너(Anton von Werner)가 그린 작품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제1차세계대전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베르사유 회담 공식화가 오르펜(William Orpen)이 묘사한 그림이다.

였다. 베르사유조약은 독일에게 너무 가혹하여 독일에서는 베르사유명령(diktat)으로 부르기도 했다.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은 독일 제2제국 등장을 선포한 장소이자 동시에 독일 제2제국의 퇴장을 공포한 장소이다.

베르사유궁전 거울홀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이 번갈아 치욕과 설욕을 당하고 행한 역사적 장소가 또 있다. 파리에서 멀지 않는 작은 도시 콩피에뉴(Compiègne) 숲은 제1차세계대전 휴전 및 독일 항복의 서명식이 1918년 11월에 거행된 곳이고, 제2차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가 프랑스 항복의 조인식을 1940년 6월에 그대로 재연한 곳이기도 하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치욕과 설욕이 서로 뒤바뀌었을 뿐이다.

## VI. 독·프 국경지역의 불안정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고 알자스(Alsace, 독일어 엘자스 Elsaß)-로렌 지역을 프랑스에게 반환하기로 1919년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에서 약속했다. 베르사유조약은 독일 영토 자르(Saar) 지역을 15년간 국제연맹 관리 아래 두되 15년 후 주민투표를 통해 귀속하고, 프랑스에 가까운 독일 영토인 라인강 서안(西岸) 지역을 15년간 연합국 점령 아래 두며, 역시 독일 영토인 라인강 동쪽 기슭 50km에 걸쳐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였다.

라인강에는 중세 신성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성들이 많다. 신성로마황제뿐 아니라 여러 영주들도 라인강 유역에 성을 만들어 통행세를 징수했다. 성주들이 가파른 강변 대신에 내륙 안쪽으로 이동하자 성들은 비게 되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나폴레옹 1세를 비롯한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라인강변의 성들이 독일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괴하기도 하였다. 라인강변 고양이성(Burg Katz)도 그런 성이다. 1806년 나폴레옹 1세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9세기 말에 재건되었다. 물론 라인강변의 고성(古城)이 프랑스로의 진격에 사용되기도 했다. 14세기 신성로마황

## 인접국 갈등과 협력의 기승전결(상)



\* 로렐라이 언덕에서 라인강 상류 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라인강 유역의 비무장은 제1차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주도로 설정되었다가 제2차세계대전 발발 직전 독일 나치에 의해 파괴되었다. 왼쪽 작은 사진은 로렐라이 언덕 옆 고양이성이다. 1806년 나폴레옹 1세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9세기 말에 재건되었다. 가운데 작은 사진은 팔츠성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카움(Kaumb) 블뤼히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프로이센군의 팔츠성 경유 도강(渡江) 모형이다. 1814년 라인강을 건넌 프로이센군은 나폴레옹 1세를 패배시켰다.

제 루드비히가 라인강 통행세 징수 목적으로 건립한 팔츠그라펜슈타인성(Burg Pfalzgrafenstein, Pfalz, 팔츠성)은 1814년 나폴레옹 1세를 패배시킨 블뤼히(Gebhard Leberecht von Blücher) 장군의 6만 명 프로이센 부대가 라인강을 건넌 통로였다.

1925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발의되어 영국 런던에서 정식으로 체결된 로카르노조약(Pact of Locarno)으로 라인란트(Rheinland) 지역의 영구 무장금지가 보장되었고, 1930년 연합국 군대는 철수하였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독일이 로카르노조약을 파기하고 군대를 라인란트 지역으로 진주시킴으로써 라인란트 비무장은 파기되었다. 히틀러 정권은 과도한 전쟁배상금 의무와 주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면서 프랑스 인접 독일 영토 내에 설정된 비무장지대를 자국 군대로 무장시켰다.

1936년 독일 히틀러 정권이 라인란트 지역을 재무장할 당시 프랑스는



\* 큰 사진과 왼쪽 작은 사진 모두 프랑스 베크링(Veckring)에 남아 있는 마지노(Maginot)라인 요새들이다. 땅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대형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구조이다. 콘크리트 구조물 지붕 위의 강철 물체는 대포나 기관포를 탑재하는 포탑(砲臺)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파리 근처 작은 도시 콩피예뉴에 있는 알자스-로렌 기념비이다. 제1차세계대전 휴전이 성립된 콩피예뉴 숲에 건립되어 있는데, 독일 상징 독수리가 긴 칼에 찔려 있는 형상이다. 알자스-로렌을 프랑스가 독일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다고 프랑스는 주장하고 기념하였다.

독일을 대상으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프랑스 단독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독일을 이길 정도가 아니었고 영국 등 주변국의 지원도 없어 프랑스는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다.

마지노(Maginot)선은 제1차세계대전 후인 1927년에 프랑스 육군장관 마지노(Andre Maginot)가 건의하여 마지노 사망 4년 후인 1936년부터 완공되기 시작한 대독일 방어선이다. 마지노는 제1차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던 베르딩에서 직접 중상을 입었던 경험에서 당시 독일 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프랑스 인구 수를 고려하고 또 독일로부터 탈환한 알자스-로렌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공격을 국경선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노 요새는 당시 발달된 프랑스 토목기술이 집약된 지하 시설로 주로

지붕 있는 포대(砲臺)로 구성된 디자인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히틀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동맹국이던 프랑스의 마지노 디자인을 모방해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독일은 1938년 뮌헨협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실제적으로 획득한 후 체코슬로바키아 방어시설을 갖고 프랑스 공략 방법을 연구하였다. 벨기에 지역의 프랑스 요새를 격파한 배경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방어시설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마지노라인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군의 우회 전략 때문이었다. 대독 방어선인 마지노 요새는 방어력만으로 도발이 억제되지 못함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독일도 프랑스와의 국경선에 방어요새를 구축했다. 독일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크프리트선(Siegfriedstellung)은 독일이 프랑스를 전격 공격할 때에 기능하지 못했고 또 반대로 연합국의 침공을 받을 때에도 돌아된 후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마지노 요새들은 개조되었다. 1960년 프랑스의 핵보유로 마지노 요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일부 요새는 군사시설로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민간인에게 팔거나 방치되었다. 일부는 와인저장고, 버섯농장, 디스코텍, 주택, 영화촬영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각종 진지와 요새의 설치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접경지역이 인접국 간 영유권 분쟁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독일에 인접한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지역도 그런 곳이었다. 알자스의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는 9세기 신성로마제국에 편입되었다가, 13세기 자유도시가 되었으며, 17세기 루이 14세가 프랑스 영토로 편입하였다. 로렌 공작령도 1766년 프랑스 영토로 병합되었다. 1870~1871년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1871년 2월의 베르사유 평화협정에 이어 5월에 체결된 프랑크푸르트 강화조약으로 알자스-로렌 지역을 독일에 양도하였다.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의 「마지막 수업(La Dernière Classe)」은 알자스-로렌 지방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19세기 후반 독일 영토로 귀속된 이후 학교에서 독일어만 교육시키려는 독일 정부 지침에 따른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의 교실 풍경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데가 프랑스인이니 프랑스적

시각에서 그런 것이고 독일인 시각에서는 다르게 그렸을 것이다. 도데의 소설 때문에 알자스-로렌 지역이 본래 프랑스 영토였는데 독일이 강제로 빼앗았던 것으로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래 독일어를 사용하던 지역주민에게 프랑스어를 강제교육하다 그만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독일인의 생각이다.<sup>4</sup> 그만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국경지역을 보는 것이다.

알자스 지역은 중세시대에 게르만의 언어가 통용되었고, 30년전쟁 이후에는 독자적인 언어를 유지하였으며, 프랑스혁명 이후엔 독일인보다 프랑스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했고, 보불전쟁 후 자신의 의사 확인 없이 독일에 병합되었음에 항의하기도 했다. 알자스 지역의 정체성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프랑스 및 독일의 민족적 문헌뿐 아니라 프랑스 및 독일과 분리하여 기술하는 문헌들도 적지 않다. 알자스 지역에는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며 알자스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에는 알자스인(Alsatian)을 독일어의 방언인 알자스어를 사용하는 독일계 알자스 거주자로 정의하고 소수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게 반환하였다. 알자스-로렌 지역은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한때 독일의 지배를 다시 받았다가, 종전 후 현재까지 프랑스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다.

자르 지역은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제1차세계대전 후 15년간 국제연맹 관리하에 있다가 1935년 주민투표로 독일에 복귀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의 점령하에 있다가 1955년 국제관리하에 두기로 한 자르협정이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지 않아 자르 지역은 1957~1959년에 걸쳐 서독에 편입되었다.

<sup>4</sup> 소설 「마지막 수업」은 일제 식민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더 이상 못하게 된 비관적 한국인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일제 패망으로 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못하게 된 황량한 일본인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1910년대 및 1920년대에 걸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각각 번역 소개된 이 소설은 동아시아에서 타민족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금하자는 여론을 조성했다 기보다 자기 민족만 중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 Ⅶ. 맺음말

프랑스와 독일 간의 경쟁과 대립이 어떻게 시작되어(起)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承)를 살펴보았다. 자국의 부국강병을 추진할 때에는 인접국 위협에 관한 민족주의적 의식이 이용되었고, 실제 인접국을 위협할 때에도 민족주의적 설욕 의지를 이용했다. 근대 민족국가 체제가 형성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감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과거 모욕의 장소는 곧 설욕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조작에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포함한 프랑스와 독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영광의 추억이든 모욕의 기억이든 모두 상대를 이기려는 대중심리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베르사유궁전이나 콩피에뉴 숲 모두 위정자들에게 유용한 정치적 소재이기도 했다.

특히 역사가 정치의 수단이 되는 한, 인접국 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독·프 관계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 내용은 제2차세계대전 때까지 서로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나폴레옹 1세와 비스마르크는 자국민에게 영웅이지만 상대국에는 침략자에 불과하다는 역사교육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실시되었다. 독일을 견제하는 나폴레옹 3세의 대외 정책은 독일인에게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매우 부당한 간섭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던 반면에, 프랑스인에게는 비록 실패했다라도 당연한 위기 대비 대외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상대의 전쟁은 침략전쟁이고 자신의 전쟁은 정전(正戰, just war)이었다고 교육되었다.

이러한 독·프 갈등은 양국이 모두 유럽 대륙의 패권을 추진하던 시절에 더욱 심했다.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경쟁할 때에 프로이센과 협력했다. 하지만 프로이센이 중유럽의 강력한 맹주로 등장하자 오스트리아와 협력하여 알자스-로렌 지역을 획득했다. 인접국 간 갈등과 대립은 영원하지 않다. 주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간 대립의 기승전결(起承轉結)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어떻게 전환되어(轉)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結)를 다음 호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그 문제점

김수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2012년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學] 교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독도문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17세기 영토 확립설'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한국의 고유영토론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령이라는 논증이 없다'고 부정하였다. 한일 양국 자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한 결과 양국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케우치는 독도는 '무주지'였고 이 무주지는 일본이 1905년 한국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영유를 선언하여 일본이 영토 편입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편입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반포하여 석도(石島)를 울릉군수의 관할 지역으로 선포하였지만 석도는 독도가 아니며 '석도가 독도라고 논증할 수 없는 이상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의 침략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각의 결정이 행해진 1905년 이전 독도가 대한제국령이었다는 논증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영토 편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이 타당하다는 이케우치의 무주지 선점론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이케우치의 분석 방법과 그 주장 내용

서장에서 이케우치는 독도 연구가 1950~1960년대의 논쟁을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결착이 끝난 것을 빙빙 도는 자세가 문제'라고도 지적하였다. 한일 양국이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래의 한일관계를 위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해결 방법은 '오늘날까지 확립된 학문적 수법에 따라 제시된 사료·사실과 그 해석에 대해서 같은 학문적 수준에서 검토하면 누구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문헌 사학적 방법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역설하였다. 그는 독도 논쟁이 존재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채 쟁점화되어 학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되풀이되어 똑같은 논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독도 논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실 지금까지의 독도 논쟁은, 심하게 말하면 모든 국면에서 그러한 자의성이 강하거나 내포한 상태로 추이해 왔다. 즉 이 논쟁에는 학문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국면이 적지 않았다. 어쩌면 독도 논쟁의 문제점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대립이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채 쟁점화되는 데에 있다. 학문적 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명백한 주장이 재삼재사 되풀이하여 강변되고 똑같은 논의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sup>1</sup>

<sup>1</sup>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7쪽

이 실증적 학문 연구에 입각한 독도 연구야말로 한 일 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좋은 지혜'이며 '동일

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면 총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세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가 1~10장으로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에 관한 연구가 1~7장, 한국과 관련된 것은 8~10장이다. 근대 관련 연구는 2장(11장과 12장),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국 조치에 관한 연구는 1장(13장)뿐이다.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는 근세 연구는 일본 산음지방의 향토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인지까지도 자세히 분석한 수준 높은 연구이다. 이에 비하여 근대 연구는 조금씩 결론을 유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단기간에 성과 위주로 기술된 것이 눈에 띈다. 선행 연구 소개와 2차, 3차 자료를 중심으로 독도와 관련된 몇 개의 자료 군이 제시되어 있을 뿐 자료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근세를 전공한 그가 연구 영역을 근대 영유권 문제로 선회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처럼 조급함이 엿보인다.

서 장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 1 장 근세 일본의 서북 경계

제 2 장 죽도 도해와 돛토리번

제 3 장 17세기~19세기 울릉도 해역의 생업과 교류

제 4 장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둘러싸고

제 5 장 『은주시청합기』의 여러 책에 대해서

제 6 장 일본의 지도·지와 죽도

제 7 장 「일본해내죽도외일건지적편찬방사」 해석에 대해서

제 8 장 안용복 사건고

제 9 장 오키·무라카미가 문서와 안용복 사건

제10장 우산도고

제11장 1905년 전후의 죽도

제12장 20세기 초두 울릉도의 일본인·조선인

제13장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죽도

총 괄 죽도 논쟁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케우치는 '무주지 선점은 성립하는가'라는 주제로 편입의 정당성을 같이 설명하였다.

1905년 일본령 편입은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증한 것에 따르면 1905년 1월 시점에서 오늘날의 죽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상 무주지 선점을 논거로 하는 일본령 편입은 유효하다. 한편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영역이 확정된 때에는 조문 중에 죽도가 한일 어느 쪽에 귀속하는가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러스크 서간을 통해 한국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편, 우산국 도명이나 안용복 사건을 거쳐 15세기, 17세기 이래 죽도가 한국령이었다고 논증할 수 없다. 스캐핀 제677호·제1033호는 모두 영토의 최종 결정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토 확정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그 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령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논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1905년 일본령 편입의 전 단계에서 죽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이 칙령의 존재로부터 즉시적으로 도입시킬 수 없다. [...]

한편, 1882년 개척령이 내려지기까지 울릉도는 일관하여 조선인이 도항해서는 안 되는 섬이었다. 17세기 말 안용복이라는 조선인만 오늘날 죽도를 실제로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했다고 생각되고 그 이외에는 죽도를 가까이서 본 조선인은 없었다. 게다가 활동한 흔적이 없다. 개척령 직후 울릉도에도 조선인의 집락이 형성되어 일본인과의 접촉이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19세기 말에는 조선인도 죽도에 접근을 시작해 울릉도 거주 일본인·조선인은 어원을 공통으로 한 도명 '랑코도'를 호칭으로 쓰던 것이 일본 측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905년 1월 죽도의 일본 영

토 편입을 각의에서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작년 가을 나카이[中井養三郎]의 ‘랴코도대하원’이었다. 그리고 그 ‘대하원’이 제출하려고 한 같은 시기 울릉도의 조선인 사이에서는 오늘날 죽도를 ‘독도’라고 쓰고 있었다. 이 도명이 ‘랴코도’ 어원과는 다른 어원에 근거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다른 어원은 일본인이 모르는 것이었다. [...]

기존처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 제2조에서 말하는 석도가 오늘날의 죽도에 해당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논증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이 경우에서는 이 칙령을 근거 자료로서 한국 정부의 죽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우산도가 죽도라는 주장을 계속해 1899년의 대한제국 정부 학부편 대한제국에 보이는 우산도도 죽도라고 강변하는 한 1900년대가 되어 난데없이 도명을 ‘석도’로 변경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칙령 41호에서 말하는 석도가 죽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1904년에는 울릉도 제주 조선인이 이 섬을 독도라고 쓰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1900년과 1904년간의 도명의 변경도 또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섬에 대한 영유의 욕구는 1900년대 후부터 1905년대까지라는 겨우 5년 내외의 기간에 일본인·조선인 쌍방에 썩더 근소한 차이로 일본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영유를 성명했다고 말하는 것이다.<sup>2</sup>

### III. 이케우치의 문제 의식과 연구의 문제점

이 책을 출판하기 앞서 이케우치는 「죽도 / 독도와 석도의 비정문제노트」에서 울릉도 조선인들은 ① 어업을 몰랐기 때문에 독도에 갈 수 없었다. ② 조선인들은 전복을 따지 않았고 독도를 전복이 잡히는 섬으로 인지하지 않았다. ③ 거문도인들은 1905년 이후 독도에 갔기 때문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3</sup> 이 문제에 대해 김수희는 조선시대 독도

2 池内敏, 2012, 위의 책, 310~311쪽

3 池内敏, 2010, 「竹島/獨島と石島の比定問題-ノート」, HERSETEC 4-2

로 건너간 전라도 거문도인들의 어로 활동을 입증하면서 독도 어장에서 전복과 미역, 감치어업에 종사한 어민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sup>4</sup>

이케우치는 김수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인식하고 보완하면서 김수희의 주장은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의 주장을 빌리면 김수희의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인 ‘개척령기 조선인들은 어업을 몰랐다는 연구’<sup>5</sup>를 낮게 평가하고 전라도인들의 동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선행 연구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편협한 연구’라는 것이다.<sup>6</sup> 다시 말하면 ‘독도는 무주지인가’라는 전제조건에서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어장을 이용한 전라도인들의 어로 활동과 이들이 사용한 독도 어원인 석도 즉 ‘돌섬(독섬)’을 가능성 영역으로만 인정하고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그는 울릉도를 몇백 년간 왕래한 전라도인들의 어로 활동을 제외시키고 일본 측 기록만을 이용하여 독도가 석도인가를 검토하였다. 즉 1904년 신고함(新高艦)의 『행동일지(行動日誌)』에 조선인들이 ‘독도라고 쓴다(韓人ハ之ヲ獨島ト書シ)’는 기록이 등장하기까지 울릉도인들의 독도 인지와 이와 관련된 명칭을 고찰하여 독도가 무주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① 1904년까지 조선인들의 독도 명칭은 ‘리랑코도·양코’였다.
- ② 나카이 요자부로는 한국 어민들을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청원했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지하지 않았다.

이하 그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본다.

#### (1) 1904년까지 울릉도 조선인들은 독도를 ‘양코·랑코도’라고 하였다.

이케우치는 1904년 9월 25일 신고함의 『행동일지』에 ‘리랑코르도암 한인 이것을 독도라고 쓴다’는 자료를 근거로 그 이전 조선인들의 독도 인지는 명확하지

4 김수희, 2011, 6,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0호; 김수희,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집

5 김태원, 2003, 「울릉도민의 이주와 정착 과정」, 『울릉도·독도 동해안어민의 생존전략과 적응』, 영남대학교출판부; 박성용, 2008, 『독도·울릉도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사회조직 연구』, 경인문화사

6 池内敏, 2012, 앞의 책, 262쪽

않다고 주장하였다. 1900년대 조선인들은 독도를 리양쿠르도 락스를 어원  
으로 한 리랑코도·양코도·량코도로 불렀고 돌섬(독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수희가 19세기 거문도인들의 독도어장 진출과 이들이 독도를 돌섬(독섬)  
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 이케우치는 일본 측 기록 양코·리양코도를  
무시한 것으로 형편주의에 따른 일방적인 자료 해석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케우치는 전라도인들을 비롯한 울릉도인들의 독도 도항이 없거나 광  
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1904년 독도 명칭이  
나타나기 전 독도의 명칭은 리랑코·양코·리양코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였  
다. 1894년 《산음신문》의 “조선죽도탐험” 기사, 1901년 『지학잡지』, 1902년  
『통상위찬』의 「1902년 울릉도상황」 등 3개의 자료에서 확인하고 있다.

〈자료 1〉

죽도는 오키로부터 서북 80여 리 해상에 고립해 있으며 배를 달려 50여 리  
쯤에 외로운 섬 하나가 있다. 세간에서는 이것을 리랑코도(島)라 한다. 둘레는  
모두 약 1리쯤 되고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에 바다사강치(海  
驢)가 서식하여 수백 마리를 헤아리는데 그들이 우는 소리가 몹시 시끄러  
우며 근해에는 고래 무리가 떼지어 헤엄치고 있어 실로 비할 바 없는 고래  
잡이 어장이다. (『朝鮮竹島探險』, 《山陰新聞》, 1894. 2. 18; 池内敏, 2012, 앞의 책, 257쪽)<sup>7</sup>

〈자료 2〉

지난 4월 중순 도쿄 발행의 각 신문은 일본해 중에 한 도서를 발견한 것을  
보도하였다. 그 말에 따르면 한국 울릉도에서 동남 30리,  
우리 일본국 오키에서 서북쪽으로 거의 같은 거리 떨어진 해  
상에 아직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의 도서를 발견하였다. 이  
섬은 아직 우리나라의 해도에는 실리지 않고 영국의 해  
도에도 기재되지 않았지만 그 섬의 존재는 확실하며 지  
금도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은 맑은 날 산의 높은 곳에서  
동남을 바라보면 아득히 섬 윤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7 竹島(鬱陵島)ハ隱岐より西北八十余里  
の洋中に孤立し、船を駛する五十余里に  
至る頃ろヶの孤島あり、俗之をリラン  
コ島と云ふ、其周圍凡1里許りにして三ヶ  
の嶋嶼より成れり、此嶋に海獸海驢棲息  
し數百頭を以て數ふべく、其叫聲轟々  
として喧しく此近海は鯨族の群遊ありて眞  
に無比の捕鯨場たり。〔以下略〕『朝鮮竹島探  
險』, 《山陰新聞》, 1894. 2. 18.

8 去る四月中旬東京發行の各新聞紙は  
日本海中に一島嶼を發見せることを報せ  
り、其いふ所に從へは韓國鬱陵島を東南  
に去ること三十里我日本國隱岐を西北  
に距ること殆んと同里數の海上に未だ世  
人に知られざる一島嶼を發見せり、該島  
は未だ本邦の海圖には載らずイギリスの  
海圖にも亦之を記せされとも其島の存在  
は確實にして、現に鬱陵島にありし、日本  
人は晴天の日山の高所より東南を望み  
たるにあり遙に島影を認めたりといへり、  
今此の島發見の歴史を聞くに一兩年前九  
州邊の一潛水器船が魚族を追ふて遠く  
海中に出てたるに、見慣れざる所に一島  
嶼の存在せることを發見し喜んで之を根  
據地と定め其四隣の海中を漁り回りに  
たるに、此の邊魚族の棲息せるもの頗る多  
かりしも海馬數百群を爲して潛水器船を  
沮みれば終に目的を終へすして引還たり  
といふ、此の船中にありし潛水業者の  
實見したり所なりとて報する所によれば  
其島は長さ三十町に近く丘陵甚た高から  
されとも處々に 島形又極めて屈曲に富み  
漁船を泊し風浪を避くるに最も便あり、  
只地上より數尺の間は之を鑽るも水を得  
ず從て現今の所にては水産物製造場とし  
ての價値は乏しといふべし、故に學者實  
業者は猶充分なる探檢を施すの余地を留  
む、日韓漁民之を指してヤンコと呼へり  
といふ、  
以上の記事に據るに其位置固より確實な  
らず、思ふに此の島はまだ海圖に示され  
ずといふも其記事及び稱呼より之を擦せ  
ば恰もLiancourt rocks(リアンコート  
ロック)に符合せり、(『日本海中の一島嶼』, 『地  
學雜誌』, 第13卷 第149頁, 1901. 5).

9 本島(鬱陵島)ノ正東約五十海里ニ三小  
島アリ、之ヲリヤンコ島ト云ヒ、本邦人ハ  
松島ト稱ス、同所ニ 多少ノ鮑ヲ産スルヲ  
以テ、本島ヨリ出漁スルモノアリ、然レト  
モ同島ニ飲料水乏シキニヨリ、永ク出漁  
スルコト能ハサルヲ以テ、四五日間ヲ經  
バ本島ニ歸港セリ。(『明治三十五年鬱陵島  
狀況』, 1902. 5).

지금 이 섬 발견에 관한 역사를 들으니 1~2년 전 규슈  
근방에서潛水器船 한 척이 魚族을 쫓아 멀리 해중에  
나갔는데 못 보던 곳에 섬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기  
뻐하며 이를 근거지로 삼아 바다 사방을 찾아다니자 그  
근처는 서식하는 어족이 굉장히 많았으나 강치 수백 마  
리가 떼를 지어潛水器船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배 안에 있던 잠수기 업  
자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섬은 크기가 30정도에 가깝고  
구릉은 높지 않다. 곳곳에 잡초와 잡목이 있어 섬의 형태는  
매우 굴곡이 많고 어선을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에 좋은 위  
치에 있다. 단, 지상에서 몇 자 정도 파 내려가 보아도 물  
을 얻을 수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수산물 제조장으로서  
의 가치는 부족하지만 학자와 실업가는 탐험을 할 여지  
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日韓 어민은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한다. (『日本海中の一島嶼』, 『地學雜誌』, 第13卷 第149頁,  
1901. 5; 池内敏, 2012, 앞의 책, 257쪽)<sup>8</sup>

〈자료 3〉

이 섬(울릉도-인용자 주)의 정동 약 50해리에 3개의 작은 섬  
이 있다. 이를 리양코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일본-주 김) 사람  
은 마쓰시마(松島)라고 칭한다. 거기에는 전복이 조금 나오  
므로 이 섬으로 출어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섬에는  
음료수가 모자라 오랜 기간 출어할 수 없으므로 4~5 일  
이 지나면 울릉도로 귀항한다. (『明治三十五年鬱陵島狀況』,  
1902. 5; 池内敏, 2012, 앞의 책, 258쪽)<sup>9</sup>

이케우치는 〈자료 1〉 ‘세간에서는 이것을 리랑코도  
라고 한다’는 ‘세간(俗)’의 의미는 울릉도 사람들을 지

칭하는 것이며 <자료 2>의 ‘양코도’라고 한 사람들은 맑은 날 독도를 본 조선인들이고, <자료 3>의 ‘리양코’라고 한 사람들도 조선인들이며 일본인은 송도(松島)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료 1>, <자료 3>은 1849년 프랑스어선 리양코루 호가 독도를 발견한 이름을 따서 리양쿠르 도로 알려진 이후 일본 측 기록에는 수백 년간 사용해 온 송도가 리양코 도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뜻에서 기록한 것이며 조선인들에게 까지 알려져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위의 자료에서 ‘세간’, ‘말한다’의 의미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나 송도 대신 서양식 이름으로 부른다는 의미이며 울릉도 조선인들에게까지 알려진 명칭 또는 조선인들이 쓰는 명칭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케우치가 리양코 도에 주목한 것은 <자료 2> 1901년 ‘일한 어민은 이 섬을 양코라고 한다(日韓漁民之を指してヤンコと呼ぶ)’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료는 1901년 『지학잡지』에 기고된 것으로 동년 3월 10일 흑룡회(黑龍會) 『회보(會報)』 제1집 「일본해 중 미발견의 한 도서(日本海中未發見の一嶋)」에도 같은 제목으로 기고되었다. 저자는 흑룡회 간부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이며 그는 흑룡회 『회보』를 비롯하여 동년 5월에 『지학잡지』, 『제국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고하였다. 특히 『지학잡지』의 「양코도 발견」 기사 옆에는 미국 상선이 마닐라 항해 중 북위 2도 4분 동경 135도 35분에 위치한 섬을 발견하였고 미국은 군함을 파견하여 국기를 세워 미국 영토로 삼았다는 기사도 함께 실어 새로이 발견한 ‘양코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할 것을 간접 시사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쓴 구즈우 슈스케의 저작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 서문에 현양사 설립자 다케다 한시(武田範之)가 ‘소속이 정해지지 않는 섬을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0</sup> 이 새로이 발견된 섬 양코도는 독도의 위치와 지형 등이 모두 조작되어 기술되고 있으나 이케우치는 ‘일한 어민들이 양코라고 한다’는 기록을 중시하였다. 이케우치는 1904년 독도 명칭이 등장하기 전 조선인들은 양코

10 客歲 予出山 久聞與君相見黑龍會上 君既成美髯公 爲予語鰲海 近事太詳矣 且予入順天灣 三而二失路 君指畫而說迷路如臍掌 君蓋留韓國 久從水產之業 韓海之島嶼星布 一島一嶼 靡所不往 殊發見一 無所屬島云 君之於韓海漁事 可謂成矣.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서문, 1쪽).

도라고 한다는 논증을 피력하기 위해 위의 자료군을 나열하며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당시 울릉도 조선인들의 독도 명칭은 리양코·양코도였으므로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 논증되었던 것이다.

이 조작된 독도 ‘양코도’ 기록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을 하기 전까지 일본의 우익정치가, 학자들이 쓴 책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구즈우 슈스케가 유포한 ‘양코도’ 기록이 거짓이라고 판명되자 ‘양코도’ 명칭은 사라졌다.

울릉도 섬 중에 선박을 정박할 항만이 부족하다.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에 무인도가 있는데 ‘양코도’라고 한다. 연안의 굴곡이 많아 어선이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에 좋다.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3, 『韓國水産行政及經濟』(財務週報, 25號 附錄, 80쪽)

(양코도)는 울릉도 및 우리 오키도의 중간 30리의 해상에 있으며 전도에 사는 사람은 없으며 연안 정박에 편리하지만. [...] (岩永重華, 1904, 『最新韓國實業指針』, 寶文館, 294쪽)

본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리에 우리 오키도와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무인의 한 섬이 있다. 일반에서 이것을 양코도라고 칭한다. 길이는 거의 10정 남짓하고 연안의 굴곡이 대단히 많아서 어선을 정박시키기에 좋다. [...] (田淵友彦, 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308쪽)

이케우치는 리양코·양코도라고 기술된 단지 3개의 자료를 나열시켜 대한제국칙령 41호 반포 당시 독도는 리양코·양코도였으므로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고 분명히 주장하였다. 조선시대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인들이 돌로 된 섬을 돌섬(독섬)이라고 불렀고 1904년 독도라고 쓴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케우치는 독도 침탈론자가 조작한 자료를 맹신하여 1900~

1904년까지 독도의 호칭은 리랑코·양코도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케우치는 리랑코 도와 계통이 다른 독도의 어원을 찾지 못했고 ‘독도의 어원을 가진 고유 언어가 리랑코 도가 아님을 확인하자 독도의 어원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하였다.

**(2) 나카이 요자부로는 한국 어민과의 경쟁을 상징하여 한국 정부에 청원하려 했다**

1904년 일본의 영토편입대하원을 신청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한국 정부에 대하원을 결심했다(朝鮮の領土と信じ, 同国政府に貸下願の決心を起こし)’는 증언은 당시 독도 어장에 진출한 어민들의 영토 의식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이다. 1909년 치도세열도[千島列島] 해마도(海馬島)의 강치어업권 허가신청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카이가 쓴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와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이 기록한 『죽도경영자중정양삼랑씨 입지전(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 시마네현 행정문서 ‘죽도대하·해러어업서류(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에는 나카이가 조선 정부에 신청원을 내리하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이 자료를 근거로 호리[屈和生]<sup>12</sup>와 나이토[内藤正中]<sup>13</sup>는 “일개 어민을 사주하여 일본 정부가 일본의 영토 편입을 단행했다”고 하였다. 당시 러일전쟁이 한창인 1905년 1월 28일 러시아 함대와의 결전에 대비하여 내무성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영토 편입이 강행된 사실은 어민의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요청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케우치는 “한국 영토라고 믿고 한국 정부에 신청하려고 했다”는 나카이의 인식은 한국인과의 경쟁을 우려하여 한국인들을 배제할 이유에서 한국 정부에 청원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카이가 한국 영토라고 믿었다는 영토 의식은 간데없고 한국 정부에 신청하려 한 것은 한국인들

11 奥原碧雲, 1907, 『竹島及鬱陵島』, ハーベツト出版

12 屈和生, 1987, 『1905年日本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24輯

13 김병렬·나이토 세이쥬, 2006,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미디어

을 오지 못하게 하려는 어업상의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그 근거로 1904년 9월 25일 군함 신고함의 『행동일지』를 제시하였다.

송도에서 ‘리양코루도’암을 직접 본 사람에게서 들은 정보, ‘리양코루도’암을 한인은 독도라 쓰고, 본방 어부들은 생략하여 ‘리양코’도라고 칭한다. 별지 약도와 같이 2개의 험한 암초로 되어 서도는 높이 400척, 험악하여 올라가는 것은 곤란하지만 동도는 비교적 낮아 잡초가 자라고 정상에는 조그마한 평지가 있다. 2, 3개 가옥을 건설할 수 있다(『軍艦新高艦行動日誌』5)

위의 자료는 신고함이 망루 설치 조사를 위해 청문 조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한국인의 도항사실과 어업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케우치는 조선인들이 독도를 알기 시작한 시기가 나카이가 상경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경쟁을 상징하여 한국 정부에 어업허가원을 신청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케우치의 주장처럼 1904년까지 독도를 알지 못했고 독도에 갈 수 없었던 울릉도인들이 어떻게 갑자기 성장하여 자본가 나카이의 어업활동을 위협했을까? 그는 1904년까지 울릉도인들이 독도를 알지 못했고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인들과의 경쟁을 상징하여 한국 정부에 어업허가권을 신청하려 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관계상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를 알아차린 후 그는 ‘(울릉도 조선인 중)일본 측 어민과 경쟁할 수준의 조선인 어민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것은 어렵다’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 독도 명칭과 마찬가지로 이케우치는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한 나카이의 인식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자신의 모순된 논리에 의문을 가지면서 끝을 맺었다.

#### IV. 맺음말

2005년 일본의 ‘죽도의 날’ 제정 이후 한일 양국의 석도 논쟁을 가열시킨 이케우치는 양국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권원의 제 문제점을 역사학적 방법으로 정리하여 사실적 공유를 통하여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정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끝나고 말았다.

이케우치는 전라도인들을 비롯하여 울릉도인들의 독도 도향이 없거나 광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혹은 전라도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향이 없었다는 것을 독도 명칭의 내력, 나카이의 영토 인식에서 찾으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논증하지 못했다. 그는 울릉도인들의 독도의 명칭은 리량쿠르 열암을 어원으로 한 리양코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자료들은 조선인들이 독도를 리량코로 부른다고 해석할 수 없었다. 특히 ‘양코도’ 기록은 흑룡회가 독도 침탈을 기도하여 의도적으로 조작한 침탈기록이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없다. 오히려 이 자료는 무주지 선점론을 유포한 침탈자료이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케우치는 흑룡회 간부가 유포한 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당시의 독도의 명칭은 리량코·양코도였으므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학문적 연구 방법을 중시하며 텍스트 안에서 연구할 것을 주장하던 이케우치 연구는 근대기 영유권 문제에서 독도 침탈을 도모하는 기록물들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이 기록물들을 분석함에 따라 울릉도인들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찾아냈던 것이다.

# 영토·해양 일지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3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일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독도지리넷' 오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센카쿠열도(중국어: 다오위다오)에 미·일안보정상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재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된 2013 회계년도 국방권한 법안에 서명</li> <li>3일 : 타이완 내정부(內政部) 공시지가 발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열도(타이완명: 다오위타이)의 공시지가 상승</li> <li>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가해양국 해감(海監) 순찰기 센카쿠열도 영공에 재접근, 일본 항공자위대 즉각 F-15 전투기 출동</li> <li>-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 센카쿠열도 주변 영공에 중국 항공기 접근 대응방안 협의</li> <li>- '일본청년회의소' 조사,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 독도 주변의 '일본 국경'을 올바르게 그릴 수 있는 일본 성인은 10%가 못됨</li> </ul> </li> <li>6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 센카쿠열도 주변 영공에 중국 항공기 접근 반복과 관련 자위대의 전투기 긴급 발진 및 감시 태세 재검토 의사</li> <li>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무성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 영토 및 역사 문제로 인한 분쟁과 긴장관계에 대하여 일본과 한중 양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희망</li> <li>- 중국 국가관광국(國家旅遊團)은 지린(吉林)성 소재 8개 여행사의 북한국경관광업무 증설 비준</li> <li>- 중국사회과학원, '미래와 전망: 새로운 형세 하의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 학술세미나 개최</li> </ul> </li> <li>8일 : 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심의관,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열도 근처 영해 진입에 엄중히 항의</li> </ul>

2013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일 : 가수 김장훈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글·애플의 '일본해' 표기에 항의하는 온라인 광고 시작</li> <li>11일 : 미국 백악관 인터넷 민원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독도 관련 일본인의 청원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유효 서명인수를 넘어섬</li> <li>15일 : 국토해양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5,000분의 1) 중 울릉도와 독도 일원의 최신 수치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를 통해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일 : 중국 지도출판사 출간 세로버전 중국 지형도 『중화인민공화국 전도(全圖)』에 처음으로 남중국해 제도가 대륙과 동일한 축척으로 표기</li> <li>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 유보</li> <li>- 중국 신화사 통신, 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순찰을 '정상 상태'로 간주, 또 유엔에 신청한 대륙붕 연장 추진 방침</li> </ul> </li> <li>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2년 12월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관하여 반론하는 외교문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li> <li>- 센카쿠열도 북방 방공 식별권에 중국 군용기가 들어와서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문제와 관련, 중국 국방부는 중국군이 자위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주력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는 담화를 발표</li> <li>- 중국 해양발전연구회가 베이징에서 설립</li> </ul> </li> <li>13일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호주의 밥 카 외상과 시드니에서 회담, 남중국해 문제도 협의</li> <li>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정부는 백악관 및 국방성, 국무성의 고위 관료 3명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긴장에 대해 자제 요구</li> <li>-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항공기에 대응하여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li> <li>-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타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시, 경고의 일환으로써 사격을 실시할 가능성 언급</li> </ul> </li> <li>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수상은 베이징에서 자청린(賈慶林) 전국정치협상회담 주석 및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등과 각각 회담,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li>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베트남의 쩌응 떤 상 수상과 회담, 남중국해 문제도 협의</li> </ul> </li> <li>17일 : 중국 국무원은 「천국해양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전문 공개</li> </ul>

2013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일 : 《동아일보》,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 운동 계획을 밝힘</li> <li>24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북 울진에 위치한 동해연구소에서 '동해·독도 홍보관 개관식'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연달아 진입</li> <li>-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미국 국무성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 클린턴 장관은 센카쿠열도 문제에서 일본의 시정권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 표명</li> </ul> </li> <li>20일 :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와 관련한 발언에 불만과 반대 표명</li> <li>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상은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환영</li> <li>- 일본 공명당의 아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과 관련, '미래에 이 문제를 맡기지'고 말함</li> <li>- 중국의 국가 해양 권익의 보호와 국가 외교와 해양 정책의 서비스를 위한 중국남중국해연구원 베이징 분원 개설</li> </ul> </li> <li>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의 알버트 델 로사리오 외상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발표</li> <li>-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센카쿠열도에 관한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비판한 것에 대해 '일본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li> </ul> </li> <li>24일 :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타이완의 민간단체 '중화보조협회(中華保釣協會)', 어선 취안자푸[全家福]호를 센카쿠열도로 출항</li> <li>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역사 교과서의 '에도에서 도쿄로' 내용을 수정, 독도 관련 기술 확대 시도</li> <li>-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신조 수상 불참 방침 밝힘</li> <li>-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li> </ul> </li> </ul>

2013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9일 :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작년 독도를 찾은 사람이 20만 5,778명으로 집계</li> <li>31일 : 외교통상부는 다음 달부터 영토해양과로 일원화하여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키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위원회를 설립,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대하여 의논할 계획</li> <li>26일 :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을 통해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에게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지 말고 긴장 완화 방도 모색 권유</li> <li>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li>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통상 국회의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 언급</li> </ul> </li> <li>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 '영토대책국'을 설치, 영토 분쟁 문제를 전담</li> <li>-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분쟁 문제의 국제중재 회부에 중국 측의 동의 촉구</li> </ul> </li> <li>31일 : 센카쿠열도의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 항해</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일 : 국토해양부는 각급 기관에서 브이월드(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국가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참의원 본 회의에서, 센카쿠열도에 공무원 상주시키는 것을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함.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국면 긴장시키는 행동 취하지 말 것' 요청</li> <li>- 일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일 관계에 '현상유지' 주장</li> </ul> </li> <li>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해감선(海監船)이 센카쿠열도 12해리 내에 진입.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 대사 청용화를 조치 항의</li> <li>-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시는 센카쿠열도를 세계 자연유산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li> </ul> </li> </ul>

2013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철회를 공식 요구</li> <li>-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기로 한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난</li> </ul> </li> <li>•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도는 일본 정부의 독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경상북도 의회도 즉각 철회를 요구. 울릉군도 규탄성명 발표</li> <li>- 북한도 일본 정부의 처사를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li> </ul> </li> <li>•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전담부서 설치 철회 촉구</li> <li>- 경상북도 교육청은 일본의 독도 전담부서 설치 철회 촉구</li> <li>- 《문화일보》, 경상북도는 독도 직접 사업 국비예산 반영을 정부에 재요구하기로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문제 담당상은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기로 발표</li> <li>- 일본 외무성은 중국 군함이 일본의 해상 자위대 호위함에 레이더 조준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엄중히 항의</li> </ul> </li> <li>•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중국 군함의 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레이더 조준에 대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와 자제 요구</li> <li>- 미국 국방장관 리언 페네타는 중일 양국에 센카쿠 열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li> </ul> </li> <li>•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군 전투기가 홋카이도[北海道] 바다에서 영공을 침입하자 일본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 긴급발진 대응</li> <li>- 일본 관방상 스가 요시히데는 센카쿠열도 문제로 중단된 중일 간 '해상 연락시스템' 협상 재개 노력</li> </ul> </li> <li>•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제정으로 승격하는 방안 검토의 의회 답변서 송부기로 함</li> <li>-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러시아군 전투기의 영공 침입에 유감 표명</li> <li>- 미국의 전직 국무성 부차관보 랜디 슈라이버, 미국이 센카쿠열도 문제에 한쪽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립도 아니라는 것 인정, 또 타이완의 센카쿠열도 문제 개입에 대해 경고</li> </ul> </li> <li>• 9일 : 중국군 공군 전투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함</li> <li>• 10일 :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양 감시선이 항해</li> <li>•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정부는 유엔의 법정을 통해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한다는 입장 고수</li> </ul> </li> </ul>

2013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일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국회 의원 10명과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무성의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은 중국 군함의 레이더 조준을 부정한 중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li> <li>• 12일 : 타이완 총통 마잉주(馬英九)는 센카쿠열도 어장 사용 문제를 일본과 협상 중이며 조속한 결과 희망</li> <li>• 13일 : 일본의 전 방위상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는 중국이 일본의 어선을 억류할 경우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 주장</li> <li>•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카쿠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중국 해양 감시선 3척 진입</li> <li>- 파키스탄이 자국의 그와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외항구홀딩스[中國海外港口控股公司]에 인도 결정. 인도는 이 결정의 전략적 영향 우려</li> </ul> </li> <li>• 15일 : 필리핀 방문 유럽 의회 대표단의 단장 랑겐, 유럽 의회는 한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 중재를 통한 해결은 지지</li> <li>• 16일 :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22일에 마쓰에에서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 파견 발표</li> <li>• 17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을 초청한 사실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비난</li> <li>•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기로 한 데 대해 유감 표명</li> <li>- 경상북도 교육청은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독도 관련 왜곡 교과서 문제 항의서한 전달</li> </ul> </li> <li>•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카쿠열도의 인근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이 일본의 영해 진입</li> <li>-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전 방위상과 중국 해군 대령은 도쿄의 한 세미나에서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양국의 군사충돌 방지 메커니즘 건립에 동의</li> <li>-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일본에게 센카쿠열도의 세계유산 신청 권리가 없음을 코멘트</li> <li>- 타이완 총통 마잉주는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제휴하지 않음을 표명</li> </ul> </li> </ul>

2013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일 : 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행사계획 철회 촉구</li> <li>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취소 요구</li> <li>-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홍보자료를 10개 국어로 제작</li> <li>-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부서 설치 및 시마네현의 독도 강제 편입의 날'을 규탄</li> <li>-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국내 시민단체들이 일본 원정시위에 나섬</li> </ul> </li> <li>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 요구</li> <li>- 독도의병대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규탄 기자회견</li> <li>-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 특별전' 시작</li> </ul> </li> <li>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의 차관급 고위당국자가 처음 참여한 가운데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 성명, 구라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외교부 변계(邊界) 및 해양사(海洋司) 부사장 어우양위징(歐陽玉靖), 유엔 대륙붕 획정위원회의 의사 규칙에 따라 중국 측이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획정안이 금년 7월 제32회 회의의 임시 일정에 포함될 예정</li> <li>- 베트남의 교육부서는 1979년 베트남·중국 국경총들을 역사교과서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연구 논의</li> </ul> </li> <li>21일 : 중국은 '디지털화 다오위다오 기념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용, 관람객들의 호평</li> <li>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 행사에는 현역 국회의원 20명도 참석</li> <li>- 센카쿠열도의 접속수역 내에 중국의 어업감시선 1척 진입</li> <li>-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가 마쓰에시 행사장 주변에 모여 항의</li>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li> </ul> </li> <li>23일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케리는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확인</li> </ul>

2013년	국내	국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조치해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일본의 행위를 비판</li> <li>- 경상북도 도지사는 성명 발표하고 일본의 행위를 규탄</li> </ul> </li> <li>26일 :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교가 독도학습 부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연간 10시간 내외로 하는 내용의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3월 새학기부터 시행</li> <li>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부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채택</li> <li>- '독도학교' 개교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열림</li> <li>- 미국 워싱턴 D.C.의 코리아모니터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I Love Dokdo 독도 사랑 그림·사진·영상 전시회' 개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일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부대변인은 아베 신조 수상의 워싱턴 연설에서의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li> <li>26일 : 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접속수역 내에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 항해</li> <li>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중의원 본회의의 외교연설,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강조</li> <li>- 중국 국방부 대변인 경연성(耿雁生)은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기지 선정과 센카쿠열도 정세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li> <li>-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 향후 5년간 해양정책의 기본 지침이 될 제2차 「해양기본계획」 초안 발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의 외교연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유감 표명</li> <li>- 서울흥사단의 '33인 독도방문단'은 울릉도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아욕을 규탄하는 행사 개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일 : 중국 정협 대변인 위신화(呂新華), 센카쿠열도 문제로 무력충돌 발생하면 일본의 책임이라고 주장</li> <li>3일 :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 정부가 타이완 측에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의 공선(公船) 항해 자제 요구가 밝혀짐</li> </ul>

2013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일 : 우크라이나 국영 지도 제작사인 '카스트그래피아'의 사장 소사 로스티슬라브는 방한 인터뷰에서 '카스트그래피아'가 만든 모든 지도에서 1998년부터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li> <li>14일 : 재미동포 김한일 박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AT&amp;T파크의 전용주차장 한복판에 대형 독도 광고판 설치</li> <li>15일 :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동해'(Mar do Leste)를 '일본해'(Mar do Japao)보다 먼저 표기한 지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를 주제로 한 전람회인 '베이징에서 보는 독도'가 정식으로 중국 관중들에게 개방되었음</li> <li>- 중국의 푸잉(傅瑩) 부외교부장, 중국의 감시선 활동 강화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대한 대항 수단</li> </ul> </li> <li>7일 : 일본 자민당 정권은 매년 4월 28일을 이른바 '주권회복일'로 정해 정부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 중</li> <li>8일 : 중국 전국 정협 위원이자 국가체육국 지리정보국 부국장인 리밍덕[李明德], 센카쿠열도에 측량 표지 설치 의사 표명</li> <li>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해양 관리 부문을 국토자원성의 국가해양국으로 통합 및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추진</li> <li>-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 방지 위해 실제 통제선 연선에서 양국 군사들이 뒤따르면서 순찰을 도는 방식 금지에 동의</li> </ul> </li> <li>11일 : 중국의 중앙 기구개혁 위원회 사무국의 왕펑[王峰] 부주임, 국가 해양국의 개편과 권한 강화에 대해서 일본의 해상 보안청 등 각국의 해상 경찰을 참고 추진 방침</li> <li>12일 : 중국 해감 51, 23, 27호 편대가 센카쿠열도 영해 내에서 순항</li> <li>13일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은 중국의 센카쿠열도 측량 검토에 관해 비판</li> <li>15일 : 뉴욕아시아협회 남중국해 문제 토론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li> <li>16일 : 중국 교통운수부 난하이[南海] 항해보장 중심의 하이커우[海口] 항로표지처가 하이커우에 설립</li> <li>17일 : 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접속수역 내에 중국의 해양 감시선 3척 항해</li> </ul>

2013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일 : 경남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8주년 기념식' 개최</li> <li>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독도 바위에 '한국땅'이란 한글을 새겨 넣기로 함</li> <li>-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항의, 또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에 외교서한 전달</li> <li>-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시민단체와 교육계가 일제히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규탄</li> </ul> </li> <li>27일 : 경북 울릉군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 폐기 촉구</li> <li>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외교청서에 항의</li> <li>-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일본의 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일 : 유럽연합 유럽위원회의 마누엘 바로조 위원장, 센카쿠열도 및 독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와 '국제법에 따른 해결' 권한</li> <li>19일 : 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등에 해양 감시선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해양국에 공안부의 관여를 강화할 예정</li> <li>20일 : 미일 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 공동 작전계획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논의</li> <li>22일 :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해양기본계획 책정위원회는 센카쿠열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초안 마련</li> <li>23일 : '센카쿠열도 대치 비상사태와 미중일 관계'를 주제로 하이엔드포럼이 중국 선전[深圳]에서 개최</li> <li>24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센카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관과 '대화 모색 의도' 표명</li> <li>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14년 봄부터 고교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공표,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전회의 검정을 따라 합격한 지리 교과서 9점 전부가 채택되었음. 북방영토를 포함하여 정부의 견해를 따르지 않은 총 9건에 검정 의견이 붙었음</li> <li>-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는 일본의 교과서 심의와 관련 센카쿠열도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밝힘</li> <li>- 중국 어업지도선이 하이난성 하이커우를 출발, 시사[西沙·파라셀제도]군도와 황엔다오[黃岩島·스카보러섬] 해역으로 순항 개시</li> </ul> </li> <li>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2013 외교청서' 초안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 포함</li> <li>-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만만한 싱 인도 수상과 회담, 중국·인도 국경문제특별대표체계를 만들 것을 협의</li> </ul> </li> <li>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 밝힘</li> </ul> </li> </ul>

2013년	국내	국외
3월	과서 검정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베트남의 양국 연합순찰대표단은 중국과 베트남 국경 경계비 근처에서 육상 국경 연합 순찰 시작을 알리는 행사 거행</li> <li>- 서아프리카의 7개국(카보베르데,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세네갈, 시에라리온)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각국의 책임과 그 범위를 묻는 권고적 의견 요청</li> <li>• 30일 :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은 새로 건조한 2천 톤급의 대형 순시선 신베이[新北]함의 취역식에 승선 시찰</li> <li>•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완 정부는 일본·타이완 조업회담에서 센카쿠 열도와 그 부속도서의 주권문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li> <li>- 국제해양법재판소 대변인 줄리아 리터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이 아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 않았으며, 규정에 근거하여 분쟁의 한 당사국인 필리핀이 제기한 요청은 분쟁 해결의 한 과정인 '중재' 과정에 계류 중이고,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단지 재판관의 임명에만 관계할 뿐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음</li> </ul> </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2일을 '독도 특별수업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초·중·고에 자율적인 참여 요청</li> <li>•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외교청서에 항의,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조치, 외교서한 전달</li> <li>- 경북 울릉군은 독도에 묘목 4천여 그루를 심기로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5개년 해양기본계획 원안 공개</li> <li>-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영토 문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강화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발족 발표</li> <li>-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제중재 청구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중재 재판관 임명</li> </ul> </li> <li>• 5일 : 일본의 '2013 외교청서' 각의 통과, 독도 영유권 문제 포함</li> </ul>

2013년	국내	국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일 :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용인시 문화예술원 특별전시실에서 올 첫 전국 순회 독도 전시회를 개최</li> <li>• 13일 : 경북도와 반크는 경북도청에서 '제3기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발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일 : 일본 오키나와현의 이사가키시는 '해양보호구' 건립 신청을 일본 정부에 제출</li> <li>• 8일 : 센카쿠열도 주변의 접속수역에서 중국의 해양 감시선 3척 항해</li> <li>• 9일 : 중국 해양감시선 3척 센카쿠열도 12해리 범위 안으로 진입, 일본은 중국 공무용 선박의 '영해 침범' 발표</li> <li>• 10일 : 일본과 타이완이 어업 협정에 조인</li> <li>•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 '영토·주권을 둘러싼 대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신설 발표</li> <li>- 다카라 구라요시[高倉吉]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 타이완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대하여 항의</li> </ul> </li> <li>• 13일 : 일본과 베트남은 해양 안전을 중심 의제로 하는 양국 간 첫 협의를 5월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li> <li>•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가 도쿄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케리는 센카쿠열도와 관련 현실 변화 위한 일방적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li> <li>- 일본과 타이완의 어업 협정 조인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황레이 대변인은 반대 의사 표명</li> </ul> </li> <li>•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접속수역에 중국 해양 감시선 3척 진입</li> <li>- 일본 자민당의 노다 다케시[野田毅] 세제조사회 회장, 센카쿠열도 문제를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을 경우 일본 측도 응할 수 있다는 자세 필요</li> <li>-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힌두 사원 '프레아 비히어'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심리 시작</li> </ul> </li> <li>•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국방정책에 관한 백서 발표, 센카쿠열도를 언급, 일본 관방 부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는 중국 측에 항의</li> <li>- 센카쿠열도 앞바다에 중국의 해양 감시선 3척 진입</li> </ul> </li> <li>• 17일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결의안' 국회에 제출</li> </ul>

2013년	국내	국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일 : 《세계일보》, 일본은 쓰시마에 있는 유적의 안내판에서 한국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보도</li> <li>21일 : 국회예산정책처, 『독도 이용·보전 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일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홍보를 위해 『남중국해 지구 정세보고 2012~2013』을 광저우에서 출판</li> <li>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도록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양기본계획'을 확정</li> <li>- 일본인들이 포함된 '다케시마를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일본 오사카에서 발족</li> </ul> </li> <li>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마네현은 독도의 어업권이 8월 말에 기한이 마감되기 때문에 현지 어업에 대한 어업권을 2023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li> <li>- 동티모르, 2002년 호주와 체결한 티모르해조약(Timor Sea Treaty)에 의거 2006년 1월 12일 양국이 체결한 티모르해 특정 해양조정조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중재재판에 제소</li> </ul> </li> <li>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li> <li>- 볼리비아 정부는 태평양 연안 해역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를 제소</li> </ul> </li> <li>25일 : 이른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문화방송신문출판국, 창바이산보호개발구방송국, 창바이산보호개발구문학예술계연합회가 정식으로 설립됨</li> <li>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센카쿠열도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표명</li> <li>- 중일 양 정부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하여 방위 당국의 국장급 협의를 베이징에서 개최</li> <li>-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를 거부한다고 밝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일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의 독도 홈페이지를 8월 31일까지 구축할 예정</li> <li>26일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바다 식목일 수중 기념비 설치 제막</li> </ul>	

2013년	국내	국외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모스크바의 크렘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북방영토 문제 해결 교섭 가속화 방침에 동의</li> <li>- 센카쿠열도 주변의 접속 수역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이 항해</li> <li>- 알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남중국해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부득이한 수단</li> </ul> </li> <li>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미국의 해경 국방장관과 회담,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확인</li> <li>- 헤이그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내륙국가로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가 칠레를 상대로 제소한 재판을 수용하기로 하고 양국에 통고했다고 볼리비아 정부가 발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 중국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대사는 척 헤г겔 미국 국방장관의 센카쿠열도 문제 발언을 비판</li> <li>2일 :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이 접속수역으로 진입</li> <li>3일 : 호주 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 등 전략적 환경 변화로 『국방백서』 앞당겨 발표</li> <li>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국가 도서(島嶼) 자치 및 감측(監測)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남중국해 도서 지리정보 자료은행 구축</li> <li>-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3척이 진입 항해</li> </ul> </li> <li>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중국과 인도 양국의 관련 부서는 국경대치 사건 협상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li> <li>- 미국 국방부 연차보고서, 센카쿠열도 중국 영해 기선의 부당성 지적</li> </ul> </li> <li>7일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 연차보고서의 영해 기선 기술을 비판</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일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영문판 독도지리지(The Geography of Dokdo)를 제작, 해외 주요 도서관과 재외공관 등에 배포</li> </ul>	

2013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일 :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미해결'이라고 기술한 논문 게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은 항의</li> <li>-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항해</li> </ul> </li> <li>9일 : 미국 국무성의 페트릭 벤트렐 부대변인 대행은 중국 《인민일보》 논문의 주장을 일축</li> <li>10일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과 베트남의 부수상 응웬 티엔 년, 남중국해 문제 대화</li> <li>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해상보안청이 「2013년도 해상보안 보고」를 공표</li> <li>- 상하이사회과학원은 중국해양전략연구소 센터 창립 대회 및 제1회 중국해양강국전략세미나 개최</li> </ul> </li> <li>13일 :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영해에 진입</li> <li>15일 : 오키나와 일본 반환 41주년 기념일을 맞아 오키나와독립연구조직인 '류큐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 정식 운영</li> <li>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 센카쿠열도와 황옌다오의 표시 명확</li> <li>-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중국 해군 소속으로 보이는 잠수함의 오키나와 접속수역에서의 잠수에 대해 불쾌감 표명</li> </ul> </li> <li>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주민 김성도·김신열 씨 부부,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사랑카페' 개업식</li> <li>- 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4명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주장</li> </ul> </li> <li>22일 : 일본의 행정구역상 독도를 편입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가 독도의 섬과 바위들에 새로운 이름을 붙임</li> </ul>

2013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일 : 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이 독도에 입도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li> <li>25일 :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독도 방문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 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 '포츠담선언'과 '카이로 선언'을 기초로 일본에 대해 영토 문제 제기</li> <li>- 일본 관방상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의 최종적인 근거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고 주장</li> </ul> </li> <li>27일 :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파라셀제도[西沙諸島]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과 접촉하여 손상된 사건에 관하여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관에 항의</li> <li>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는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이미 리커창의 독일 포츠담 발언을 반박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의 발언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li> <li>- 국제해양법재판소,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스페인 최종 판결</li> </ul> </li> <li>30일 :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포츠담선언, 카이로 선언과 관련, 센카쿠열도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직접적 답변 회피 입장 밝힘</li> </ul>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탄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지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논문 심사 내규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투고 요령 ]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실무총괄담당자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

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영토해양연구 Vol. 5

초판 1쇄 인쇄 2013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6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